

2004년 농림부 정책과제 보고서

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강 대 구
소 속 기 관 : 순천대학교

농 립 부

제 출 문

농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12.

-
- | | |
|------------------------|-----|
| ■ 연구책임자 : 순천대학교 농업교육과 | 강대구 |
| ■ 공동연구원 :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 정철영 |
|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 이종상 |
| ■ 연구보조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성식 |
| ■ 보 조 원 :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미 |
| 공주대학교 대학원 | 김현상 |
-

【연구 요약】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현재 농업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의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 2) 선진국의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현황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3) 신규 농업인력 육성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
- 4) 기존 농업인에 대한 경영혁신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 5) 농업인력의 전체적인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문헌고찰, 전문가협의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농업인력 육성 현황의 분석을 위하여 국내외의 각종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농업인력 육성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일부 국가들의 농업인력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internet과 관련자료 및 논문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문헌고찰과 함께, 농업교육기관의 교사, 교수, 연구자, 농촌지도기관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2회 가졌고,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 장학사, 농과대 교수, 농민들로부터 4-5회에 걸쳐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들의 요구와 문제점 인식을 파악하였다. 또한, 농업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과 대학생(2년제, 4년제)들을 권역별(서울, 경기, 강원/충남, 충북, 경북/전남, 전북, 경남), 성별(남, 여), 학과특성(농업관련학과, 무관학과)에 따라 3단계 층화표집으로 360명을 선발하고 농민의 요구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100명씩 300명을 지역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강생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조사원을 파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정예농업인력의 개념 및 현황, 문제점 분석

가. 정예농업인력의 개념

다양한 관련 개념을 고찰한 결과, '정예농업인력'은 농업부문에서 요구되는 인력으로서 농업부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실제적으로는 농업부문에 투입되어 농업부문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나.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

문헌고찰을 통한 실태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인력 육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크게 ① 신규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의 차원, ② 기존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의 차원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화하였다.

○ 신규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의 차원

- 농업인력의 확보 : 농업인력 수급 전망 미흡, 예비 농업인력의 유인 미흡, 여성 인력의 농업분야 유인 미흡, 농촌인구 및 농가인구의 확보 미흡, 농업인력의 과부족 문제 심화
- 농업인력의 신규 진입 : 후계농업인 선정의 문제, 산업기능요원과 후계농업인의 문제, 귀농정착 지원의 문제

○ 기존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의 차원

- 농업인력의 성장유도 정책 미흡
- 농업컨설팅 : 전문상담요원의 부족, 정부 부처 연계 미흡, 농업인력의 기술 및 경영능력 부족
- 농업인을 위한 재교육 : 교육프로그램의 양적·질적 부족, 교육 참여 기회 부족, 일방적 교육내용 구성, 교육방법의 문제
- 재정적 지원 : 영농자금 지원 기준 미흡, 충분한 실사 작업 미흡, 추후 관리 체계 미흡

4. 정예농업인력 육성 방안

가. 농업인력의 수요 전망

2013년에 신규로 소요되는 전업농가수는 벼 70천호, 축산 20천호, 원예 및 기타 부문이 110천호로 총 200천호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는 몇 가지 전제하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전제가 바뀌는 경우에는 그것에 맞추어 다시 추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농업인력 육성 단계

- ① 예비단계 : 교육이수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하며 교육 및 훈련, 실습을 받는 자
- ② 취농단계 : 창업자,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 초보적 기술, 경영, 소득수준,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영농을 하는 사람. 이론과 기술을 통합하는 단계로서 초보적 수준을 지칭함.
- ③ 정착단계 : 영농정착에 성공한 사람. 기술수준이 지역 평균 수준
- ④ 발전단계 : 기술과 경영, 소득수준이 해당품목의 전체 평균 수준
- ⑤ 안정단계 : 기술, 경영, 소득 수준이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 수준 이상. 부분별 전국 평균 이상

- ⑥ 후계수련단계 : 기술과 경영수준이 품목내에서도 전국 평균 수준보다 월등히 높고, 전국농업인 수준에서도 상위수준이며, 농업이외 분야의 평균 소득과도 비슷하거나 상위수준
- ⑦ 경영이양단계 :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그들의 지식이나 기술을 실제 경영에 종사하기보다 후계를 가르치거나 자문이나 봉사활동에 관여하며 농업을 후원하는 단계의 농민

다. 성장단계별 농업인력 육성방향

- 농업인력의 유입단계 :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농업이해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대도시 지역에서의 농업교육 활동을 활발히 함
- 창업단계 : 기술적 능력, 경영 능력, 유통 능력 등의 능력을 구비하는 교육적 역할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과계 대학에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프로그램 운영
- 발전단계 : 경영기술, 마케팅 기술의 확대와 심화를 전제로 하며, 새로운 문제점에 도달하였을 때 문제해결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수시로 필요한 교육과 연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함
- 안정화단계 : 이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기술이나 교육의 제공은 자신의 전문작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의 문제점으로 개별 형태의 교육과 정보수집이 주가 됨.
- 경영이양단계 : 은퇴후의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라. 농업인력 육성의 세부 방안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세부 방안을 도출하였는데, 이를 간단히 영역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규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 방안
 - 농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 ① 대도시 지역에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교육아카데미 설립 운영
 - ② 농업계 학교의 교육 강화와 지원 : 농업생산분야의 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전문 학과목 추가 개설, 생산농업 희망자를 위한 별도 학과 설치, 생산농업코스 설치나 영농부·동아리·클럽 형태로 지원, 교육과정 운영 강화, 전공교과 교사 확보와 연계 강화, 영농학생회 조직에 대한 과제 실습비 지원, 학생들의 실습시설 확보 및 개선, 무원칙한 학과 개편 제한, 성공한 농업인과 학생들의 만남 활성화, 졸업후 대학과 연계된 인턴제 실시

③ 농과계 대학의 현장 지향적 교육과정의 강화 : 현장 지향적 교육과정, 생산농업 관련 학과들 지원, 농업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④ 농업인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평가제도 도입

- 일반인에 대한 농업교육 확대

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활동과 홍보활동 지원

② 교양농업교육활동의 확대 : 안내와 탐색을 위한 교양농업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와 지원, 정규교육과정에 반영, 농업정보 탐색을 위한 연수비 지원, 교사확보와 참고자료 개발

- 신규 농업인력의 확보

① 후계농 선발 자격의 나이 제한 폐지

② 청소년 직업조직들의 농업 안내사업과 경진행사 지원

③ 다양한 경로의 직접적 인력 확보 방안 활용 : 농업직업훈련 과정의 설치, 농업인턴 제도 도입, 창업 연수제도 실시

④ 창업후견인제도 도입

⑤ 생산농업의 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전문농업 인력에 대한 공급방안 검토

⑥ 후계농업인 선발과정과 육성과정의 일치

⑦ 입직경로의 다양화 : 직업훈련 과정의 설치, 다양한 입직 대상자 고려, 다양한 입직 대상자의 농업 기초능력 판별을 위한 도구 개발, 여성농업인의 비중 확대, 개인의 생애 경로를 고려한 정착 지원체제, 비농업계학교 출신들을 위한 기초 교육 실시

⑧ 농업에 관련된 창업보육센터 확대

- 신규 농업인력에 대한 자금 지원 제도 보완

① 농업인력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 제도 보완

② 연수자금과 시설 및 생산기반 확보 자금을 위한 저리나 무이자 지원

- 농업인력 관련 기관간의 협력 체제 구축

○ 기존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 방안

- 농업종합자금제 개선방안

- ① 제출서류와 서식의 간소화
- ② 시설자금의 융자지원 조건 개선
- ③ 비재무평가 방법 개발
- ④ 지원대상 확대
- ⑤ 신규후계농업인의 나이 제한 완화
- ⑥ 컨설팅 체제 개선

- 농업경영컨설팅 개선방안 :

- ① 농업 현장 중심의 “연구-교육-지도”의 연계 강화
- ② 농업컨설턴트협회 설립
- ③ 컨설팅 효과에 대한 고객 평가 시스템 도입

- 전문농업교육훈련 개선방안 :

- ① 영농교육훈련 정보 인프라 활성화
- ② 기관간 역할 분담 및 특성화
- ③ 교육기관 평가체제 확립
- ④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인정 도입
- 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정착 : 교육훈련 바우처(Voucher)제도 도입, 학점은행제
- ⑥ 후계인력 육성 자격제 도입
- ⑦ 생산모델에 의한 종합교육

- 우수농가 선별, 추가 지원 방안 :

- ①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강화
- ② 지속적인 관리 체계 확립
- ③ 농업법인의 경영 지원
- ④ 벤처농업 육성

- 농민단체 지원 방안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4
4. 용어의 정의	5
II. 정예농업인력의 개념 및 현황, 문제점 분석	7
1. 정예농업인력의 개념	7
2. 농업인력의 현황	12
3. 농업인력육성 현황	16
가. 농업인력의 양성단계	16
나. 신규 농업인력의 선발 및 지원단계	24
다. 기존 농업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원단계	28
4. 농업인력 육성의 요구분석	40
가. 학생 설문 결과 분석	40
나. 농민 설문 결과 분석	71
5. 종합적 논의	116
III. 외국의 농업인력 정책 동향	119
1. 일본의 농업인력정책	119
가. 신규인력의 확보에 관련된 정책	119
나. 기존 농업인 발전 정책	135
2. 미국의 농업인력육성정책	140
가. 농업정책	140
나. 농업인력 육성체계	141
다. 영농후계자 지원을 위한 법률 및 시책	145
라. 영농후계자 지원을 위한 주정부법	155
3. 프랑스의 농업인력정책	155
가. 영농정착 지원금(DJA: Dotations aux jeunes agriculteurs)	155
나. SAFER	159
4. 우리나라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사점	160

IV. 농업인력육성 정책 방안	163
1. 정예농업인력의 소요추정	163
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위상	163
나. 농업인력의 현황	166
다. 농업인력의 전망 및 소요인력	167
라. 요약	176
2. 농업인력 육성 단계	177
3. 성장단계별 농업인력 육성방향	183
가. 농업인력의 유입단계	183
나. 창업단계	190
다. 발전단계	193
라. 안정화단계	199
마. 경영이양단계	200
4. 농업인력 육성의 세부 방안	202
가. 신규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 방안	203
나. 기존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 방안	226
V. 결론 및 제언	255
참고문헌	259
부 록	265

표차례

<표 II-1> 농업인력관련 용어의 비교	12
<표 II-2>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 변화	13
<표 II-3> 농가인구수 변화	13
<표 II-4> 농업경영주의 연령분포	14
<표 II-5> 농림업 취업자의 연령별 동향	15
<표 II-6> 농업계 고등학교 학과별 학생동향(2003년)	16
<표 II-7>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과별 취업 현황(2003년)	18
<표 II-8> 농업계 고등학교의 각 학과별 교육목표	19
<표 II-9>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교사의 표시과목 현황	20
<표 II-10> 농업계 전문대학 학과와 학생수의 변화	20
<표 II-11> 천안연암대학의 몇 개 학과의 교육과정	21
<표 II-12> 농업계 대학의 취업 동향	22
<표 II-13> 학교수준에 따른 농업계 세부 학과별 취업자수	23
<표 II-14> 후계농업인 사업에 의하여 선정된 인력과 지원금액	25
<표 II-15>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 평가 방법 및 배점	25
<표 II-16> 취농후계자들의 교육훈련 유형	26
<표 II-17>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현황	27
<표 II-18> 귀농자 자금 지원 현황	27
<표 II-19> 4-H회의 조직 규모	28
<표 II-20> 농림부의 교육단계별 농업인 교육 유형	29
<표 II-21>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한 농업인 교육 유형	30
<표 II-22>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에 의한 농업인 교육 내용	31
<표 II-23> 농업경영컨설팅의 영역과 내용(축산분야)	32
<표 II-24> 농림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내용	32
<표 II-25>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의 구성	33
<표 II-26> 영농분야별 전업농 규모	34
<표 II-27> 연도별·사업별 전업농 육성 및 지원현황	34
<표 II-28> 농업법인에 대한 농기업경영자금 지원 관련 사항	35
<표 II-29> 벤처농업의 가능 분야	36
<표 II-30> 벤처농업의 유형	36
<표 II-31> 신지식농업인의 선정·육성 현황(2000년까지)	37
<표 II-32> 2001년, 2002년 신지식농업인 관련 주요 사업 추진 실적	37
<표 II-33> 주요 농민단체 현황	38
<표 II-34> 재학하고 있는 학교 유형	40
<표 II-35>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전망	41
<표 II-36> 학교 유형별 농업에 대한 전망	41
<표 II-37> 학과 유형별 농업에 대한 전망	42

<표 II-38> 성별 농업에 대한 전망	42
<표 II-39> 출생지별 농업에 대한 전망	43
<표 II-40> 현재의 학교나 학과에 진학한 이유	43
<표 II-41> 학교 유형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진학 이유	44
<표 II-42> 학과 유형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진학 이유	44
<표 II-43> 성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진학 이유	45
<표 II-44> 출생지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진학 이유	45
<표 II-45> 현재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	46
<표 II-46> 학교 유형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	46
<표 II-47> 학과 유형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	47
<표 II-48> 성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	47
<표 II-49> 출생지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	48
<표 II-50>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	48
<표 II-51> 학교 유형별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	49
<표 II-52> 학과 유형별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	49
<표 II-53> 성별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	50
<표 II-54> 출생지별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	50
<표 II-55> 졸업 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	51
<표 II-56> 농업직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51
<표 II-57> 농업직을 선택한 이유	52
<표 II-58> 학교 유형별 졸업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	52
<표 II-59> 학과 유형별 졸업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	53
<표 II-60> 성별 졸업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	53
<표 II-61> 출생지별 졸업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	54
<표 II-62>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	54
<표 II-63> 학교 유형별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	55
<표 II-64> 학과 유형별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	55
<표 II-65> 성별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	56
<표 II-66> 출생지별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	56
<표 II-67>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	57
<표 II-68> 학교 유형별 농촌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	57
<표 II-69> 학과 유형별 농촌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	58
<표 II-70> 성별 농촌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	58
<표 II-71> 출생지별 농촌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	59
<표 II-72> 농업직에 종사하기를 기피하는 이유	59
<표 II-73> 농업에 종사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지원의 순위	61
<표 II-74> 학교 유형별 농업에 종사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지원의 순위	62
<표 II-75> 학과 유형별 농업에 종사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지원의 순위	63
<표 II-76> 성별 농업에 종사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지원의 순위	64
<표 II-77> 출생지별 농업에 종사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지원의 순위	65
<표 II-78>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보유 정도	66

<표 II-79> 학교 유형별 능력의 차이	69
<표 II-80> 학과 유형별 능력의 차이	69
<표 II-81> 성별 능력의 차이	70
<표 II-82> 출생지별 능력의 차이	71
<표 II-83> 영농경력	71
<표 II-84> 연령	72
<표 II-85> 주작목	72
<표 II-86> 현재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만족도	73
<표 II-87> 영농경력별 현재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만족도	73
<표 II-88> 연령별 현재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만족도	74
<표 II-89> 주작목별 현재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만족도	74
<표 II-90> 농업을 선택한 이유	75
<표 II-91> 영농경력별 농업을 선택한 이유	76
<표 II-92> 연령별 농업을 선택한 이유	76
<표 II-93> 주작목별 농업을 선택한 이유	77
<표 II-94>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 의사	77
<표 II-95> 영농경력별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 의사	78
<표 II-96> 연령별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 의사	78
<표 II-97> 주작목별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 의사	79
<표 II-98> 농업을 시작한 시기	79
<표 II-99> 영농경력별 농업을 시작한 시기	80
<표 II-100> 연령별 농업을 시작한 시기	80
<표 II-101> 주작목별 농업을 시작한 시기	81
<표 II-102> 농업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	82
<표 II-103> 영농경력별 농업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	82
<표 II-104> 연령별 농업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	83
<표 II-105> 주작목별 농업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	84
<표 II-106> 농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	85
<표 II-107> 영농 시기별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	86
<표 II-108>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능력	87
<표 II-109> 영농경력별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능력	87
<표 II-110> 연령별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능력	88
<표 II-111> 주작목별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능력	89
<표 II-112> 현재 농업기술능력	90
<표 II-113> 영농경력별 현재 농업기술능력	90
<표 II-114> 연령별 현재 농업기술능력	91
<표 II-115> 주작목별 현재 농업기술능력	92
<표 II-116> 농업기술능력의 변화	93
<표 II-117> 농업기술능력의 상대적 중요도	93
<표 II-118> 영농경력별 농업기술능력의 상대적 중요도	94
<표 II-119> 주작목별 농업기술능력의 상대적 중요도	95

<표 II-120> 영농을 포기하려고 한 경험	96
<표 II-121> 영농을 포기하려고 한 횟수	96
<표 II-122> 영농을 포기하려고 한 이유	97
<표 II-123> 영농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	97
<표 II-124> 자녀에게 영농을 권장할 의사	98
<표 II-125> 영농경력별 영농을 자녀에게 권장할 의사	98
<표 II-126> 연령별 영농을 자녀에게 권장할 의사	99
<표 II-127> 주작목별 영농을 자녀에게 권장할 의사	99
<표 II-128> 영농경력별 기술수준의 변화	100
<표 II-129> 영농경력별 경영수준의 변화	101
<표 II-130> 영농경력별 판매수준의 변화	102
<표 II-131> 영농경력별 수익수준의 변화	103
<표 II-132> 연령별 기술수준의 변화	104
<표 II-133> 연령별 경영수준의 변화	105
<표 II-134> 연령별 판매수준의 변화	106
<표 II-135> 연령별 수익수준의 변화	107
<표 II-136> 주작목별 기술수준의 변화	108
<표 II-137> 주작목별 경영수준의 변화	109
<표 II-138> 주작목별 판매수준의 변화	110
<표 II-139> 주작목별 수익수준의 변화	111
<표 II-140> 처음 영농을 시작할 때 필요한 운영자금	112
<표 II-141> 영농자금의 이자율	113
<표 II-142> 영농자금의 이자율	113
<표 II-143> 영농자금의 거치 기간	114
<표 II-144> 영농자금의 상환기간	114
<표 II-145> 영농정보 획득 경로	115
<표 II-146> 영농정보의 효과성	115
<표 II-147> 전문적인 컨설팅의 필요성	116
<표 II-148> 전문적인 컨설팅의 적절한 횟수	116
<표 II-149>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	117
<표 III-1> 영농취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121
<표 III-2> 농업후계자 지역실천 활동추진사업의 개요	123
<표 III-3> 몇 개 일본현 단위의 신규 취농자 지원사업	124
<표 III-4> 오키나와현의 지원조치 내용	124
<표 III-5> 나가노현의 신규취농자 관련사업	125
<표 III-6> 홋카이도의 신규취농자 지원조치	126
<표 III-7> 아오모리현의 신규취농자 장려사업	127
<표 III-8> 툃토리현의 지원조치 내용	127
<표 III-9> 아오모리현내 지역별 취농사업	128
<표 III-10> 야마가타현의 지원조치 내용	129

<표 III-11> 나가사키현의 지원조치 내용	130
<표 III-12> 나가노현의 농업기술연수사업	131
<표 III-13> 농업경영기반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시책의 체계와 내용	136
<표 III-14> 미 연방정부 농장지원부서의 농업자금 지원 유형	147
<표 III-15> 미국 연방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 현황	147
<표 III-16> 미국 마케팅론(marketing loan)의 가격지지효과(1999년)	150
<표 III-17> 긴급대책 규모(1998-01년산)	152
<표 III-18> 미국의 연도별 농업소득과 정부보조금액	152
<표 III-19> 주요작물의 수입 구성 (1999곡물년도)	153
<표 III-20> DJA의 개요	156
<표 III-21> DJA의 주요 평가항목	157
<표 III-22> 지역에 따른 DJA 지원기준	158
<표 IV-1>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163
<표 IV-2> 부문별 총산출액 및 수출입 현황	164
<표 IV-3> 부문별 종사자 및 취업자 현황	164
<표 IV-4> 농가 및 농가인구의 구성비	165
<표 IV-5> 총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165
<표 IV-6>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화	166
<표 IV-7> 연령별 농가인구의 구성비	167
<표 IV-8> 연령별 농업경영주의 현황	167
<표 IV-9> 연도별 농가인구 및 농가수의 추계	168
<표 IV-10> 연도별 논면적규모별 논면적의 비율	169
<표 IV-11> 논면적과 농가수의 예측치	170
<표 IV-12> 6ha이상의 신규농업인력의 예측	171
<표 IV-13> 6ha 이상의 소요전업농	171
<표 IV-14>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 현황	172
<표 IV-15> 가축사육규모별 농가수	173
<표 IV-16> 2013년 축산부문 소요 전업농	174
<표 IV-17> 원예농가의 현황	174
<표 IV-18> 규모별 원예농가의 현황	175
<표 IV-19> 2000년 규모별 원예농가수와 재배면적	176
<표 IV-20> 2013년 원예부문 소요농가수	176
<표 IV-21> 농업인력의 육성 단계	178
<표 IV-22> 직업기초능력과 직업관련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수업모델 요소	192
<표 IV-23> 농업인 유형별 자금 지원 조건	196
<표 IV-24> 농업종합자금제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범위	197
<표 IV-25> 종합자금제의 대출금액별 신용조사 유형	197
<표 IV-26>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개요	198
<표 IV-27> 농업종합자금 통합 내역	199
<표 IV-28> 성장단계에 따른 농업인력 육성 대책	201

<표 IV-29> 농업계 고등학교 재직 농업교사들의 표시과목분포	206
<표 IV-30> 농업계 고등학교 설치학과별 학생수와 영농학생 동향	207
<표 IV-31> 한국경영기술컨설팅협회 주요 업무	229
<표 IV-32> 한국경영기술컨설팅협회 전무기구 업무 현황	230
<표 IV-33> (가칭)농업컨설팅협회 설립 계획안	230
<표 IV-34>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내용	233
<표 IV-35> 평가결과의 결정방식	238
<표 IV-36> 프로그램 평가 실행 준거	241
<표 IV-37> 교육훈련 바우처 시스템 유형별 장·단점	244
<표 IV-38> 바우처 발급 유형별 특징	244
<표 IV-39> 국외 농업인 자격제도	247
<부표-1> 한국표준산업분류	265
<부표-2> 한국표준직업분류	265
<부표-3> 산업연관표 농업분야의 부문부류	266
<부표-4> 2000년 생산자가격평가표의 농업부문 총산출액 및 구성비	266
<부표-5> 인력수요 추계방법	267

그림차례

[그림 I-1] 연구의 모형	5
[그림 II-1] 농업인력 선발과 지원제도	24
[그림 II-2] 농업교육대상자별 농업교육프로그램 유형	28
[그림 II-3] 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체계도	33
[그림 II-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단의 컨설팅 절차	33
[그림 II-5] 능력별 분포	68
[그림 III-1] 일본의 영농후계자 육성 체계도	134
[그림 III-2] 인정농업제도의 추진체계	137
[그림 III-3]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141
[그림 III-4] 영농정착자금(DJA, PJA) 지원체계	159
[그림 III-5] SAFER의 토지시장 개입절차	160
[그림 IV-1] 연도별 논면적, 농가수, 호당경지면적	168
[그림 IV-2] 논면적 규모별 구성비	169
[그림 IV-3] 고등학교에서 전업농에 이르는 단계적인 지원과 육성체계	178
[그림 IV-4] 서규선의 농업인력의 발전 단계	179
[그림 IV-6] 농업인력의 발달 단계	182
[그림 IV-7] 컨설팅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231
[그림 IV-8] 컨설팅 효과에 대한 고객 평가 시스템	234
[그림 IV-9] 기관간 역할 분담 및 특성화	236
[그림 IV-10] 체제상의 특징을 구분하기 위한 차원	240
[그림 IV-11] 작업에 관한 연구 방법	250
[그림 IV-12] 작업 방법에 대한 검토 절차	25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농업은 대외적으로 WTO 체제의 출범으로 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도 세계일류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농산물 가격 파동,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화, 유통과정의 문제점 등 농업·농촌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각종 채널을 통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정부기관은 물론 여러 사회단체, 그리고 학술 연구 등에서 강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는 농업·농촌의 문제 중의 하나는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대한 문제, 또는 포괄적으로는 농업인력의 수준 및 그 육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그 중요성이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이 처해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급의 전문 농업인력이 육성되어야 함은 극히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노동력 문제는 양적 감소 및 질적 저하 문제의 차원을 넘어 차세대 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층 인력자원의 절대 부족 및 나아가서는 농업의 단절에 대한 우려감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3,530천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농림부, 2003). 또한,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농가인구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규 농업인력의 확보 및 지원과 기존 농업인력에 대한 지원이 모두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농업인력 육성정책이 프로그램마다 독립적이고 산발적이며,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정철영, 2002).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농업을 둘러싼 외적 환경의 악화로 최근 농업 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인구의 주요 공급원인 농가인구 역시 농가당 인구수가 1985년의 4.42명에서 2002년에는 2.80명으로 줄어들었고, 농가가구수도 192만 5869가구에서 128만 462가구로 64만가구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결과적으로 500만명 가까운 인구가 1985년부터 2002년 사이에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통계정보시스템, 2003). 또한, 1985년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3.9%에 그치던 것이 2002년 현재 60세 이상 농가인구가 38.2%를 차지하여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종사 인구에 있어서도 노령층이 1990년 21%였으나 2000년에는 44.6%로 급증하고 있다. 이들 비율의 증가는 농업인구의 감소에 의하여 나타난 측면도 있으나 노령인구의 총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이 예견된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10년에는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000년 60세 이상 인구인 102만 여명과 50-59세 인구집단인 57만 여명이 합산되어 159만명으로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한 2010년에는 50대 이하의 농업인구는 69만 5774명으로 그치게 되어 농업분야의 성

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강대구, 정철영, 이근수, 2003, p.74). 더구나 1990년에서 2000년 기간의 농업종사인구는 98만 여명이 감소되었는데 40만 여명의 사망자수를 뺀다면 58만 여명에 달하는 감소인구가 10년 사이에 농업을 포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소인구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30-34세 집단의 탈농 감소와 35-39세 집단의 증가, 50세 이후 연령집단의 탈농 증가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강대구, 정철영, 이근수, 2003, p.74). 이는 농업인력으로 정착되는 단계가 병역을 마친 연령때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병역을 마치고 30대 초반에 영농을 시작하여 성공 여부에 따라 30대 중반 탈농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반하여 50대의 탈농 증가는 어느 정도 영농정착에 성공한 집단이 농업을 떠나는 것으로 숙달된 전문인력의 유출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50대 이상의 유출 원인은 보다 더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나 예견될 수 있는 원인은 농업경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농업 이외의 문제점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인력에 대한 정책을 신규 취농자의 확보와 정착 지원, 기존 인력의 능력개발과 유출 방지라는 점으로 집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정책의 적용 방향을 대상집단에 따라 달리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 신규 취농 인구의 확보는 어떻게 유능한 인력이 농업인구로 유입될 수 있으며,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핵심적 사항이 될 것이며, 정착한 사람들의 능력 개발과 유출방지는 그들이 농업에 매력을 갖고 종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핵심적 사항이 될 것이다. 신규 취농 인력의 확보와 교육, 정착 지원은 농업인력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기존 농민들의 정착과 유출 방지는 농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정책적 지원과 그에 필요한 능력 개발 지원, 복지 제도의 정비가 될 것이다. 교육과 복지,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부분은 완전하지는 않으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생계유지를 위한 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은 농산물 개방 하에서도 외국의 농산물이나 외국의 농민이나 업체들과 경쟁하면서 적정한 이익을 남기고 농촌에서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정착한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경영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 능력의 개선에 대한 지원이나 자율적 경영 능력 개선, 경영 자금의 지원과 컨설팅, 기술적 능력과 유통, 국제간 무역 등에 대한 능력 개발 활동 조장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은 종합자금제에 의한 경영규모의 확대나 운전자금의 지원으로 그치고 있고, 능력 개발 문제는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고 각종 농업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몇가지 부분의 기술교육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나 각 국립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의 개설과 운영, 농협과 기타 각종 단체에 의한 농업인 교육이 중심이나 이들의 내용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 모든 영농종사자의 능력개발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컨설팅 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든 분야에 대한 기술적, 경영적 컨설팅은 농업의 다양성과 부딪치는 문제에 비하여 지나치게 단순화한 측면이 있어서 적절하고 충분한 컨설팅을 받기에는 적합한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인력의 육성과정에 따른 농업인력의 육성 현황 및 문제점 등은 몇몇 연구(윤호섭, 박동규, 이영대, 1992; 안덕현 외, 2001; 정철영 외, 2001; 정철영, 2002; 정철영, 2003; 강대구, 정철영, 이근수,

2003)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포괄성이나 구체성의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었다. 즉, 이들의 연구는 체계적인 육성 정책, 교육부, 농림부, 관련기관 등의 협조 체제 등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거나, 농업의 개념이 가공, 제조, 유통, 금융, 교육, 정보 등 1차로부터 3차 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산업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인 영농 인력에 국한되어 왔으며, 농업인력의 육성 대책 중 일부분만을 다루는 등 현재의 농업인력 육성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얻기에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었다.

농업인력에 대한 정책 적용은 현재 생산농업인력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의 복합화로 인하여 생산농업과 관련된 관련 산업분야의 인력 역시 농업인력정책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가공이나 유통, 해외 무역 분야와 같이 농업생산과 관계가 깊고 농촌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인력 분야는 농업인력 육성분야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농업인력의 정책 적용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농업경영체가 발전하면서 생산만이 아니라 가공과 저장 및 유통만이 아닌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농자재업까지 확대되어 농업의 복합 산업화 과정이 예견되어 결과적으로 이들 시설이나 사업부문을 유지 관리할 농업인력도 양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농업과 같이 전통적 의미의 농업을 변형한 형태의 다양한 농업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부분에 대한 농업인력수요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의 인력 공급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나 이들 부분에 대한 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감소되는 농업 후계 인력의 확보라는 측면과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농업후계인력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함을 말한다.

농업인력의 주요 공급원인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업전문대학, 농과대학 등은 농업인력의 공급에 기여하는 바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총수로는 2002년의 경우 2857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의 졸업생 중 0.2%로 그치고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제외하면 농업분야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0.4%정도이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부문의 개방은 농업을 세계와 경쟁하여 육성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외국의 농업부문과 경쟁할 수 있는 인력은 농업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신념있는 정예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대학의 학과 명칭 변경과 개편으로 인하여 교육내용이 바뀌고 있고, 졸업생 역시 낮은 비율만 농업분야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농과계 학교에서 농업분야의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예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는 농과계 대학과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생을 비롯한 유능한 농업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며, 기존 농민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는 농업인력 육성 방안의 마련에 필수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현재 신규 농업인력의 양성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 기존 농업인력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기술과 경영능력의 개발, 컨설팅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대책과 농업인력의 전체적인 구조개편 방안 및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현재 농업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의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 2) 선진국의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현황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3) 신규 농업인력 육성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
- 4) 기존 농업인에 대한 경영혁신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 5) 농업인력의 전체적인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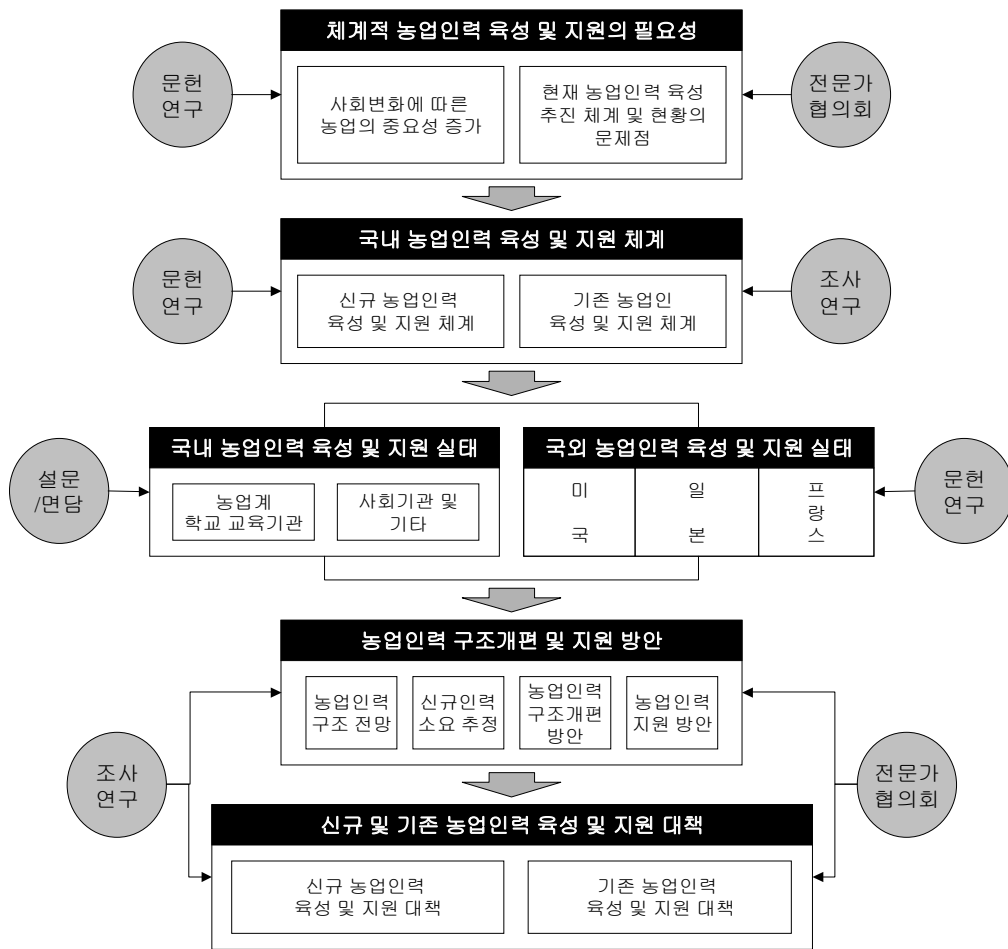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문헌고찰, 전문가협의회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농업인력 육성 현황의 분석을 위하여 국내외의 각종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농업인력 육성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학회지 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농업인력 육성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일부 국가들의 농업인력 육성사업을 internet과 관련자료 및 논문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문헌고찰과 함께, 농업교육기관의 교사, 교수, 연구자, 농촌지도기관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2회 정도의 전문가 협의회를 가졌으며,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 장학사, 농과대 교수, 농민들로부터 4-5회에 걸쳐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들의 요구와 문제점 인식을 파악하고, 농업계 고등학교 차원과 농과계 대학 차원의 농업인력 육성방안을 검토하였으며, 4회 정도로 몇 개 지역을 방문하여 면담하였다. 또한 자금을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업자신용보증기금의 담당자와, 농협의 실무자를 면담하였으며, 각종 종합자금에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였다.

농업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과 대학생(2년제, 4년제)들을 권역별(서울, 경기, 강원/충남, 충북, 경북/전남, 전북, 경남), 성별(남, 여), 학과특성(농업관련학과, 무관학과)에 따라 3단계 층화표집으로 360명을 선발하였다. 농민의 요구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100명씩 300명을 지역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강생을 중심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조사표에 따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통합하여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I-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모형

4. 용어의 정의

- 1) 정예농업인력 : 농업부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본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진 인력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생산농업부문에 투입되어 농업부문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선도적 농업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II. 정예농업인력의 개념 및 현황, 문제점 분석

1. 정예농업인력의 개념

정예농업인력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정예라는 용어에서 파악할 수 있다. Yahoo 국어사전(2004)에 따르면 “알짜로만 골라 뽑아 아주 우수한 것”이라고 하였고, NAVER 국어사전(2004)에 따르면 “재기가 발달하고 뛰어난”, “여러 사람 가운데서 골라 뽑은 뛰어난 사람, 특히 골라 뽑은 날래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이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아주 우수하다’는 의미와 ‘골라 뽑았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예인력은 아주 우수한 사람들로서 골라 뽑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정예농업인력은 농업의 개념적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수하고 골라 뽑은 사람들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할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민승규는(1997, pp.7-12)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충분한 영농기술과 일정한 영농기반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이는 사전적 정의와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우수하다는 개념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승규의 견해에 따르면 전문적인 교육이란 어느 수준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와 어느 정도의 영농기술, 영농기반, 경영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와 지역농업을 어느 범주까지 포함하는가에 따라 개념적 정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업인력의 개념적 정의에서 정예인력이라는 개념을 함께 고찰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농업인력은 창업농이나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지식농업인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왔다. <표 II-1>에서 보는바와 같이 농업인력에 관련된 용어는 다양하다. 정예농업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민승규는 정예인력을 농업인 후계자의 육성 방향으로서 제시하였으며, 농업인구는 감소되나 경영 인력의 소수 정예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고학력화와 규모화라는 용어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전문 인력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였는데, 전문인력은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인력을 지칭하고 있어서, 현재 단계의 인력으로서 그들이 갖춘 조건이 전문지식과 창의력이어야 함을 말한다. 농업전문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정명채, 민상기, 이영대는(1991, p.8)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여 농업으로 하여금 완전한 직업이 되며, 농업기술개발과 농업생산가공 및 유통활동을 통하여 생활기반을 다져야 할 인력으로 파악하였으며, 우리나라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농업구조개선방향과 그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농업구조를 주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중심 세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이는 전문인력이라는 의미가 ‘농업직업인으로서 농업기술개발, 가공, 유통활동을 영위하며, 농업구조개선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중심 세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한다. 민승규의 관점에서 정예인력은 전문적 교육 이수라는 자격 조건과, 충분한 영농기술, 영농기반,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다양한 능력도 갖추어야 하나 어느 정도 성공한 농업인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역시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인력으로 정예인력이라는 용어들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 정명채 등의 견해는 전문적 농업인의 의미로서 전업농이나 농업인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농업구조개선을 주도할 중심세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 용

어의 의미와 유사한 용어라면 정철영(2002)의 전문농업인력에 해당하는 용어일 것이다. 즉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선도농업경영인과 같은 용어들이다. 이들 용어는 연구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가지고 사용되어왔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이 연구가 지향하는 정예농업인력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창업농이라는 용어는 강대구 외(2003)의 연구에서 나타나는데, 학교 졸업 후 농업분야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자나 타 직업에서 일하다가 농업분야의 일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영농후계자, 후계 농업인, 취농창업후계농업인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광의의 의미로는 농업분야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현재 농업인력 육성 제도하에서는 전업농, 신규 후계농업인,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등의 명칭이 존재하는 데, 신규 후계농업인은 병역필, 면제자, 여성으로서 35세 미만자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병역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 면제자, 여성으로 3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계 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는 졸업후 5년 미만자로서 영농승계희망자나, 타 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 졸업자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약간의 조건의 혼란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졸업자나 졸업후 5년 이내나 영농 종사 후 4년 이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선발의 절차가 존재한다.

전업농업인이라는 용어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조 6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農業發展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農業人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農地와 農業勞動力을 보유한 農業人”이라고 하였고, 농업인은 농지법 제2조 제2호과 1조 2항에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농지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또한, 농업·농촌기본법 13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전업농업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으로 규정하였고, 선정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조 3항에 따르면 전업농에 대한 정의가 “전업농업인 등”이라 함은 농림어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노동시간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업농업인을 자세하게 규정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2항을 보면 농업 이외의 자영업자 평균소득에 해당

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진 자이고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이며, 연간 200일 이상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농림부, 2003). 이와 비슷한 규정이기도 하지만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영농규모화 사업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의 설명에서 쌀 전업농은 2ha 이상을 기준, 제주도와 같이 기타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기준은 밭작물은 식량류 10ha, 채소는 3ha, 과수는 1.5ha이나 감귤은 10ha로 규정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은 모든 지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대략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업 경영인을 전제함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업의 규모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자립단계나 선도 단계에 속하는 인력 수준이 전업농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농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제기된 용어로서 벤처기업의 출현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움직임이 농업분야에서 일어나면서 구체화된 용어이다. 김양식(2000)은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해나가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으로 정의하였고, 김재호는(2000)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농업, 새로운 아이디어로 색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사업,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장래의 성공에 도전하는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승규는(2000) 농지, 시설 등의 하드기반 위에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한 것을 벤처형 농업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농림부는(2002a) 기존의 관행적인 농업형태와는 달리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을 말하며, 전통농업에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접목한 벤처농업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에 비하여 이동필, 김종선, 전일송은(2002, pp.14-15) 세 가지 유형으로 벤처농업을 구분하였는데, 하나의 유형은 사업체의 형태를 갖추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농림업 및 관련 산업 분야의 벤처기업, 두 번째 유형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한 농업관련사업체, 세 번째 유형은 좋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체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농가나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세 번째 유형은 신지식 농업인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벤처농업의 구분에 따른다면 각 유형은 기업화단계의 수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받지 못한 기업, 기업화가 안된 기초 수준으로 나눌 때, 기초 수준 단계는 창업의 초기 단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신지식 농업인이라는 용어는 이용환 외(2000, p.62)와 농림부(2001a)의 견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끊임없이 개발, 개선, 혁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 농촌의 변화를 추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에 있어서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나 육종, 재배방법의 개량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농사를 짓는 유형, 새로운 기계나 기술 등을 개발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의 품질을 향상하는 유형, 특수사료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의 개발과 차별적 유통을 하는 유형,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직거래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유형,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식품으로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유형, 유희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동필, 김종선, 전일송, 2002, pp.15-16). 이들 외에도 농업인력은 귀농자라는 용어나 농업법인, 선도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숙련종사자, 농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철영 등(2001, p.6)은 분석하고 있다.

이상의 용어들은 정예농업인력의 범주를 규정할 때 참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창업농은 초보적 수준이고, 벤처농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업농이나 선도개척농, 신지식농업인은 초보적 수준을 넘는 경우로서 이들 용어는 어느 정도 정착하여 농업을 선도하는 인력으로 구분될 것이다.

전업농으로 대표되는 집단이나 농업인중 선도자에 해당하는 인력만으로 한정한다면 정예농업인력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즉 어느 정도 농업적으로 정착한 인력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충분한 영농기술, 영농기반,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는 결과적으로 농업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영농기술이나 기반, 경영능력을 갖추어서 지역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능력과 참여의사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앞의 조건들이 능력에 관련된 진술이므로 결과적으로 참여의사만이 조건으로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농업발전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다면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격요건이 구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농기술, 영농기반, 경영능력은 구분이 애매한 정의로서 정예인력이나 전문인력의 범주에 대한 규정에 따라 모든 농업인이 포함될 수도 있는 정의가 될 것이다. 이 의미는 용어사용에 있어서 조심하여야 할 부분이다. 즉 이들 의미가 모든 사람에 대한 선도인력화가 아닌 일부 선도자들을 전제한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할 수 있고, 농업인 역시 대부분의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예농업인력을 모든 농업인이 발달하여야 할 이상적 목표라고 한다면 목표로서의 정예농업인력은 지향하여야 할 선도자 농업 집단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예농업인력에 관한 두 번째 논의사항은 정예인력의 규모를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승규의 용어에서 논의되는 정예농업인력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농기반과 영농기술,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전업농의 규정도 조건으로 한다면 이들 용어가 적절하나 실제적으로는 경지면적 중심으로 구분하므로 능력과 의사가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예인력을 전체 농업인중의 일부분만으로 한정할 것인가와 전체 농업인의 발전단계로서 파악하는가에 따라 정예인력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전체 농업인의 일부로서 규정한다면 능력이나 기술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여도 상대적 비율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정예농업인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비율보다는 자격기준으로 이러한 자격을 갖추면 정예농업인력으로 규정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예농업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적으로 정책적인 고려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발달단계의 관점에서 농업발전을 선도할 인력으로서 능력과 의사를 갖춘 집단이 정예인력이라고 한다면 이

들 인력에 포함될 계층은 육성의 목표가 될 것이다.

정예농업인력에 대한 세 번째 논의사항은 어떤 일을 하는 인력을 지칭하는가의 문제이다. 농업생산에만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가공이나 유통분야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농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농업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농업범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산업 변화에 따라 농업직의 분화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정예농업인력으로 규정하는 집단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는 규모의 파악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농업인의 법적 정의에 근거한다면 정예농업인력 역시 이들 범주에 속하는 생산농업인력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력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인력 외의 부분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농업생산물의 생산과 가공과 저장, 유통, 교육과 행정 등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예농업인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인력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들 농업정예인력의 개념적 논의는 정책 방향과 함께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농업인력의 육성과 기존 농업인의 발전으로 구분한다면, 이들은 별개의 형태가 아닌 연계된 형태를 말한다. 또한 이들 인력의 육성 정책은 농업인력의 구조변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인력의 구조변화는 노령화, 여성화, 규모의 축소와 신규유입자원의 감소라는 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현재까지 농업인력이라는 용어는 생산농업인력 중심의 논의였다. 그러나 농업인력은 농업생산인력만이 아닌 농업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농업관련산업은 역시 그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은 축소 경향을 보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통계에서도 이들 부분에 대한 통계는 다른 부분의 인력으로 합하여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생산농업인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농업생산인력의 발달과정이나 영역의 확대과정에서 개별 생산농업인력이 관련 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초기부터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을 겸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II-1> 농업인력관련 용어의 비교

농업인력관련 용어		개념 규정	
신규 농업 인력	신규 후계농업인	현재 40세 미만인 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특별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농림사업시행지침서)	
	후계 농업 인	현재 35세 미만인 자 중 농업계 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 직후 영농 승계를 원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 중에서 영농 승계를 원하는 자와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 졸업자 중 농촌 정착을 원하거나 농촌에 정착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군소요 인원의 총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임명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서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신규창업농	농업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 최초로 영농에 종사하게 되는 농업인으로서, 주로 영농 시작을 창업의 개념으로 접근한 용어(농정발전기획단)	
	귀농자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서 농촌으로 귀향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인력	
전문 농업 인력	전업농	자립을 위해 타 산업종사자에 비금가는 소득수준을 달성해야 하는 동시에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노동력이 최대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 경영체	
	농업 법인	영농조합 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한 형태(농업·농촌기본법)
		농업회사 법인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농업·농촌기본법)
	선도농업경영체	농업을 선도해 나갈 전업농 내지 농업법인이며, 경영규모, 생산기술, 경영기법, 시설·장비, 소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농림사업시행지침서)	
	신지식농업인	학력과 전문자격증에 관계없이 새로운 발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능률을 실현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농림부)	
기타	(일반)농업인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해당되는 자(농업·농촌기본법)	
	농가인구	농가에서 3개월 이상 살았거나 3개월은 살지 않았어도 3개월 이상 같이 살게 될 가구원(통계청)	
	농업숙련종사자	정기적으로 전답작물, 과수작물을 재배·수확하고, 야생과일 및 식물을 채취하거나, 동물을 번식·사육하여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경지를 경작, 보존 및 개발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기획하며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를 수렵하는 자(통계청)	
	농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거나 상당한 육체적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영농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자(통계청)	

자료 : 정철영(2002). "21세기 농업인력 육성", 농학계 대학의 농업과학기술 교육 및 확장 기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p.47.

2. 농업인력의 현황

농업인력의 현황은 농업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생산농업분

야에 종사하는 농가인구나 농업인구만으로 한정한다면 농업인력의 감소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의 666만 여명에서 2003년 353만명으로 50% 가까이 감소하였고, 연령별 분포 역시 60세 이상 농가인구가 1990년의 18% 정도에서 39% 정도로 두배 정도 증가하였고, 생산연령층에 속하는 20-59세 연령층의 비율도 5% 이상의 감소가 있었으며, 잠재적 후계자 층으로 파악할 수 있는 15세-19세 연령층의 15% 이상의 감소는 농가인구의 관점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구성비상의 차이이나 실제 인구수의 감소는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전체적으로 1990년에 비하여 2003년의 전체 농가인구는 53%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15-19세 집단은 24%에 지나지 않으며, 14세 이하 집단도 27.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60-69세 집단이나 70세 이상 집단은 1990년보다 훨씬 증가하여 111.5%와 123%나 되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인 저출산 경향과도 관련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2.3%이고 14세미만 인구가 20.3%라는 점에 비하여도 농가인구의 연령구성은 신규 농업인력, 특히 농업생산인력의 확보를 농가단위에서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견한다.

<표 II-2>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 변화

(단위 : 천명)		계	14세미만	15~19세	20~59세	60~69세	70세이상
농 가	'03년	3,530 (100%)	377 (10.7)	177 (5.0)	1,599 (45.3)	821 (23.3)	556 (15.7)
	'90년	6,661 (100%)	1,370 (11.0)	734 (20.6)	3,370 (50.6)	736 (11.0)	452 (6.8)
전 체	'03년	47,925 (100%)	9,719 (20.3)	3,237 (6.8)	29,070 (60.7)	3,528 (7.4)	2,371 (4.9)

자료 : 농림부 내부자료(2004).

농가 인구의 변화는 <표 II-3>과 같다. 농가수의 감소보다 농가인구의 감소가 더욱 크며, 남성의 감소와 생산연령층의 감소와 60세 이상 집단의 증가가 특색이다. 1985년의 63%정도에서 2002년은 96% 정도까지 증가하였고, 이들의 대부분이 노령층의 증가와 생산연령층의 급감에 기인된다. 농가의 저출산은 농가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후계농업인의 확보는 시급한 상황이 되고 있다.

<표 II-3> 농가인구수 변화

구 분	농가수	농가인구	남자	여자	0-14세(a)	15-59세(b)	60세이상(c)	농가당 인구	(a+c)/b
1985	1,925,869	8,521,073	4,246,286	4,274,787	2,113,997	5,229,704	1,177,372	4.42명	0.629
1990	1,767,033	6,661,322	3,278,764	3,382,558	1,370,335	4,103,839	1,187,148	3.77명	0.623
1995	1,500,745	4,851,080	2,372,999	2,478,081	680,232	2,915,959	1,254,889	3.23명	0.664
2000	1,383,468	4,031,065	1,970,989	2,060,076	458,775	2,239,295	1,332,995	2.91명	0.800
2001	1,353,687	3,933,250	1,902,666	2,030,584	444,466	2,065,807	1,422,977	2.91명	0.904
2002	1,280,462	3,590,523	1,747,802	1,842,721	384,044	1,834,936	1,371,544	2.80명	0.957
변화율*	66.49	42.14	41.16	43.11	18.17	35.09	116.49	63.35	152.15

주 : 변화율=(2002년수치/1985년 수치)×100.

자료 : 통계정보시스템(2003), Retrieved from http://www.nso.go.kr/cgi-bin/sws_999.cgi.

특히, 농가당 인구수가 4.42명에서 2.8명으로 감소하여 대개의 농가가 부부 중심이거나 부부 외에 1명 정도가 더 있는 정도로 노동력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5-59세 이하의 생산활동 종사인구가 14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비생산활동 종사인구를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1985년의 0.63정도에서 2002년은 0.96으로 152%이상의 증가가 있었다. 물론 경제활동 참가인구는 60세 이상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수치는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이들 경향이 과거와는 달리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14세 이하의 감소와 60세 이상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5-59세 인구의 감소로 결과적으로 농가부문에서는 신규 취농인구의 확보가 점차 어려워짐을 말한다. 이는 앞으로의 생산 농업은 후계 인구의 확보가 결정적인 문제로, 노령화와 부녀화로 대표되는 농업생산인구의 감소 동향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농업경영주의 연령분포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4>와 같은데, 국민전체 가구주의 연령분포에 비하여 60대 이상의 경영주 비율이 57.7%이고, 1990년의 31.3%보다 1.84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구나 40대 이하의 경영주 비율도 19%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신규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표 II-4> 농업경영주의 연령분포

(단위 : 천호)		계	20세미만	2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농업	1990년	1,767 (100%)	- (0.0)	630 (35.7)	584 (33.0)	403 (22.8)	150 (8.5)
	2003년	1,264 (100%)	- (0.0)	242 (19.1)	293 (23.2)	461 (36.4)	269 (21.3)
	2010년	994 (100%)	- (0.0)	143 (14.4)	303 (30.4)	364 (36.6)	183 (18.4)
	2013년	904 (100%)	- (0.0)	99 (11.0)	280 (31.0)	347 (38.4)	177 (19.6)
전체	'03년	15,298 (100%)	73 (0.5)	9,316 (60.9)	2,779 (18.2)	1,965 (12.8)	1,165 (7.6)

주 : 전체는 국민전체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임. 농림부 내부자료

농림업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표 II-5>와 같이 즉 60대 이상이 2000년 현재 102만 이상이 되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연령층에 합류할 인구가 57만명이다. 이는 2000년 현재의 농업인구 228만명의 69.6%가 2010년에는 60세 이상이 되어 노령화 단계에 속하게 된다. 현재의 정책하에서는 경영이양농가의 연령기준이 65세로, 61세 이상이 이에 속하는 것을 볼 때, 현재의 농업인구 중 2/3 이상이 노령화되어 농업을 떠나야 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신규 입직자가 없는 이상 70만명 정도의 농업인구가 전 국민의 식량을 공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신규 입직자의 확보 문제와 입직자의 교육과 실제 농업 경영의 실습을 위한 적절한 실습장소와 담당 인력 확보문제와 관련을 맺게 된다. 은퇴시기에 처한 노령 농업 인구는 기술수준이나 경영수준이 풍부한 계층이므로 이들을 활용하지 않는 한, 앞으로 신규 취농자가 생기더라도 경험을 전수할 인력이 없어서 현장 정착을 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과정을 거쳐야 함을 말한다. 이는 신규 농업인력의 확보와 함께, 은퇴하는 영농인들을 현장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말한다.

농림업 종사자들의 직업이동동향은 <표 II-5>에서 파악할 수 있다. 매 5년 주기의 결과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5년 주기마다 다음 연령층으로 이동하므로 각 연령집단의 외부 유입이나 유출 정도

를 파악할 수 있다. 1990년에서 1995년까지의 변화는 1990년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 연령층에서 감소가 일어났으나 15-19세가 20-24세 집단으로 이동하는 집단에서 2만 5천명정도가 증가하였고, 60-64세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16만명 정도의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집단은 고정화된 다른 연령층이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990년도 65세 이상 인구를 합한 값이 실제 연령층의 변동분이 될 것이다. 그런 경우는 193,993명이 감소되고 있다.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변화는 15-19세가 20-24세로 유입되는 인구층이 8,520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60-64세가 65세 이상 인구수로 바뀌는 과정에서 증가가 있었으나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284,210명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졸업후 농업직에 진입하는 초기 진입 연령대 이후의 연령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감소정도가 가장 적어지는 단계는 각 시기별로 45-49세에서 50-54세로 전환하는 연령집단이었다. 그러므로 45-49세에서 50세로 넘어가는 단계는 안정화 단계로 판단된다. 변화유형은 1990-1995년 사이의 기간과 1996-2000년 사이의 기간이 변동 형태가 다르나, 1995년 기간은 25-29세의 감소가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는 감소정도가 축소되었고, 45-49세가 가장 적게 감소하였으며, 50-54세 집단부터는 다시 증가하였다. 1996-2000년은 30-34세에 가장 낮았고, 45-49세가 감소가 적었고, 다시 그 이후는 감소정도가 컸다. 가장 많이 감소된 연령은 55-59세이고, 가장 적은 나이는 15-19세의 증가시기를 제외하고는 30-34세였다. 그러므로 학교 졸업후 취업하였다가 5년 이내의 전직자가 급증하고, 다시 30-34세에서 35-39세의 시기는 신규 유입이 많거나 전직자가 적었다. 49세까지 안정화 단계로 진행되다가 50세 이후는 탈농이 다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취농 인력의 육성에 있어서도 연령이나 사회적 역할 등의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표 II-5> 농림업 취업자의 연령별 동향

구 분	1990 (a)	1995 (b)	2000 (c)	b-a* (변동수)	c-b* (변동수)	91-95 사망자	96-00 사망자
15 -19세	40728	15570	4746	25177	8520	272	148
20 -24세	123888	65905	24090	-37743	-18218	662	520
25 -29세	195742	86145	47687	-53267	-10163	1216	1087
30 -34세	264812	142475	75982	-48679	-7433	2458	2021
35 -39세	280149	216133	135042	-47951	-21528	3820	4258
40 -44세	310005	232198	194605	-40349	-18576	4835	6242
45 -49세	379326	269656	213622	-37793	-17957	6532	8009
50 -54세	497480	341533	251699	-48727	-22678	12395	11641
55 -59세	472946	448753	318855	-59812	-45841	18304	22449
60 -64세	327569	413134	402912			20466	31709
65세이상	354928	488504	617428	-193993	-284210	97073	144460
계	3,247,573	2,720,006	2,286,668	-543,137	-438,084	168,033	232,544

주 : 각년령대별 변동수는 각 지점의 인구수에서 5년전 나이집단의 인구수를 뺀 값임. *단, 60-64세 집단의 변동수는 전년도 65세 이상 인구를 합하여 계산된 결과임.

자료: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강대구, 정철영, 이근수(2003)에서 재인용.

3. 농업인력육성 현황

지금까지 농업인력의 육성은 몇 가지 단계로 정리된다. 즉 학교단계의 농업인력 육성과 농민대상의 농업인력 훈련의 형태이다. 학교단계의 농업인력 육성은 농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비교적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미래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일정한 방법이나 시간 등이 고정되어 있어 원리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농민대상의 농업인력 훈련은 기존 농민이나 농업인으로 취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의 교육으로서 직접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은 재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대학은 농과계 대학에 설치된 최고경영자과정이나 평생교육과정을 제외하면 재학생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인 훈련은 대개 현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형태로 사회교육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농림부에서 농업인 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있기 전까지 대부분의 농민 훈련은 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농협이나 지역단위의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농업인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농민단체, 각 지역의 농과계 대학에 설치된 최고경영자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과계 대학에서 운영되는 최고경영자과정은 대체로 기존 농업인의 기술적 능력 개발 중심의 교육이 대부분이다.

가. 농업인력의 양성단계

농업인력의 양성은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농업계 고등학교 학과별 학생동향 : 2003년도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과별 학생동향을 살펴보면 아래 <표 II-6>과 같다. 전체 학급수는 789개이고 학생수는 21,271명으로 여학생의 비율은 34.8%이다. 학년별로는 3학년에서 2학년, 1학년으로 갈수록 학급수와 학생수가 소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6> 농업계 고등학교 학과별 학생동향(2003년)

구분	합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합계	789	21,271	7,408	255	7,347	2,741	266	7,118	2,458	268	6,806	2,209
관광농업과	1	33	22	1	33	22	-	-	-	-	-	-
농업과	6	90	44	-	-	-	1	29	17	5	61	27
농업기계과	73	1,612	142	20	466	61	24	532	33	29	614	48
마필축산과	2	46	16	1	24	7	1	22	9	-	-	-
농업토목과	31	824	87	10	289	31	10	258	15	11	277	41
생명산업자영과	1	21	5	1	21	5	-	-	-	-	-	-

<표계속>

구분	합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식품가공과	120	3,540	1,542	40	1,202	509	42	1,216	522	38	1,122	511
생명정보화공과	8	245	44	2	70	17	3	79	17	3	96	10
원예과	88	2,051	1,198	27	708	396	28	614	387	33	729	415
임업과	3	87	25	1	30	10	1	29	9	1	28	6
자영농과	17	363	55	3	69	22	7	160	21	7	134	12
축산과	16	461	175	4	140	56	5	164	69	7	157	50
농업전산과	14	340	142	4	101	46	4	93	55	6	146	41
식량자원과학과	4	108	36	2	55	18	1	28	14	1	25	4
농업유통정보과	29	908	287	10	304	116	9	286	86	10	318	85
도시원예과	14	373	178	5	141	72	6	161	84	3	71	22
농업증장비과	2	48	-	-	-	-	1	23	-	1	25	-
농업기계장비과	1	23	-	-	-	-	-	-	-	1	23	-
조경과	39	1,161	466	12	364	118	13	383	176	14	414	172
생활원예과	18	508	284	7	215	151	5	141	72	6	152	61
동물자원과	35	966	325	14	434	161	11	298	100	10	234	64
환경보전과	9	264	113	3	81	38	3	93	34	3	90	41
시설원예과	14	403	105	4	124	31	5	140	31	5	139	43
식물자원과	33	890	371	12	309	137	12	324	118	9	257	116
산업기계과	43	1,176	59	15	421	24	15	399	24	13	356	11
식품산업과	15	484	238	7	237	131	4	140	65	4	107	42
생물과학과	9	293	100	3	101	38	3	98	31	3	94	31
농업경영과	12	323	103	4	106	44	4	101	30	4	116	29
자영원예과	8	205	84	2	49	28	3	76	38	3	80	18
자영축산과	8	186	22	2	49	9	3	80	9	3	57	4
생물응용과	2	16	-	-	-	-	-	-	-	2	16	-
농업유통과	3	95	10	1	33	5	1	32	-	1	30	5
자영과	26	629	105	9	231	46	9	224	41	8	174	18
자영생활과	-	-	-	-	-	-	-	-	-	-	-	-
생산환경과	-	-	-	-	-	-	-	-	-	-	-	-
농산물유통과	7	197	78	2	70	29	3	83	43	2	44	6
산림환경자원과	3	106	58	1	35	16	1	36	22	1	35	20
산업과학과	21	653	219	7	240	35	7	206	80	7	207	104
원예자원과학과	1	25	17	1	25	17	-	-	-	-	-	-
생명과학과	11	307	195	3	104	104	4	106	55	4	97	36
자연과학과	6	170	49	3	88	27	3	82	22	-	-	-
생물공학과	2	61	35	-	-	-	1	31	14	1	30	21
생물자원과	6	166	76	2	68	46	2	45	7	2	53	23
원예경영과	3	90	57	1	32	18	1	30	20	1	28	19
원예조경과	6	187	47	2	65	24	2	59	16	2	63	7
축산경영과	3	84	43	1	28	13	1	29	14	1	27	16
국제농축산학과	6	162	75	3	86	45	3	76	30	-	-	-
산업조경과	2	54	13	1	34	8	1	20	5	-	-	-
자영조경과	3	85	14	1	30	4	1	30	4	1	25	6
환경조성과	5	152	49	1	35	6	2	62	19	2	55	24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과별 취업 현황 : 2003년도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과별 취업 현황은 아래 <표 II-7>과 같다. 졸업자는 총 6,624명이고 이중 진학자는 3,690명으로 55.7%에 달하고 취업자는 2,438명으로 36.8%이다. 취업자보다 졸업자가 18.9%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7>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과별 취업 현황(2003년)

구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국가기술 자격취득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합계	6,624	2,249	3,690	1,188	2,438	883	3,811	1,361
관광농업과	-	-	-	-	-	-	-	-
농업과	110	39	50	19	54	20	61	30
농업기계과	666	34	309	12	318	19	380	21
마필축산과	-	-	-	-	-	-	-	-
농업토목과	322	17	218	11	89	6	155	19
생명산업자영과	-	-	-	-	-	-	-	-
식품가공과	1,079	566	605	312	394	221	586	277
생명정보화공과	80	14	49	12	31	2	68	13
원예과	731	352	310	150	373	170	404	215
임업과	26	3	21	1	-	-	5	-
자연농과	135	15	43	6	78	7	57	6
축산과	197	48	93	26	94	22	132	40
농업전산과	144	75	93	45	42	27	54	28
식량자원과학과	30	14	21	8	7	5	13	7
농업유통정보과	336	103	220	61	103	37	190	42
도시원예과	113	46	43	13	56	25	31	21
농업증장비과	23	-	8	-	15	-	21	-
농업기계정비과	12	-	8	-	2	-	-	-
조경과	363	155	231	94	111	49	284	139
생활원예과	162	74	112	48	42	23	86	45
동물자원과	181	51	116	29	53	20	108	25
환경보전과	87	48	57	30	27	17	72	43
시설원예과	67	23	24	12	43	11	18	7
식물자원과	172	97	93	59	66	32	101	69
산업기계과	296	17	204	13	72	4	154	15
식품산업과	107	58	56	38	36	15	55	41
생물과학과	92	47	73	33	8	8	77	43
농업경영과	125	21	76	7	25	3	104	16
자연원예과	67	24	35	10	32	14	23	12
자연축산과	70	6	46	4	16	2	24	2
생물응용과	7	-	5	-	2	-	6	-
농업유통과	19	-	10	-	9	-	-	-
자연과	192	38	105	13	71	16	194	40
자연생활과	4	-	-	-	-	-	2	-
생산환경과	7	2	5	-	-	-	7	2
농산물유통과	55	27	21	7	18	10	40	20
산림환경자원과	22	-	16	-	6	-	-	-
산업과학과	185	113	109	64	60	41	128	67
원예자원과학과	-	-	-	-	-	-	-	-
생명과학과	78	40	42	18	24	14	46	26
자연과학과	-	-	-	-	-	-	-	-
생물공학과	41	16	22	9	1	1	34	15
생물자원과	-	-	-	-	-	-	-	-
원예경영과	30	21	12	4	18	17	-	-
원예조경과	63	10	46	1	16	9	52	4
축산경영과	30	20	13	7	17	13	-	-
국제농축산학과	-	-	-	-	-	-	-	-
산업조경과	-	-	-	-	-	-	-	-
자연조경과	29	-	20	-	1	-	-	-
환경조성과	69	15	50	12	8	3	39	11

□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 농업계 고등학교에는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잠업, 자영농과 등의 생산학과와 농업 토목, 식품 가공, 농업 기계, 생활 과학, 조경, 농산물 유통·정보 등의 비생산학과 등 12개의 전공학과로 편성되어 있다. 생산학과는 대상이 되는 주작물이나 가축 등이 다른 뿐 공통적으로 자영 능력과 관련학과에서는 그 분야의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농업계 고등학교의 각 학과별 교육목표는 다음 <표 II-8>과 같다.

<표 II-8> 농업계 고등학교의 각 학과별 교육목표

학과명	교육목표
식물자원과	작물 생산을 중심으로 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합리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임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합리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동물자원과	축산을 중심으로 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합리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원예과	원예를 중심으로 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합리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잠업과	잠업을 중심으로 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합리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농업토목과	농업 토목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식품가공과	식품 가공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농업기계과	농업 기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생활과학과	생활 과학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농가 생활의 향상과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농업경영과	농업의 여러 영역의 종합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농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조경과	조경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농산물유통과	농산물 유통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교사의 표시과목 현황은 아래 <표 II-9>와 같이 농업이 19.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식물자원·조경이 15.8%, 기타가 14.8%, 원예가 12.3%, 축산이 9.4%, 식품가공이 7.3%, 농공이 5.1%, 농업기계가 4.1% 등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9>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교사의 표시과목 현황

전공	전공수	비율(%)
농공	56	5.1
농산물유통	1	0.1
농산제조	4	0.4
농업	215	19.4
농업기계	45	4.1
농업토목	43	3.9
농화학	3	0.3
동물자원	44	4.0
축산	104	9.4
식물자원.조경	175	15.8
식품가공	81	7.3
원예	136	12.3
임업 및 조경	32	2.9
잡업	3	0.3
기타	164	14.8
합계	1106	100.0

□ 농업계 전문대학의 학과, 학생 및 취업 현황 : 농업계 전문대학의 학과 및 학생수는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4년 졸업자 대비 취업률은 약 63%였다.

<표 II-10> 농업계 전문대학 학과와 학생수의 변화

구분	학과수		입학정원수		학생수		졸업자수	취업자수
	전문대학 전체	농업계	전문대학 전체	농업계	전문대학 전체	농업계		
2000	4,835	53	294,175	2,820	913,273	8,271	2,197	1,532
2001	5,110	50	292,035	2,210	952,649	7,107	1,968	1,351
2002	5,200	46	293,174	2,137	963,129	6,674	1,586	1,108
2003*	5,383	21	285,922	860	925,963	2,534	644	465
2004*	5,847	19	277,223	620	897,589	1,894	587	370

주 : 2003년과 2004년의 농업계 학과 및 학생수는 자연계열 중 [농림·수산]의 학과 및 학생수임.

□ 농업계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 '농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농업에 관한 기술을 연마하여 농업을 과학화하고 나아가 농촌사회 발전에 선구자적 지도자가 될 중견영농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비교적 많은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천안연암대학을 중심으로 학과별 교육과정 중 예시로 몇 개를 살펴보면 <표 II-11>과 같다.

<표 II-11> 천안연암대학의 몇 개 학과의 교육과정

구분	1학년(강의/실습)	2학년(강의/실습)
교양교과	언어와 표현(2/0), 영어(2/0), 영어회화 I (2/0), 생활체육 I (2/0), 생활체육 II (2/0), 농업철학(2/0)	일본어(2/0), 영어회화 II (2/0)
학과별	축산과	양돈 I (2/2), 양계 I (2/2), 축산경영(2/0), 유우(2/2), 초지(1/2), 축산가공(1/2), 한우(1/2), 양돈 II (2/2), 가축위생질병(2/2), 양계 II (2/2), 축산환경관리(1/2), 축산정보처리 II (1/2), 영농설계(1/2), 축산특강(2/0) 현장실습(3학점)
	낙농한우과	포장기계 및 공작(1/2), 유우 II (2/2), 한우(1/2), 축우위생질병(2/2), 초지(1/2), 축산경영(3/0), 축산법규(2/0), 축산환경관리(1/2), 축산정보처리 II (1/2), 유가공(2/2), 육가공(1/2), 조사료이용(1/2), 축산특강(2/0), 양돈(2/2), 영농설계(1/2), 현장실습(3학점)
	사료자원과	초지(1/2), 사료분석(2/2), 유우 I (1/2), 유우 II (1/2), 양돈 I (1/2), 양돈 II (1/2), 가금 I (1/2), 가금 II (1/2), 가축위생질병(2/2), 축산경영(3/0), 축산환경관리(1/2), 한우(2/2), 마케팅(2/0), 축산법규(2/0), 조사료이용(1/2), 축산정보처리 II (1/2), 축산특강(2/0) 현장실습(3학점)
	식육유통과	품질관리(1/2), 식품위생학(2/2), 식품저장학(2/0), 가금생산물학(2/2), 식육처리 II (1/4), 식육상품화(1/2), 매장관리(2/0), 육가공학(1/4), 낙농식품학(1/2), 축산식품법규(2/0), 식육부산물이용(1/2), 식육조리학(1/2), 마케팅(2/0), 무역실무(2/0), 전공연습(0/2), 현장실습(3학점)

□ 농업계 대학의 학과, 학생 및 취업 현황 : 4년제 대학의 전체 입학정원 및 학생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계 학과는 그 반대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취업률이 42%이하로써, 대학에서의 전문적인 취업준비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I-12> 농업계 대학의 취업 동향

구분	학과수		입학정원수		학생수		졸업자수	취업자수
	대학전체	농업계	대학전체	농업계	대학전체	농업계		
2000	9,377	256	314,410	4,406	1,665,398	31,558	5,179	2,317
2001	9,723	268	316,780	4,032	1,729,638	29,773	4,930	2,376
2002	9,659	254	324,309	3,491	1,771,738	27,721	5,037	2,520
2003*	9,542	111	327,040	1,670	1,808,539	12,413	2,387	1,199
2004*	9,653	107	327,740	1,756	1,836,649	11,386	2,064	859

주 : 2003년과 2004년의 농업계 학과 및 학생수는 자연계열 중 [농림·수산]의 학과 및 학생수임.

- **농업계 대학의 교육** : 농업계 학과에서는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기 기능이 강조되고 실습의 비중이 커야하며,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활용되어야 하지만, 보통 교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에서 지원 및 프로그램, 평가, 운영 등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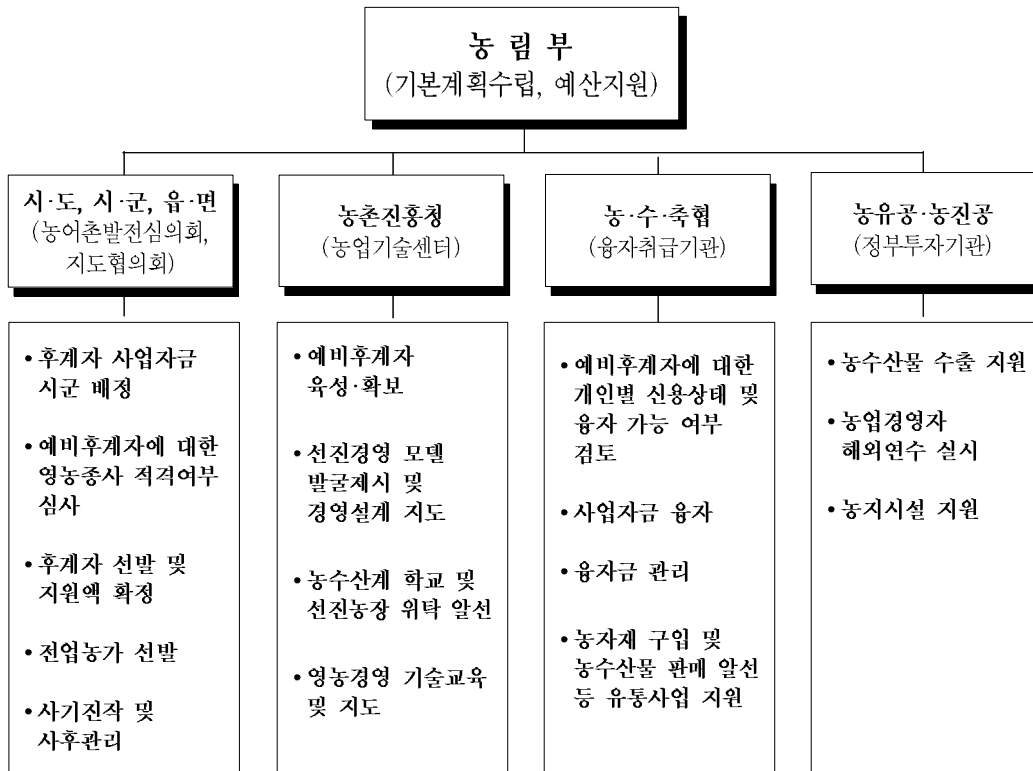
농업계 학교 출신자의 취업은 점차 줄고 있다. 이들 경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면 <표 II-13>와 같다.

<표 II-13> 학교수준에 따른 농업계 세부 학과별 취업자수

구분	1986 - 1990				1991 - 1995				1996 - 2000				2001				2002			
	실업계 고교	전문 대학	대학	계	실업계 고교	전문 대학	대학	계	실업계 고교	전문 대학	대학	계	실업계 고교	전문 대학	대학	계	실업계 고교	전문 대학	대학	계
식품생산분야	28,634	1,813	2,500	32,947	24,575	2,091	4,720	31,386	8,193	1,728	4,392	14,313	1,208	366	881	2,455	816	373	981	2,170
조경분야	3,720	552	54	4,326	2,422	813	111	3,346	1,095	952	187	2,234	169	230	11	410	162	264	96	522
임업분야	-	256	1,494	1,750	-	196	2,528	2,724	-	-	1,997	1,997	-	-	372	372	-	8	336	344
환경임학분야	-	-	-	-	-	-	-	-	-	-	-	-	-	-	-	-	-	-	-	-
축산분야	15,683	1,447	2,841	19,971	11,968	2,140	4,489	18,597	2,627	1,580	3,309	7,516	349	301	543	1,193	228	267	542	1,037
생물분야	-	-	-	-	-	-	-	-	66	-	2,183	2,249	21	-	216	237	18	-	228	246
농기계분야	3,498	205	447	4,150	5,274	147	807	6,228	5,015	-	533	5,548	756	-	101	857	603	-	74	677
농도목분야	4,677	391	-	5,068	4,628	269	-	4,897	1,358	94	52	1,504	139	-	4	143	126	124	27	277
식품분야	957	2,141	1,589	4,687	2,057	3,992	2,563	8,612	3,284	3,098	1,132	7,514	572	421	-	993	529	14	-	543
농업전산분야	-	11	-	11	616	13	-	629	2,404	-	-	2,404	370	5	-	375	231	-	-	231
환경분야	-	830	-	830	-	569	-	569	238	488	161	887	31	-	64	95	52	19	47	118
자연농과분야	2,468	-	-	2,468	1,783	359	-	2,142	1,085	-	-	1,085	327	-	-	327	200	-	-	200
농업경영분야	-	262	2,235	2,497	-	-	2,353	2,353	276	199	1,624	2,099	94	24	189	307	39	-	153	192
기타	702	664	-	1,366	572	238	-	810	-	-	19	19	-	-	-	-	-	6	10	16
합계	60,339	8,572	11,160	80,071	53,895	10,827	17,571	82,293	25,641	8,139	15,589	49,369	4,036	1,347	2,381	7,764	3,004	1,075	2,494	6,573

나. 신규 농업인력의 선발 및 지원단계

국가적으로 농업인력의 육성은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발과 지원은 이들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행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후계 농업인 사업과는 현재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별로 선발되는 후계농업인의 선발은 정규 농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꼭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일반계 학교를 나와서 진흥청을 비롯한 농촌지도기관에서 수행하는 연수를 받은 사람이 유리한 상태이다. 전반적인 선발과 지원은 다음 [그림 II-1]과 같다.



자료 : 농촌진흥청(1998). 학습조직지도. '98 농촌지도공무원 전문교육교재. 농촌진흥청.

[그림 II-1] 농업인력 선발과 지원제도

□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 : 1981년에 1인당 평균 419만원씩 1,795명의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시작한 뒤, 2003년에 2,000명의 후계농업인까지 지난 20여년 동안 약 11만명의 후계농업인을 육성하였다. 시계열에 따른 육성 인원을 보면 85년~87년과 92년 이후에 연간 8,000여명의 후계농업인을 선정·육성하였으나, 그 이외의 시기에는 2,000여명의 후계농업인만을 선발하고 있다.<표 II-14>. 1인당 평균지원액은 1981년에 419만원에서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들에 대한 선발 기준은 다음 <표 II-15>와 같다.

<표 II-14> 후계농업인 사업에 의하여 선정된 인력과 지원금액

연 도	육성인원(명)	지원금액(백만원)	1인당 평균지원액(백만원)
1981	1,795	7,517	4.19
1982	1,846	11,718	6.35
1983	1,807	12,526	6.93
1984	4,480	31,324	6.99
1985	9,021	63,151	7.00
1986	9,063	63,599	7.02
1987	7,684	63,423	8.25
1988	3,600	31,620	8.78
1989	1,850	17,932	9.69
1990	1,850	19,923	10.77
1991	1,350	17,550	13.00
1992	9,000	140,000	15.56
1993	9,000	150,000	16.67
1994	8,340	138,000	16.55
1995	9,730	185,000	19.01
1996	8,227	181,275	22.03
1997	8,526	227,072	26.63
1998	7,862	240,000	30.53
1999	4,819	150,000	31.13
2000	4,674	150,000	32.09
2001	3,270	110,000	33.64
2002	2,500	100,000	40.00
2003	2,000	96,000	48.00
합계	122,294	2,297,630	18.78

자료 : 농림부 각 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표 II-15>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 평가 방법 및 배점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정착의욕 (100점)	○ 영농 정착의욕(100점)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85점(" 60%) - 하 : 70점(" 20%)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00점)	○ 학력(100점) - 농업계 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 100점 - 일반대학(4년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 졸업자 : 90점 - 일반 전문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8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70점 * 사업시행 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100점 - 6개월 이상 : 100점 - 3개월이상 : 85점 - 2개월이상 : 70점 - 1개월이상 : 60점 - 15일이상 : 40점 - 7일이상 : 2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할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가능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외의 훈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부설 영농훈련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 전문교육원 (재학중의 장기 현장실습기간 포함)

<표 계속>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사업계획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사업계획(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지역 및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 80점 -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 60점 - 생산 및 판매계획 : 40점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가능성 : 20점 ※ 평가서에 평가한 점수가 영농사업계획 점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 될지 제 13호서식에 의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평가시 4개 항목에 대한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각 항목별 점수는 만점 점수)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분야 지도공무원 등의 조언 또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
○ 가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사업 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점 가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점 가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종사(1년이상)한 사실을 입증한 자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경우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 여성의 경우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해야함

자료 : 농림부(2003.12). 「200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부.

- 선발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 점수가 동점일 때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우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 ①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 ② 여성
 - ③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 ④ 농업계학교 출신자
 - ⑤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 이러한 순으로 우선 선정하므로 실제로 농업계 학교 출신자는 여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전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는 귀농자이므로 귀농자 가족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정예인력의 육성에 있어서 농업계 학교 출신자들이 우대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 후계농으로 선발된 경우는 <표 II-16>와 같이 공통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1-2주 받는다.

<표 II-16> 취농후계자들의 교육훈련 유형

구분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공통교육	1주 2주	농림부장관이 지정 "	농과계 졸업자 비 농과계 졸업자 등
현장실습교육	2주	"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주 : 한국농업전문대,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졸업자는 현장실습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자료 : 농림부(2003.12). 「200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부.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자진포기 및 무단이탈로 인한 편입취소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17>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현황

연도별	배정인원	선정인원	편입인원	복무중인원	복무완료인원
'94	3,048	2,832	2,807	-	2,633
'95	1,708	1,558	1,527	-	1,406
'96	1,769	1,139	1,104	-	1,025
'97	1,628	1,129	1,098	-	1,038
'98	1,185	835	821	3	780
'99	571	722	709	550	130
'00	638	754	747	712	4
'01	596	650	639	615	-
합 계	11,143	9619	9,452	1,880	7,016

□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사업 : 귀농희망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시기관 및 대상에 따라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II-18> 귀농자 자금 지원 현황

구분	내 용
목적	• 귀농한 자에 대하여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구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정착을 촉진
지원규모	• 50억원, 1가구당 2,000만원(2000년)
대출조건	• 대출금리 : 5.0%(대출금리가 변동되면 변동금리적용)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대출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자 - '99. 1. 1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촌(영농소재지)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구입(임차 포함)등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등 영농정착 여부를 귀농지역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확인한 자(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는 시장. 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에 관련된 사항은 같음) - 3일이상의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영농교육은 농업관련 교육기관(정부·지자체, 민간단체 포함)에서 실시한 영농교육 또는 귀농자 교육을 포함하며, 농축산계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는 영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4-H 육성사업 : 4-H회는 농업분야에 종사하거나 다른 분야에 종사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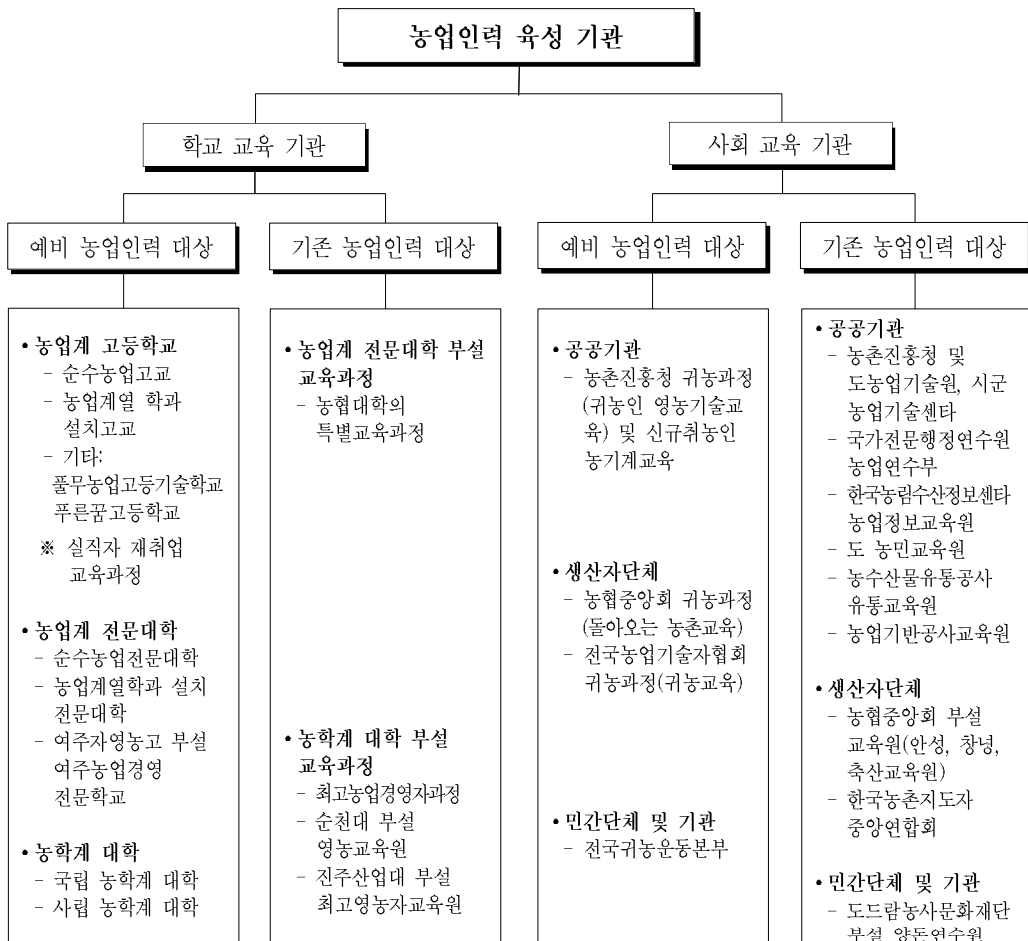
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영농 4-H회, 학생 4-H회, 일반 4-H회로 구분하며, 2004년 현재 전체 회원수는 64,740명이다.

<표 11-19> 4-H회의 조직 규모

구분	영농4-H	학생4-H	일반4-H	계
조직수	845	1,400	59	2,304
회원수(명)	10,587	52,522	1,631	64,740

다. 기존 농업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원단계

□ 전문 농업교육훈련 : 다음 기관 중심의 농업인력 육성체계에서 사회교육기관 중심으로 기존 농업인력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교육기관에서도 일부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 정철영(2002).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농업인력 양성.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4권 제4호.

[그림 11-2] 농업교육대상자별 농업교육프로그램 유형

- 농림부의 교육프로그램 : 교육단계에 따라 예비농업인 등 농업저변 확대 교육, 신규진입단계 교육, 정착 및 성숙단계 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정착 및 성숙단계 교육과정이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해당된다.

<표 11-20> 농림부의 교육단계별 농업인 교육 유형

교육단계별	교육과정별	과정수	교육인원	예산 (백만원)
○ 예비농업인 등 농업저변 확대교육	○ 4-H학생 및 지도자 교육과정	4	1,120	96
	○ 어린이 및 청소년 농업교실	2	3,750	56
	○ 소비자 농업교육	1	80	8
	○ 농고 및 농진생 대상 교육	3	1,240	143
	○ 초등학교 교사농업탐방반	1	80	12
	○ 영농학생수상자 해외연수	1	15	28
	소 계	12	6,285	343
○ 신규진입단계교육	○ 귀농희망자교육	5	1,030	41
	○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교육	1	1,000	324
	○ 신규쌀전업농교육	1	1,200	154
	소 계	7	3,230	519
○ 정착 및 성숙단계교육	○ 농업인해외연수	2	240	265
	○ 전문농업인교육	3	960	95
	○ 농기계전문기술교육	1	100	13
	○ 첨단유리온실교육	1	150	48
	○ 신지식 및 벤처농업교육	4	560	64
	○ 여성농업인교육	6	3,710	76
	○ 법인경영반	1	150	13
	○ 농업인지도자교육	8	5,910	202
	○ 농업인교관요원교육	1	180	10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	1,425	470
	○ 친환경농업교육	8	19,870	328
	○ 농업인교육평가 등 기타	3	-	107
	○ 마늘주산지경쟁력강화교육	1	2,000	70
	○ 농업인단체실무반	1	140	12
	○ 정보화선도자육성과정	1	150	210
	○ 농산물안전관리반	1	80	9
	소 계	43	35,625	1,992
합 계		62	45,140	2,854

- 농림부의 지원 아래, 농업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그 유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는 농업연수부, 농업기반공사 연수부 등이 있고 일반교육기관으로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신지식농업인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양돈연수원 등이 있다.

<표 II-21>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한 농업인 교육 유형

교육기관	교육과정	2003(A)		2004(B)		증 감	
		인원	결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국가전문 행정수원 농업인 수부	○농업인교육교관반	187	13	180	10	▽7	▽3
	○여성농업 경영인반	30	3	-	-	▽30	▽3
	○어린이농업교실	803	46	750	30	▽53	▽16
	○법인경영반	263	24	150	13	▽113	▽11
	○한농전졸업예정자반	200	11	200	10	-	▽1
	○여성농업인교관반	132	22	150	26	△18	△4
	○도시주부농업교실	64	6	80	8	△16	△2
	○벤처농업반	83	9	80	9	▽3	-
	○신지식농업인반	83	6	100	6	△17	-
	○초등학교교사농업담당반	76	11	80	12	△4	△1
	○여주농전졸업예정자반	45	3	70	5	△25	△2
	○녹색농촌체험마을지도자반	69	4	40	6	▽29	△2
	○후계농업인담당자교육	173	14	-	-	▽173	▽14
	○농업농촌지도자반	52	7	-	-	▽52	▽7
	○벤처농업심화반	-	-	40	4	△40	△4
	○농산물안전관리반	-	-	80	9	△80	△9
	○농업인단체실무반	-	-	140	12	△140	△12
	소계	2,260	179	2,140	160	▽120	▽19
	농업기반 공사	○첨단유리온실 경영·재배 기술교육	168	73	150	48	▽18
○쌀전업농교육		5,237	134	1,200	154	▽4,037	△20
○친환경농업교육		400	30	-	-	▽400	▽30
소계	5,805	237	1,350	202	▽4,455	▽35	
한국여성 농업인 연합회	○여성농업경영인육성과정	1,639	32	1,610	30	▽29	▽2
	○여성경영인정책양성과정	-	-	250	11	△250	△11
	○여성농업경영인정보화과정	110	5	-	-	▽110	▽5
소계	1,749	37	1,860	41	△111	△4	
전국귀농 운동본부	○귀농전문학교운영	37	15	50	15	▽13	-
	○본부귀농학교운영	164	5	150	5	▽14	-
	○지역귀농학교운영	248	8	330	11	△86	△3
	○현장귀농학교운영반	51	5	50	5	▽1	-
	○지역별귀농자친환경농업반	455	5	450	5	▽5	-
소계	955	38	1,030	41	△75	△3	
한국신지식 농업인회	○농과계학생 지식농업 육성교육	984	145	970	128	▽14	▽17
	○지식농업경영인육성과정	340	45	340	45	-	-
	○선진농업연수	38	45	40	45	△2	-
소계	1,362	235	1,350	218	▽12	▽17	
전국농업 기술자협회	○농업기술자양성반	260	20	260	20	-	-
	○농업기술지도자양성반	266	15	260	13	▽6	▽2
	○도·농특색교류최고 지도자양성반	45	15	40	13	▽5	▽2
소계	571	50	560	46	▽11	▽4	
농가주부 모임전국 연합회	○여성농업인노인도우미 자원봉사자양성교육	400	25	-	-	▽400	▽25
	○여성농업인리더십교육	-	-	500	18	△500	△18
소계	400	25	500	18	△100	▽7	
한국농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농업신진지현장체험교육	680	43	590	30	▽90	▽13
	○협동조합교육	1,440	25	1,430	20	▽10	▽5
	○농업·농촌지도자교육	2,670	82	2,550	64	▽120	▽18
	○품목조직지도자교육	255	10	300	10	△45	-
	○주산지품목별세미나 및 연수	890	40	700	25	▽190	▽15
소계	5,935	200	5,570	149	▽365	▽51	

<표 계속>

교육기관	교육과정	2003(A)		2004(B)		증 감	
		인원	결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전국여성 농민회 총연합	○ 도여성농민학교교육	97	10	100	8	△3	▽2
	○ 농촌지역 여성교육	1,109	13	1,100	9	▽9	▽4
	소계	1,206	23	1,200	17	▽6	▽6
환경농업 단체연합회	○ 생명공동체이론의운동과 실제	-	-	1,990	37	△1,990	△37
	○ 친환경농업일반	15,651	297	4,040	86	▽11,611	▽211
	○ 지역별특성의이해와적용	-	-	3,750	55	△3,750	△55
	○ 작물별특성의이해와적용	-	-	3,000	40	△3,000	△40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의 이론과 실제	-	-	1,560	21	△1,560	△21
	○ WTO체제와친환경농업	-	-	470	14	△470	△14
	○ 교육인프라구축(교재발간)	-	-	60	25	△60	△25
소계	15,651	297	14,870	278	△781	▽19	
농협중앙회	○ 친환경농업기술교육	2,892	17	-	-	▽2,892	▽17
한국 양돈연수원	○ 양돈농업경영인 기술교육	337	30	300	28	▽37	▽2
농산물 품질관리원	○ 친환경농업교육	5,366	60	5,000	45	▽366	▽15

- **농촌진흥청의 교육프로그램** : 농촌진흥청에서는 중앙 및 지방 기관별 차별화된 농업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도에는 121억원(국비 27억원, 도비 15억원, 시군비 7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1,24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22>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에 의한 농업인 교육 내용

구분	지역	과정수	교육생	교육내용
농촌진흥청	중앙	10개	5천명	▷ 정예 신지식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 소득작목전문기술, 전문농업인, 농축산물수출·유통강좌, 농기계 산업기사양성, 생활과학전문교육 등
도농업기술원	9개도	7개	30천명	▷ 지역특화품목 및 농기계전문교육 - 지역특화작목, 전문농업정보, 신규취농인 농기계교육, 기계화 영농사, 농촌여성지도자 등
시군농업기술원	170시군	11개	1,212천명	▷ 현장애로기술 및 당면과제교육 -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상설, 특성화농업경영자과정, 농업인수출품목, 당면과제현장, 청소년전문, 농업정보활용, 농기계현장이용,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등

- **농업경영컨설팅** : 농업컨설팅이란 개별 농업 경영체(단위별 농가, 농업법인 등)가 자신의 농업경영, 즉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제반 요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정기적 혹은 수시로 구하는 종합적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농업경영컨설팅의 대상은 농업 생산 및 관리조직, 마케팅, 인사 및 재무관리, 경영정보시스템(IT) 등에 걸친 경영전략 및 조직혁신 뿐만이 아닌 농업경영상 필요한 경영상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표 II-23> 농업경영컨설팅의 영역과 내용(축산분야)

구분	경 영 분 야	기 술 분 야
진단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총생산량, 단위당 판매액 ○ 생산비: 사료비, 경영비, 생산비 ○ 수익성: 조수입, 소득, 순수익 ○ 안전성: 자기자본 구성, 부채비율 ○ 성장성: 사육두수 변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식육성: 분만회수, 육성률 등 ○ 사료: 사료요구율, 구입사료비 등 ○ 사양: 육성축 보유, 산차수 등 ○ 생산기술: 상시사육두수, 사고율, 수의진료 등
지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목표선정 및 경영전략 계획 ○ 시설규모 및 사육두수 제시 ○ 출하시기, 출하량, 출하처 제시 ○ 축종별 작업일정 제시 ○ 자금계약 조건 제시 ○ 투자 타당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결과를 이용 지도안 제시 ○ 시설 및 축사 설치 계획 및 표준설계도 제시 ○ 축사, 시설 개보수 제시 ○ 병해충 및 질병치료 ○ 온실, 축사 관리요령제시

자료 : 정철영, 이용환, 나승일(2002).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 방안.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 **농림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고, 컨설팅서비스 민간공급기반을 정비, 강화하며 농가의 컨설팅 수요를 촉발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율적 시장 기구에 의한 컨설팅 추진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표 II-24> 농림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내용

세부사업	2002년 추진실적
○ 컨설팅공급업체 지정 및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공급업체 67개소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특작 14, 축산 45, 종합 8개소 - 지원대상농가 900개소 ○ 계약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5개소(개인 647, 법인 48)
○ 도별 사업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별 사업설명회를 컨설팅 수요자와 공급자의 초기면담 준비의 장으로 활용하여 내실 있는 컨설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인 도별로 계약 쌍방에게 컨설팅공급업체 소개자료(컨설팅 전문분야, 인력확보 현황, 컨설팅실적 등)와 농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교부하여 계약의 적정화 유도 - 사업지침, 컨설팅계약 시 유의사항 등 설명
○ 농업경영컨설팅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483농가 - 결과: 아주 만족 17%, 대체로 만족 52%, 보통 27%, 불만 4%로 컨설팅에 대한 호응도는 9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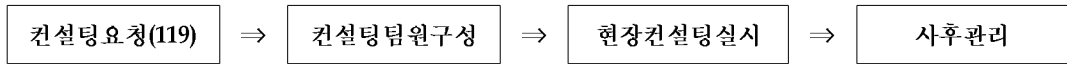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의 농가경영컨설팅 사업** : 다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기법을 이용한 농가경영 컨설팅으로 품목별 표준진단표를 개발, 보급함과 아울러 농가경영 목표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1996년부터 도입된 벤치마킹 지도기법을 기초로 하여 1998년부터 표준진단표의 개발 활용으로 본격화되었다.

<농촌진흥청> 컨설팅전략 수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품목별 표준진단표 개발 보급 ◦ 목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농가경영개선활동 지원자료 개발
<농업기술원> 전문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전문컨설팅팀 운영 ◦ 기초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시·군 컨설팅트 교육
<농업기술센터> 기초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진단 및 경영개선 처방 ◦ 분야별 기초컨설팅팀 운영 ◦ 경영·기술지도 및 상담

자료 : 안덕현 외(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업전문학교.

[그림 11-3] 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체계도

- **생산자 단체의 컨설팅 사업** : 농업협동조합의 지도 업무는 주로 품목별 작목반에 대한 출하, 유통지도에 중점을 두고 행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농업경영종합자금제 도입과 함께 정책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및 사후관리 컨설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컨설팅사업을 도입하였다. 농협의 컨설팅사업은 주로 농가 경영진단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개선을 지원하며 나아가서는 선도농가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한 농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도로 조합원 농가를 건전 농가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1-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단의 컨설팅 절차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1972년 심의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중앙과 도 단위에서 운영되었으나 1995년 9월 동규정을 개정하여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여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심의회는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 학교·농업단체 및 농업인 상호간의 농업산학관련 협동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11-25>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의 구성

구 분	중 앙	도	시 군
위 원 수	20인 이내	14인 이내	20인 이내
위 원 장	농촌진흥청장	국·공립 농과계 대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	서울대 농생대 학장	농업기술원장	위원장이 호선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공무원 6 · 교수 1 · 한국농업교육협의회장 · 농·축·임협 3 · 기타 7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공무원 4 · 교수 1 · 농·축·임협 3 · 기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교원, 관계 공무원 4인 이내 · 지역특화작목시험장장 · 농·축·임협 3 · 농업단체 대표 7 · 농업인 등 4

자료 :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대통령령, 1995. 9. 28), 정철영, 이용환, 나승일(2002)에서 재인용.

□ **우수농가의 선별 및 지원** :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가장 크게, 자주 부딪히는 문제의 하나는 역시 자금의 문제일 것이다. 때문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선별기준을 적용하여 우수한 농가를 가려내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 **전업농에 대한 지원** : 전문화·규모화된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일정수준의 경영기반과 경력, 발전가능성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업농육성사업은 '92년부터 2000년까지 총 89,627명을 선정하고 영농규모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92년부터 2000년까지 영농규모화자금 등 3조 2,41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전업화와 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전업농은 1994년까지 후계자 자금 지원과 마찬가지로 전액 국고 용자로 지원되었으나 1995년부터는 쌀전업농과 그 밖의 전업농으로 구분하여 지원책도 차별화시켰다. 또한, 2000년부터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 의해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흡수·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I-26> 영농분야별 전업농 규모

영농분야		전업농 규모	영농분야	전업농 규모	
쌀	- 전업농(복합농)	5ha(3ha)	축산	한우	100두
과수		1.5ha		낙농	50두
채소	- 노지채소	2ha		양돈	1,000두
	- 시설채소	0.7ha		육계	30,000수
화훼		0.5ha		산란계	30,000수
특작		3ha			

자료 : 정철영, 이용환, 나승일(2002).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 방안.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표 II-27> 연도별·사업별 전업농 육성 및 지원현황

(단위 : 호, 백만원)

연도	합계	경종농업분야							축산분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92	농가수	1,000	575	172	50	182	108	63	425	150	132	106	22	15
	자금	50,000	28,750	8,600	2,500	9,100	5,400	3,150	21,250	7,500	6,600	5,300	1,100	750
'93	농가수	1,000	511	91	86	171	98	65	489	204	147	96	22	20
	자금	50,000	25,550	4,550	4,300	8,550	4,900	3,250	24,450	10,200	7,350	4,800	1,100	1,000
'94	농가수	1,040	496	54	83	190	108	61	544	265	143	97	20	19
	자금	52,000	24,800	2,700	4,150	9,500	5,400	3,050	27,200	13,250	7,150	4,850	1,000	950
'95	농가수	13,132	13,132	11,435	159	927	332	279	-	-	-	-	-	-
	자금	178,850	178,850	94,000	7,950	46,350	16,600	13,950	-	-	-	-	-	-
'96	농가수	14,640	14,640	12,908	137	932	354	284	-	-	-	-	-	-
	자금	181,700	181,700	96,350	6,850	46,600	17,700	14,200	-	-	-	-	-	-
'97	농가수	40,347	40,347	38,703	62	834	509	209	-	-	-	-	-	-
	자금	169,845	169,845	67,445	4,336	51,925	32,709	13,430	-	-	-	-	-	-

주 : 축산분야 전업농의 경우 1995년부터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별도 지원하고 있음.

자료 : 농림부(1998). '97년도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사업현황. 경기: 농림부. pp. 126~127.

-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 농업법인은 크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된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협업적인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있으며 '91년 25개소를 시작으로 '99년까지 총 5,993개소가 설립되었다. 개별경영보다 법인화하여 경영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유리하며, 정부의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법인설립이 다소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9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요건의 강화로 최근에는 설립이 감소되는 추세이다.

<표 II-28> 농업법인에 대한 농기업경영자금 지원 관련 사항

구분	내용
목적	• 발전가능성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시설의 현대화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의 혁신을 유도하고 농업 구조개선사업을 촉진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지원대상자	•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인후계자(선정된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전업농규모 이상의 농업인, 작목반, 신지식인 농업인, 환경농산물표시농가, 관광농원(작목입식) ※ 전업농 규모의 70% 해당 경영규모(예시)(199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쌀 10,500평, 밭작물(식량류) 21,000평, 노지채소 4,200평, 시설채소 1,260평, 과수 3,150평, 질화류(시설) 840평, 분화류(시설) 630평, 느타리버섯 140평, 양송이버섯 210평, 팽이버섯 84평, 약용작물 6,300평, 인삼 6,300평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시설보수 및 대체자금,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설비 구입자금, 시설현대화 자금 등 • 운전자금 :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조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5년 이내(1년 거치 2~4년 균등분할 상환) - 운전자금 : 1년, 단 계속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1년간 연기조치 가능 • 대출금리 : 연 5%(농업경영자금 금리변동시는 변동금리적용) • 지원금액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농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집중 지원하되,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80%이내, 운전자금은 100%이내 ※ 지원내용 중 제외되는 부문 : 농기계구입자금(농업기계화 사업자금과 중복지원 방지), 토지구입비, 기조성된 건물(자부담분 포함), 정부에서 자금(융자금, 보조금)지원하여 시설중인 시설물, 농산물 매취자금이나 농산물 수입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절차	• 실수요자가 농협시·군지부에 신청 → 농협시·군지부심사 → 대출 (단, 시·군지부 심사초과금액은 시·도지역 본부, 중앙 본부 등에서 심사하되 실제대출 업무는 시·군지부에서 취급)

자료 : 정철영, 이용환, 나승일(2002).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 방안.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 **벤처농업에 대한 지원** : 벤처농업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 형태의 농업”을 말한다. 즉, 벤처농업은 높은 수익의 가능성과 동시에 위험부담이 높은 농업 및 농업관련 사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주요 벤처농업 가능 분야는 다음 <표 II-29>와 같다.

<표 II-29> 벤처농업의 가능 분야

분야	사업내용	
농림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기술분야	작물생산분야	- 유전자의 동식물 육종 및 신품종 개발, 형질전환체 육성 - 식물체 조직 배양, 유용유전자 분리 및 미생물 제재 생산 - 기능성 활성물질 생산 - 질병예방 의약품 및 신소재 생산과 생명공학 분야 기술
	기계설비분야	- 전자·통신을 응용한 메카트로닉스 기술, 로봇, 자동화시설, 저온처리기술, 전천후 공정생산기술 등
	농용자재분야	- 식품가공, 건강기능성식품 생산기술, 천연첨가제 생산기술
	농업정보분야	- 농가 경영관리 프로그램, 생산·가공·환경제어용 경영관리 정보시스템, 원격 탐사 및 지리정보시스템 등 개발
	유통관련분야	- 전자상거래(B2B, B2C), 소비자 직거래, 국제무역정보 등 -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신선유통기술 및 유통정보 개발 - 유통조직간 전자상거래 및 유통정보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환경기술분야	- 가축분뇨처리기술, 환경오염복원기술, 쓰레기처리기술, 무공해생물농약 및 비료 개발
	임산가공분야	- 임산물 가공, 임산약용식물 재배기술, 임목종자육성, 신소재 개발기술, 기능성물질 개발기술 등
영농조직 분야	- 아이디어에 의한 영농조직의 결성, 부분위탁 영농작업 및 육묘공장 등을 이용한 생산비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경영조직	
농촌지역개발 분야	- 농촌지역의 문화·환경·경관을 자원으로 하는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사업화 - 농촌지역 정보서비스 분야	

<표 II-30> 벤처농업의 유형

구분	Medium-tech 아이디어 벤처농업	High-tech 첨단 벤처농업
사용기술	중급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	유전자조작기술 등 생명공학, 전자·통신공학 등 첨단기술
경영주체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기타 관련분야 종사자(연구진과 연계 조직)	고학력연구자(농업인과 연구진과의 연계조직)
상품성격	개별 경영체의 고부가가치 농산품	농업전반에 파급효과 창출
사 례	청매실농원, 인삼초콜렛, 이천인삼쌀, 피닉스골드(황칠나무), 장생도라지, (주)플라워랜드 '매직플라워' 등	(주)이지바이오시스템 등 원천기술보유 코스닥등록 업체 및 중기청 확인벤처기업

- **신지식농업인 선정 및 지원** :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이끌어 갈 중심인력으로 신지식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가고 있다. 신지식농업인은 “학력과 전문자격증에 관계없이 새로운 발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능률을 실현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였다. 2001년에 들어서, 농업인의 범위를 자연인에 한정하던 것을 농기업 확산추세를 반영하여 농업법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신지식농업인의 선정 시 중요한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천성, 부가가치성, 자질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창의성은 해당분야에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한 정

도를 말하며, 실천성은 새로운 지식·기술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도 및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자신이 속해있는 분야에 적용하여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한 정도를 말하고, 부가가치성은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조수입이나 순이익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전통문화, 환경, 사회봉사 등 농촌공동체 이익과 농업인 운동 등의 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말하며, 자질은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습득·창조하려는 노력의 정도, 학력·사회적 편견 등의 극복 정도, 국민 계몽적 효과 및 지역농업인의 조직화 실적 등을 말한다.

<표 II-31> 신지식농업인의 선정·육성 현황(2000년까지)

(단위: 명 %)

연도	분야	농업생산				가공	유통	교육	계	
		경종	특작	원예	축산					소계
1999년		5 (6.4)	11 (14.1)	42 (53.9)	16 (20.5)	74 (94.9)	2 (2.5)	1 (1.3)	1 (1.3)	78 (100.0)
2000년		2 (15.4)	1 (7.7)	5 (38.5)	4 (30.7)	12 (92.3)	1 (7.7)	-	-	13 (100.0)
계		7 (7.7)	12 (13.2)	47 (51.6)	20 (22.0)	86 (94.5)	3 (3.3)	1 (1.1)	1 (1.1)	91 (100.0)

자료 : 농림부(2001a).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 계획. 경기: 농림부.

<표 II-32> 2001년, 2002년 신지식농업인 관련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년도	추진실적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선발규정 제정 - 높은 명예유지와 지식·기술의 확산을 주도하도록 정책적 지원 - 농업계학교 학생, 농업인 등의 단계별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추진 - 신지식농업인 통합홈페이지와 네트워크 구축 - 신지식농업인회의 법인화를 통한 지식농업확산 주제로 육성 ○ 신지식농업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지식농업인 성공사례 CD제작 배포(1,000개) - 농업인교육과정에 신지식농업인 출강교육(48명 303회) - 신지식농업인 홍보계획 수립 ○ 신지식농업인 양성교육프로그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지식농업인 현장견학체험교육 실시 - 일시 : '01.10 ~ 11(2개월간) - 장소 : 신지식농업인 20개 농장 - 대상 : 자영농고 학생 450명(여주, 보은, 홍천, 강진, 경남)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지식농업인 성공사례를 담은 CD 1,000매 제작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지식·기술의 벤치마킹 및 미래농업의 비전제시 - 시·도, 시·군·구, 농과계 학교, 농업인 교육기관 등에 배포하여 새해영농교육, 정부 시책교육, 농업인교육시 영상교재로 활용 ○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자영농고생들에게 신지식농업인의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선진농장현장체험교육 11회 실시 ○ 신지식농업인의 지식기술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신지식농업포털사이트 구축

□ 농업인력 육성 관련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 : 이제까지 정부의 정책은 농민을 대상으로만 볼 뿐 주체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였다. 농민단체의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거나 농민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나 정작 농업 현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농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표 II-33> 주요 농민단체 현황

구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연대	카톨릭농민회
설립 연도	1987년	1990년	2003년	1964년
설립 목적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농정개혁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의 사회·경제·정치적 권익 향상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통일대비, 식량안보 및 남북농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축산물 가격을 보장하여 소득보장형 농업을 실현한다. 민족자존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막아내어 식량 자급형 농업을 이룩한다	농업의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농민단체 간의 상호협력과 단결을 위해서	농민스스로의 단결과 협력으로,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적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정의 실현을 통한 농촌사회의 복음화와 인류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	중앙회 도연합회(9개소) 시군연합회(172개소) 읍면회(1,500)	중앙회 도연맹(9개소) 각종 위원회(7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등의 농민단체 연합	생산 공동체(분회) 분당(지구)농민회 카톨릭 농민운동 동지회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생명학교
회원수	120,000명	-	-	-
추진 사업	-조직사업(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지방의원협의회, 농축협조합장협의회) -정책사업(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및 대안제시, 『한국농어민신문』 발간, 월간 『한농연』 발행, 농권보호 및 대외협력, 교육사업, 농업연수 및 국제교육사업) -농업경영인대회 -오피농산물전시회	-전농법률원 -농민약국 -경제협동사업단 -i-전농넷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재정립 및 정부의 대국민 홍보 강화 촉구 -자립적 민족농업 육성을 위한 활동 -농가소득 보장 요구 -강력한 농업통상 대응 활동 -협동조합 개혁 활동 -농민의 '삶의 질' 보장 요구 활동 -16대 대선 농정공약 이행 촉구 활동 -여성농민 육성과 요구 활동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촉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대 촉구	-생명 중심의 가치관 세계관 확립 -생명의 농업 실천 -한국형 농업 발전 모형 제시 -도·농 공동체 연대 활동 -새로운 세상, 살림운동 전개 -생활 공동체 건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생명학교

<표 계속>

구분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설립 연도	1996년	2001년	1975년	1971년
설립 목적	전국 후계자 부인과 여성 후계자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농업경영의 합리화, 과학화,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의 제반 문제 해결 및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여 복지 농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운동은 농촌에 대한 단순한 감상적 동정적 접근에서 벗어나 생명가치에 입각한 귀농운동의 사회화를 위해 노력한다.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젊은이가 농촌으로 돌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하고, 귀농이 가치 있는 삶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사회풍토를 조성한다	낙농가의 권익대변 활동과 정책대안 실현,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주도, 국민에게 양질의 우유와 쇠고기 공급	양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양돈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	중앙회 도연합회(8개소) 시군연합회(106개소) 읍면연합회	본부귀농학교 지역귀농학교(13개소) 귀농전문학교	중앙회 지회(11개소)	중앙회 지방협의회(9개소) 지부(117개소)
회원수	-	-	-	-
추진 사업	-교육사업 -도농교류사업 -농권보호 및 대외협력	-귀농운동 캠페인 실시(귀농운동의 사회화) -귀농희망자 조직 -귀농학교 개설운영 (귀농자를 위한 교육훈련) -실습농장, 훈련농장 설치 -생태적 농촌공동체 마을 건설 -계절 농촌 활동 -귀농자 지원 협력 -후원회 구성 -간담회, 세미나	-정책개발, 대안제시 -대정부, 대국회 정책건의 등 농정활동 -각종 정보, 통계 조사 및 분석 정리 -회원농가 대상 강습회 등 교육행사, 세미나, 토론회, 기타 행사 개최 -「낙농경영지침서」 등 교육책자 제작 -전국낙농육우인 지도자 대회 개최 -연관 산업 단체 및 기관에 직간접 행사후원 -도지회, 시군지회, 낙(육)우회로부터 각종 의사수령과 운영활동 지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농민연대, WTO 국민연대 등 타 축산·농민 단체와 연대활동 -우유 소비 촉진 등 낙농업을 지키기 위한 낙농자 조급사업 추진	-의무자 조급제도 올바른 조기 정착·시행, 실효성, 효율성 제고 -협회 조직 강화 -회원 서비스 양적·질적 향상(민원 업무 처리 신속화, 정책, 제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의견 수렴 기능 강화, 양돈 관련 정보 제공) -협회 및 양돈 산업에 대한 계도교육 및 정보 제공 등 교육·홍보 사업 활성화(전국 양돈 지도자 연수회,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지역별 양돈인 간담회 개최, 지도 업무 강화, 돼지고기 소비 홍보 업무 강화, 간행물 발간 사업) -친환경축산을 위한 각종 관련 법규 정비 -2005년도 한국국제축산 박람회 주최 준비 -양돈자 조급 관리위원회 위탁사업

4. 농업인력 육성의 요구분석

가. 학생 설문 결과 분석

(1)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항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유형은 고등학교가 123명(34.1%) 중 인문계 고등학교가 57명(15.8%), 농업계 고등학교(실업계 포함)가 66명(18.3%)이고 2년제 대학이 116명(32.2%)이며 4년제 대학이 121명(33.6%)이었다. 재학하고 있는 학과 유형은 비농업계열 학과가 175명(48.6%)이고 농업계열 학과는 185명(51.4%)이었는데 농업계열 학과 중 농업생산분야는 51명(14.2%), 농업관련분야는 134명(37.2%)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성별은 남학생이 180명(50%), 여학생이 180명(50%)으로 각각 절반씩을 구성하였다. 태어난 출생지에 있어서는 대도시(광역시, 특별시 포함)가 99명(27.5%), 중소도시가 148명(41.1%), 읍소재 지역이 64명(17.8%), 면이하 지역이 48명(13.3%), 무응답이 1명(0.3%)으로 나타났다(<표 II-34> 참조).

<표 II-34> 재학하고 있는 학교 유형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학교 유형	인문계 고등학교	57	15.8
	농업계 고등학교(실업계 포함)	66	18.3
	2년제 대학	116	32.2
	4년제 대학	121	33.6
학과 유형	비농업계열 학과	175	48.6
	농업계열 학과(농업생산분야)	51	14.2
	농업계열 학과(농업관련분야)	134	37.2
성별	남학생	180	50.0
	여학생	180	50.0
출생지	대도시(광역시, 특별시 포함)	99	27.5
	중소도시	148	41.1
	읍소재 지역	64	17.8
	면이하 지역	48	13.3
	무응답	1	0.3
합계		360	100.0

(2) 농업에 대한 전망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학생들의 전망은 ‘매우 전망이 좋다’가 17명(4.7%), ‘전망이 좋은 편이다’가 73명(20.3%), ‘그저 그렇다’가 141명(39.2%), ‘전망이 나쁜 편이다’가 108명(30.0%), ‘매우 전망이 나쁘다’가 21명(5.8%)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표 II-35> 참조).

<표 II-35>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전망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매우 전망이 좋다	17	4.7
전망이 좋은 편이다	73	20.3
그저 그렇다	141	39.2
전망이 나쁜 편이다	108	30.0
매우 전망이 나쁘다	21	5.8
합계	360	100.0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전망은 학교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농업에 대한 전망을 ‘전망이 좋은 편이다’, ‘매우 전망이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19명(2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2년제 대학 학생들이 31명(26.7%), 4년제 대학 학생들이 31명(25.6%)을 보였으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9명(15.8%)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II-36> 참조).

<표 II-36> 학교 유형별 농업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구분	매우 전망이 나쁘다	전망이 나쁜 편이다	그저 그렇다	전망이 좋은 편이다	매우 전망이 좋다	합계
인문계 고등학교	3 5.3%	26 45.6%	19 33.3%	9 15.8%	0 0.0%	57 100.0%
농업계 고등학교	4 6.1%	15 22.7%	28 42.4%	17 25.8%	2 3.0%	66 100.0%
2년제 대학	4 3.4%	35 30.2%	46 39.7%	24 20.7%	7 6.0%	116 100.0%
4년제 대학	10 8.3%	32 26.4%	48 39.7%	23 19.0%	8 6.6%	121 100.0%
합계	21 5.8%	108 30.0%	141 39.2%	73 20.3%	17 4.7%	360 100.0%

$\chi^2=15.469$, $df=12$, $p<.05$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전망은 학과 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그저 그렇다’에 141명(39.25%)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전망이 나쁜 편이다’에 108명(30%), ‘전망이 좋은 편이다’에 73명(20.3%)을 보여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표 II-37> 참조).

<표 II-37> 학과 유형별 농업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구분	매우 전망이 나쁘다	전망이 나쁜 편이다	그저 그렇다	전망이 좋은 편이다	매우 전망이 좋다	합계
비농업계열 학과	9 5.1%	56 32.0%	69 39.4%	33 18.9%	8 4.6%	175 100.0%
농업계열학과 (농업생산분야)	3 5.9%	14 27.5%	23 45.1%	9 17.6%	2 3.9%	51 100.0%
농업계열학과 (농업관련분야)	9 6.7%	38 28.4%	49 36.6%	31 23.1%	7 5.2%	134 100.0%
합계	21 5.8%	108 30.0%	141 39.2%	73 20.3%	17 4.7%	360 100.0%

$\chi^2=2.515$, $df=8$, $p<.05$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전망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래 <표 II-38>에서 보듯이, ‘그저 그렇다’에는 여학생(41.7%)이 남학생(36.7%)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긍정적인 쪽이나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친 의견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II-38> 성별 농업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구분	매우 전망이 나쁘다	전망이 나쁜 편이다	그저 그렇다	전망이 좋은 편이다	매우 전망이 좋다	합계
남	12 6.7%	56 31.1%	66 36.7%	35 19.4%	11 6.1%	180 100.0%
여	9 5.0%	52 28.9%	75 41.7%	38 21.1%	6 3.3%	180 100.0%
합계	21 5.8%	108 30.0%	141 39.2%	73 20.3%	17 4.7%	360 100.0%

$\chi^2=2.745$, $df=4$, $p<.05$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전망은 태어난 출생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매우 전망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은 면이하 지역(8.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도시(7.1%)이었으나 ‘전망이 좋은 편이다’, ‘매우 전망이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대도시가 30.3%, 중소도시가 27.5%, 읍소재 지역이 15.6%, 면이하 지역이 18.7% 순으로 나타났다(<표 II-39> 참고).

<표 II-39> 출생지별 농업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구분	매우 전망이 나쁘다	전망이 나쁜 편이다	그저 그렇다	전망이 좋은 편이다	매우 전망이 좋다	합계
대도시	9 9.1%	26 26.3%	34 34.3%	23 23.2%	7 7.1%	99 100.0%
중소도시	7 4.7%	40 26.8%	61 40.9%	37 24.8%	4 2.7%	149 100.0%
읍소재 지역	3 4.7%	25 39.1%	26 40.6%	8 12.5%	2 3.1%	64 100.0%
면이하 지역	2 4.2%	17 35.4%	20 41.7%	5 10.4%	4 8.3%	48 100.0%
합계	21 5.8%	108 30.0%	141 39.2%	73 20.3%	17 4.7%	360 100.0%

$\chi^2=16.798$, $df=12$, $p<.05$

(3) 현재의 학교나 학과에 진학한 이유

현재 학교나 학과에 진학한 이유로는 ‘성적 때문에’가 133명(36.9%)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희망하는 직업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가 97명(26.9%)으로 그 다음을 보였다. 이로 보아, 학생들이 학교나 학과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성적과 희망하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음식 만드는 것이 좋아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개인사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등이 있었다(<표 II-40> 참고).

<표 II-40> 현재의 학교나 학과에 진학한 이유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희망하는 직업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97	26.9
희망분야 진학에 도움이 되어서	56	15.6
부모님의 희망 때문에	22	6.1
가정 사정 때문에	10	2.8
성적 때문에	133	36.9
거리가 가까워서	22	6.1
학비 때문에	8	2.2
기타	12	3.3
합계	360	100.0

현재 학교나 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가 2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희망 직업과 관련’으로 24.6%였다.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가 50.0%, ‘희망 직업과 관련’이 22.7% 순이었고 2년제 대학이 ‘희망 직업과 관련이’ 3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성적 때문에’로 27.6%였다. 4년제 대학은 ‘성적 때문에’가 43.0%였고 희망직업과의 관련이 24.8%였다. 이처럼 ‘성적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학

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희망직업과 관련’은 2년제 대학에서 가장 많았다(<표 II-41> 참고).

<표 II-41> 학교 유형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진학 이유

(단위: 명, %)

구분	희망 직업과 관련	희망분야 진학	부모님 희망 때문에	가정 사정 때문에	성적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	학비 때문에	기타	합계
인문계 고등학교	14 24.6%	15 26.3%	2 3.5%	0 0.0%	16 28.1%	10 17.5%	0 0.0%	0 0.0%	57 100.0%
농업계 고등학교	15 22.7%	7 10.6%	6 9.1%	1 1.5%	33 50.0%	1 1.5%	0 0.0%	3 4.5%	66 100.0%
2년제 대학	38 32.8%	21 18.1%	5 4.3%	5 4.3%	32 27.6%	6 5.2%	6 5.2%	3 2.6%	116 100.0%
4년제 대학	30 24.8%	13 10.7%	9 7.4%	4 3.3%	52 43.0%	5 4.1%	2 1.7%	6 5.0%	121 100.0%
합계	97 26.9%	56 15.6%	22 6.1%	10 2.8%	133 36.9%	22 6.1%	8 2.2%	12 3.3%	360 100.0%

$\chi^2=49.819$, $df=21$, $p<.05$

현재 학교나 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학과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농과계열 학과 학생들은 ‘희망 직업과의 관련’이 30.9%이고 ‘성적 때문에’가 28.6%였으나 농과계열 학과 학생들은 농업생산분야, 농업관련분야 모두 ‘성적 때문에’가 56.9%, 4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희망 직업과 관련’으로 나타났다(<표 II-42> 참고).

<표 II-42> 학과 유형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진학 이유

(단위: 명, %)

구분	희망 직업과 관련	희망분야 진학	부모님 희망 때문에	가정 사정 때문에	성적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	학비 때문에	기타	합계
비농업계열 학과	54 30.9%	33 18.9%	7 4.0%	4 2.3%	50 28.6%	17 9.7%	6 3.4%	4 2.3%	175 100.0%
농업계열학과 (농업생산분야)	7 13.7%	7 13.7%	5 9.8%	2 3.9%	29 56.9%	0 0.0%	0 0.0%	1 2.0%	51 100.0%
농업계열학과 (농업관련분야)	36 26.9%	16 11.9%	10 7.5%	4 3.0%	54 40.3%	5 3.7%	2 1.5%	7 5.2%	134 100.0%
합계	97 26.9%	56 15.6%	22 6.1%	10 2.8%	133 36.9%	22 6.1%	8 2.2%	12 3.3%	360 100.0%

$\chi^2=32.176$, $df=14$, $p<.05$

현재 학교나 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성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 희망 때문에’, ‘가정사정 때문에’, ‘성적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는 여학생에게서 더 많은 비율을 보였고 ‘희망직업과 관련’, ‘희망분야 진학’, ‘학비 때문에’는 남학생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II-43> 참고).

<표 II-43> 성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진학 이유

(단위: 명, %)

구분	희망 직업과 관련	희망분야 진학	부모님 희망 때문에	가정 사정 때문에	성적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	학비 때문에	기타	합계
남	53 29.4%	29 16.1%	10 5.6%	4 2.2%	64 35.6%	7 3.9%	7 3.9%	6 3.3%	180 100.0%
여	44 24.4%	27 15.0%	12 6.7%	6 3.3%	69 38.3%	15 8.3%	1 0.6%	6 3.3%	180 100.0%
합계	97 26.9%	56 15.6%	22 6.1%	10 2.8%	133 36.9%	22 6.1%	8 2.2%	12 3.3%	360 100.0%

$\chi^2=9.085$, $df=7$, $p<.05$

현재 학교나 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출생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적 때문에’라고 응답한 학생은 대도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면이하 지역으로 갈수록 비율이 줄어들었다. 반면, ‘학비 때문에’라고 응답한 학생은 면이하 지역으로 갈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II-44> 참고).

<표 II-44> 출생지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진학 이유

(단위: 명, %)

구분	희망 직업과 관련	희망분야 진학	부모님 희망 때문에	가정 사정 때문에	성적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	학비 때문에	기타	합계
대도시	28 28.3%	13 13.1%	7 7.1%	0 0.0%	42 42.4%	6 6.1%	1 1.0%	2 2.0%	99 100.0%
중소도시	39 26.2%	25 16.8%	6 4.0%	5 3.4%	60 40.3%	7 4.7%	2 1.3%	5 3.4%	149 100.0%
읍소재 지역	17 26.6%	8 12.5%	6 9.4%	4 6.3%	21 32.8%	4 6.3%	1 1.6%	3 4.7%	64 100.0%
면이하 지역	13 27.1%	10 20.8%	3 6.3%	1 2.1%	10 20.8%	5 10.4%	4 8.3%	2 4.2%	48 100.0%
합계	97 26.9%	56 15.6%	22 6.1%	10 2.8%	133 36.9%	22 6.1%	8 2.2%	12 3.3%	360 100.0%

$\chi^2=27.173$, $df=21$, $p<.05$

(4) 현재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

현재 다니는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 정도는 ‘그저 그렇다’가 128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만족하는 편이다’가 116명(32.2%), ‘불만족 하는 편이다’가 89명(24.7%)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5> 참고).

<표 II-45> 현재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매우 만족한다	18	5.0
만족하는 편이다	116	32.2
그저 그렇다	128	35.6
불만족 하는 편이다	89	24.7
매우 불만족 한다	9	2.5
합계	360	100.0

학교 유형에 따른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만족하는 편이다’가 29.8%, ‘매우 만족한다’가 1.8%이고 농업계 고등학생들은 ‘만족하는 편이다’가 31.8%, ‘매우 만족한다’가 7.6%로 대체적으로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농업계 고등학생들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4년제 대학 학생들은 ‘만족하는 편이다’가 32.2%, ‘매우 만족한다’가 1.7%이고 2년제 대학의 학생들은 ‘만족하는 편이다’가 33.6%, ‘매우 만족한다’가 8.6%로 4년제 대학 학생들보다 2년제 대학생들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II-46> 참고).

<표 II-46> 학교 유형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합계
인문계 고등학교	4 7.0%	15 26.3%	20 35.1%	17 29.8%	1 1.8%	57 100.0%
농업계 고등학교	1 1.5%	17 25.8%	22 33.3%	21 31.8%	5 7.6%	66 100.0%
2년제 대학	1 0.9%	22 19.0%	44 37.9%	39 33.6%	10 8.6%	116 100.0%
4년제 대학	3 2.5%	35 28.9%	42 34.7%	39 32.2%	2 1.7%	121 100.0%
합계	9 2.5%	89 24.7%	128 35.6%	116 32.2%	18 5.0%	360 100.0%

$\chi^2=16.969$, $df=12$, $p<.05$

학과 유형에 따른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농업계열학과 농업관련 분야 학생들이 ‘만족하는 편이다’가 41.0%, ‘매우 만족한다’가 6.0%을 보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농업계열학과 농업생산분야가 ‘만족하는 편이다’가 25.5%, ‘매우 만족한다’가 3.9%, 비농업계열 학과가 ‘만족하는 편이다’가 27.4%, ‘매우 만족한다’가 4.6%을 보였다(<표 II-47> 참고).

<표 II-47> 학과 유형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합계
비농업계열 학과	7 4.0%	49 28.0%	63 36.0%	48 27.4%	8 4.6%	175 100.0%
농업계열학과 (농업생산분야)	1 2.0%	14 27.5%	21 41.2%	13 25.5%	2 3.9%	51 100.0%
농업계열학과 (농업관련분야)	1 0.7%	26 19.4%	44 32.8%	55 41.0%	8 6.0%	134 100.0%
합계	9 2.5%	89 24.7%	128 35.6%	116 32.2%	18 5.0%	360 100.0%

$\chi^2=12.110$, $df=8$, $p<.05$

성별에 따른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은 ‘만족하는 편이다’는 61명(34.1%), ‘매우 만족한다’는 15명(8.4%)이고 여학생은 ‘만족하는 편이다’는 55명(30.6%), ‘매우 만족한다’는 3명(1.7%)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었다(<표 II-48> 참고).

<표 II-48> 성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합계
남	3 1.7%	52 28.9%	49 27.2%	61 33.9%	15 8.3%	180 100.0%
여	6 3.3%	37 20.6%	79 43.9%	55 30.6%	3 1.7%	180 100.0%
합계	9 2.5%	89 24.7%	128 35.6%	116 32.2%	18 5.0%	360 100.0%

$\chi^2=18.870$, $df=4$, $p<.05$

출생지에 따른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읍소재 지역과 면이하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소도시에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II-49> 참고).

<표 II-49> 출생지별 현재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합계
대도시	3 3.0%	26 26.3%	37 37.4%	31 31.3%	2 2.0%	99 100.0%
중소도시	3 2.0%	46 30.9%	52 34.9%	37 24.8%	11 7.4%	149 100.0%
읍소재 지역	3 4.7%	6 9.4%	25 39.1%	27 42.2%	3 4.7%	64 100.0%
면이하 지역	0 0.0%	11 22.9%	14 29.2%	21 43.8%	2 4.2%	48 100.0%
합계	9 2.5%	89 24.7%	128 35.6%	116 32.2%	18 5.0%	360 100.0%

$\chi^2=22.127$, $df=12$, $p<.05$

(5)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을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그저 그렇다'가 174명(4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망이 나쁜 편이다'가 89명(24.7%), '전망이 좋은 편이다'가 66명(18.3%)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업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전망이 다소 부정적임을 보여준다(<표 II-50> 참조).

<표 II-50>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7	1.9
매우 전망이 좋다	14	3.9
전망이 좋은 편이다	66	18.3
그저 그렇다	174	48.3
전망이 나쁜 편이다	89	24.7
매우 전망이 나쁘다	10	2.8
합계	360	100.0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은 학교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네 학교 유형에서 모두 '그저 그렇다'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전망이 좋은 편이다'와 '매우 전망이 좋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2년제 대학이 25.1%, 농업계 고등학교가 25.0%, 4년제 대학이 22.5%, 인문계 고등학교가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51> 학교 유형별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구분	매우 전망이 나쁘다	전망이 나쁜 편이다	그저 그렇다	전망이 좋은 편이다	매우 전망이 좋다	합계
인문계 고등학교	1 1.8%	23 40.4%	24 42.1%	8 14.0%	1 1.8%	57 100.0%
농업계 고등학교	1 1.6%	11 17.2%	36 56.3%	15 23.4%	1 1.6%	64 100.0%
2년제 대학	3 2.7%	27 24.1%	54 48.2%	21 18.8%	7 6.3%	112 100.0%
4년제 대학	5 4.2%	28 23.3%	60 50.0%	22 18.3%	5 4.2%	120 100.0%
합계	10 2.8%	89 25.2%	174 49.3%	66 18.7%	14 4.0%	353 100.0%

$\chi^2=14.225$, $df=12$, $p<.05$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은 학교 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비농업계학과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하였고 농업계열학과 중 농업생산분야는 비교적 중도적인 전망을 하였으며 농업관련분야 학생들은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하였다(<표 II-52> 참조).

<표 II-52> 학과 유형별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구분	매우 전망이 나쁘다	전망이 나쁜 편이다	그저 그렇다	전망이 좋은 편이다	매우 전망이 좋다	합계
비농업계열 학과	5 2.9%	51 29.8%	81 47.4%	27 15.8%	7 4.1%	171 100.0%
농업계열학과 (농업생산분야)	1 2.0%	9 18.0%	30 60.0%	7 14.0%	3 6.0%	50 100.0%
농업계열학과 (농업관련분야)	4 3.0%	29 22.0%	63 47.7%	32 24.2%	4 3.0%	132 100.0%
합계	10 2.8%	89 25.2%	174 49.3%	66 18.7%	14 4.0%	353 100.0%

$\chi^2=8.882$, $df=8$, $p<.05$

성별에 따른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그저 그렇다'가 174명(4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긍정적인 응답은 '전망이 나쁜 편이다'가 89명(25.2%), '매우 전망이 나쁘다'가 10명(2.8%)이었고 부정적인 응답은 '전망이 좋은 편이다'가 66명(18.7%), '매우 전망이 좋다'가 14명(4.0%)으로 전망이 다소 부정적인 쪽으로 나타났다(<표 II-53> 참고).

<표 II-53> 성별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구분	매우 전망이 나쁘다	전망이 나쁜 편이다	그저 그렇다	전망이 좋은 편이다	매우 전망이 좋다	합계
남	6 3.4%	47 26.4%	83 46.6%	33 18.5%	9 5.1%	178 100.0%
여	4 2.3%	42 24.0%	91 52.0%	33 18.9%	5 2.9%	175 100.0%
합계	10 2.8%	89 25.2%	174 49.3%	66 18.7%	14 4.0%	353 100.0%

$\chi^2=2.166$, $df=8$, $p<.05$

출생지에 따른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적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전망이 좋은 편이다’와 ‘매우 전망이 좋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대도시에서 가장 많았고 ‘전망이 나쁜 편이다’와 ‘매우 전망이 나쁘다’와 같은 부정적인 응답은 읍소재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표 II-54> 참고).

<표 II-54> 출생지별 농업직업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구분	매우 전망이 나쁘다	전망이 나쁜 편이다	그저 그렇다	전망이 좋은 편이다	매우 전망이 좋다	합계
대도시	5 5.1%	20 20.2%	46 46.5%	23 23.2%	5 5.1%	99 100.0%
중소도시	3 2.1%	37 25.5%	75 51.7%	26 17.9%	4 2.8%	145 100.0%
읍소재 지역	1 1.6%	20 31.7%	33 52.4%	6 9.5%	3 4.8%	63 100.0%
면이하 지역	1 2.2%	12 26.1%	20 43.5%	11 23.9%	2 4.3%	46 100.0%
합계	10 2.8%	89 25.2%	174 49.3%	66 18.7%	14 4.0%	353 100.0%

$\chi^2=10.860$, $df=12$, $p<.05$

(6) 졸업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

졸업후 농업직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다’가 134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82명(22.8%), ‘가능하면 하고 싶다’가 74명(20.6%), ‘절대하고 싶지 않다’가 33명(9.2%), ‘꼭 하고 싶다’가 29명(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졸업후 농업직에 종사 희망 여부는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표 II-55> 참고).

<표 II-55> 졸업 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8	2.2
꼭 하고 싶다	29	8.1
가능하면 하고 싶다	74	20.6
그저 그렇다	82	22.8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다	134	37.2
절대 하고 싶지 않다	33	9.2
합계	360	100.0

농업직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망이 없어서’가 1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수익이 낮아서’가 12.8%, ‘일이 힘들어서’가 6.7%, ‘기술이 없어서’가 4.4%, ‘농지가 없어서’가 2.2%, ‘일이 많아서’가 1.9%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농산물 개방되면 비싼 우리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농산물을 선호할 것 같아서, 관심이 없어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무관심, 농산업을 대부분 소규모이고 전문적이지 않아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서 등이 있었다(<표 II-56> 참고).

<표 II-56> 농업직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9-2. 응답	202	56.1
전망이 없어서	47	13.1
농지가 없어서	8	2.2
기술이 없어서	16	4.4
자본이 없어서	3	0.8
수익이 낮아서	46	12.8
일이 많아서	7	1.9
일이 힘들어서	24	6.7
기타	5	1.4
무응답	2	0.6
합계	360	100.0

농업직을 선택한 이유는 ‘자본이 있어서’가 1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기술이 있어서’가 10.3%, ‘전망이 있어서’가 10.0%, ‘수익이 높아서’가 7.5%, ‘농지가 있어서’가 6.1%, ‘농촌이 좋아서’가 3.9%,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서’가 3.3%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농업은 없어서 안 되니까, BT산업의 전망,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표 II-57> 참고).

<표 II-57> 농업직을 선택한 이유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9-1. 응답	143	39.7
전망이 있어서	36	10.0
농지가 있어서	22	6.1
기술이 있어서	37	10.3
자본이 있어서	59	16.4
수익이 높아서	27	7.5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12	3.3
농촌이 좋아서	14	3.9
기타	5	1.4
무응답	5	1.4
합계	360	100.0

졸업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는 학교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학교 유형에서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절대 하고 싶지 않다’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15.8%로 가장 높았고 ‘꼭 하고 싶다’는 2년제 대학 학생들이 11.6%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능하면 하고 싶다’와 ‘꼭 하고 싶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4년제 대학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II-58> 참고).

<표 II-58> 학교 유형별 졸업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

(단위: 명, %)

구분	절대 하고 싶지 않다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다	그저 그렇다	가능하면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	합계
인문계 고등학교	9 15.8%	27 47.4%	7 12.3%	11 19.3%	3 5.3%	57 100.0%
농업계 고등학교	8 12.7%	23 36.5%	19 30.2%	10 15.9%	3 4.8%	63 100.0%
2년제 대학	9 8.0%	39 34.8%	28 25.0%	23 20.5%	13 11.6%	112 100.0%
4년제 대학	7 5.8%	45 37.5%	28 23.3%	30 25.0%	10 8.3%	120 100.0%
합계	33 9.4%	134 38.1%	82 23.3%	74 21.0%	29 8.2%	352 100.0%

$\chi^2=15.974$, $df=12$, $p<.05$

학과 유형별로도 졸업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다’가 모든 학과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절대 하고 싶지 않다’는 비농업계열학과가 가장 많았고 ‘가능하면 하고 싶다’와 ‘꼭 하고 싶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농업생산분야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II-59> 참고).

<표 II-59> 학과 유형별 졸업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

(단위: 명, %)

구분	절대 하고 싶지 않다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다	그저 그렇다	가능하면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	합계
비농업계열 학과	19 11.1%	75 43.9%	32 18.7%	31 18.1%	14 8.2%	171 100.0%
농업계열 학과 (농업생산분야)	5 10.0%	16 32.0%	12 24.0%	13 26.0%	4 8.0%	50 100.0%
농업계열 학과 (농업관련분야)	9 6.9%	43 32.8%	38 29.0%	30 22.9%	11 8.4%	131 100.0%
합계	33 9.4%	134 38.1%	82 23.3%	74 21.0%	29 8.2%	352 100.0%

$\chi^2=9.269$, $df=8$, $p<.05$

졸업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를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절대 하고 싶지 않다'와 '꼭 하고 싶다'는 남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표 II-60> 참고).

<표 II-60> 성별 졸업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

(단위: 명, %)

구분	절대 하고 싶지 않다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다	그저 그렇다	가능하면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	합계
남	17 9.6%	68 38.4%	37 20.9%	37 20.9%	18 10.2%	177 100.0%
여	16 9.1%	66 37.7%	45 25.7%	37 21.1%	11 6.3%	175 100.0%
합계	33 9.4%	134 38.1%	82 23.3%	74 21.0%	29 8.2%	352 100.0%

$\chi^2=2.519$, $df=4$, $p<.05$

출생지에 따라서도 졸업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는 차이를 보였다.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다'가 가장 많았으나 '절대 하고 싶지 않다'는 중소도시에서 13.9%로 가장 많았고 '꼭 하고 싶다'는 대도시에서 11.1%로 가장 많았다(<표 II-61> 참고).

<표 II-61> 출생지별 졸업후 농업직 종사 희망 여부

(단위: 명, %)

구분	절대 하고 싶지 않다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다	그저 그렇다	가능하면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	합계
대도시	5 5.1%	36 36.4%	26 26.3%	21 21.2%	11 11.1%	99 100.0%
중소도시	20 13.9%	48 33.3%	36 25.0%	29 20.1%	11 7.6%	144 100.0%
읍소재 지역	6 9.5%	30 47.6%	11 17.5%	11 17.5%	5 7.9%	63 100.0%
면이하 지역	2 4.3%	20 43.5%	9 19.6%	13 28.3%	2 4.3%	46 100.0%
합계	33 9.4%	134 38.1%	82 23.3%	74 21.0%	29 8.2%	352 100.0%

$\chi^2=14.371$, $df=12$, $p<.05$

(7)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찬성하는 편이다'가 140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113명(31.4%), '반대하는 편이다'가 61명(16.9%), '적극 찬성이다'가 27명(7.5%), '절대 반대한다'가 12명(3.3%)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62> 참고).

<표 II-62>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7	1.9
적극 찬성이다	27	7.5
찬성하는 편이다	140	38.9
그저 그렇다	113	31.4
반대하는 편이다	61	16.9
절대 반대한다	12	3.3
합계	360	100.0

학교 유형에 따른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하는 편이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찬성하는 편이다'와 '적극 찬성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49.2%, 4년제 대학에서 48.2%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표 II-63> 참고).

<표 II-63> 학교 유형별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절대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찬성하는 편이다	적극 찬성한다	합계
인문계 고등학교	4 7.0%	11 19.3%	14 24.6%	23 40.4%	5 8.8%	57 100.0%
농업계 고등학교	6 9.4%	11 17.2%	27 42.2%	19 29.7%	1 1.6%	64 100.0%
2년제 대학	6 5.4%	23 20.5%	35 31.3%	38 33.9%	10 8.9%	112 100.0%
4년제 대학	2 1.7%	29 24.2%	31 25.8%	49 40.8%	9 7.5%	120 100.0%
합계	18 5.1%	74 21.0%	107 30.3%	129 36.5%	25 7.1%	353 100.0%

$\chi^2=32.181$, $df=12$, $p<.05$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은 학과 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찬성하는 편이다’와 ‘적극 찬성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비농업계열학과에서 45.0%로 가장 많았고 ‘반대하는 편이다’와 ‘절대 반대한다’는 농업생산분야 학과에서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64> 참고).

<표 II-64> 학과 유형별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절대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찬성하는 편이다	적극 찬성한다	합계
비농업계열 학과	10 5.8%	33 19.3%	51 29.8%	65 38.0%	12 7.0%	171 100.0%
농업계열학과 (농업생산분야)	3 6.0%	12 24.0%	16 32.0%	17 34.0%	2 4.0%	50 100.0%
농업계열학과 (농업관련분야)	5 3.8%	29 22.0%	40 30.3%	47 35.6%	11 8.3%	132 100.0%
합계	18 5.1%	74 21.0%	107 30.3%	129 36.5%	25 7.1%	353 100.0%

$\chi^2=2.468$, $df=8$, $p<.05$

성별에 따른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저 그렇다’는 여학생에게서 더 많았고 ‘반대하는 편이다’와 ‘찬성하는 편이다’, ‘적극 찬성한다’와 같은 응답은 남학생이 더 많았다(<표 II-65> 참고).

<표 II-65> 성별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절대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찬성하는 편이다	적극 찬성한다	합계
남	9 5.1%	40 22.5%	43 24.2%	71 39.9%	15 8.4%	178 100.0%
여	9 5.1%	34 19.4%	64 36.6%	58 33.1%	10 5.7%	175 100.0%
합계	18 5.1%	74 21.0%	107 30.3%	129 36.5%	25 7.1%	353 100.0%

$\chi^2=6.893$, $df=4$, $p<.05$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은 출생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대도시와 읍소재 지역에서 많았고 긍정적인 응답은 면이하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표 II-66> 참고).

<표 II-66> 출생지별 거주 장소로써 농촌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절대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찬성하는 편이다	적극 찬성한다	합계
대도시	3 3.0%	25 25.3%	32 32.3%	36 36.4%	3 3.0%	99 100.0%
중소도시	6 4.1%	31 21.4%	53 36.6%	42 29.0%	13 9.0%	145 100.0%
읍소재 지역	6 9.5%	11 17.5%	14 22.2%	23 36.5%	9 14.3%	63 100.0%
면이하 지역	3 6.5%	7 15.2%	8 17.4%	28 60.9%	0 0.0%	46 100.0%
합계	18 5.1%	74 21.0%	107 30.3%	129 36.5%	25 7.1%	353 100.0%

$\chi^2=32.181$, $df=12$, $p<.05$

(8)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를 물었을 때, '가급적이면 참여한다'가 139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113명(31.4%),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다'가 66명(18.3%), '꼭 참여한다'가 28명(7.8%),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가 7명(1.9%)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표 II-67> 참고).

<표 II-67>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7	1.9
꼭 참여한다	28	7.8
가급적이면 참여한다	139	38.6
그저 그렇다	113	31.4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다	66	18.3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7	1.9
합계	360	100.0

이러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는 학교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급적이면 참여한다’와 ‘꼭 참여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2년제 대학에서 56.3%로 과반수를 넘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다’와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와 같은 부정적인 응답은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32.8%로 가장 많았다(<표 II-68> 참고).

<표 II-68> 학교 유형별 농촌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급적이면 참여한다	꼭 참여한다	합계
인문계 고등학교	1 1.8%	11 19.3%	24 42.1%	19 33.3%	2 3.5%	57 100.0%
농업계 고등학교	5 7.8%	16 25.0%	23 35.9%	18 28.1%	2 3.1%	64 100.0%
2년제 대학	1 0.9%	14 12.5%	34 30.4%	47 42.0%	16 14.3%	112 100.0%
4년제 대학	0 0.0%	25 20.8%	32 26.7%	55 45.8%	8 6.7%	120 100.0%
합계	7 2.0%	66 18.7%	113 32.0%	139 39.4%	28 7.9%	353 100.0%

$\chi^2=34.547$, $df=12$, $p<.05$

학과 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급적이면 참여한다’와 ‘꼭 참여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농업관련분야 학과에서 53.8%로 과반수를 넘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다’와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와 같은 부정적인 응답은 농업생산분야 학과에서 28.0%로 가장 많았다(<표 II-69> 참고).

<표 II-69> 학과 유형별 농촌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급적이면 참여한다	꼭 참여한다	합계
비농업계열 학과	2 1.2%	30 17.5%	61 35.7%	68 39.8%	10 5.8%	171 100.0%
농업계열학과 (농업생산분야)	1 2.0%	13 26.0%	18 36.0%	12 24.0%	6 12.0%	50 100.0%
농업계열학과 (농업관련분야)	4 3.0%	23 17.4%	34 25.8%	59 44.7%	12 9.1%	132 100.0%
합계	7 2.0%	66 18.7%	113 32.0%	139 39.4%	28 7.9%	353 100.0%

$\chi^2=11.701$, $df=8$, $p<.05$

성별에 따른 농촌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급적이면 참여한다'가 가장 많았으나 '꼭 참여한다'는 남학생이 더 많아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참여한다'와 '꼭 참여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남학생이 더 많았다(<표 II-70> 참고).

<표 II-70> 성별 농촌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급적이면 참여한다	꼭 참여한다	합계
남	3 1.7%	30 16.9%	54 30.3%	72 40.4%	19 10.7%	178 100.0%
여	4 2.3%	36 20.6%	59 33.7%	67 38.3%	9 5.1%	175 100.0%
합계	7 2.0%	66 18.7%	113 32.0%	139 39.4%	28 7.9%	353 100.0%

$\chi^2=4.636$, $df=4$, $p<.05$

출생지에 따른 농촌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급적이면 참여한다'와 '꼭 참여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면이하 지역에서 6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읍소재 지역에서 54.0%였다. 그러나 읍소재 지역은 부정적인 응답도 가장 많이 나와 의견이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71> 참고).

<표 II-71> 출생지별 농촌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급적이면 참여한다	꼭 참여한다	합계
대도시	2 2.0%	21 21.2%	34 34.3%	37 37.4%	5 5.1%	99 100.0%
중소도시	1 0.7%	29 20.0%	52 35.9%	57 39.3%	6 4.1%	145 100.0%
읍소재 지역	3 4.8%	9 14.3%	17 27.0%	23 36.5%	11 17.5%	63 100.0%
면이하 지역	1 2.2%	7 15.2%	10 21.7%	22 47.8%	6 13.0%	46 100.0%
합계	7 2.0%	66 18.7%	113 32.0%	139 39.4%	28 7.9%	353 100.0%

$\chi^2=21.420$, $df=12$, $p<.05$

(9) 농업직에 종사하기를 기피하는 이유

농업직에 종사하기를 기피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응답하도록 했을 때, 아래 <표 II-72>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수익이 낮아서’가 2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망이 없어서’가 20.7%, ‘노동이 많아서’가 16.4%, ‘젊은층 인구가 줄어서’가 11.05%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국가의 지원 부재, 정부의 실속 없는 정책(휴경지 보상 등), 자녀의 교육문제, 힘들어서,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다, 수입개방, 농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위험부담 등이 있었다.

<표 II-72> 농업직에 종사하기를 기피하는 이유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159	14.7
전망이 없어서	224	20.7
농지가 없어서	41	3.8
기술이 없어서	42	3.9
자본이 없어서	62	5.8
수익이 낮아서	239	22.1
노동이 많아서	177	16.4
젊은층 인구가 줄어서	119	11.0
기타	17	1.6
합계	1,080	100.0

(10) 농업에 종사하려면 필요한 지원

자신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다음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골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1) 영농자금의 지원	(11)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산물 수익 손실에 대한 지원
(2)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	(12) 수익성 높은 작목 정보 제공
(3) 농업경영에 대한 자문	(13) 생산물 판매 경로 정보 제공
(4) 경작지 확보 지원	(14) 외국 농산물의 가격 및 생산 동향 정보 제공
(5) 농업교육에 대한 안내	(15) 농기계 구입과 활용에 대한 지원
(6) 전문 농업기술자에 의한 기술과 경영지원	(16) 병역 문제 혜택
(7) 거주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지원	(17) 전문 작목별 학습단체(작목방 등)에 대한 안내
(8) 자녀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학비 지원	(18) 기타
(9) 농작물 대해에 대한 보상 보험 지원	
(10) 창업을 위한 기술 및 경영 연수 훈련 지원	

1순위로는 ‘(1) 영농자금의 지원’이 3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이 9.7%, ‘(6) 전문 농업기술자에 의한 기술과 경영지원’이 8.6%, ‘(12) 수익성 높은 작목 정보 제공’이 7.2%, ‘(11)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산물 수익 손실에 대한 지원’이 6.4%, ‘(8) 자녀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학비 지원’이 5.6%, ‘(7) 거주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이 4.2% 등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8) 자녀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학비 지원’이 1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6) 전문 농업기술자에 의한 기술과 경영지원’이 9.2%, ‘(11)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산물 수익 손실에 대한 지원’이 8.9%, ‘(9) 농작물 대해에 대한 보상 보험 지원’이 8.3%, ‘(2)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이 8.1%, ‘(1) 영농자금의 지원’ 및 ‘(10) 창업을 위한 기술 및 경영 연수 훈련 지원’이 각각 7.8%로 나타났다.

3순위는 ‘(11)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산물 수익 손실에 대한 지원’이 9.4%, ‘(12) 수익성 높은 작목 정보 제공’이 8.9%, ‘(7) 거주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지원’, ‘(8) 자녀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학비 지원’, ‘(14) 외국 농산물의 가격 및 생산 동향 정보 제공’이 각각 7.5%, ‘(9) 농작물 대해에 대한 보상 보험 지원’이 6.4%, ‘(10) 창업을 위한 기술 및 경영 연수 훈련 지원’이 6.1%로 나타났다(<표 II-73> 참고).

<표 II-73> 농업에 종사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지원의 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응답	2	0.6	3	0.8	2	0.6
1	122	33.9	28	7.8	25	6.9
2	35	9.7	29	8.1	16	4.4
3	11	3.1	17	4.7	20	5.6
4	18	5.0	22	6.1	20	5.6
5	7	1.9	6	1.7	7	1.9
6	31	8.6	33	9.2	19	5.3
7	15	4.2	25	6.9	27	7.5
8	20	5.6	37	10.3	27	7.5
9	13	3.6	30	8.3	23	6.4
10	12	3.3	28	7.8	22	6.1
11	23	6.4	32	8.9	34	9.4
12	26	7.2	19	5.3	32	8.9
13	6	1.7	21	5.8	26	7.2
14	2	0.6	12	3.3	27	7.5
15	6	1.7	13	3.6	18	5.0
16	9	2.5	3	0.8	14	3.9
17	0	0.0	2	0.6	1	0.3
18	2	0.6	0	0.0	0	0.0
합계	360	100.0	360	100.0	360	100.0

이러한 농업에 종사하려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순위 지정은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학교 유형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74>와 같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1순위로 ‘(1) 영농자금의 지원’을 꼽았고 2순위로는 ‘(8) 자녀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학비 지원’을 3 순위로는 ‘(7) 거주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지원’과 ‘(14) 외국 농산물의 가격 및 생산 동향 정보 제공’을 꼽았다.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1순위로 ‘(1) 영농자금의 지원’을 꼽았고 2순위로는 ‘(8) 자녀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학비 지원’을 3순위로는 ‘(12) 수익성 높은 작목 정보 제공’을 꼽았다. 2년제 대학 학생들은 1순위로 ‘(1) 영농자금의 지원’을 꼽았고 2순위로는 ‘(8) 자녀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학비 지원’을 3순위로는 ‘(14) 외국 농산물의 가격 및 생산 동향 정보 제공’을 꼽았다. 4년제 대학 학생들은 1순위로 ‘(1) 영농자금의 지원’을 꼽았고 2순위와 3순위로 ‘(11)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산물 수익 손실에 대한 지원’을 꼽았다.

<표 II-74> 학교 유형별 농업에 종사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지원의 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인문계 고교	농업계 고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소계	인문계 고교	농업계 고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소계	인문계 고교	농업계 고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소계
1	11 19.3%	24 36.9%	46 40.0%	40 33.3%	121 33.9%	5 8.8%	3 4.6%	11 9.6%	9 7.5%	28 7.8%	5 8.8%	4 6.2%	5 4.3%	11 9.2%	25 7.0%
2	7 12.3%	9 13.8%	10 8.7%	9 7.5%	35 9.8%	3 5.3%	5 7.7%	10 8.7%	11 9.2%	29 8.1%	4 7.0%	2 3.1%	6 5.2%	4 3.3%	16 4.5%
3	2 3.5%	3 4.6%	3 2.6%	3 2.5%	11 3.1%	1 1.8%	1 1.5%	10 8.7%	5 4.2%	17 4.8%	5 8.8%	5 7.7%	5 4.3%	4 3.3%	19 5.3%
4	3 5.3%	3 4.6%	6 5.2%	6 5.0%	18 5.0%	3 5.3%	4 6.2%	6 5.2%	9 7.5%	22 6.2%	2 3.5%	2 3.1%	9 7.8%	7 5.8%	20 5.6%
5	0 0.0%	1 1.5%	2 1.7%	4 3.3%	7 2.0%	1 1.8%	0 0.0%	3 2.6%	2 1.7%	6 1.7%	1 1.8%	0 0.0%	4 3.5%	2 1.7%	7 2.0%
6	5 8.8%	5 7.7%	8 7.0%	13 10.8%	31 8.7%	7 12.3%	8 12.3%	9 7.8%	9 7.5%	33 9.2%	2 3.5%	5 7.7%	7 6.1%	5 4.2%	19 5.3%
7	3 5.3%	1 1.5%	6 5.2%	5 4.2%	15 4.2%	3 5.3%	1 1.5%	8 7.0%	13 10.8%	25 7.0%	6 10.5%	1 1.5%	8 7.0%	12 10.0%	27 7.6%
8	9 15.8%	4 6.2%	3 2.6%	4 3.3%	20 5.6%	8 14.0%	9 13.8%	14 12.2%	6 5.0%	37 10.4%	3 5.3%	5 7.7%	12 10.4%	7 5.8%	27 7.6%
9	3 5.3%	1 1.5%	3 2.6%	6 5.0%	13 3.6%	5 8.8%	6 9.2%	11 9.6%	8 6.7%	30 8.4%	2 3.5%	4 6.2%	7 6.1%	10 8.3%	23 6.4%
10	0 0.0%	3 4.6%	4 3.5%	5 4.2%	12 3.4%	5 8.8%	6 9.2%	7 6.1%	10 8.3%	28 7.8%	3 5.3%	4 6.2%	6 5.2%	9 7.5%	22 6.2%
11	3 5.3%	2 3.1%	8 7.0%	10 8.3%	23 6.4%	5 8.8%	2 3.1%	8 7.0%	17 14.2%	32 9.0%	3 5.3%	6 9.2%	10 8.7%	15 12.5%	34 9.5%
12	9 15.8%	3 4.6%	9 7.8%	5 4.2%	26 7.3%	5 8.8%	4 6.2%	4 3.5%	6 5.0%	19 5.3%	5 8.8%	11 16.9%	6 5.2%	10 8.3%	32 9.0%
13	0 0.0%	2 3.1%	2 1.7%	2 1.7%	6 1.7%	1 1.8%	4 6.2%	7 6.1%	9 7.5%	21 5.9%	5 8.8%	8 12.3%	8 7.0%	5 4.2%	26 7.3%
14	0 0.0%	1 1.5%	0 0.0%	1 0.8%	2 0.6%	3 5.3%	3 4.6%	4 3.5%	2 1.7%	12 3.4%	6 10.5%	2 3.1%	12 10.4%	7 5.8%	27 7.6%
15	1 1.8%	1 1.5%	2 1.7%	2 1.7%	6 1.7%	2 3.5%	7 10.8%	2 1.7%	2 1.7%	13 3.6%	4 7.0%	4 6.2%	5 4.3%	5 4.2%	18 5.0%
16	1 1.8%	2 3.1%	3 2.6%	3 2.5%	9 2.5%	0 0.0%	2 3.1%	1 0.9%	0 0.0%	3 0.8%	1 1.8%	1 1.5%	5 4.3%	7 5.8%	14 3.9%
1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7%	2 0.6%	0 0.0%	1 1.5%	0 0.0%	0 0.0%	1 0.3%
18	0 0.0%	0 0.0%	0 0.0%	2 1.7%	2 0.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57 100.0%	65 100.0%	115 100.0%	120 100.0%	357 100.0%	57 100.0%	65 100.0%	115 100.0%	120 100.0%	357 100.0%	57 100.0%	65 100.0%	115 100.0%	120 100.0%	357 100.0%

$\chi^2=49.239$, df=45, p<.05

$\chi^2=58.497$, df=45, p<.05

$\chi^2=47.346$, df=45, p<.05

농업에 종사하려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순위 지정은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학교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75>와 같다. 비농업계열학과와 농업생산분야학과는 1순위로 '(2)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을 꼽았고 2순위, 3순위로는 '(9) 농작물 대해에 대한 보상

보험 지원'을 꼽았다. 농업관련분야학과는 1순위는 '(2)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을 2순위, 3순위 '(7) 거주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지원'과 '(12) 수익성 높은 작목 정보 제공'을 꼽았다.

<표 II-75> 학과 유형별 농업에 종사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지원의 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비농업 계열 학과	농업계 학과 (농업생 산분야)	농업계 학과 (농업관 련분야)	소계	비농업 계열 학과	농업계 학과 (농업생 산분야)	농업계 학과 (농업관 련분야)	소계	비농업 계열 학과	농업계 학과 (농업생 산분야)	농업계 학과 (농업관 련분야)	소계
1	1 0.6%	0 0.0%	1 0.7%	2 0.6%	1 0.6%	1 2.0%	1 0.7%	3 0.8%	1 0.6%	1 2.0%	1 0.7%	3 0.8%
2	50 28.6%	20 39.2%	52 38.8%	122 33.9%	13 7.4%	3 5.9%	12 9.0%	28 7.8%	13 7.4%	3 5.9%	12 9.0%	28 7.8%
3	17 9.7%	4 7.8%	14 10.4%	35 9.7%	13 7.4%	4 7.8%	12 9.0%	29 8.1%	13 7.4%	4 7.8%	12 9.0%	29 8.1%
4	7 4.0%	1 2.0%	3 2.2%	11 3.1%	7 4.0%	3 5.9%	7 5.2%	17 4.7%	7 4.0%	3 5.9%	7 5.2%	17 4.7%
5	8 4.6%	4 7.8%	6 4.5%	18 5.0%	15 8.6%	2 3.9%	5 3.7%	22 6.1%	15 8.6%	2 3.9%	5 3.7%	22 6.1%
6	3 1.7%	4 7.8%	0 0.0%	7 1.9%	4 2.3%	2 3.9%	0 0.0%	6 1.7%	4 2.3%	2 3.9%	0 0.0%	6 1.7%
7	15 8.6%	4 7.8%	12 9.0%	31 8.6%	14 8.0%	3 5.9%	16 11.9%	33 9.2%	14 8.0%	3 5.9%	16 11.9%	33 9.2%
8	9 5.1%	2 3.9%	4 3.0%	15 4.2%	11 6.3%	2 3.9%	12 9.0%	25 6.9%	11 6.3%	2 3.9%	12 9.0%	25 6.9%
9	11 6.3%	3 5.9%	6 4.5%	20 5.6%	21 12.0%	6 11.8%	10 7.5%	37 10.3%	21 12.0%	6 11.8%	10 7.5%	37 10.3%
10	9 5.1%	0 0.0%	4 3.0%	13 3.6%	15 8.6%	5 9.8%	10 7.5%	30 8.3%	15 8.6%	5 9.8%	10 7.5%	30 8.3%
11	4 2.3%	2 3.9%	6 4.5%	12 3.3%	14 8.0%	5 9.8%	9 6.7%	28 7.8%	14 8.0%	5 9.8%	9 6.7%	28 7.8%
12	12 6.9%	1 2.0%	10 7.5%	23 6.4%	14 8.0%	2 3.9%	16 11.9%	32 8.9%	14 8.0%	2 3.9%	16 11.9%	32 8.9%
13	16 9.1%	2 3.9%	8 6.0%	26 7.2%	9 5.1%	1 2.0%	9 6.7%	19 5.3%	9 5.1%	1 2.0%	9 6.7%	19 5.3%
14	2 1.1%	1 2.0%	3 2.2%	6 1.7%	10 5.7%	4 7.8%	7 5.2%	21 5.8%	10 5.7%	4 7.8%	7 5.2%	21 5.8%
15	1 0.6%	1 2.0%	0 0.0%	2 0.6%	7 4.0%	2 3.9%	3 2.2%	12 3.3%	7 4.0%	2 3.9%	3 2.2%	12 3.3%
16	3 1.7%	1 2.0%	2 1.5%	6 1.7%	4 2.3%	5 9.8%	4 3.0%	13 3.6%	4 2.3%	5 9.8%	4 3.0%	13 3.6%
17	6 3.4%	0 0.0%	3 2.2%	9 2.5%	1 0.6%	1 2.0%	1 0.7%	3 0.8%	1 0.6%	1 2.0%	1 0.7%	3 0.8%
18	1 0.6%	1 2.0%	0 0.0%	2 0.6%	2 1.1%	0 0.0%	0 0.0%	2 0.6%	2 1.1%	0 0.0%	0 0.0%	2 0.6%
합계	175 100.0%	51 100.0%	134 100.0%	360 100.0%	175 100.0%	51 100.0%	134 100.0%	360 100.0%	175 100.0%	51 100.0%	134 100.0%	360 100.0%

$\chi^2=49.239$, $df=45$, $p<.05$

$\chi^2=58.497$, $df=45$, $p<.05$

$\chi^2=47.346$, $df=45$, $p<.05$

농업에 종사하려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순위 지정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은 1순위로 '(2)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을 꼽았고 2순위로 '(9) 농작물 대해에 대한 보상 보험 지원'을 3순위로 '(12) 수익성 높은 작목 정보 제공'을 꼽았고 여학생은 1순위로 '(2)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을 꼽았고 2순위로 '(10) 창업을 위한 기술 및 경영 연수 훈련 지원'을, 3순위로 '(8) 자녀들의 대학 교육

에 대한 학비 지원'을 꼽았다.

<표 II-76> 성별 농업에 종사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지원의 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1	2 1.1%	0 0.0%	2 0.6%	3 1.7%	0 0.0%	3 0.8%	2 1.1%	0 0.0%	2 0.6%
2	58 32.2%	64 35.6%	122 33.9%	17 9.4%	11 6.1%	28 7.8%	14 7.8%	11 6.1%	25 6.9%
3	15 8.3%	20 11.1%	35 9.7%	13 7.2%	16 8.9%	29 8.1%	12 6.7%	4 2.2%	16 4.4%
4	10 5.6%	1 0.6%	11 3.1%	8 4.4%	9 5.0%	17 4.7%	10 5.6%	10 5.6%	20 5.6%
5	10 5.6%	8 4.4%	18 5.0%	14 7.8%	8 4.4%	22 6.1%	10 5.6%	10 5.6%	20 5.6%
6	4 2.2%	3 1.7%	7 1.9%	1 0.6%	5 2.8%	6 1.7%	2 1.1%	5 2.8%	7 1.9%
7	11 6.1%	20 11.1%	31 8.6%	19 10.6%	14 7.8%	33 9.2%	7 3.9%	12 6.7%	19 5.3%
8	8 4.4%	7 3.9%	15 4.2%	8 4.4%	17 9.4%	25 6.9%	8 4.4%	19 10.6%	27 7.5%
9	6 3.3%	14 7.8%	20 5.6%	20 11.1%	17 9.4%	37 10.3%	12 6.7%	15 8.3%	27 7.5%
10	7 3.9%	6 3.3%	13 3.6%	9 5.0%	21 11.7%	30 8.3%	12 6.7%	11 6.1%	23 6.4%
11	4 2.2%	8 4.4%	12 3.3%	13 7.2%	15 8.3%	28 7.8%	15 8.3%	7 3.9%	22 6.1%
12	7 3.9%	16 8.9%	23 6.4%	14 7.8%	18 10.0%	32 8.9%	19 10.6%	15 8.3%	34 9.4%
13	19 10.6%	7 3.9%	26 7.2%	9 5.0%	10 5.6%	19 5.3%	14 7.8%	18 10.0%	32 8.9%
14	3 1.7%	3 1.7%	6 1.7%	15 8.3%	6 3.3%	21 5.8%	13 7.2%	13 7.2%	26 7.2%
15	2 1.1%	0 0.0%	2 0.6%	7 3.9%	5 2.8%	12 3.3%	10 5.6%	17 9.4%	27 7.5%
16	5 2.8%	1 0.6%	6 1.7%	6 3.3%	7 3.9%	13 3.6%	9 5.0%	9 5.0%	18 5.0%
17	7 3.9%	2 1.1%	9 2.5%	3 1.7%	0 0.0%	3 0.8%	11 6.1%	3 1.7%	14 3.9%
18	2 1.1%	0 0.0%	2 0.6%	1 0.6%	1 0.6%	2 0.6%	0 0.0%	1 0.6%	1 0.3%
합계	180 100.0%	180 100.0%	360 100.0%	180 100.0%	180 100.0%	360 100.0%	180 100.0%	180 100.0%	360 100.0%

$\chi^2=49.239$, $df=45$, $p<.05$

$\chi^2=58.497$, $df=45$, $p<.05$

$\chi^2=47.346$, $df=45$, $p<.05$

농업에 종사하려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순위 지정은 태어나 출생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는 1순위로 '(2)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을 꼽았고 2순위로 '(7) 거주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3순위로 '(13) 생산물 판매 경로 정보 제공'을 꼽았다. 중소도시는 1순위로 '(2)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을 꼽았고 2순위로 '(7) 거주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지원'과 '(9) 농작물 대해에 대한 보상 보험 지원'을 3순위로 '(11)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산물 수익 손실에 대한 지원'을 꼽았다. 읍소재지역은 1순위로 '(2)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을 꼽았고 2순위로 '(12) 수익성 높은 작목 정

보 제공'을 3순위로 '(14) 외국 농산물의 가격 및 생산 동향 정보 제공'을 꼽았다 읍면이하는 1순위로 '(2)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을 꼽았고 2순위로 '(9) 농작물 대해에 대한 보상 보험 지원'을 3순위로 '(12) 수익성 높은 작목 정보 제공'을 꼽았다(<표 II-77> 참고).

<표 II-77> 출생지별 농업에 종사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지원의 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대도시	중소도시	읍소재지역	면이하	소계	대도시	중소도시	읍소재지역	면이하	소계	대도시	중소도시	읍소재지역	면이하	소계
1	0 0.0%	2 1.3%	0 0.0%	0 0.0%	2 0.6%	0 0.0%	3 2.0%	0 0.0%	0 0.0%	3 0.8%	0 0.0%	2 1.3%	0 0.0%	0 0.0%	2 0.6%
2	34 34.3%	51 34.2%	19 29.7%	18 37.5%	122 33.9%	6 6.1%	12 8.1%	5 7.8%	5 10.4%	28 7.8%	10 10.1%	10 6.7%	4 6.3%	1 2.1%	25 6.9%
3	9 9.1%	12 8.1%	6 9.4%	8 16.7%	35 9.7%	11 11.1%	11 7.4%	2 3.1%	5 10.4%	29 8.1%	3 3.0%	8 5.4%	2 3.1%	3 6.3%	16 4.4%
4	5 5.1%	3 2.0%	3 4.7%	0 0.0%	11 3.1%	4 4.0%	8 5.4%	1 1.6%	4 8.3%	17 4.7%	9 9.1%	9 6.0%	1 1.6%	1 2.1%	20 5.6%
5	6 6.1%	8 5.4%	3 4.7%	1 2.1%	18 5.0%	8 8.1%	10 6.7%	4 6.3%	0 0.0%	22 6.1%	3 3.0%	8 5.4%	4 6.3%	5 10.4%	20 5.6%
6	2 2.0%	3 2.0%	2 3.1%	0 0.0%	7 1.9%	4 4.0%	1 0.7%	1 1.6%	0 0.0%	6 1.7%	2 2.0%	3 2.0%	1 1.6%	1 2.1%	7 1.9%
7	8 8.1%	13 8.7%	6 9.4%	4 8.3%	31 8.6%	12 12.1%	16 10.7%	3 4.7%	2 4.2%	33 9.2%	3 3.0%	9 6.0%	2 3.1%	5 10.4%	19 5.3%
8	5 5.1%	3 2.0%	4 6.3%	3 6.3%	15 4.2%	9 9.1%	11 7.4%	4 6.3%	1 2.1%	25 6.9%	7 7.1%	10 6.7%	6 9.4%	4 8.3%	27 7.5%
9	5 5.1%	11 7.4%	3 4.7%	1 2.1%	20 5.6%	10 10.1%	16 10.7%	4 6.3%	7 14.6%	37 10.3%	9 9.1%	12 8.1%	4 6.3%	2 4.2%	27 7.5%
10	4 4.0%	7 4.7%	1 1.6%	1 2.1%	13 3.6%	7 7.1%	12 8.1%	9 14.1%	2 4.2%	30 8.3%	6 6.1%	11 7.4%	5 7.8%	1 2.1%	23 6.4%
11	1 1.0%	6 4.0%	2 3.1%	3 6.3%	12 3.3%	6 6.1%	9 6.0%	10 15.6%	3 6.3%	28 7.8%	4 4.0%	13 8.7%	2 3.1%	3 6.3%	22 6.1%
12	9 9.1%	6 4.0%	6 9.4%	2 4.2%	23 6.4%	11 11.1%	9 6.0%	7 10.9%	5 10.4%	32 8.9%	6 6.1%	12 8.1%	10 15.6%	6 12.5%	34 9.4%
13	6 6.1%	10 6.7%	5 7.8%	5 10.4%	26 7.2%	4 4.0%	9 6.0%	5 7.8%	1 2.1%	19 5.3%	10 10.1%	13 8.7%	6 9.4%	3 6.3%	32 8.9%
14	0 0.0%	2 1.3%	2 3.1%	2 4.2%	6 1.7%	2 2.0%	8 5.4%	5 7.8%	6 12.5%	21 5.8%	6 6.1%	7 4.7%	10 15.6%	3 6.3%	26 7.2%
15	1 1.0%	1 0.7%	0 0.0%	0 0.0%	2 0.6%	1 1.0%	7 4.7%	1 1.6%	3 6.3%	12 3.3%	7 7.1%	12 8.1%	4 6.3%	4 8.3%	27 7.5%
16	1 1.0%	5 3.4%	0 0.0%	0 0.0%	6 1.7%	3 3.0%	4 2.7%	3 4.7%	3 6.3%	13 3.6%	7 7.1%	3 2.0%	3 4.7%	5 10.4%	18 5.0%
17	2 2.0%	6 4.0%	1 1.6%	0 0.0%	9 2.5%	1 1.0%	2 1.3%	0 0.0%	0 0.0%	3 0.8%	7 7.1%	6 4.0%	0 0.0%	1 2.1%	14 3.9%
18	1 1.0%	0 0.0%	1 1.6%	0 0.0%	2 0.6%	0 0.0%	1 0.7%	0 0.0%	1 2.1%	2 0.6%	0 0.0%	1 0.7%	0 0.0%	0 0.0%	1 0.3%
합계	99 100.0%	149 100.0%	64 100.0%	48 100.0%	360 100.0%	99 100.0%	149 100.0%	64 100.0%	48 100.0%	360 100.0%	99 100.0%	149 100.0%	64 100.0%	48 100.0%	360 100.0%

$\chi^2=49.239$, df=45, p<.05

$\chi^2=58.497$, df=45, p<.05

$\chi^2=47.346$, df=45,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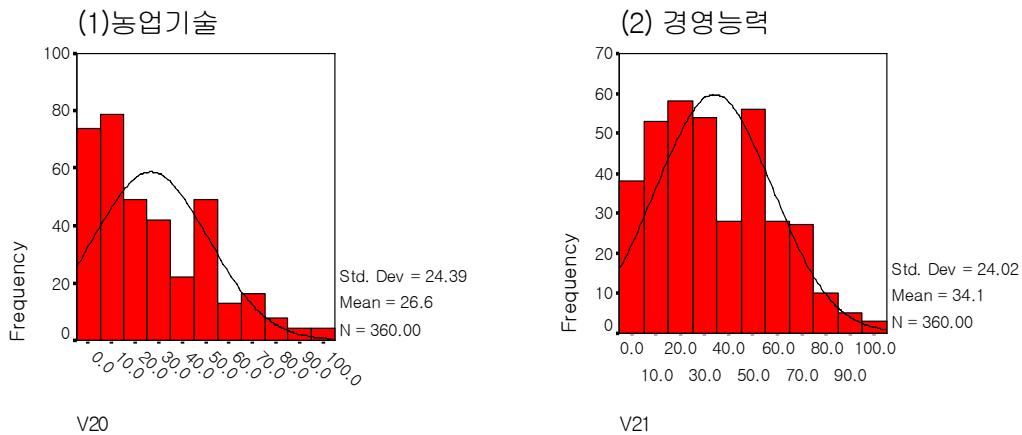
(11)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보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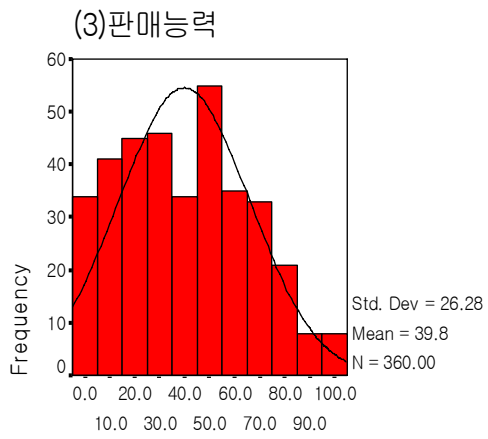
학생들에게 자신이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완전히 경우를 100% 이라 하고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하였다. 각각의 능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아래 <표 II-78> 와 같다. 가장 높은 능력은 '인간관계능력'이 57.92, '의사소통능력'이 56.39, '사명감'이 56.06이었고 가장 낮은 능력은 '농업기술'이 26.64, '농기계 조작능력'이 31.02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인내심, 끈기, 인원동원능력, 경제흐름과약, 자산관리능력, 체력, 인터넷활용능력, 신제품개발능력, 작물에 대한 정보와 기술습득,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 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있었다.

<표 II-78>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보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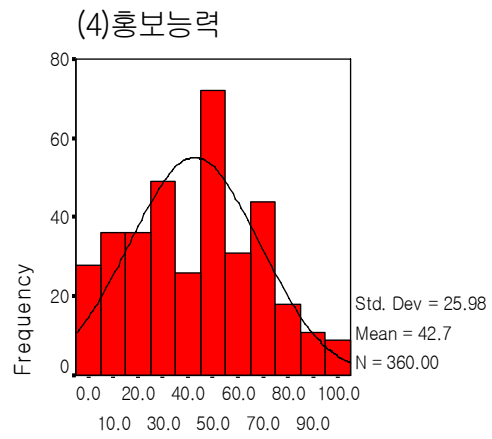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농업기술	0	100	26.64	24.39
경영능력	0	100	34.06	24.02
판매능력	0	100	39.84	26.28
홍보능력	0	100	42.68	25.98
인간관계능력	0	100	57.92	26.44
의사소통능력	0	100	56.39	26.81
기업가 정신	0	100	44.82	27.64
문제해결능력	0	100	47.19	25.57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0	100	53.65	27.13
자원활용능력	0	100	47.49	25.83
정보능력	0	100	53.16	27.23
조직이해능력	0	100	47.64	26.75
사명감	0	100	56.06	30.16
농기계 조작능력	0	100	31.02	31.22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능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평정한 점수를 분포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 [그림 II-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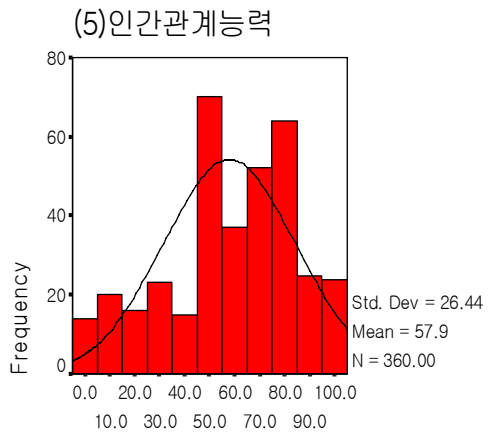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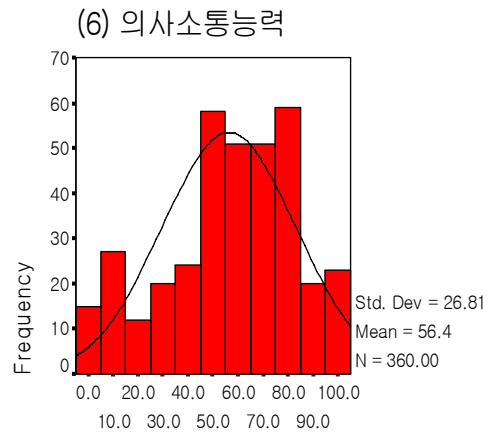
V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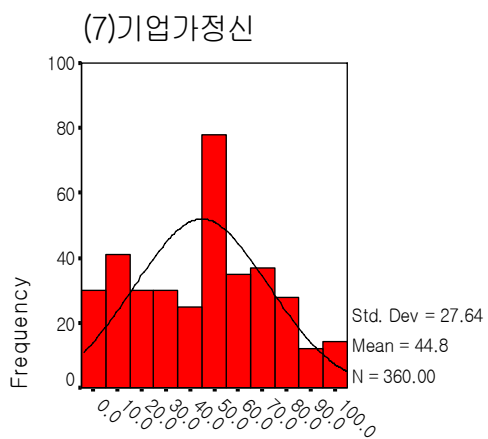
V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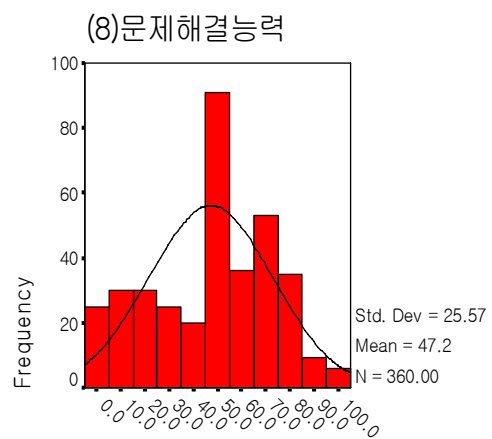
V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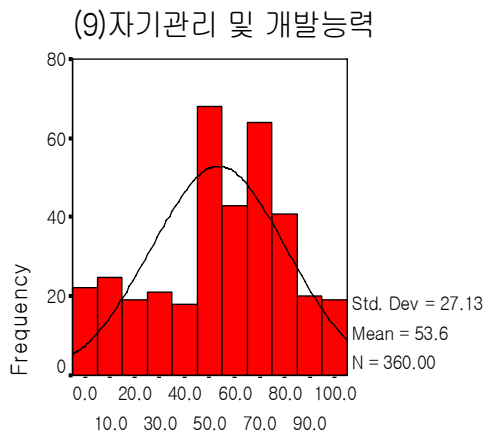
V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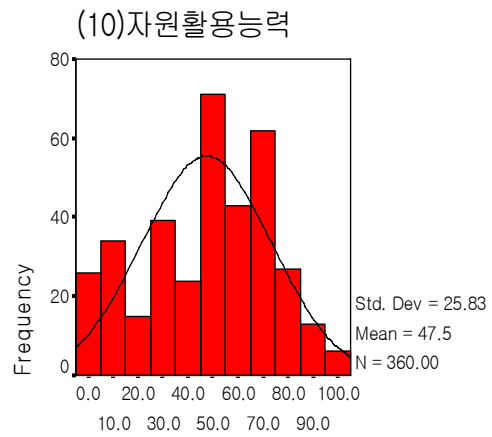
V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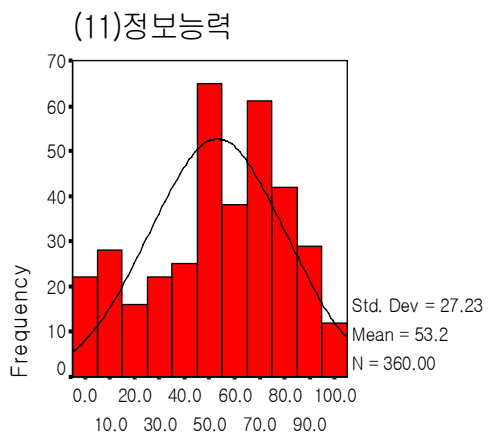
V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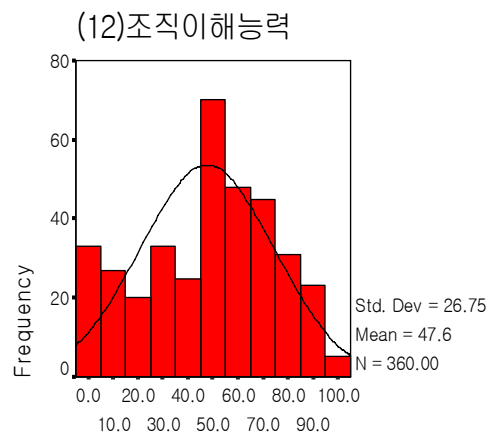
V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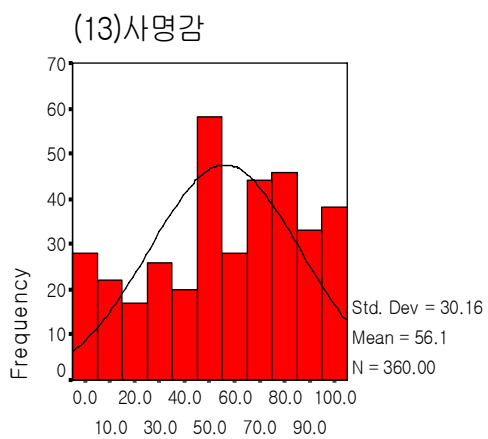
V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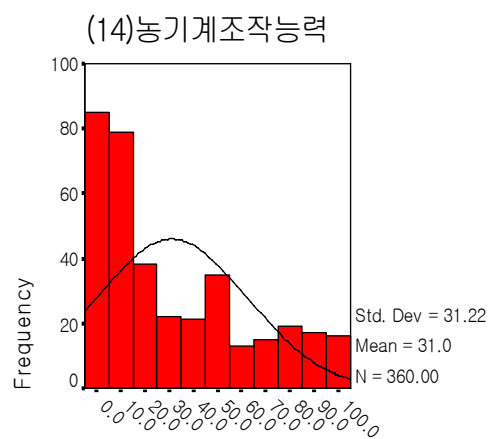
V30



V31



V32



V33

[그림 II-5] 능력별 분포

농업에 필요한 능력 보유정도는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차이를 보인 능력으로는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기업가 정신’,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사명감’ 등이 있었다(<표 II-79> 참고).

<표 II-79> 학교 유형별 능력의 차이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기업가정신
인문계 고등학교	평균	24.47	36.67	41.40	46.14	57.81	58.16	46.23
	표준편차	22.37	23.61	29.60	26.54	25.65	27.45	25.69
농업계 고등학교	평균	32.08	31.15	37.85	38.61	50.85	47.54	36.93
	표준편차	23.08	22.43	24.20	26.12	27.32	25.86	27.19
2년제 대학	평균	28.25	37.75	44.65	45.53	62.58	60.92	50.34
	표준편차	25.50	24.40	26.20	25.83	25.39	24.63	28.25
4년제 대학	평균	23.42	30.98	35.72	40.27	57.36	56.02	43.31
	표준편차	24.54	24.38	25.31	25.56	26.83	28.22	27.34
F값		2.12	2.13	2.50	1.69	2.80*	3.63*	3.55*

구분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 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 능력	사명감	농기계 조작능력
인문계 고등학교	평균	45.74	57.21	45.84	56.28	49.86	55.12	30.84
	표준편차	24.54	25.11	23.90	28.19	26.62	30.97	30.16
농업계 고등학교	평균	36.27	44.70	38.64	46.69	37.19	48.09	33.85
	표준편차	26.38	29.30	26.05	28.86	27.63	30.70	30.44
2년제 대학	평균	52.72	57.94	53.47	57.36	52.09	61.94	33.97
	표준편차	24.17	27.76	25.62	24.55	24.95	29.37	32.51
4년제 대학	평균	48.65	52.85	47.36	51.16	47.91	55.35	26.70
	표준편차	25.29	25.29	25.68	27.89	26.93	29.49	30.85
F값		6.22**	3.77*	4.83**	2.64*	4.64**	3.07*	1.30

*p<.05, **p<.01

농업에 필요한 능력 보유정도는 학과 유형에 따라 다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차이를 보인 능력으로는 ‘농업기술’과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은 농업관련분야 학과에서 가장 높았고 ‘농기계 조작능력’은 농업생산분야 학과에서 가장 높았다(<표 II-80> 참고).

<표 II-80> 학과 유형별 능력의 차이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기업가 정신
비농업계열 학과	평균	21.19	33.65	38.99	43.33	57.90	57.21	43.62
	표준편차	22.10	24.08	27.33	26.94	26.62	26.86	26.57
농업계열학과 (농업생산분야)	평균	30.06	29.47	35.35	40.82	58.96	56.08	44.67
	표준편차	23.50	20.80	24.64	26.14	25.63	21.83	29.50
농업계열학과 (농업관련분야)	평균	32.46	36.35	42.65	42.54	57.54	55.44	46.44
	표준편차	26.11	24.95	25.34	24.78	26.70	28.55	28.41
F값		9.08**	1.57	1.60	0.19	0.05	0.17	0.40

<표계속>

구분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 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 능력	사명감	농기계 조작능력
비농업계열 학과	평균	46.05	54.11	47.46	53.60	48.17	54.56	25.55
	표준편차	24.38	26.88	26.20	28.34	26.26	29.67	30.84
농업계열학과 (농업생산분야)	평균	45.63	51.59	44.76	51.28	47.58	56.45	37.32
	표준편차	25.39	23.78	24.32	25.69	25.62	28.97	28.87
농업계열학과 (농업관련분야)	평균	49.26	53.82	48.57	53.30	46.97	57.87	35.77
	표준편차	27.15	28.76	26.01	26.49	27.95	31.33	31.55
F값		0.71	0.18	0.40	0.15	0.08	0.46	5.40

*p<.05, **p<.01

농업에 필요한 능력 보유정도는 성별에 따라 다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차이를 보인 능력으로는 ‘농업기술’과 ‘인간관계능력’,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었는데 세 능력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평정하였다(<표 II-81> 참고).

<표 II-81> 성별 능력의 차이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기업가 정신
남	평균	29.91	36.33	39.83	42.25	60.71	56.72	46.67
	표준편차	25.05	24.96	27.00	27.89	27.47	27.51	29.43
여	평균	23.37	31.80	39.84	43.11	55.12	56.06	42.97
	표준편차	23.32	22.88	25.61	24.00	25.15	26.16	25.69
F값		6.57*	3.22	0.00	0.10	4.05*	0.06	1.62

구분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 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 능력	사명감	농기계 조작능력
남	평균	49.81	55.57	49.66	54.03	49.39	57.58	40.97
	표준편차	26.63	27.82	26.77	27.73	27.90	30.97	33.70
여	평균	44.56	51.73	45.33	52.29	45.88	54.54	21.08
	표준편차	24.24	26.36	24.74	26.78	25.51	29.33	24.91
F값		3.83	1.81	2.54	0.37	1.56	0.92	40.54**

*p<.05, **p<.01

농업에 필요한 능력 보유정도는 출생지에 따라 다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차이를 보인 능력으로는 ‘농업기술’과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능력’,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었는데 ‘농업기술’, ‘농기계 조작능력’은 면이하 지역이 ‘판매능력’, ‘홍보능력’은 대도시 지역이 가장 높았다(<표 II-82> 참고).

<표 II-82> 출생지별 능력의 차이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기업가 정신
대도시	평균	24.41	35.39	44.67	47.07	65.01	59.70	51.65
	표준편차	25.70	24.61	27.64	27.26	25.09	26.30	26.64
중소도시	평균	25.84	35.12	41.30	43.90	56.45	56.05	43.19
	표준편차	22.39	24.22	25.78	25.29	25.78	25.05	27.38
읍소재 지역	평균	24.70	29.63	30.73	35.28	50.16	54.06	38.98
	표준편차	26.37	23.67	24.71	25.09	28.81	31.62	29.78
면이하 지역	평균	36.83	34.27	37.92	39.17	58.33	53.85	44.06
	표준편차	22.99	22.79	24.58	24.83	25.29	26.56	25.63
F값		3.32*	0.92	4.01**	3.13*	4.49**	0.81	3.21*

구분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 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 능력	사명감	농기계 조작능력
대도시	평균	49.64	57.29	47.88	54.00	48.87	59.54	28.91
	표준편차	26.17	27.19	25.58	28.55	27.19	29.68	32.16
중소도시	평균	46.50	53.34	46.90	52.71	47.29	55.70	28.49
	표준편차	24.39	25.96	24.17	25.56	25.42	28.08	28.55
읍소재 지역	평균	44.73	49.38	44.97	50.80	44.81	50.89	30.47
	표준편차	26.83	28.12	29.50	27.91	28.94	33.87	32.44
면이하 지역	평균	48.06	53.25	52.04	56.04	49.88	57.40	43.75
	표준편차	26.47	29.15	26.56	29.32	27.59	32.07	33.65
F값		0.55	1.13	0.73	0.38	0.43	1.11	3.19*

*p<.05, **p<.01

나. 농민 설문 결과 분석

(1) 농민들의 일반적인 사항

농민들의 영농경력은 전체적으로 평균 20.29년이고 표준편차는 11.28년이었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10년 - 20년 미만이 3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년 - 30년 미만 28.6%, 10년 미만 26.2% 30년 - 40년 미만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83> 참고).

<표 II-83> 영농경력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1	0.3
10년 미만	76	26.2
10년 - 20년 미만	89	30.7
20년 - 30년 미만	83	28.6
30년 - 40년 미만	33	11.4
40년 - 50년 이하	8	2.8
합계	290	100.0

농민들의 연령은 전체적으로 평균 49.68년이고 표준편차는 9.85년이었다. 40세 - 50세 미만이 4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세 - 60세 미만이 35.9%로 40세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II-84> 참고).

<표 II-84> 연령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2	0.7
10세 - 20세 미만	1	0.3
20세 - 30세 미만	11	3.8
30세 - 40세 미만	23	7.9
40세 - 50세 미만	121	41.7
50세 - 60세 미만	104	35.9
60세 - 70세 미만	26	9.0
70세 - 80세 이하	2	0.7
합계	290	100.0

주작목으로는 벼농사가 32.8%로 가장 많았고 과수가 15.9%, 축산업이 14.8%, 밭농사가 12.1%, 시설재배가 9.3%, 화훼가 7.9%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농산물 유통이 있었다(<표 II-85> 참고).

<표 II-85> 주작목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벼농사	95	32.8
밭농사	35	12.1
채소류	4	1.4
과수	46	15.9
화훼	23	7.9
시설재배	27	9.3
축산업	43	14.8
농산물 가공	4	1.4
기타	13	4.5
합계	290	100.0

(2) 현재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만족도

현재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가 31.4%, '만족하는 편이다'가 29.7%,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가 27.9%, '매우 만족한다'가 6.9%, '매우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가 4.1%로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쪽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86> 참고).

<표 II-86> 현재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매우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2	4.1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81	27.9
그저 그렇다	91	31.4
만족하는 편이다	86	29.7
매우 만족한다	20	6.9
합계	290	100.0

현재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영농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매우 불만이다'와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응답은 6년 - 10년 이하에서 가장 많았고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21년 - 25년 이하와 26년 - 30년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II-87> 참고).

<표 II-87> 영농경력별 현재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5년 이하	2 5.7%	11 31.4%	10 28.6%	12 34.3%	0 0.0%	35 100.0%
6년 - 10년 이하	3 7.1%	17 40.5%	12 28.6%	8 19.0%	2 4.8%	42 100.0%
11년 - 15년 이하	2 6.5%	8 25.8%	8 25.8%	7 22.6%	6 19.4%	31 100.0%
16년 - 20년 이하	1 1.7%	16 27.6%	21 36.2%	17 29.3%	3 5.2%	58 100.0%
21년 - 25년 이하	0 0.0%	6 17.1%	9 25.7%	20 57.1%	0 0.0%	35 100.0%
26년 - 30년 이하	3 6.3%	12 25.0%	13 27.1%	18 37.5%	2 4.2%	48 100.0%
31년 이상	1 2.4%	11 26.8%	18 43.9%	4 9.8%	7 17.1%	41 100.0%
합계	12 4.1%	81 27.9%	91 31.4%	86 29.7%	20 6.9%	290 100.0%

$\chi^2=49.180$, $df=24$, $p<.05$

연령에 따른 현재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만족도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매우 불만이다'와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응답은 30세 - 40세 미만에서 가장 많았고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40세 - 50세 미만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매우 만족한다'는 50세 - 60세 미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II-88> 참고).

<표 II-88> 연령별 현재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30세 미만	0 0.0%	4 33.3%	4 33.3%	2 16.7%	2 16.7%	12 100.0%
30세 - 40세 미만	2 9.5%	6 28.6%	3 14.3%	10 47.6%	0 0.0%	21 100.0%
40세 - 50세 미만	2 2.0%	28 28.3%	29 29.3%	34 34.3%	6 6.1%	99 100.0%
50세 - 60세 미만	5 4.1%	34 28.1%	39 32.2%	33 27.3%	10 8.3%	121 100.0%
60세 이상	3 8.1%	9 24.3%	16 43.2%	7 18.9%	2 5.4%	37 100.0%
합계	12 4.1%	81 27.9%	91 31.4%	86 29.7%	20 6.9%	290 100.0%

$\chi^2=17.581$, $df=16$, $p<.05$

주작목에 따른 현재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만족도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매우 불만이다’와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응답은 채소류, 농산물 가공, 시설재배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밭농사, 채소류, 화훼, 시설재배, 기타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채소류와 시설재배에서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표 II-89> 참고).

<표 II-89> 주작목별 현재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벼농사	1 1.1%	30 31.6%	34 35.8%	22 23.2%	8 8.4%	95 100.0%
밭농사	1 2.9%	9 25.7%	11 31.4%	14 40.0%	0 0.0%	35 100.0%
채소류	0 0.0%	2 50.0%	0 0.0%	2 50.0%	0 0.0%	4 100.0%
과수	4 8.7%	8 17.4%	20 43.5%	11 23.9%	3 6.5%	46 100.0%
화훼	0 0.0%	4 17.4%	6 26.1%	9 39.1%	4 17.4%	23 100.0%
시설재배	2 7.4%	9 33.3%	5 18.5%	10 37.0%	1 3.7%	27 100.0%
축산업	3 7.0%	13 30.2%	12 27.9%	14 32.6%	1 2.3%	43 100.0%
농산물가공	0 0.0%	2 50.0%	2 50.0%	0 0.0%	0 0.0%	4 100.0%
기타	1 7.7%	4 30.8%	1 7.7%	4 30.8%	3 23.1%	13 100.0%
합계	12 4.1%	81 27.9%	91 31.4%	86 29.7%	20 6.9%	290 100.0%

$\chi^2=41.249$, $df=32$, $p<.05$

(3) 농업을 선택한 이유

농업을 선택한 이유는 ‘농촌에 사는 것이 좋아서’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향에 살고 싶어서’가 14.1%, ‘수익이 좋을 것 같아서’가 10.7%, ‘장남이라서’가 9.7%, ‘배운게 없어서’가 7.9%, ‘도시에 나가 살기 어려워서’가 5.9%, 기타가 5.5%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이웃과 같이 살기 위해서(도시는 너무 각박해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 영농기술과 농민과 함께하기 위하고 부농을 만들기 위함(고부가가치 창출), IMF 때문에, 개인사정(농지 보유와 부모님 보양) 등이 있었다(<표 II-90> 참고).

<표 II-90> 농업을 선택한 이유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1	0.3
나이 때문에	8	2.8
배운게 없어서	23	7.9
장남이라서	28	9.7
수익이 좋을 것 같아서	31	10.7
전망이 좋아서	9	3.1
농촌에 사는 것이 좋아서	92	31.7
고향에 살고 싶어서	41	14.1
농업을 잘 알아서	11	3.8
유산 상속 때문에	13	4.5
도시에 나가 살기 어려워서	17	5.9
기타	16	5.5
합계	290	100.0

농업을 선택한 이유는 영농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영농경력에서는 ‘농촌에 사는 것이 좋아서’, ‘수익이 좋을 것 같아서’, ‘고향에 살고 싶어서’가 많았지만 특이한 것은 26년 - 30년 이하에서는 ‘장남이라서’가 많이 나타났고 31년 이상에서는 ‘배운게 없어서’, ‘장남이라서’가 많이 나타났다(<표 II-91> 참고).

<표 II-91> 영농경력별 농업을 선택한 이유

구분	농업을 선택한 이유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5년 이하	0 0.0%	3 8.6%	0 0.0%	0 0.0%	6 17.1%	0 0.0%	11 31.4%	6 17.1%	1 2.9%	3 8.6%	1 2.9%	4 11.4%	35 100.0%
6년 - 10년 이하	0 0.0%	1 2.4%	0 0.0%	0 0.0%	5 11.9%	4 9.5%	16 38.1%	4 9.5%	0 0.0%	4 9.5%	4 9.5%	4 9.5%	42 100.0%
11년 - 15년 이하	0 0.0%	1 3.2%	2 6.5%	4 12.9%	2 6.5%	0 0.0%	12 38.7%	2 6.5%	1 3.2%	0 0.0%	5 16.1%	2 6.5%	31 100.0%
16년 - 20년 이하	0 0.0%	0 0.0%	3 5.2%	3 5.2%	11 19.0%	2 3.4%	24 41.4%	8 13.8%	3 5.2%	1 1.7%	1 1.7%	2 3.4%	58 100.0%
21년 - 25년 이하	0 0.0%	0 0.0%	2 5.7%	3 8.6%	3 8.6%	1 2.9%	14 40.0%	6 17.1%	3 8.6%	0 0.0%	1 2.9%	2 5.7%	35 100.0%
26년 - 30년 이하	1 2.1%	2 4.2%	4 8.3%	9 18.8%	3 6.3%	2 4.2%	9 18.8%	10 20.8%	2 4.2%	3 6.3%	3 6.3%	0 0.0%	48 100.0%
31년 이상	0 0.0%	1 2.4%	12 29.3%	9 22.0%	1 2.4%	0 0.0%	6 14.6%	5 12.2%	1 2.4%	2 4.9%	2 4.9%	2 4.9%	41 100.0%
합계	1 0.3%	8 2.8%	23 7.9%	28 9.7%	31 10.7%	9 3.1%	92 31.7%	41 14.1%	11 3.8%	13 4.5%	17 5.9%	16 5.5%	290 100.0%

$\chi^2=122.878$, $df=66$, $p<.05$

- | | | |
|------------|------------------|--------------------|
| 0. 무응답 | 4. 수익이 좋을 것 같아서 | 8. 농업을 잘 알아서 |
| 1. 나이 때문에 | 5. 전망이 좋아서 | 9. 유산 상속 때문에 |
| 2. 배운게 없어서 | 6. 농촌에 사는 것이 좋아서 | 10. 도시에 나가 살기 어려워서 |
| 3. 장남이라서 | 7. 고향에 살고 싶어서 | 11. 기타 |

연령에 따른 농업을 선택한 이유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30세 미만과 50세 - 60세 미만에서는 ‘농촌에 사는 것이 좋아서’와 ‘고향에 살고 싶어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30세 - 40세 미만과 40세 - 50세 미만에서는 ‘농촌에 사는 것이 좋아서’, ‘수익이 좋을 것 같아서’가 60세 이상에서는 ‘고향에 살고 싶어서’와 ‘배운게 없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II-92> 참고).

<표 II-92> 연령별 농업을 선택한 이유

구분	농업을 선택한 이유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30세 미만	0 0.0%	0 0.0%	0 0.0%	0 0.0%	1 8.3%	2 16.7%	3 25.0%	4 33.3%	0 0.0%	1 8.3%	1 8.3%	0 0.0%	12 100.0%
30세 - 40세 미만	0 0.0%	0 0.0%	0 0.0%	0 0.0%	5 23.8%	2 9.5%	9 42.9%	1 4.8%	0 0.0%	1 4.8%	0 0.0%	3 14.3%	21 100.0%
40세 - 50세 미만	0 0.0%	0 0.0%	4 4.0%	7 7.1%	12 12.1%	2 2.0%	42 42.4%	10 10.1%	5 5.1%	4 4.0%	10 10.1%	3 3.0%	99 100.0%
50세 - 60세 미만	1 0.8%	3 2.5%	13 10.7%	16 13.2%	10 8.3%	2 1.7%	33 27.3%	19 15.7%	5 4.1%	4 3.3%	5 4.1%	10 8.3%	121 100.0%
60세 이상	0 0.0%	5 13.5%	6 16.2%	5 13.5%	3 8.1%	1 2.7%	5 13.5%	7 18.9%	1 2.7%	3 8.1%	1 2.7%	0 0.0%	37 100.0%
합계	1 0.3%	8 2.8%	23 7.9%	28 9.7%	31 10.7%	9 3.1%	92 31.7%	41 14.1%	11 3.8%	13 4.5%	17 5.9%	16 5.5%	290 100.0%

$\chi^2=84.509$, $df=44$, $p<.05$, 반응지는 <표 II-91>와 동일.

주작목에 따른 농업을 선택한 이유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벼농사, 밭농사, 채소류, 과수, 축산업, 농산물가공은 '농촌에 사는 것이 좋아서', '고향에 살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고 화훼와 기타는 '농촌에 사는 것이 좋아서', '수익이 좋을 것 같아서'가 많았으며 시설재배는 '수익이 좋을 것 같아서', '전망이 좋아서', '농촌에 사는 것이 좋아서'가 많았다(<표 II-93> 참고).

<표 II-93> 주작목별 농업을 선택한 이유

구분	농업을 선택한 이유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벼농사	0 0.0%	3 3.2%	12 12.6%	17 17.9%	4 4.2%	1 1.1%	24 25.3%	19 20.0%	4 4.2%	4 4.2%	6 6.3%	1 1.1%	95 100.0%
밭농사	0 0.0%	1 2.9%	1 2.9%	3 8.6%	4 11.4%	1 2.9%	11 31.4%	5 14.3%	1 2.9%	3 8.6%	2 5.7%	3 8.6%	35 100.0%
채소류	0 0.0%	0 0.0%	0 0.0%	1 25.0%	1 25.0%	0 0.0%	1 25.0%	1 25.0%	0 0.0%	0 0.0%	0 0.0%	0 0.0%	4 100.0%
과수	0 0.0%	1 2.2%	5 10.9%	4 8.7%	4 8.7%	0 0.0%	16 34.8%	7 15.2%	2 4.3%	2 4.3%	2 4.3%	3 6.5%	46 100.0%
화훼	0 0.0%	0 0.0%	0 0.0%	0 0.0%	3 13.0%	0 0.0%	15 65.2%	1 4.3%	2 8.7%	1 4.3%	0 0.0%	1 4.3%	23 100.0%
시설재배	0 0.0%	0 0.0%	1 3.7%	1 3.7%	6 22.2%	6 22.2%	6 22.2%	0 0.0%	1 3.7%	2 7.4%	4 14.8%	0 0.0%	27 100.0%
축산업	0 0.0%	1 2.3%	3 7.0%	2 4.7%	5 11.6%	0 0.0%	14 32.6%	8 18.6%	1 2.3%	1 2.3%	1 2.3%	7 16.3%	43 100.0%
농산물가공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2 50.0%	0 0.0%	4 100.0%
기타	1 7.7%	2 15.4%	0 0.0%	0 0.0%	4 30.8%	1 7.7%	4 30.8%	0 0.0%	0 0.0%	0 0.0%	0 0.0%	1 7.7%	13 100.0%
합계	1 0.3%	8 2.8%	23 7.9%	28 9.7%	31 10.7%	9 3.1%	92 31.7%	41 14.1%	11 3.8%	13 4.5%	17 5.9%	16 5.5%	290 100.0%

$\chi^2=168.154$, $df=88$, $p<.05$, 반응지는 <표 II-91>와 동일.

(4)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 의사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는 '가능하면 농업을 하고 싶다'가 36.2%, '가능하면 농업을 하고 싶지 않다'가 26.2%, '앞으로도 꼭 농업을 하고 싶다'가 16.9%, '그저 그렇다'가 12.1%, '절대로 농업을 하고 싶지 않다'가 7.9%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표 II-94>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 의사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1	0.3
절대로 농업을 하고 싶지 않다	23	7.9
가능하면 농업을 하고 싶지 않다	76	26.2
그저 그렇다	35	12.1
가능하면 농업을 하고 싶다	105	36.2
앞으로도 꼭 농업을 하고 싶다	49	16.9
합계	290	100.0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지 여부는 영농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능하면 농업을 하고 싶다’, ‘앞으로도 꼭 농업을 하고 싶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16년 - 20년 이하가 63.8%로 가장 높았고 26년 - 30년 이하가 62.5%, 5년 이하, 21년 - 25년 이하가 57.2%, 11년 - 15년 이하가 45.1%, 6년 - 10년 이하가 42.9%, 31년 이상이 36.6%로 나타났다(<표 II-95> 참고).

<표 II-95> 영농경력별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 의사

구분	앞으로의 동향						합계
	0	1	2	3	4	5	
5년 이하	0 0.0%	4 11.4%	8 22.9%	2 5.7%	17 48.6%	3 8.6%	35 100.0%
6년 - 10년 이하	0 0.0%	6 14.3%	13 31.0%	5 11.9%	13 31.0%	5 11.9%	42 100.0%
11년 - 15년 이하	1 3.2%	2 6.5%	12 38.7%	2 6.5%	9 29.0%	5 16.1%	31 100.0%
16년 - 20년 이하	0 0.0%	3 5.2%	14 24.1%	4 6.9%	20 34.5%	17 29.3%	58 100.0%
21년 - 25년 이하	0 0.0%	2 5.7%	7 20.0%	6 17.1%	15 42.9%	5 14.3%	35 100.0%
26년 - 30년 이하	0 0.0%	3 6.3%	8 16.7%	7 14.6%	22 45.8%	8 16.7%	48 100.0%
31년 이상	0 0.0%	3 7.3%	14 34.1%	9 22.0%	9 22.0%	6 14.6%	41 100.0%
합계	1 0.3%	23 7.9%	76 26.2%	35 12.1%	105 36.2%	49 16.9%	290 100.0%

$\chi^2=46.441$, $df=30$, $p<.05$

- 0. 무응답
- 1. 절대로 농업을 하고 싶지 않다
- 2. 가능하면 농업을 하고 싶지 않다
- 3. 그저 그렇다.
- 4. 가능하면 농업을 하고 싶다
- 5. 앞으로도 꼭 농업을 하고 싶다

연령에 따른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지 여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능하면 농업을 하고 싶다’, ‘앞으로도 꼭 농업을 하고 싶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40세 - 50세 미만이 6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60세 이상이 54%, 50세 - 60세 미만이 52.1%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표 II-96> 연령별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 의사

연령대	앞으로의 동향						합계
	0	1	2	3	4	5	
30세 미만	0 0.0%	1 8.3%	4 33.3%	2 16.7%	3 25.0%	1 8.3%	12 100.0%
30세 - 40세 미만	0 0.0%	3 14.3%	10 47.6%	2 9.5%	4 19.0%	2 9.5%	21 100.0%
40세 - 50세 미만	1 1.0%	7 7.1%	22 22.2%	8 8.1%	41 41.4%	20 20.2%	99 100.0%
50세 - 60세 미만	0 0.0%	9 7.4%	31 25.6%	18 14.9%	41 33.9%	22 18.2%	121 100.0%
60세 이상	0 0.0%	3 8.1%	9 24.3%	5 13.5%	16 43.2%	4 10.8%	37 100.0%
합계	1 0.3%	23 7.9%	76 26.2%	35 12.1%	105 36.2%	49 16.9%	290 100.0%

$\chi^2=39.670$, $df=20$, $p<.05$, 반응지는 <표 II-95>와 동일.

주작목에 따른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지 여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능하면 농업을 하고 싶다’, ‘앞으로도 꼭 농업을 하고 싶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은 밭농사가 68.6%로 가장 높았고 과수, 화훼가 그 다음으로 65.2%, 벼농사가 49.4%, 축산이 48.9%를 나타내었으며 농산물 가공과 채소류가 25%로 가장 적었다(<표 II-97> 참고).

<표 II-97> 주작목별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 의사

연령대	앞으로의 동향						합계
	0	1	2	3	4	5	
벼농사	0 0.0%	4 4.2%	31 32.6%	13 13.7%	31 32.6%	16 16.8%	95 100.0%
밭농사	0 0.0%	2 5.7%	4 11.4%	5 14.3%	22 62.9%	2 5.7%	35 100.0%
채소류	1 25.0%	1 25.0%	1 25.0%	0 0.0%	0 0.0%	1 25.0%	4 100.0%
과수	0 0.0%	7 15.2%	6 13.0%	3 6.5%	19 41.3%	11 23.9%	46 100.0%
화훼	0 0.0%	1 4.3%	3 13.0%	4 17.4%	12 52.2%	3 13.0%	23 100.0%
시설재배	0 0.0%	2 7.4%	13 48.1%	1 3.7%	5 18.5%	6 22.2%	27 100.0%
축산업	0 0.0%	5 11.6%	8 18.6%	9 20.9%	14 32.6%	7 16.3%	43 100.0%
농산물가공	0 0.0%	0 0.0%	3 75.0%	0 0.0%	1 25.0%	0 0.0%	4 100.0%
기타	0 0.0%	2 15.4%	7 53.8%	0 0.0%	1 7.7%	3 23.1%	13 100.0%
합계	1 0.3%	23 7.9%	76 26.2%	35 12.1%	105 36.2%	49 16.9%	290 100.0%

$\chi^2=137.151$, $df=40$, $p<.05$, 반응지는 <표 II-95>와 동일.

(5) 농업을 시작한 시기

농업을 시작한 시기는 ‘군 제대후 직장에 다니다가 귀농’이 28.6%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4.8%, ‘학교 졸업후 바로’가 24.1%, ‘군대 제대후 바로’가 20.3%, ‘군 면제후 바로(산업기능요원제도)’이 0.7%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결혼후, 농가출신, 도시에서 사업으로 인한 후유증, 귀농하면서, 명예퇴직 후, 학교 다닐 적부터, 사업하다가 IMF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신 후 등이 있었다.

<표 II-98> 농업을 시작한 시기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4	1.4
학교 졸업후 바로	70	24.1
군대 제대후 바로	59	20.3
군 제대후 직장에 다니다가 귀농	83	28.6
군 면제후 바로(산업기능요원제도)	2	0.7
기타	72	24.8
합계	290	100.0

농업을 시작한 시기는 영농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5년 이하, 6년 - 10년 이하, 11년 - 15년 이하, 16년 - 20년 이하는 '직장에 다니다가 귀농'이 가장 많았고 21년 - 25년 이하, 26년 - 30년 이하, 31년 이상은 '학교 졸업후'가 가장 많았다(<표 II-99> 참고).

<표 II-99> 영농경력별 농업을 시작한 시기

구분	무응답	학교 졸업후	군대 제대후	직장에 다니다가 귀농	군 면제후 바로	기타	합계
5년 이하	1 2.9%	5 14.3%	1 2.9%	14 40.0%	0 0.0%	14 40.0%	35 100.0%
6년 - 10년 이하	0 0.0%	2 4.8%	7 16.7%	14 33.3%	0 0.0%	19 45.2%	42 100.0%
11년 - 15년 이하	2 6.5%	2 6.5%	5 16.1%	15 48.4%	0 0.0%	7 22.6%	31 100.0%
16년 - 20년 이하	0 0.0%	9 15.5%	13 22.4%	18 31.0%	1 1.7%	17 29.3%	58 100.0%
21년 - 25년 이하	0 0.0%	15 42.9%	7 20.0%	5 14.3%	1 2.9%	7 20.0%	35 100.0%
26년 - 30년 이하	1 2.1%	18 37.5%	17 35.4%	9 18.8%	0 0.0%	3 6.3%	48 100.0%
31년 이상	0 0.0%	19 46.3%	9 22.0%	8 19.5%	0 0.0%	5 12.2%	41 100.0%
합계	4 1.4%	70 24.1%	59 20.3%	83 28.6%	2 0.7%	72 24.8%	290 100.0%

$\chi^2=87.731$, $df=30$, $p<.05$

연령에 따른 농업을 시작한 시기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30세 미만은 '학교 졸업후'가 가장 많았고 30세 - 40세 미만, 40세 - 50세 미만은 '직장에 다니다가 귀농'이 50세 - 60세 미만은 '학교 졸업후'와 기타, 60세 이상은 '직장 다니다가 귀농'과 기타가 가장 많았다(<표 II-100> 참고).

<표 II-100> 연령별 농업을 시작한 시기

구분	무응답	학교 졸업후	군대 제대후	직장에 다니다가 귀농	군 면제후 바로	기타	합계
30세 미만	0 0.0%	4 33.3%	3 25.0%	3 25.0%	0 0.0%	2 16.7%	12 100.0%
30세 - 40세 미만	0 0.0%	1 4.8%	6 28.6%	7 33.3%	0 0.0%	7 33.3%	21 100.0%
40세 - 50세 미만	0 0.0%	29 29.3%	16 16.2%	31 31.3%	2 2.0%	21 21.2%	99 100.0%
50세 - 60세 미만	4 3.3%	30 24.8%	28 23.1%	29 24.0%	0 0.0%	30 24.8%	121 100.0%
60세 이상	0 0.0%	6 16.2%	6 16.2%	13 35.1%	0 0.0%	12 32.4%	37 100.0%
합계	4 1.4%	70 24.1%	59 20.3%	83 28.6%	2 0.7%	72 24.8%	290 100.0%

$\chi^2=21.908$, $df=20$, $p<.05$

주작목에 따른 농업을 시작한 시기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벼농사는 ‘학교 졸업후’가 가장 많았고 밭농사와 화훼, 축산업은 ‘직장에 다니다가 귀농’과 기타가 많았으며 채소류는 ‘학교 졸업후’와 ‘직장에 다니다가 귀농’이 과수는 ‘직장에 다니다 귀농’이 시설재배는 ‘군대 제대후’가 농산물가공은 ‘학교 졸업후’와 ‘군대 제대후’가 가장 많았다(<표 II-101> 참고).

<표 II-101> 주작목별 농업을 시작한 시기

구분	무응답	학교 졸업후	군대 제대후	직장에 다니다가 귀농	군 면제후 바로	기타	합계
벼농사	1 1.1%	34 35.8%	19 20.0%	25 26.3%	2 2.1%	14 14.7%	95 100.0%
밭농사	0 0.0%	6 17.1%	5 14.3%	11 31.4%	0 0.0%	13 37.1%	35 100.0%
채소류	0 0.0%	2 50.0%	0 0.0%	2 50.0%	0 0.0%	0 0.0%	4 100.0%
과수	0 0.0%	7 15.2%	7 15.2%	21 45.7%	0 0.0%	11 23.9%	46 100.0%
화훼	0 0.0%	5 21.7%	1 4.3%	7 30.4%	0 0.0%	10 43.5%	23 100.0%
시설재배	0 0.0%	7 25.9%	14 51.9%	5 18.5%	0 0.0%	1 3.7%	27 100.0%
축산업	1 2.3%	7 16.3%	8 18.6%	10 23.3%	0 0.0%	17 39.5%	43 100.0%
농산물가공	2 50.0%	1 25.0%	1 25.0%	0 0.0%	0 0.0%	0 0.0%	4 100.0%
기타	0 0.0%	1 7.7%	4 30.8%	2 15.4%	0 0.0%	6 46.2%	13 100.0%
합계	4 1.4%	70 24.1%	59 20.3%	83 28.6%	2 0.7%	72 24.8%	290 100.0%

$\chi^2=136.469$, $df=40$, $p<.05$

(6) 농업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

농업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으로는 ‘소득의 불안정’이 30.7%, ‘농지 확보’가 14.8%, ‘전망의 불투명’이 13.8%, ‘사회적 여건의 불리’가 6.6%, ‘판매처 확보’가 6.2%, ‘기술 확보’가 4.8%, ‘부채 증가’가 4.5%, ‘가족의 반대’가 3.8%, ‘일손 확보’가 3.4%, ‘작목 선택’ 2.8% 등으로 응답하였다.

<표 II-102> 농업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4	1.4
전망의 불투명	40	13.8
소득의 불안정	89	30.7
가족의 반대	11	3.8
사회적 여건의 불리	19	6.6
기술 확보	14	4.8
자금 조달	18	6.2
농지 확보	43	14.8
부채 증가	13	4.5
판매처 확보	18	6.2
작목 선택	8	2.8
일손 확보	10	3.4
기타	3	1.0
합계	290	100.0

농업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영농경력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5년 이하는 '전망의 불투명'과 '소득의 불안정'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6년 - 10년 이하, 11년 - 15년 이하, 16년 - 20년 이하, 21년 - 25년 이하, 31년 이상은 '소득의 불안정'을 26년 - 30년 이하는 '농지확보'를 가장 많이 응답하여 비교적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소득의 불안정'을 많이 꼽았다(<표 II-103> 참고).

<표 II-103> 영농경력별 농업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

구분	무응답	전망의 불투명	소득의 불안정	가족의 반대	사회적 여건의 불리	기술 확보	자금조달
5년 이하	1 2.9%	8 22.9%	8 22.9%	0 0.0%	4 11.4%	2 5.7%	1 2.9%
6년 - 10년 이하	1 2.4%	7 16.7%	13 31.0%	2 4.8%	1 2.4%	1 2.4%	4 9.5%
11년 - 15년 이하	1 3.2%	4 12.9%	9 29.0%	1 3.2%	4 12.9%	0 0.0%	2 6.5%
16년 - 20년 이하	0 0.0%	5 8.6%	23 39.7%	3 5.2%	3 5.2%	3 5.2%	3 5.2%
21년 - 25년 이하	0 0.0%	5 14.3%	12 34.3%	1 2.9%	2 5.7%	2 5.7%	3 8.6%
26년 - 30년 이하	0 0.0%	6 12.5%	11 22.9%	3 6.3%	2 4.2%	4 8.3%	4 8.3%
31년 이상	1 2.4%	5 12.2%	13 31.7%	1 2.4%	3 7.3%	2 4.9%	1 2.4%
합계	4 1.4%	40 13.8%	89 30.7%	11 3.8%	19 6.6%	14 4.8%	18 6.2%

<표계속>

구분	농지확보	부채증가	판매처확보	작목선택	일손확보	기타	합계
5년 이하	1 2.9%	1 2.9%	4 11.4%	2 5.7%	1 2.9%	2 5.7%	35 100.0%
6년 - 10년 이하	5 11.9%	3 7.1%	2 4.8%	2 4.8%	1 2.4%	0 0.0%	42 100.0%
11년 - 15년 이하	4 12.9%	1 3.2%	3 9.7%	0 0.0%	2 6.5%	0 0.0%	31 100.0%
16년 - 20년 이하	10 17.2%	2 3.4%	3 5.2%	0 0.0%	3 5.2%	0 0.0%	58 100.0%
21년 - 25년 이하	4 11.4%	3 8.6%	1 2.9%	2 5.7%	0 0.0%	0 0.0%	35 100.0%
26년 - 30년 이하	13 27.1%	2 4.2%	0 0.0%	2 4.2%	1 2.1%	0 0.0%	48 100.0%
31년 이상	6 14.6%	1 2.4%	5 12.2%	0 0.0%	2 4.9%	1 2.4%	41 100.0%
합계	43 14.8%	13 4.5%	18 6.2%	8 2.8%	10 3.4%	3 1.0%	290 100.0%

$\chi^2=65.674$, $df=72$, $p<.05$

연령에 따른 농업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30세 미만, 40세 - 50세 미만, 50세 - 60세 미만, 60세 이상은 '소득의 불안정'을 가장 많이 꼽았고 30세 - 40세 미만은 '전망의 불투명'과 '소득의 불안정'을 가장 많이 꼽아 대부분 '소득의 불안정'을 꼽고 있었다.

<표 II-104> 연령별 농업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

구분	무응답	전망의 불투명	소득의 불안정	가족의 반대	사회적 여건의 불리	기술확보	자금조달
30세 미만	0 0.0%	2 16.7%	4 33.3%	0 0.0%	1 8.3%	1 8.3%	0 .0%
30세 - 40세 미만	0 0.0%	5 23.8%	5 23.8%	1 4.8%	0 0.0%	1 4.8%	5 23.8%
40세 - 50세 미만	1 1.0%	11 11.1%	39 39.4%	6 6.1%	6 6.1%	4 4.0%	6 6.1%
50세 - 60세 미만	2 1.7%	20 16.5%	33 27.3%	3 2.5%	8 6.6%	5 4.1%	4 3.3%
60세 이상	1 2.7%	2 5.4%	8 21.6%	1 2.7%	4 10.8%	3 8.1%	3 8.1%
합계	4 1.4%	40 13.8%	89 30.7%	11 3.8%	19 6.6%	14 4.8%	18 6.2%

구분	농지확보	부채증가	판매처확보	작목선택	일손확보	기타	합계
30세 미만	2 16.7%	1 8.3%	0 0.0%	0 0.0%	1 8.3%	0 0.0%	12 100.0%
30세 - 40세 미만	2 9.5%	2 9.5%	0 0.0%	0 0.0%	0 0.0%	0 0.0%	21 100.0%
40세 - 50세 미만	17 17.2%	4 4.0%	0 0.0%	2 2.0%	3 3.0%	0 0.0%	99 100.0%
50세 - 60세 미만	17 14.0%	6 5.0%	13 10.7%	6 5.0%	3 2.5%	1 0.8%	121 100.0%
60세 이상	5 13.5%	0 0.0%	5 13.5%	0 0.0%	3 8.1%	2 5.4%	37 100.0%
합계	43 14.8%	13 4.5%	18 6.2%	8 2.8%	10 3.4%	3 1.0%	290 100.0%

$\chi^2=65.860$, $df=48$, $p<.05$

주작목에 따른 농업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벼농사, 밭농사, 채소류, 과수는 '소득의 불안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화훼는 '전망의 불투명'을 시설재배는 '농지확보'를 기타는 '판매처 확보'를 가장 많이 꼽았다(<표 II-105> 참고).

<표 II-105> 주작목별 농업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

구분	무응답	전망의 불투명	소득의 불안정	가족의 반대	사회적 여건의 불리	기술확보	자금조달
벼농사	2 2.1%	10 10.5%	29 30.5%	4 4.2%	5 5.3%	6 6.3%	2 2.1%
밭농사	1 2.9%	5 14.3%	9 25.7%	1 2.9%	4 11.4%	1 2.9%	6 17.1%
채소류	1 25.0%	0 0.0%	2 50.0%	0 0.0%	1 25.0%	0 0.0%	0 0.0%
과수	0 0.0%	5 10.9%	19 41.3%	0 0.0%	6 13.0%	3 6.5%	1 2.2%
화훼	0 0.0%	6 26.1%	5 21.7%	0 0.0%	0 0.0%	1 4.3%	2 8.7%
시설재배	0 0.0%	4 14.8%	8 29.6%	3 11.1%	0 0.0%	0 0.0%	2 7.4%
축산업	0 0.0%	9 20.9%	13 30.2%	3 7.0%	3 7.0%	2 4.7%	4 9.3%
농산물가공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0 0.0%
기타	0 0.0%	1 7.7%	3 23.1%	0 0.0%	0 0.0%	1 7.7%	1 7.7%
합계	4 1.4%	40 13.8%	89 30.7%	11 3.8%	19 6.6%	14 4.8%	18 6.2%

구분	농지확보	부채증가	판매처확보	작목선택	일손확보	기타	합계
벼농사	21 22.1%	8 8.4%	5 5.3%	0 0.0%	1 1.1%	2 2.1%	95 100.0%
밭농사	4 11.4%	0 0.0%	0 0.0%	2 5.7%	1 2.9%	1 2.9%	35 100.0%
채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00.0%
과수	3 6.5%	1 2.2%	4 8.7%	0 0.0%	4 8.7%	0 0.0%	46 100.0%
화훼	1 4.3%	0 0.0%	2 8.7%	3 13.0%	3 13.0%	0 0.0%	23 100.0%
시설재배	9 33.3%	0 0.0%	1 3.7%	0 0.0%	0 0.0%	0 0.0%	27 100.0%
축산업	3 7.0%	3 7.0%	0 0.0%	2 4.7%	1 2.3%	0 0.0%	43 100.0%
농산물가공	2 50.0%	0 0.0%	0 0.0%	1 25.0%	0 0.0%	0 0.0%	4 100.0%
기타	0 0.0%	1 7.7%	6 46.2%	0 0.0%	0 0.0%	0 0.0%	13 100.0%
합계	43 14.8%	13 4.5%	18 6.2%	8 2.8%	10 3.4%	3 1.0%	290 100.0%

$\chi^2=173.589$, $df=96$, $p<.05$

(7) 농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

농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3가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영농자금 확보'가 13.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농지의 확보'가 10.8%, '수익성 부족'이 10.3%, '영농기술 부족'이 8.9%, '일손 확보'가 7.8%, '농기계 확보'가 6.2%, '경영기술 부족'이 5.6%, '판매처 확보'가 5.5%, '작목 선택'이 4.5%, '판매기술 부족'이 3.6% 등으로 나타났다(<표 II-106> 참고).

<표 II-106> 농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148	17.01
영농기술 부족	77	8.9
경영기술 부족	49	5.6
판매처 확보	48	5.5
작목 선택	39	4.5
영농자금 확보	119	13.7
농지의 확보	94	10.8
일손 확보	68	7.8
생산물의 홍보	21	2.4
영농자재 확보	11	1.3
농기계 확보	54	6.2
수익성 부족	90	10.3
판매기술 부족	31	3.6
저장 방법	10	1.1
가공기술 부족	9	1.0
기타	2	0.2
합계	870	100.0

(8) 영농 시기별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영농 시기별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6년 - 10년 이하는 '영농기술 부족'을 25.5%로 '영농자금 확보'를 14.5%로 가장 많이 꼽았고 11년 - 15년 이하는 '영농자금 확보'와 '일손 확보'를 16년 - 20년 이하는 '일손 확보'와 '수익성 부족'을 21년 - 25년 이하는 '농지의 확보'와 '수익성 부족', '영농자금 확보'를 26년 - 30년 이하는 '수익성 부족'을 31년 - 35년 이하는 '일손 확보'를 36년 - 40년 이하는 '농기계 확보'를 가장 많이 꼽았다(<표 II-107> 참고).

<표 II-107> 영농 시기별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

구분	5년 이하		6년 - 10년 이하		11년 - 15년 이하		16년 - 20년 이하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무응답	77	26.6	177	61.0	209	72.1	243	83.8
영농기술 부족	74	25.5	4	1.4	5	1.7	3	1.0
경영기술 부족	29	10.0	12	4.1	1	0.3	3	1.0
판매처 확보	14	4.8	12	4.1	5	1.7	4	1.4
작목 선택	9	3.1	13	4.5	4	1.4	0	0.0
영농자금 확보	42	14.5	17	5.9	6	2.1	6	2.1
농지의 확보	19	6.6	12	4.1	4	1.4	8	2.8
일손 확보	7	2.4	14	4.8	20	6.9	3	1.0
생산물의 홍보	0	0.0	4	1.4	2	0.7	5	1.7
영농자재 확보	4	1.4	2	0.7	4	1.4	1	0.3
농기계 확보	5	1.7	12	4.1	7	2.4	1	0.3
수익성 부족	4	1.4	7	2.4	15	5.2	6	2.1
판매기술 부족	4	1.4	2	0.7	5	1.7	4	1.4
저장방법	1	0.3	0	0.0	2	0.7	0	0.0
가공기술 부족	1	0.3	2	0.7	1	0.3	3	1.0
기타	0	0.0	0	0.0	0	0.0	0	0.0
합계	290	100.0	290	100.0	290	100.0	290	100.0

구분	21년 - 25년 이하		26년 - 30년 이하		31년 이상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무응답	270	93.1	275	94.9	267	92.1
영농기술 부족	1	0.3	1	0.3	0	0.0
경영기술 부족	1	0.3	0	0.0	0	0.0
판매처 확보	2	0.7	0	0.0	1	0.3
작목 선택	0	0.0	1	0.3	2	0.7
영농자금 확보	1	0.3	1	0.3	1	0.3
농지의 확보	2	0.7	0	0.0	3	1.0
일손 확보	1	0.3	5	1.7	1	0.3
생산물의 홍보	2	0.7	2	0.7	0	0.0
영농자재 확보	1	0.3	0	0.0	3	1.0
농기계 확보	1	0.3	1	0.3	4	1.4
수익성 부족	4	1.4	1	0.3	3	1.0
판매기술 부족	2	0.7	2	0.7	3	1.0
저장 방법	2	0.7	0	0.0	2	0.7
가공기술 부족	0	0.0	1	0.3	0	0.0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290	100.0	290	100.0	290	100.0

(9)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능력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능력에 대해서는 각각의 능력에 대해서 아래 <표 II-108>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사명감'이 64.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간관계능력'이 57.45,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이 55.54, '의사소통능력'이 55.21, '문제해결능력'이 51.92, '자원활용능력'이 51.35, '조직 이해능력' 49.51, '기업가 정신'이 48.55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108>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능력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기업가 정신
평균	47.19	47.67	41.50	35.55	57.45	55.21	48.55
표준편차	24.93	24.70	27.12	25.78	27.84	28.71	30.73
응답자수	290	290	290	290	290	290	290

구분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 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 능력	사명감	기타능력
평균	51.92	55.54	51.35	46.60	49.51	64.06	0.0
표준편차	28.54	28.53	28.81	28.73	30.19	31.89	0.0
응답자수	290	290	290	290	290	290	0.0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능력을 영농경력에 따라 살펴보면 5년 이하와 6년 - 10년 이하는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1년 - 15년 이하는 '인간관계능력'과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이 16년 - 20년 이하, 21년 - 25년 이하, 26년 - 30년 이하, 31년 이상은 '사명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109> 참고).

<표 II-109> 영농경력별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능력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기업가 정신
5년 이하	평균	33.29	37.00	36.29	27.71	50.86	45.43
	표준편차	25.12	24.62	26.12	23.40	30.91	32.02
6년 - 10년 이하	평균	41.79	49.05	38.93	35.95	58.10	58.67
	표준편차	24.96	24.67	26.05	24.87	26.23	29.33
11년 - 15년 이하	평균	49.35	45.48	34.52	31.29	60.32	53.39
	표준편차	22.05	23.78	26.18	24.87	28.58	28.27
16년 - 20년 이하	평균	41.81	47.50	44.74	40.52	60.09	50.52
	표준편차	25.49	25.84	27.23	24.38	27.02	30.11
21년 - 25년 이하	평균	61.00	57.14	52.14	41.71	65.43	55.71
	표준편차	19.85	21.50	27.26	27.81	21.74	33.01
26년 - 30년 이하	평균	52.40	52.60	42.92	36.46	58.23	40.21
	표준편차	24.51	23.83	25.26	27.33	29.24	30.28
31년 이상	평균	52.68	43.41	38.54	31.71	48.78	38.05
	표준편차	22.59	24.56	29.88	26.54	28.91	28.19
합계	평균	47.19	47.67	41.50	35.55	57.45	48.55
	표준편차	24.94	24.71	27.12	25.78	27.84	30.73

<표 계속>

구분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 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 능력	사명감
5년 이하	평균	44.71	51.29	48.29	46.29	49.14	58.29
	표준편차	29.33	33.33	30.15	31.26	32.75	35.69
6년 - 10년 이하	평균	60.31	65.12	63.36	52.50	57.45	71.79
	표준편차	21.04	24.11	24.18	26.94	25.51	26.08
11년 - 15년 이하	평균	55.97	60.32	48.87	47.42	53.55	72.58
	표준편차	31.10	26.39	29.26	27.93	28.93	30.76
16년 - 20년 이하	평균	55.43	56.40	54.14	49.14	50.60	62.67
	표준편차	28.81	28.61	29.44	28.90	29.86	32.18
21년 - 25년 이하	평균	53.14	58.00	52.00	50.86	51.14	65.09
	표준편차	28.05	22.86	27.10	28.32	27.09	31.01
26년 - 30년 이하	평균	48.02	51.56	48.54	42.71	45.31	64.79
	표준편차	29.33	30.86	30.94	28.79	33.78	33.13
31년 이상	평균	45.00	47.07	42.32	37.56	40.61	54.88
	표준편차	29.92	29.37	27.07	28.18	30.95	32.18
합계	평균	51.92	55.54	51.35	46.60	49.51	64.06
	표준편차	28.54	28.53	28.82	28.73	30.19	31.89

연령에 따른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능력을 살펴보면 아래 <표 II-110>와 같다. 30세 미만은 '정보능력'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연령대인 30세 - 40세 미만, 40세 - 50세 미만, 50세 - 60세 미만, 60세 이상은 '사명감'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0> 연령별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능력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기업가 정신
30세 미만	평균	39.58	45.00	46.25	36.25	50.42	55.08	52.00
	표준편차	29.73	17.32	23.85	27.89	32.65	29.53	24.44
30세 - 40세 미만	평균	47.86	54.29	44.76	40.95	67.62	64.76	58.10
	표준편차	24.63	24.41	27.32	26.44	22.78	25.42	28.91
40세 - 50세 미만	평균	49.80	50.56	45.05	38.18	63.79	61.41	53.69
	표준편차	25.28	24.33	26.89	25.25	24.43	26.35	31.58
50세 - 60세 미만	평균	47.69	47.89	39.34	34.50	53.39	51.98	46.07
	표준편차	23.67	24.31	26.97	25.64	28.59	29.29	30.36
60세 이상	평균	40.68	36.35	35.68	28.65	50.27	43.78	36.35
	표준편차	26.36	26.74	28.72	26.37	31.05	30.22	29.02
합계	평균	47.19	47.67	41.50	35.55	57.45	55.21	48.55
	표준편차	24.94	24.71	27.12	25.78	27.84	28.71	30.73

구분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 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 능력	사명감
30세 미만	평균	46.92	67.92	54.67	72.50	59.42	72.08
	표준편차	26.62	24.81	27.42	25.62	30.66	29.03
30세 - 40세 미만	평균	65.24	65.71	60.95	55.24	60.95	79.52
	표준편차	19.39	25.80	17.29	27.31	25.08	19.86
40세 - 50세 미만	평균	54.24	56.92	52.93	48.64	49.34	67.32
	표준편차	27.69	27.27	29.48	28.63	29.54	31.33
50세 - 60세 미만	평균	51.24	55.11	50.58	43.47	49.30	62.05
	표준편차	28.71	28.63	29.22	27.74	30.58	32.19
60세 이상	평균	42.03	43.46	43.11	38.11	40.95	50.54
	표준편차	32.39	30.86	30.35	28.75	31.61	34.15
합계	평균	51.92	55.54	51.35	46.60	49.51	64.06
	표준편차	28.54	28.53	28.81	28.72	30.18	31.88

주작목별로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능력은 벼농사와 밭농사는 '사명감'과 '인간관계능력'이 가장 높았고 채소류는 '사명감'과 '정보능력', 과수, 시설재배, 축산업은 '사명감'과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화훼는 '사명감'과 '인간관계능력', 농산물가공은 '사명감'과 '조직이해능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기타를 제외한 벼농사, 밭농사, 채소류, 과수, 화훼, 시설재배, 축산업, 농산물가공에서 모두 사명감이 가장 높았다(<표 II-111> 참고).

<표 II-111> 주작목별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능력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기업가정신
벼농사	평균	48.26	49.53	39.90	33.58	55.84	42.16
	표준편차	25.83	25.22	26.62	26.45	28.39	30.02
밭농사	평균	42.86	44.57	36.86	33.43	56.57	42.00
	표준편차	23.98	28.34	27.94	28.79	30.86	31.04
채소류	평균	42.50	52.50	50.0	32.50	45.00	55.00
	표준편차	22.17	5.00	24.49	23.62	25.16	10.00
과수	평균	45.22	43.48	41.30	35.22	55.76	48.48
	표준편차	22.77	22.53	27.85	24.19	26.74	26.83
화훼	평균	49.57	53.91	45.87	43.70	63.70	59.57
	표준편차	32.01	25.89	27.57	25.32	30.83	30.07
시설재배	평균	57.41	50.74	51.30	36.67	64.44	61.11
	표준편차	20.11	21.11	27.01	21.48	22.07	29.52
축산업	평균	45.58	48.37	43.37	38.72	60.12	58.47
	표준편차	24.79	24.97	27.76	27.84	26.10	31.74
농산물가공	평균	35.00	22.50	22.50	30.00	45.00	35.00
	표준편차	5.774	20.61	22.17	28.28	36.96	41.23
기타	평균	43.08	43.85	35.38	32.31	50.77	36.92
	표준편차	26.89	24.33	23.67	22.78	29.85	33.51
합계	평균	47.19	47.67	41.50	35.55	57.45	48.55
	표준편차	24.93	24.70	27.12	25.78	27.84	30.73

구분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사명감
벼농사	평균	50.58	53.37	47.05	43.05	60.03
	표준편차	30.62	28.76	29.05	29.74	33.44
밭농사	평균	46.71	49.66	50.00	47.86	62.00
	표준편차	30.70	32.25	33.51	29.43	35.38
채소류	평균	37.50	60.00	57.50	67.50	70.00
	표준편차	15.00	11.54	15.00	20.61	9.57
과수	평균	53.59	54.74	53.70	44.13	61.52
	표준편차	27.37	29.09	27.27	26.38	26.99
화훼	평균	54.78	60.00	61.74	53.48	70.87
	표준편차	27.44	28.92	28.70	27.07	27.46
시설재배	평균	58.89	66.48	59.81	57.04	67.78
	표준편차	22.58	20.08	30.58	22.84	31.25
축산업	평균	57.51	60.35	55.02	50.93	78.49
	표준편차	26.22	27.56	23.32	30.45	26.19
농산물가공	평균	32.50	32.50	27.50	22.50	52.50
	표준편차	23.62	25.00	32.01	20.61	49.91
기타	평균	42.31	49.23	35.38	30.77	42.31
	표준편차	32.69	31.48	24.36	28.42	30.17
합계	평균	51.92	55.54	51.35	46.60	64.06
	표준편차	28.54	28.53	28.81	28.72	31.88

(10) 현재 농업기술능력

현재 농업기술능력을 살펴보면, 사명감이 66.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능력이 63.45, 농업기술이 63.43, 의사소통능력이 63.45,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이 60.48, 경영능력이 60.41, 문제해결 능력이 58.65, 자원활용능력이 56.68, 기업가 정신이 56.31, 조직이해능력이 56.00, 정보능력이 55.11 등으로 나타났다(<표 II-112> 참고).

<표 II-112> 현재 농업기술능력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기업가 정신
평균	63.43	60.41	54.79	47.27	63.45	61.92	56.31
표준편차	25.01	25.88	28.78	28.78	28.44	34.30	30.85
응답자수	290	290	290	290	290	290	290
구분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 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 능력	사명감	기타능력
평균	58.65	60.48	56.68	55.11	56.00	66.28	0.0
표준편차	29.23	28.37	31.33	29.06	29.76	30.83	0.0
응답자수	290	290	290	290	290	290	0.0

현재 농업기술능력을 영농경력에 따라 살펴보면, 5년 이하는 '사명감'과 '자원활용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6년 - 10년 이하는 '사명감'과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이 11년 - 15년 이하는 '사명감'과 '농업 기술'이 16년 - 20년 이하는 '의사소통능력'과 '인간관계능력'이 21년 - 25년 이하는 '사명감'과 '농업 기술'이 26년 - 30년 이하는 '인간관계능력'과 '사명감'이 30년 이상은 '농업기술'과 '경영능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13> 참고).

<표 II-113> 영농경력별 현재 농업기술능력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기업가 정신
5년 이하	평균	49.71	49.14	48.57	38.14	57.43	55.71	50.86
	표준편차	29.17	26.52	27.66	30.44	32.00	31.46	34.92
6년 - 10년 이하	평균	60.95	59.12	56.62	49.60	63.62	63.60	62.43
	표준편차	23.53	24.10	30.03	29.83	27.19	27.15	30.00
11년 - 15년 이하	평균	64.52	57.26	54.35	43.23	63.55	60.32	59.03
	표준편차	24.09	27.68	30.95	31.76	34.69	32.91	34.28
16년 - 20년 이하	평균	66.81	65.78	61.55	54.66	67.76	69.57	58.53
	표준편차	22.68	23.01	26.80	23.63	25.06	47.73	28.97
21년 - 25년 이하	평균	70.29	66.86	58.86	55.14	65.14	63.43	62.83
	표준편차	21.79	27.20	27.20	28.73	29.14	29.40	28.91
26년 - 30년 이하	평균	64.79	62.29	50.83	44.79	66.77	61.88	53.54
	표준편차	23.33	24.16	28.27	27.77	27.93	30.06	29.11
31년 이상	평균	64.63	58.41	50.12	41.46	56.90	54.63	47.20
	표준편차	27.93	28.161	30.62	29.28	25.65	29.41	30.33
합계	평균	63.43	60.41	54.79	47.27	63.45	61.92	56.31
	표준편차	25.00	25.87	28.77	28.78	28.43	34.29	30.84

구분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 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 능력	사명감
5년 이하	평균	50.29	57.57	58.29	56.86	55.43	65.40
	표준편차	31.48	32.116	34.576	32.609	33.108	37.180
6년 - 10년 이하	평균	59.86	65.90	59.60	61.64	57.98	69.17
	표준편차	27.24	26.349	31.927	27.153	27.653	25.991
11년 - 15년 이하	평균	56.45	58.55	52.58	52.58	51.94	74.33
	표준편차	35.64	32.073	32.452	31.168	33.108	30.021
16년 - 20년 이하	평균	61.29	64.74	62.84	58.19	61.64	65.86
	표준편차	27.52	27.071	29.456	28.295	27.054	29.929
21년 - 25년 이하	평균	60.86	63.77	55.23	55.63	57.43	70.29
	표준편차	28.11	24.594	30.269	28.149	29.139	30.340
26년 - 30년 이하	평균	61.88	58.75	57.19	51.04	54.58	65.83
	표준편차	26.88	27.877	30.907	28.170	31.738	29.161
31년 이상	평균	56.83	52.07	47.32	48.78	50.00	55.85
	표준편차	30.34	28.787	30.498	28.978	28.460	32.861
합계	평균	58.65	60.48	56.68	55.11	56.00	66.28
	표준편차	29.23	28.365	31.326	29.062	29.763	30.828

현재 농업기술능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은 '정보능력'과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이 가장 높았고 30세 - 40세 미만은 '사명감'과 '농업기술'이 40세 - 50세 미만은 '사명감'과 '의사소통능력'이 50세 - 60세 미만 '농업기술'과 '사명감'이 60세 이상은 '사명감'과 '인간관계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II-114> 참고).

<표 II-114> 연령별 현재 농업기술능력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기업가 정신
30세 미만	평균	46.25	45.25	46.08	30.67	64.33	64.25	57.75
	표준편차	32.83	29.29	34.14	36.49	28.66	26.56	28.74
30세 - 40세 미만	평균	69.29	65.00	64.29	52.86	69.05	67.62	60.48
	표준편차	19.76	14.83	28.38	26.67	27.18	27.55	26.54
40세 - 50세 미만	평균	67.42	66.11	60.10	52.63	67.78	68.38	63.17
	표준편차	20.03	23.06	25.57	26.63	27.03	39.91	28.39
50세 - 60세 미만	평균	63.02	57.48	51.28	44.63	60.62	58.06	53.67
	표준편차	25.99	27.93	28.98	29.33	29.23	31.17	32.55
60세 이상	평균	56.35	57.03	49.46	43.78	57.65	53.24	43.78
	표준편차	30.24	26.88	32.20	28.70	29.30	31.09	30.67
합계	평균	63.43	60.41	54.79	47.27	63.45	61.92	56.31
	표준편차	25.00	25.87	28.77	28.78	28.43	34.29	30.84

구분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 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 능력	사명감
30세 미만	평균	57.00	70.08	58.75	74.75	65.42	64.58
	표준편차	34.41	27.17	33.24	27.79	31.44	37.74
30세 - 40세 미만	평균	61.67	68.10	57.38	68.10	64.52	77.14
	표준편차	28.95	25.81	28.09	22.49	25.29	23.90
40세 - 50세 미만	평균	61.21	63.45	61.90	59.57	60.71	72.85
	표준편차	26.15	26.30	28.15	26.30	26.96	26.94
50세 - 60세 미만	평균	58.14	57.54	53.79	50.22	52.31	60.99
	표준편차	31.14	30.37	33.20	30.83	31.82	32.15
60세 이상	평균	52.30	54.73	51.08	45.41	47.57	60.54
	표준편차	29.50	27.43	33.64	27.42	29.09	33.66
합계	평균	58.65	60.48	56.68	55.11	56.00	66.28
	표준편차	29.23	28.36	31.32	29.06	29.76	30.82

주작목별로 살펴보면, 벼농사는 '경영능력'과 '인간관계능력'이 가장 높았고 밭농사는 '사명감'과 '인간관계능력'이 채소류는 '정보능력'과 '사명감'이 과수는 '의사소통능력'과 '사명감'이 화훼는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이 시설재배는 '사명감'과 '농업기술'이 축산업은 '사명감'과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이 농산물가공 '사명감'과 '농업기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II-115> 참고).

<표 II-115> 주작목별 현재 농업기술능력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기업가정신
벼농사	평균	65.16	62.42	51.84	43.79	63.29	60.68	52.11
	표준편차	26.50	25.63	28.79	28.92	27.53	31.05	30.31
밭농사	평균	58.71	58.14	51.00	47.00	63.86	64.14	57.57
	표준편차	24.65	23.26	28.07	28.60	28.44	26.63	30.39
채소류	평균	52.50	55.00	62.50	30.00	57.50	57.50	62.50
	표준편차	20.61	17.32	15.00	29.43	18.93	15.00	15.00
과수	평균	63.70	60.87	59.13	51.63	64.02	67.83	58.26
	표준편차	25.24	24.84	26.83	26.50	27.92	52.27	31.78
화훼	평균	73.04	66.74	63.91	54.78	66.09	60.43	56.96
	표준편차	25.61	28.42	30.71	31.02	32.85	34.17	34.30
시설재배	평균	69.44	62.96	60.93	51.48	65.56	62.22	62.19
	표준편차	15.58	22.15	25.19	24.29	23.91	25.47	27.01
축산업	평균	60.58	58.79	55.42	50.07	64.47	63.40	62.02
	표준편차	23.53	28.74	31.90	31.51	30.39	28.41	29.56
농산물가공	평균	52.50	37.50	37.50	23.75	51.25	40.00	42.50
	표준편차	17.07	33.04	38.62	27.50	43.66	31.62	50.58
기타	평균	49.23	47.69	43.08	39.23	54.62	49.23	46.92
	표준편차	30.40	28.91	26.89	28.71	33.57	36.39	35.91
합계	평균	63.43	60.41	54.79	47.27	63.45	61.92	56.31
	표준편차	25.00	25.87	28.77	28.78	28.43	34.29	30.84

구분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사명감
벼농사	평균	59.37	58.79	53.05	53.32	52.53	61.68
	표준편차	29.81	28.83	29.78	27.53	28.50	31.48
밭농사	평균	58.86	59.86	63.14	56.29	62.14	72.94
	표준편차	28.44	29.91	30.24	30.22	30.03	28.23
채소류	평균	40.00	65.00	58.75	73.75	62.50	72.50
	표준편차	20.00	10.00	23.93	22.86	15.00	18.93
과수	평균	60.65	61.09	61.85	54.13	57.17	65.87
	표준편차	28.15	27.20	29.23	29.61	27.21	28.40
화훼	평균	54.78	57.39	56.52	50.87	55.22	63.04
	표준편차	31.46	32.92	38.91	35.28	34.09	36.11
시설재배	평균	64.07	63.59	64.37	59.70	65.19	71.85
	표준편차	24.37	28.61	31.16	24.67	23.91	24.34
축산업	평균	59.51	65.30	55.30	63.93	57.79	74.07
	표준편차	30.02	25.38	32.22	27.29	31.62	29.32
농산물가공	평균	42.50	46.25	37.50	27.50	42.50	59.75
	표준편차	35.00	42.69	43.49	34.03	49.24	48.71
기타	평균	49.23	58.46	41.54	40.00	39.23	52.31
	표준편차	35.69	28.82	30.23	29.72	36.16	40.24
합계	평균	58.65	60.48	56.68	55.11	56.00	66.28
	표준편차	29.23	28.36	31.32	29.06	29.76	30.82

위에서 살펴본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기술능력과 현재 농업기술능력의 차이를 구하여 농업기술능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116>와 같다. 모든 능력이 증가하였지만 가장 많이 증가한 능력은 '농업기술'로 16.24가 증가하였고 그 다음이 '판매능력'이 13.29, '경영능력'이 12.76, '홍보능력'이 11.72, '정보능력'이 8.51, '기업가 정신'이 7.76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6> 농업기술능력의 변화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기업가정신
현재	63.43	60.41	54.79	47.27	63.45	61.92	56.31
시작 시	47.19	47.67	41.50	35.55	57.45	55.21	48.55
차이	16.24	12.76	13.29	11.72	6.00	6.71	7.76

구분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사명감	기타능력
현재	58.65	60.48	56.68	55.11	56.00	66.28	0.0
시작 시	51.92	55.54	51.35	46.60	49.51	64.06	0.0
차이	6.73	4.94	5.33	8.51	6.49	2.22	0.0

(11) 농업기술능력의 상대적 중요도

농업기술능력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물었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농업기술'로 61.28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영능력'이 57.29, '판매능력'이 56.00, '사명감'이 55.00,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이 53.59, '인간관계능력'이 52.56, '기업가 정신'이 50.31, '정보능력'이 50.04, '문제해결능력'이 49.40, '홍보능력'이 49.14 등으로 중요도가 평정되었다.

<표 II-117> 농업기술능력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기업가정신
평균	61.28	57.29	56.00	49.14	52.56	48.18	50.31
표준편차	49.83	33.57	35.57	37.07	37.50	37.22	39.75
응답자수	290	290	290	290	290	290	290

구분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사명감	기타능력
평균	49.40	53.59	46.78	50.04	48.12	55.00	0.0
표준편차	38.43	51.26	38.42	38.29	53.67	40.68	0.0
응답자수	290	290	290	290	290	290	0.0

영농경력에 따른 농업기술능력의 상대적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5년 이하는 '조직이해능력'과 '농업기술'을 6년 - 10년 이하는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과 '농업기술'을 11년 - 15년 이하는 '사명감'과 '판매능력'을 16년 - 20년 이하, 21년 - 25년 이하, 26년 - 30년 이하, 31년 이상은 '경영능력'과 '농업기술'을 중요하게 꼽았다.

<표 II-118> 영농경력별 농업기술능력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기업가정신
5년 이하	평균	61.71	55.00	56.43	52.03	58.03	53.89	54.00
	표준편차	34.93	36.48	36.57	40.00	41.79	42.07	43.53
6년 - 10년 이하	평균	56.83	54.86	53.33	46.95	47.83	45.40	49.62
	표준편차	33.58	34.06	35.72	35.17	37.09	36.66	40.92
11년 - 15년 이하	평균	58.39	58.71	63.55	58.39	60.00	55.16	64.52
	표준편차	30.23	34.22	36.56	38.82	39.49	38.28	38.54
16년 - 20년 이하	평균	59.74	60.43	59.69	53.95	55.62	52.03	52.98
	표준편차	32.77	32.79	33.47	35.10	36.47	36.48	37.20
21년 - 26년 이하	평균	65.83	62.57	61.63	54.17	55.20	55.00	50.74
	표준편차	32.37	32.48	33.78	36.14	36.31	33.66	37.89
26년 - 30년 이하	평균	54.69	48.65	46.29	32.75	43.21	36.08	38.69
	표준편차	34.87	35.50	35.31	33.27	35.23	36.90	40.09
31년 이상	평균	73.66	61.83	54.02	50.00	51.46	43.78	46.59
	표준편차	104.65	29.51	37.96	39.29	37.38	35.12	39.18
합계	평균	61.28	57.29	56.00	49.14	52.56	48.18	50.31
	표준편차	49.83	33.57	35.56	37.06	37.49	37.22	39.74

구분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사명감
5년 이하	평균	54.20	53.57	49.80	58.06	67.40	58.34
	표준편차	42.03	42.71	42.63	43.07	117.79	45.39
6년 - 10년 이하	평균	44.71	65.12	44.12	50.60	42.69	51.02
	표준편차	37.87	97.21	38.05	36.67	36.82	41.64
11년 - 15년 이하	평균	55.39	61.06	55.97	56.29	52.90	69.84
	표준편차	41.40	38.34	39.25	38.90	37.27	39.67
16년 - 20년 이하	평균	54.09	54.09	46.21	51.24	50.00	56.90
	표준편차	36.06	37.84	36.09	37.07	36.48	38.55
21년 - 25년 이하	평균	56.20	57.94	54.11	54.77	47.94	55.43
	표준편차	37.61	37.08	37.96	39.01	35.93	39.87
26년 - 30년 이하	평균	38.37	42.12	37.44	38.38	37.23	47.54
	표준편차	37.56	34.94	37.66	35.12	38.36	40.02
31년 이상	평균	46.05	45.17	45.49	45.85	43.85	50.66
	표준편차	37.38	39.59	38.67	38.84	36.41	40.09
합계	평균	49.40	53.59	46.78	50.04	48.12	55.00
	표준편차	38.42	51.25	38.41	38.28	53.67	40.68

작목별로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벼농사, 과수는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중시하였고 밭농사, 농산물가공은 '농업기술'과 '사명감', 채소류는 '농업기술',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사명감'을 화훼는 '농업기술'과 '판매능력'을 시설재배는 '경영능력', '판매능력'을 축산업은 '농업기술'과 '자기개발 및 관리능력'을 중요시하였다(<표 II-119> 참고).

<표 II-119> 영농경력별 농업기술능력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기업가 정신
벼농사	평균	66.05	56.74	53.31	47.08	50.94	42.69	48.46
	표준편차	73.43	33.50	37.01	37.82	36.82	36.59	39.60
밭농사	평균	65.00	62.43	61.71	55.29	61.74	57.69	55.43
	표준편차	32.69	32.23	33.97	36.23	37.18	37.09	40.26
채소류	평균	62.50	60.00	55.00	47.50	60.00	62.50	60.00
	표준편차	47.87	48.99	42.03	45.73	45.46	47.87	45.46
과수	평균	57.50	59.13	59.46	53.70	53.78	52.70	54.57
	표준편차	34.12	34.42	34.86	34.03	35.45	35.38	39.22
화훼	평균	60.22	53.48	56.30	52.39	47.39	45.65	48.70
	표준편차	31.56	33.38	35.29	39.36	37.44	39.86	39.69
시설재배	평균	47.19	48.52	43.89	35.81	34.81	33.44	41.30
	표준편차	33.10	36.81	34.28	34.47	34.73	35.07	41.15
축산업	평균	61.56	59.51	58.65	51.05	59.49	57.93	53.74
	표준편차	30.46	29.01	33.96	36.91	39.49	34.61	37.62
농산물가공	평균	67.50	52.50	45.00	38.75	50.00	52.50	50.00
	표준편차	29.86	49.91	47.95	46.61	43.97	45.73	57.73
기타	평균	57.69	59.23	67.69	50.77	56.92	43.85	42.31
	표준편차	34.19	38.61	35.62	43.29	41.30	43.50	45.12
합계	평균	61.28	57.29	56.00	49.14	52.56	48.18	50.31
	표준편차	49.83	33.57	35.56	37.06	37.49	37.22	39.74

구분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 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 능력	사명감
벼농사	평균	44.74	46.32	43.02	45.31	41.00	53.53
	표준편차	39.43	39.13	38.02	39.28	36.74	39.57
밭농사	평균	58.71	58.71	59.29	59.71	78.89	64.71
	표준편차	36.10	39.35	38.99	37.00	114.48	40.89
채소류	평균	62.50	60.00	52.50	62.50	53.75	62.50
	표준편차	47.87	48.99	49.91	47.87	42.30	47.87
과수	평균	55.65	55.87	54.24	55.11	49.74	56.35
	표준편차	35.69	35.53	34.49	36.68	34.92	38.61
화훼	평균	48.04	48.48	46.17	45.65	39.22	44.83
	표준편차	38.45	37.94	39.63	34.97	36.69	41.71
시설재배	평균	34.96	34.44	29.22	35.93	32.78	31.70
	표준편차	36.97	37.21	37.28	36.79	38.69	40.54
축산업	평균	54.70	74.23	49.05	56.14	53.23	66.74
	표준편차	36.45	93.71	37.34	35.30	35.59	38.45
농산물가공	평균	57.50	55.00	45.00	47.50	37.50	82.50
	표준편차	50.58	52.59	52.59	55.00	47.87	28.72
기타	평균	44.62	63.08	43.08	54.62	43.85	51.54
	표준편차	46.11	38.16	42.89	46.65	43.69	45.43
합계	평균	49.40	53.59	46.78	50.04	48.12	55.00
	표준편차	38.42	51.25	38.41	38.28	53.67	40.68

(12) 영농을 포기하려고 한 경험

영농을 포기하려고 한 경험을 물었을 때, 62.8%가 '있었다'라고 응답하였고 32.1%가 '없었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처럼 과반수 이상이 영농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II-120> 참고).

<표 II-120> 영농을 포기하려고 한 경험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15	5.2
없었다	93	32.1
있었다	182	62.8
계	290	100.0

영농을 포기하려고 한 횟수에 대해서는 '2번'이 24.2%로 가장 많았고 '3번'이 17.6%, '1번'이 12.6%, '5번'이 11.0%, '10번'이 10.4%, '4번'이 6.0%, '100번'이 2.7%, '수시로'가 2.2% 등이었다(<표 II-121> 참고).

<표 II-121> 영농을 포기하려고 한 횟수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10	5.5
1	23	12.6
2	44	24.2
3	32	17.6
4	11	6.0
5	20	11.0
7	4	2.2
8	1	0.5
10	19	10.4
15	3	1.6
20	3	1.6
50	3	1.6
100	5	2.7
수시로	4	2.2
합계	182	100.0

영농을 포기하려고 한 이유는 '소득의 불안정'이 39.0%로 가장 많았고 '전망의 불투명'이 28.0%, '부채증가'가 10.4%, '자녀의 교육'이 7.7%, '가족의 반대'가 3.8% '기술의 부족'이 2.2% 등으로 나타났다(<표 II-122> 참고).

<표 II-122> 영농을 포기하려고 한 이유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1	0.5
전망의 불투명	51	28.0
소득의 불안정	71	39.0
가족의 반대	7	3.8
자녀의 교육	14	7.7
기술의 부족	4	2.2
취업기회	2	1.1
발전가능성	5	2.7
부채증가	19	10.4
판매처	3	1.6
기타	5	2.7
합계	182	100.0

영농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는 31.9%가 '다른 길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는 '전직할 자신이 없어서'와 '도시에 비해 소득이 낮지 않아서'가 20.9%, '사명감 때문에'가 9.9%, '적성에 맞아서'가 7.1%, '전망이 있어서'가 3.3% 등이었다(<표 II-123> 참고).

<표 II-123> 영농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1	0.5
다른 길이 없어서	58	31.9
전직할 자신이 없어서	38	20.9
적성에 맞아서	13	7.1
사명감 때문에	18	9.9
농촌이 좋아서	38	20.9
도시에 비해 소득이 낮지 않아서	3	1.6
전망이 있어서	6	3.3
기타	7	3.8
합계	182	100.0

(13) 자녀에게 영농을 권장할 의사

자녀에게 영농을 권장할 의사를 물었을 때에는 '전혀 없다'가 27.2%, '없는 편이다'와 '있는 편이다'가 24.8%, '그저 그렇다'가 13.4%, '꼭 권할 것이다'가 4.8%로 응답하였다(<표 II-124> 참고).

<표 II-124> 자녀에게 영능을 권장할 의사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14	4.8
전혀 없다	79	27.2
없는 편이다	72	24.8
그저 그렇다	39	13.4
있는 편이다	72	24.8
꼭 권할 것이다	14	4.8
합계	290	100.0

영능경력에 따른 영능을 자녀에게 권장할 의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5년 미만, 6년 - 10년 미만은 '있는 편이다'가 가장 많았고 11년 - 15년 미만, 16년 - 20년 미만, 21년 - 25년 미만은 '전혀 없다'가 26년 - 30년 미만은 '없는 편이다'가 31년 이상은 '전혀 없다'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표 II-125> 참고).

<표 II-125> 영능경력별 영능을 자녀에게 권장할 의사

구분	무응답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있는 편이다	꼭 권할 것이다	합계
5년 이하	4 11.4%	4 11.4%	10 28.6%	3 8.6%	11 31.4%	3 8.6%	35 100.0%
6년 - 10년 이하	1 2.4%	13 31.0%	5 11.9%	6 14.3%	15 35.7%	2 4.8%	42 100.0%
11년 - 15년 이하	0 0.0%	11 35.5%	4 12.9%	8 25.8%	6 19.4%	2 6.5%	31 100.0%
16년 - 20년 이하	3 5.2%	13 22.4%	14 24.1%	9 15.5%	17 29.3%	2 3.4%	58 100.0%
21년 - 25년 이하	1 2.9%	10 28.6%	8 22.9%	5 14.3%	9 25.7%	2 5.7%	35 100.0%
26년 - 30년 이하	3 6.3%	13 27.1%	18 37.5%	1 2.1%	11 22.9%	2 4.2%	48 100.0%
31년 이상	2 4.9%	15 36.6%	13 31.7%	7 17.1%	3 7.3%	1 2.4%	41 100.0%
합계	14 4.8%	79 27.2%	72 24.8%	39 13.4%	72 24.8%	14 4.8%	290 100.0%

$\chi^2=40.437$, $df=30$, $p<.05$

영능을 자녀에게 권장할 의사는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30세 미만은 '있는 편이다'가 가장 많았고 30세 - 40세 미만과 40세 - 50세 미만은 '전혀 없다'가 가장 많았으며, 50세 - 60세 미만은 '없는 편이다'가 60세 이상은 '전혀 없다'가 가장 많은 응답이었다(<표 II-126> 참고).

<표 II-126> 연령별 영농을 자녀에게 권장할 의사

구분	무응답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있는 편이다	꼭 권할 것이다	합계
30세 미만	0 0.0%	1 8.3%	4 33.3%	1 8.3%	5 41.7%	1 8.3%	12 100.0%
30세 - 40세 미만	0 0.0%	9 42.9%	1 4.8%	5 23.8%	3 14.3%	3 14.3%	21 100.0%
40세 - 50세 미만	1 1.0%	32 32.3%	18 18.2%	16 16.2%	28 28.3%	4 4.0%	99 100.0%
50세 - 60세 미만	9 7.4%	26 21.5%	39 32.2%	11 9.1%	31 25.6%	5 4.1%	121 100.0%
60세 이상	4 10.8%	11 29.7%	10 27.0%	6 16.2%	5 13.5%	1 2.7%	37 100.0%
합계	14 4.8%	79 27.2%	72 24.8%	39 13.4%	72 24.8%	14 4.8%	290 100.0%

$\chi^2=37.128$, $df=20$, $p<.05$

주작목에 따른 영농을 자녀에게 권장할 의사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벼농사, 과수, 화훼, 농산물가공은 ‘전혀 없다’가 가장 많은 응답이었고 밭농사는 ‘없는 편이다’가 채소류는 ‘있는 편이다’가 시설재배는 ‘없는 편이다’와 ‘있는 편이다’가 축산업은 ‘있는 편이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II-127> 참고).

<표 II-127> 주작목별 영농을 자녀에게 권장할 의사

구분	무응답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있는 편이다	꼭 권할 것이다	합계
벼농사	6 6.3%	33 34.7%	22 23.2%	13 13.7%	16 16.8%	5 5.3%	95 100.0%
밭농사	4 11.4%	6 17.1%	13 37.1%	2 5.7%	10 28.6%	0 0.0%	35 100.0%
채소류	0 0.0%	1 25.0%	1 25.0%	0 0.0%	2 50.0%	0 0.0%	4 100.0%
과수	2 4.3%	9 19.6%	13 28.3%	6 13.0%	15 32.6%	1 2.2%	46 100.0%
화훼	0 0.0%	8 34.8%	5 21.7%	3 13.0%	6 26.1%	1 4.3%	23 100.0%
시설재배	1 3.7%	6 22.2%	8 29.6%	2 7.4%	8 29.6%	2 7.4%	27 100.0%
축산업	0 0.0%	9 20.9%	9 20.9%	9 20.9%	12 27.9%	4 9.3%	43 100.0%
농산물가공	0 0.0%	2 50.0%	0 0.0%	1 25.0%	1 25.0%	0 0.0%	4 100.0%
기타	1 7.7%	5 38.5%	1 7.7%	3 23.1%	2 15.4%	1 7.7%	13 100.0%
합계	14 4.8%	79 27.2%	72 24.8%	39 13.4%	72 24.8%	14 4.8%	290 100.0%

$\chi^2=36.840$, $df=40$, $p<.05$

(14) 기술수준, 경영수준, 판매수준, 수익수준의 변화

기술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영농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기술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영농경력 5년 이하가 가장 빨랐고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표 II-128> 참고).

<표 II-128> 영농경력별 기술수준의 변화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기술수준이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40	2.14	4.470**
	6년 - 10년 이하	42	3.02	2.43	
	11년 - 15년이하	31	4.52	3.30	
	16년 - 20년 이하	58	4.19	4.42	
	21년 - 25년 이하	35	5.11	5.24	
	26년 - 30년 이하	48	5.56	5.22	
	31년 이상	41	5.61	6.28	
	합계	290	4.26	4.62	
기술수준이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43	2.57	4.143**
	6년 - 10년 이하	42	2.74	3.72	
	11년 - 15년이하	31	2.61	2.95	
	16년 - 20년 이하	58	4.76	5.79	
	21년 - 25년 이하	35	4.63	4.87	
	26년 - 30년 이하	48	5.96	6.06	
	31년 이상	41	4.54	5.77	
	합계	290	3.99	5.07	
기술수준이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26	2.89	3.076*
	6년 - 10년 이하	42	2.40	3.00	
	11년 - 15년이하	31	2.84	3.21	
	16년 - 20년 이하	58	4.31	5.87	
	21년 - 25년 이하	35	5.17	5.97	
	26년 - 30년 이하	48	5.25	6.37	
	31년 이상	41	4.12	6.97	
	합계	290	3.74	5.43	
기술수준이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69	5.29	3.670*
	6년 - 10년 이하	42	2.19	3.04	
	11년 - 15년이하	31	2.81	3.72	
	16년 - 20년 이하	58	4.93	6.64	
	21년 - 25년 이하	35	5.43	6.25	
	26년 - 30년 이하	48	5.98	7.07	
	31년 이상	41	3.17	5.24	
	합계	290	3.90	5.81	

경영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영농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경영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영농경력 5년 이하가 가장 빨랐고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반면, 전국 평균을 넘을 시기만은 영농경력 6년 - 10년 이하, 11년 - 15년 이하가 가장 빨랐다(<표 II-129> 참고).

<표 II-129> 영농경력별 경영수준의 변화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경영수준이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11	1.71	5.197*
	6년 - 10년 이하	42	2.24	2.57	
	11년 - 15년이하	31	3.00	3.22	
	16년 - 20년 이하	58	3.71	4.67	
	21년 - 25년 이하	35	4.91	5.41	
	26년 - 30년 이하	48	5.79	5.29	
	31년 이상	41	5.17	7.04	
	합계	290	3.80	4.89	
경영수준이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29	2.87	3.990*
	6년 - 10년 이하	42	2.24	2.68	
	11년 - 15년이하	31	1.65	2.77	
	16년 - 20년 이하	58	3.74	5.00	
	21년 - 25년 이하	35	4.63	5.76	
	26년 - 30년 이하	48	5.27	5.74	
	31년 이상	41	4.15	6.50	
	합계	290	3.42	4.98	
경영수준이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43	3.72	3.417*
	6년 - 10년 이하	42	1.95	2.81	
	11년 - 15년이하	31	1.97	2.91	
	16년 - 20년 이하	58	3.69	5.44	
	21년 - 25년 이하	35	4.74	5.51	
	26년 - 30년 이하	48	4.81	6.24	
	31년 이상	41	2.51	4.39	
	합계	290	3.13	4.86	
경영수준이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91	5.58	4.091*
	6년 - 10년 이하	42	1.81	2.63	
	11년 - 15년이하	31	1.81	2.82	
	16년 - 20년 이하	58	3.81	5.52	
	21년 - 25년 이하	35	5.74	6.65	
	26년 - 30년 이하	48	5.67	7.63	
	31년 이상	41	2.61	4.78	
	합계	290	3.45	5.64	

판매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영농경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판매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 전국평균을 넘은 시기는 영농경력 5년 이하가 가장 빨랐고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표 II-130> 참고).

<표 II-130> 영농경력별 판매수준의 변화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판매수준이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06	1.71	4.822**
	6년 - 10년 이하	42	2.38	3.76	
	11년 - 15년이하	31	2.65	2.91	
	16년 - 20년 이하	58	3.71	4.65	
	21년 - 25년 이하	35	5.46	5.82	
	26년 - 30년 이하	48	5.96	6.38	
	31년 이상	41	5.39	8.18	
	합계	290	3.90	5.49	
판매수준이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20	2.37	3.356*
	6년 - 10년 이하	42	1.74	2.40	
	11년 - 15년이하	31	1.90	3.14	
	16년 - 20년 이하	58	3.57	5.21	
	21년 - 25년 이하	35	5.00	5.35	
	26년 - 30년 이하	48	4.65	6.96	
	31년 이상	41	3.44	6.28	
	합계	290	3.17	5.13	
판매수준이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5.37	26.66	0.837
	6년 - 10년 이하	42	1.57	2.22	
	11년 - 15년이하	31	1.81	2.96	
	16년 - 20년 이하	58	3.55	5.28	
	21년 - 25년 이하	35	5.11	5.65	
	26년 - 30년 이하	48	4.48	6.91	
	31년 이상	41	2.61	4.41	
	합계	290	3.51	10.32	
판매수준이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63	4.15	3.551*
	6년 - 10년 이하	42	1.81	2.65	
	11년 - 15년이하	31	2.00	3.17	
	16년 - 20년 이하	58	3.66	5.50	
	21년 - 25년 이하	35	4.51	5.94	
	26년 - 30년 이하	48	5.88	8.12	
	31년 이상	41	3.24	5.02	
	합계	290	3.38	5.53	

수익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영농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수익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영농경력 5년 이하가 가장 빨랐고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반면, 전국 평균을 넘을 시기만은 영농경력 6년 - 10년 이하가 가장 빨랐다(<표 II-131> 참고).

<표 II-131> 영농경력별 수익수준의 변화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F
수익수준이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20	2.24	3.760*
	6년 - 10년 이하	42	1.95	2.92	
	11년 - 15년 이하	31	3.23	4.00	
	16년 - 20년 이하	58	4.33	5.19	
	21년 - 25년 이하	35	5.17	5.74	
	26년 - 30년 이하	48	5.63	7.18	
	31년 이상	41	5.73	9.49	
	합계	290	4.00	6.01	
수익수준이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60	3.28	3.138*
	6년 - 10년 이하	42	1.74	2.39	
	11년 - 15년 이하	31	1.48	2.42	
	16년 - 20년 이하	58	3.60	5.15	
	21년 - 25년 이하	35	4.34	5.38	
	26년 - 30년 이하	48	5.17	7.61	
	31년 이상	41	3.85	6.96	
	합계	290	3.25	5.41	
수익수준이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57	4.00	3.244*
	6년 - 10년 이하	42	1.95	2.79	
	11년 - 15년 이하	31	1.52	2.70	
	16년 - 20년 이하	58	3.76	5.51	
	21년 - 25년 이하	35	4.63	5.77	
	26년 - 30년 이하	48	5.29	7.86	
	31년 이상	41	2.63	5.62	
	합계	290	3.19	5.48	
수익수준이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	5년 이하	35	1.86	4.85	3.731*
	6년 - 10년 이하	42	1.43	2.76	
	11년 - 15년 이하	31	1.58	2.86	
	16년 - 20년 이하	58	4.10	5.87	
	21년 - 25년 이하	35	5.06	6.83	
	26년 - 30년 이하	48	6.06	8.56	
	31년 이상	41	3.41	6.85	
	합계	290	3.52	6.18	

기술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평균 4.26년이었고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3.99년,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3.74년,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3.90년이었다(<표 II-132> 참고).

<표 II-132> 연령별 기술수준의 변화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기술수준이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2.92	2.90	2.247
	30세 - 40세 미만	21	2.81	2.48	
	40세 - 50세 미만	99	5.20	4.83	
	50세 - 60세 미만	121	3.76	4.00	
	60세 이상	37	4.62	6.58	
	합계	290	4.26	4.62	
기술수준이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3.83	5.84	0.886
	30세 - 40세 미만	21	3.10	2.79	
	40세 - 50세 미만	99	4.74	5.65	
	50세 - 60세 미만	121	3.67	4.52	
	60세 이상	37	3.57	5.84	
	합계	290	3.99	5.07	
기술수준이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1.92	4.20	1.560
	30세 - 40세 미만	21	2.67	2.81	
	40세 - 50세 미만	99	4.73	5.85	
	50세 - 60세 미만	121	3.50	5.36	
	60세 이상	37	3.11	5.71	
	합계	290	3.74	5.43	
기술수준이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2.92	8.56	1.269
	30세 - 40세 미만	21	3.33	3.32	
	40세 - 50세 미만	99	4.94	6.24	
	50세 - 60세 미만	121	3.50	5.55	
	60세 이상	37	3.05	5.35	
	합계	290	3.90	5.81	

경영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평균 3.80년이었고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3.42년,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3.13년,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3.45년이었다(<표 II-133> 참고).

<표 II-133> 연령별 경영수준의 변화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경영수준이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2.75	3.01	1.229
	30세 - 40세 미만	21	2.24	2.56	
	40세 - 50세 미만	99	4.51	5.00	
	50세 - 60세 미만	121	3.64	4.91	
	60세 이상	37	3.70	5.81	
	합계	290	3.80	4.89	
경영수준이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2.75	4.45	0.701
	30세 - 40세 미만	21	2.38	3.13	
	40세 - 50세 미만	99	3.80	5.18	
	50세 - 60세 미만	121	3.60	5.12	
	60세 이상	37	2.62	4.98	
	합계	290	3.42	4.98	
경영수준이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2.58	5.66	1.143
	30세 - 40세 미만	21	2.05	3.02	
	40세 - 50세 미만	99	3.87	5.36	
	50세 - 60세 미만	121	3.01	4.71	
	60세 이상	37	2.32	4.44	
	합계	290	3.13	4.86	
경영수준이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2.83	8.57	0.784
	30세 - 40세 미만	21	2.52	3.31	
	40세 - 50세 미만	99	4.08	5.69	
	50세 - 60세 미만	121	3.46	5.89	
	60세 이상	37	2.43	4.56	
	합계	290	3.45	5.64	

판매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다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평균 3.90년이었고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3.17년,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3.38년이었다.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30세 미만이 가장 빨랐다(<표 II-134> 참고).

<표 II-134> 연령별 판매수준의 변화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판매수준이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3.00	5.60	1.511
	30세 - 40세 미만	21	1.90	2.14	
	40세 - 50세 미만	99	4.80	5.42	
	50세 - 60세 미만	121	3.70	5.64	
	60세 이상	37	3.59	6.24	
	합계	290	3.90	5.49	
판매수준이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1.75	2.98	1.266
	30세 - 40세 미만	21	2.33	3.49	
	40세 - 50세 미만	99	4.00	5.45	
	50세 - 60세 미만	121	3.02	5.35	
	60세 이상	37	2.38	4.63	
	합계	290	3.17	5.13	
판매수준이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14.25	45.31	3.826*
	30세 - 40세 미만	21	2.19	3.18	
	40세 - 50세 미만	99	3.88	5.32	
	50세 - 60세 미만	121	2.80	5.07	
	60세 이상	37	2.08	4.04	
	합계	290	3.51	10.32	
판매수준이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2.50	5.83	0.985
	30세 - 40세 미만	21	2.62	3.57	
	40세 - 50세 미만	99	3.82	5.32	
	50세 - 60세 미만	121	3.66	6.31	
	60세 이상	37	2.00	3.82	
	합계	290	3.38	5.53	

수익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평균 4.00년이었고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3.25년,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3.19년,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3.52년이였다(<표 II-135> 참고).

<표 II-135> 연령별 수익수준의 변화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수익수준이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1.00	1.70	2.062
	30세 - 40세 미만	21	2.43	2.90	
	40세 - 50세 미만	99	4.88	5.46	
	50세 - 60세 미만	121	3.56	6.07	
	60세 이상	37	4.97	8.53	
	합계	290	4.00	6.01	
수익수준이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2.58	4.27	0.737
	30세 - 40세 미만	21	1.90	2.62	
	40세 - 50세 미만	99	3.87	5.20	
	50세 - 60세 미만	121	3.14	5.92	
	60세 이상	37	2.92	5.69	
	합계	290	3.25	5.41	
수익수준이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2.25	5.69	1.071
	30세 - 40세 미만	21	1.90	2.99	
	40세 - 50세 미만	99	3.95	5.50	
	50세 - 60세 미만	121	3.15	5.91	
	60세 이상	37	2.35	4.84	
	합계	290	3.19	5.48	
수익수준이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	30세 미만	12	2.83	7.10	0.634
	30세 - 40세 미만	21	1.95	3.35	
	40세 - 50세 미만	99	4.07	5.85	
	50세 - 60세 미만	121	3.56	6.80	
	60세 이상	37	3.00	5.90	
	합계	290	3.52	6.18	

기술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주작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평균 4.26년이었고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3.99년,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3.74년,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3.46년이였다(<표 II-136> 참고).

<표 II-136> 주작목별 기술수준의 변화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기술수준이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5.07	5.10	1.717
	밭농사	35	4.09	4.42	
	채소류	4	2.50	2.88	
	과수	46	4.17	3.97	
	화훼	23	5.74	5.18	
	시설재배	27	3.93	3.18	
	축산업	43	3.30	5.14	
	농산물가공	4	1.00	2.00	
	기타	13	1.85	2.19	
	합계	290	4.26	4.62	
기술수준이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4.42	5.23	0.916
	밭농사	35	3.57	5.27	
	채소류	4	4.25	5.05	
	과수	46	4.17	4.41	
	화훼	23	5.30	6.01	
	시설재배	27	4.26	5.86	
	축산업	43	3.19	4.84	
	농산물가공	4	1.25	2.50	
	기타	13	1.77	2.65	
	합계	290	3.99	5.07	
기술수준이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4.16	6.19	0.713
	밭농사	35	3.03	5.06	
	채소류	4	4.50	7.14	
	과수	46	3.96	4.25	
	화훼	23	5.22	6.67	
	시설재배	27	3.70	4.76	
	축산업	43	3.00	5.30	
	농산물가공	4	0.75	1.50	
	기타	13	2.46	3.55	
	합계	290	3.74	5.43	
기술수준이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3.77	5.86	0.559
	밭농사	35	3.66	6.05	
	채소류	4	7.50	15.00	
	과수	46	3.76	4.32	
	화훼	23	5.22	5.81	
	시설재배	27	4.48	6.00	
	축산업	43	3.56	6.31	
	농산물가공	4	0.75	1.50	
	기타	13	3.46	4.33	
	합계	290	3.90	5.81	

경영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주작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평균 3.80년이었고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3.42년,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3.13년,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3.45년이였다(<표 II-137> 참고).

<표 II-137> 주작목별 경영수준의 변화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경영수준이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4.66	5.87	1.957
	밭농사	35	3.46	5.01	
	채소류	4	1.25	2.50	
	과수	46	2.93	3.20	
	화훼	23	5.35	5.28	
	시설재배	27	4.74	3.69	
	축산업	43	3.00	4.75	
	농산물가공	4	0.75	1.50	
	기타	13	1.23	2.00	
	합계	290	3.80	4.89	
경영수준이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3.91	5.69	0.689
	밭농사	35	2.74	4.36	
	채소류	4	3.75	7.50	
	과수	46	2.87	3.46	
	화훼	23	4.61	5.71	
	시설재배	27	3.56	4.71	
	축산업	43	3.40	5.44	
	농산물가공	4	0.75	1.50	
	기타	13	2.08	2.56	
	합계	290	3.42	4.98	
경영수준이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3.19	5.20	0.842
	밭농사	35	2.77	4.67	
	채소류	4	5.00	10.00	
	과수	46	2.91	3.65	
	화훼	23	4.61	5.84	
	시설재배	27	4.19	5.80	
	축산업	43	2.42	4.17	
	농산물가공	4	0.75	1.50	
	기타	13	2.08	3.30	
	합계	290	3.13	4.86	
경영수준이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3.35	5.53	1.031
	밭농사	35	2.63	4.94	
	채소류	4	7.50	15.00	
	과수	46	3.24	4.23	
	화훼	23	4.70	6.27	
	시설재배	27	5.22	7.44	
	축산업	43	2.81	5.27	
	농산물가공	4	0.75	1.50	
	기타	13	2.92	4.82	
	합계	290	3.45	5.64	

판매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주작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군내 평균,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차이가 없었으나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와 전국평균을 넘은 시기는 차이를 보였다(<표 II-138> 참고).

<표 II-138> 주작목별 판매수준의 변화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판매수준이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5.00	6.56	2.168*
	밭농사	35	3.66	5.59	
	채소류	4	1.25	2.50	
	과수	46	2.89	3.45	
	화훼	23	5.57	6.08	
	시설재배	27	5.07	6.03	
	축산업	43	2.47	4.21	
	농산물가공	4	1.00	2.00	
	기타	13	1.23	1.69	
	합계	290	3.90	5.49	
판매수준이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3.73	5.64	0.960
	밭농사	35	4.09	7.16	
	채소류	4	2.50	5.00	
	과수	46	2.63	3.39	
	화훼	23	4.26	5.46	
	시설재배	27	2.85	4.40	
	축산업	43	2.19	4.38	
	농산물가공	4	1.00	2.00	
	기타	13	1.46	2.87	
	합계	290	3.17	5.13	
판매수준이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3.16	4.88	7.495**
	밭농사	35	3.37	6.58	
	채소류	4	39.50	79.00	
	과수	46	2.83	3.55	
	화훼	23	4.70	6.13	
	시설재배	27	3.44	5.47	
	축산업	43	1.86	3.60	
	농산물가공	4	1.00	2.00	
	기타	13	2.00	4.26	
	합계	290	3.51	10.32	
판매수준이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3.54	5.53	0.520
	밭농사	35	2.91	6.03	
	채소류	4	5.00	10.00	
	과수	46	3.28	4.35	
	화훼	23	4.09	5.64	
	시설재배	27	4.63	6.92	
	축산업	43	2.56	5.40	
	농산물가공	4	1.00	2.00	
	기타	13	2.92	4.57	
	합계	290	3.38	5.53	

수익수준이 면내 평균, 군내 평균, 도내 평균,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주작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평균 4.00년이었고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3.25년,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는 3.19년,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는 3.52년이였다(<표 II-139> 참고).

<표 II-139> 주작목별 수익수준의 변화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수익수준이 면내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5.48	7.61	1.840
	밭농사	35	3.83	6.54	
	채소류	4	1.25	2.50	
	과수	46	3.09	3.97	
	화훼	23	5.04	5.42	
	시설재배	27	4.07	5.34	
	축산업	43	2.63	4.53	
	농산물가공	4	1.50	3.00	
	기타	13	1.08	1.75	
	합계	290	4.00	6.01	
수익수준이 군내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4.07	6.40	0.934
	밭농사	35	2.91	5.84	
	채소류	4	3.75	7.50	
	과수	46	2.89	3.83	
	화훼	23	4.17	5.50	
	시설재배	27	3.63	6.00	
	축산업	43	1.98	3.99	
	농산물가공	4	1.25	2.50	
	기타	13	1.62	2.95	
	합계	290	3.25	5.41	
수익수준이 도내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3.69	6.12	1.206
	밭농사	35	2.77	5.78	
	채소류	4	5.00	10.00	
	과수	46	3.11	4.04	
	화훼	23	4.61	6.05	
	시설재배	27	4.26	7.10	
	축산업	43	1.37	2.84	
	농산물가공	4	1.25	2.50	
	기타	13	2.31	4.27	
	합계	290	3.19	5.48	
수익수준이 전국 평균을 넘은 시기	벼농사	95	3.72	6.64	0.736
	밭농사	35	2.71	6.01	
	채소류	4	6.25	12.50	
	과수	46	3.83	5.35	
	화훼	23	4.00	5.78	
	시설재배	27	5.11	7.89	
	축산업	43	2.33	5.07	
	농산물가공	4	1.00	2.00	
	기타	13	2.85	4.52	
	합계	290	3.52	6.18	

(15) 처음 영농을 시작할 때 필요한 운영자금

농지값과 농기계값을 제외한 운영비만을 기준으로 처음 영농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적정한 운영자금을 물었을 때, 최소값 30만원에서 최대값 30억까지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전체적인 평균은 6,016.40만원이고 표준편차는 21,224.15만원이었다. 500 - 1000만원 이하가 1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500만원 이하가 11.4%, 1500 - 2000만원 이하 10.7% 등이었다(<표 II-140> 참고).

<표 II-140> 처음 영농을 시작할 때 필요한 운영자금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66	22.8
500만원 이하	33	11.4
500 - 1000만원 이하	46	15.9
1000 - 1500만원 이하	12	4.1
1500 - 2000만원 이하	31	10.7
2000 - 2500만원 이하	4	1.4
2500 - 3000만원 이하	26	9.0
3000 - 3500만원 이하	3	1.0
3500 - 4000만원 이하	1	0.3
4500 - 5000만원 이하	19	6.6
5500 - 6000만원 이하	1	0.3
6500 - 7000만원 이하	8	2.8
7500 - 8000만원 이하	2	0.7
8500 - 9000만원 이하	1	0.3
9500 - 10000만원 이하	17	5.9
15000만원	5	1.7
18000만원	1	0.3
20000만원	8	2.8
25000만원	1	0.3
30000만원	1	0.3
50000만원	2	0.7
60000만원	1	0.3
30000만원	1	0.3
합계	290	100.0

(16) 영농자금의 이자율

영농자금의 이자율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높다'라는 응답이 68.3%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가 14.8%, '낮다'가 2.8%로 '높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표 II-141> 참고).

<표 II-141> 영농자금의 이자율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41	14.1
적당하다	43	14.8
높다	198	68.3
낮다	8	2.8
합계	290	100.0

농민들이 원하는 영농자금의 적정 이자율은 1.0가 31.1%로 가장 많았고 2.0가 20.9%, 3.0가 11.7%, 1.5가 11.2% 등으로 나타났다(<표 II-142> 참고).

<표 II-142> 영농자금의 이자율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17	8.3
무이자	2	1.0
0.13	1	0.5
0.2	5	2.4
0.3	4	1.9
0.5	5	2.4
1.0	64	31.1
1.5	23	11.2
2.0	43	20.9
2.5	7	3.4
3.0	24	11.7
3.5	2	1.0
4.0	2	1.0
4.5	1	0.5
5.0	3	1.5
6.0	1	0.5
15.0	2	1.0
합계	206	100.0

영농자금의 거치 기간은 5년 거치가 39.3%로 가장 많았고 10년 거치가 19.9%, 3년 거치가 11.2%, 1년 거치가 7.8%, 2년 거치가 5.8% 등이었다(<표 II-143> 참고).

<표 II-143> 영농자금의 거치 기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19	9.2
1	16	7.8
2	12	5.8
3	23	11.2
5	81	39.3
7	5	2.4
8	2	1.0
10	41	19.9
12	1	0.5
15	3	1.5
20	2	1.0
자유상환	1	0.5
합계	206	100.0

영농자금의 상환기간은 10년 상환이 33.0%, 15년 상환이 16.5%, 20년 상환이 12.1%, 5년 상환이 9.2%, 3년 상환이 6.8% 등으로 조사되었다(<표 II-144> 참고).

<표 II-144> 영농자금의 상환기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18	8.7
1	4	1.9
2	5	2.4
3	14	6.8
5	19	9.2
7	8	3.9
8	7	3.4
10	68	33.0
15	34	16.5
20	25	12.1
25	3	1.5
30	1	0.5
합계	206	100.0

(17) 영농정보 획득 경로

영농정보 획득 경로로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가 34.1%,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가 19.7%, ‘작목 반이나 각종 학습단체를 통해서’가 15.2%, ‘인터넷을 통해서’가 8.3%, ‘이웃을 통해서’가 7.2%,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가 2.8%, ‘반사회나 각종 마을 친목 모임을 통해서’가 2.4%로 나타났다(<표 II-145> 참고).

<표 II-145> 영농정보 획득 경로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29	10.0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8	2.8
이웃을 통해서	21	7.2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57	19.7
인터넷을 통해서	24	8.3
각종 교육을 통해서	99	34.1
반상회나 각종 마을 친목 모임을 통해서	7	2.4
작목반이나 각종 학습단체를 통해서	44	15.2
기타	1	0.3
합계	290	100.0

이러한 영농정보의 효과성은 ‘효과적인 편이다’가 31.0%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22.5% ‘효과적이지 않은 편이다’가 20.0%, ‘아주 효과적이다’가 10.0%,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7.2%이었다. 이처럼 영농정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46> 참고).

<표 II-146> 영농정보의 효과성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27	9.3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21	7.2
효과적이지 않은 편이다	58	20.0
그저 그렇다	65	22.5
효과적인 편이다	90	31.0
아주 효과적이다	29	10.0
합계	290	100.0

(18) 전문적인 컨설팅의 필요성

전문적인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2.1%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필요한 편이다’가 20.7%,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가 16.9%,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5.5%,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가 13.4%로 나타나 비교적 전문적인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표 II-147> 참고).

<표 II-147> 전문적인 컨설팅의 필요성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33	11.4
전혀 필요하지 않다	45	15.5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9	13.4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49	16.9
필요한 편이다	60	20.7
꼭 필요하다	64	22.1
합계	290	100.0

전문적인 컨설팅의 적절한 횟수에 대해서는 년 2회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높았고 1회가 11.3%, 3회가 8.9%, 4회가 6.5%, 5회가 2.4%, 24회가 1.6%, 12회가 0.8% 등으로 나타났다(<표 II-148> 참고).

<표 II-148> 전문적인 컨설팅의 적절한 횟수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무응답	49	39.5
1	14	11.3
2	36	29.0
3	11	8.9
4	8	6.5
5	3	2.4
12	1	0.8
24	2	1.6
합계	124	100.0

전문적인 컨설팅의 적절한 시기는 분기별, 농한기, 봄·가을, 여름·겨울, 가을·겨울, 봄·가을·겨울, 상반기, 년초, 전기·후기, 년초·년말, 매달, 두달에 한번, 추수 후 결산할 때, 12월-1월, 12월-3월, 10월-12월, 3월·11월, 1월·8월, 6월·8월, 1월·4월·7월·10월 등의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5. 종합적 논의

지금까지 농업인력의 현황, 농업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현황 및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과 관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력 육성 체계는 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들을 크게 ① 신규 농업인력의 육성 및 지원과, ② 기존 농업인력의 육성 및 지원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II-14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II-149>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

구분	문제점		세부 논의	
신규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의 차원	농업인력의 확보	농업인력 수급 전망 미흡	- 농업인력의 장단기 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별 수준별 수급 전망이 이루어져야 함.	
		예비 농업인력의 유인 미흡	- 농업관련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의 안정된 직업 보장, 발 전가능성 및 지원 등 다양한 유인가 마련	
		여성인력의 농업분야 유인 미흡	- 농업인력의 부족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농업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농촌인구 및 농가인구의 확보 미흡	- 농촌인구의 감소문제는 공공 서비스 시설의 이탈을 초 래하고, 안정된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계치 이상의 농촌인구 및 농가인구가 확보되어야 함	
		농업인력의 과부족 문제 심화	- 농업인력의 노령화, 부녀화 및 경작규모에 따른 소득 격 차의 증대 등이 문제되고 있음.	
	농업인력 신규 진입	후계농업인 선정의 문제	- 농림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계 부족 - 농업계 학력인정에 따른 점수가 낮아서 농업계 인력의 유도 미약 - 농과계/비농과계의 교육차별화 정도가 약하고, 프로그램 또한 빈약 - 선발과정상의 공정성 결여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의 문제	- 군복무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여겨지고 있음. - 농업생산에 대한 대상자 위주로 선정 - 후계농업인 제도와의 긴밀한 연계 부족	
		귀농정착 지원의 문제	- 영농지식 및 기술에 대한 충분한 습득 기회 제공 필요 - 지속적이고 신속한 영농정보의 제공 미흡 - 귀농 정착 자금 지원 기준이 모호함	
	기존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의 차원	농업인력의 성장 유도	체계적 성장 유도 정책 미흡	- 농업인력이 성장단계에 거치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농업컨설팅	전문상담요원의 부족	- 다양한 분야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 식이 필요함
정부 부처 연계 미흡			- 업무취급 부처 및 담당과가 다른 경우가 많아 농업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음.	
농업인력의 기술 및 경영능력 부족			- 종합적인 경영진단과 상담 전문기관 및 전문상담요원의 확보가 필요함	
농업인력을 위한 재교육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부족	- 농업인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내용보다는 보편적이고 일괄적인 내용 구성	
		교육프로그램의 양적 부족	- 농업관련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을 전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교육 참여 기회의 부족	-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문제로 인한 한계	
		일방적 교육내용 구성	- 수요자인 농업인에 대한 요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교육방법의 문제	-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습을 위한 충 분한 실습장도 확보되어 있지 못함.	
재정적 지원		영농자금 지원 기준 미흡	-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꼭 필요한 농업인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	
	충분한 실사 작업 미흡	- 형식적 서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하여 실제보 다 과장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		
	추후 관리 체계 미흡	- 부실한 농가가 추가적인 자금을 계속 받게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III. 외국의 농업인력 정책 동향

외국의 농업인력정책은 대상국가나 영역과 정책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범위의 국가와 대상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농업자금지원과 교육연수제도, 선발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일본의 농업인력정책

일본의 농업인력정책은 신규인력 유입에 관련된 지원사항과 기존 농업인력의 발전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신규인력의 확보에 관련된 정책

일본은 농업인력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계층의 인력을 농업분야로 유인하려는 몇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수행되는 대표적인 농업분야로의 유인책은 신규 영농취업사업과 영농후계자 육성 사업이 있다.

(1) 신규 영농취업사업

신규 영농취업사업은 전국 농업 회의소 내에 있는 전국 취농가이드 센터를 중심으로 취농세미나, 취농상담, 농업법인의 회사 설명회 등 농업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규 영농취업사업이 시작된 1980년 중반은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어 국제적으로 큰 공헌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전후 총결산」이라는 형태로 전후 일본을 지탱해 왔던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 시기였다. 신규 영농취업사업의 발상은 극히 단순하다. 농촌에서는 농지의 유희화가 진행되고 있고, 도시에서는 농업·농촌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양측의 요구를 결합하기 위해 상담창구를 설치한 것이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3).

신규 취농자를 육성·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매력있게 하고, 청년이 영농취업을 하기 쉽도록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의 집적과 생산기반정비 등 구조정책의 추진, 생활환경의 정비, 연수교육의 실시 등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규 영농취업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신규 영농 취업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기술습득, 농지구입, 자금확보의 3가지로 요약된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각종 대책이 강구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원내용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우선 기술습득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고 있다.

- ① 청년농업자의 영농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합의 도출, 선진농가와의 현지연수

- ②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한 현 농업대학교에의 단기연수
- ③ 개량보급원을 통한 기술·경영방법의 지도 강화
- ④ 농업대학교에의 실천적 연수교육
- ⑤ 국내외 선진농가에의 파견연수
- ⑥ 농업개량자금 중 고도기술습득자금, 연수교육자금의 지원

다음으로 농지확보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고 있다.

- ① 신규 영농취업 가이드 센터에서 농지정보 제공 및 영농취업 상담
- ② 신규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통해 농지구입
- ③ 축산부문에 있어서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통한 이농지 정비

그리고 자금확보 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고 있다.

- ① 농업개량자금조성법 개정을 통한 청년 농업자 육성·확보자금제도의 신설(경영개시에 필요한 무이자자금의 지원대상을 신규농업취업자에게도 확대)
- ② 농림어업금융공고의 농지구입자금에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 ③ 농업근대화자금에 있어서 신규 영농취업 원활화자금(운전자금)제도의 신설
- ④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조치(농기계의 할증상각제도)

농림개량자금제도의 개정은 과거의 농업후계자육성자금을 개선·확충하여 새로이 청년농업자 육성·확보자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농업외로부터의 신규 영농취업 청년이 농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대상에 추가되도록 하고, 아울러 지원한도액을 대폭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농지구입자금에 있어서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해 농업종사자 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또한 경영면적 요건을 취득후 기준면적 이상에서 5년후 기준면적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신규 영농취업시의 자금부담경감조치가 취해졌다.

신규취농자를 비롯한 농업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4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규취농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 등에 대해, 실천적인 연수에 의한 기술의 습득, 그 외 취농의 준비, 경영을 개시할 때의 시설의 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여 취농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영농계획을 작성하여 지사의 인정을 받으면 인정취농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정취농자로 선정될 수 있는 연령은 신청시 18세-55세미만으로 지사의 허가가 있다면 65세까지 가능하다. 이들의 차이는 지원되는 비용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다.

<표 III-1> 영농취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용도	용자한도액	이율 및 용자대상 ⁴⁾	반환기간	
취농지원자금 ¹⁾	취농농업연수	농업 대학교 등 → 월액 5만엔 선진 농가 → 월액 15만엔 지도 연수(청년만) → 200만엔	무이자 농업기술·경영 수법 습득을 위한 실천적인 연수(농업 대학교 등의 연수 교육 시설, 국내 외의 선진 농가 등으로 실시하는 연수)에 필요한 경비 *수업료, 교재비, 시찰 연수비, 체재비, PC등 연수용 기기 등	· 청년의 경우 평장 : 12년 이내 중 거치기간 4년 조건불리지역 : 20년 이내 중 거치기간 9년
	취농준비	200만엔	무이자 취농처의 조사, 취농에 수반하는 주거의 이전 자격의 취득 등 취농에 해당하는 사전의 준비에 필요한 경비 *주거 이전비(이사대, 보증금·사례금 등), 자격 취득비, 취농처 조사 여비, 체재비 등	· 중노년의 경우 평장 : 7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조건불리지역 : 12년 이내 중 거치기간 5년
	취농시설자금	청년의 경우 경영 개시 초년도 → 2,800만엔 경영개시 차년도이후 (2-5년째까지) → 900만엔 중노년의 경우 경영개시 차년도이후 → 1,800만엔 경영개시 차년도 이후 ²⁾ (2-5년째까지) → 900만엔 ³⁾	무이자 농업 경영을 개시할 때의 시설의 설치, 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기계의 구입비, 시설의 설치비, 가축 구입비 각종 수선비·리스토, 종묘·비료비 등의 운용자금 *농협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의 농업 신용 기금 협회의 채무 보증 제도의 대상임	· 청년의 경우 평장 : 12년 이내 중 거치기간 5년 · 중노년의 경우 평장 : 12년 이내 중 거치기간 5년
농업근대화자금	신규취농 원활화 자금	측산·시설 원예 → 400만엔 그 외 경영 → 200만엔	1.6% 취농 후 3년간의 경영 자금 *인정 농업자의 경우는 취농 후 5년간	7년 이내 중 거치기간 3년
	특정 농가 주택자금	1,800만엔	1.6% 농가 주택의 개량, 조성 또는 취득 자금	15년 이내 중 거치기간 3년
농지 취득 자금 (개인의 경우)	500-7,000만엔	실효금리 1.6% 농지등 (농지·채초 방목지등)의 구입	25년 이내	
토지 이용형 경영체 육성 강화 자금 (개인의 경우)	1억 5,000만엔 혹은 농업 사업비의80%	실효금리 1.6% 토지 이용형 농업 부문에서 경영 면적의 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	25년 이내	
농업 경영 기반 강화자금 <슈퍼 I자금> (개인의 경우) ⁴⁾	1억 5,000만엔 (특인 3억엔)	실효금리 대부 기간에 따르면 1.05-1.60% 농지 취득이나 기계 시설 투자 등에 충당하는 장기자금	25년 이내 중 거치기간 10년 이내	
농업 경영 개선 촉진자금 <슈퍼 S자금> (개인의 경우) ⁴⁾	채권최고액 500-2,000만엔	1.4%(변동금리) 단기의 운용자금	상환 기간 1년 이내	

주 1) 청년 등 취농촉진법에 근거하는 인정취농자가 대부분 대상, 청년의 경우(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 중노년의 경우(40세 이상 55세 미만, 지사특인으로 65세까지 가능).
 주 2) 경영 개시 차년도 이후(2-5년도까지)는, 자금 수요의 2분의 1 이내.
 주 3) 농업경영 기반 강화 자금 및 농업경영 개선 촉진 자금은 농업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이 기초를 두는 인정취농자가 대부분 대상.
 주 4) 이율은 평정 13년 5월 18일 현재, 이율은 공정보험의 개정 등에 의해 변동
 자료 : 全國新規就農相談センター(2001). 新規就農ガイド事業. [On-line]. Available. <http://www.nca.or.jp/guide/howto.html>

1992년 6월에 공표된 「신 식료·농업·농촌정책의 방향」에서는 앞으로의 농업경영체로서 개별 경영체 이외에 생산조직·법인 등의 조직경영체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농가자녀 이외의 자도 포함시키는 등 영농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농업자 육성·확보대책도 단순히 농가의 후계자대책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경영체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한다는 폭넓은 관점에서 청년농업자를 육성·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3).

(2) 농업후계자 육성 사업

일본에서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56년의 농업개량보조금조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며, 1964년부터 후계자 육성기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법은 농업개량자금제도에 농업후계자 육성자금을 설치하여 자금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케 하고, 정부 및 도부현이 주관 이 되어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최현주, 1994).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은 학교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개인의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미래의 농업을 담당할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대책을 학교교육단계에서의 후계자대책, 농업후계자 연수교육, 농촌 청소년 조직활동 조장, 농업사제도, 자금지원제도 등이 있다.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시책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성장단계별로 일괄적인 교육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고교졸업예정자에 대한 푸른학원 개최사업, 고교졸업 후에는 강좌제 연수사업을 통해 취업중 농업기술 습득에 대한 단계적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종합적인 육성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농업후계자 육성자금제도를 통해 자금지원과 동시에 농업사의 인정으로 농촌청년의 사회적 평가를 높여주고 생산실습, 교육용기자재 등 교육시설 이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농촌청소년에 대한 교육사업은 정부 및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설치도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상의 특징 하에 사회교육의 형태로 추진되는 농업후계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체계화한 형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가) 학교교육사업

농업후계자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교육지도사업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개인의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장래의 농업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

푸른학원 개최사업은 농업후계자를 육성·확보하기 위해 취농 의사를 결정하기 이전 단계인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장래 농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계휴가 등을 이용하여 농업과 농촌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도부현은 농업개량보급소, 고등학교, 농림수산성 및 현 농업자대학교 그리고 민간단체농업교육기관 등과 협조하여 푸른학원을 개최하고 있다. 학습기간은 7일 정도이며, 학습내용은 농업실무실습, 선진농가견학 등으로 이를 통해 우수한 농업후계자를 육성·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업후계자 지역실천활동추진사업은 학교교육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단계별 즉 시정촌단계, 현 및 전국단계의 3단계로 구성되어 각각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정촌단계에서는 아동·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 농업청년의 지역농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실천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 및

전국단계에서는 시정촌단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청년의 의향 및 활동실태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소요예산의 1/2을 보조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시정촌단계·도도부현단계·전국단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농업후계자 지역실천 활동추진사업의 개요

지 역 별	내 용
시정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과의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입문서의 작성 활용 · 농업소년그룹의 활동 촉진 · 취업예정고교생의 학습활동 촉진 - 농업청년 지역활동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사업의 추진 · 농업청년 지역활동추진회의 개최 · 농업청년리더연수 실시
도도부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후계대책추진협의회 개최 - 농업후계자에 관한 조사 실시 - 비농가자제의 취업상담 실시 - 농업청소년그룹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그룹회의 개최 · 청소년그룹기술교환회 개최 · 청년농업경영자연구집회 개최
전국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조사검토위원회의 개최 - 농업청년의 집단활동 사례조사

몇 개 현 차원의 농업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면 다음 <표 III-3>으로부터 <표 I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농자에 대한 국내외 장기연수비, 취농지원금, 농지임차료, 주거비의 지원과, 취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준비연수비의 지원, 신규취농수양부모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장기연수나 취농지원금 등은 공통적인 지원사항이나 신규취농수양부모 연수는 실습을 겸한 경우로서 영농종사를 조력하는 Mentor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연수로 보여진다. 이들외에도 일부는 무이자나 일정기간이상 해당지역에서 농사에 종사하였을 경우는 대출금의 반환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연령도 48세나 46세, 40세미만 등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지원되기도 한다. 인정취농자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인정취농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60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경우를 볼 때 노령화를 고려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3> 몇 개 일본현 단위의 신규 취농자 지원 사업

구분	오кина와현	나가노현	홋카이도현	이오모리현	롯데리현	아마가타현	나가사키현
대상자 연령	40세미만	40세미만 (신규취농)	18-46세미만	48세이하	제한 없음	40세이하	16~45세
영농여부제한	×	△	×	△	○	×	×
금리 (인정취농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상환기간	—	7-12년내	—	—	—	—	—
지원내용	*농업후계자 육성시설 연수지원 사업 *신규취농 촉진 사업	*선진경영체 연수비조성 *취농지원금 지급 *농지임차료 조성 *청년농업자의 주거비조성 *취농준비 농업연수 *신규취농 수양부모 지원 사업	*취농촉진의 홍보상활동 *연수교육 체제의 정비 *실전적농업 연수 지원 사업 *신규취농우 량농업경영 자표창사업 *취농지원 자금의 상환면제 *턴 신규취 농자 기초 연수 *농장 리스 원활화 사업	*신규 취농 촉 진 자금 대 상환면제사 *취농준비 자금상환 면제 사업 *신규 취농자 농지 확보 지원 사업 *신규취농자 OJT사업 *농업을 해 보자 프로그램 추진 사업	*취농지원 자금상환 면제 사업 *취농기반 정비 사업 *농지임차료 조성 *취농주택 설비사업 *단원농정비 농업 사업	*아마가타현 농업진흥 기구 지원 사업 *신규취농자 정착 지원 사업 *농업대학 *농업대학 특수과정 연수 *농업경영 혁신 지도 사업	*신규 취농 세 미나 *신규취농 촉진 사업 *지역 지원 센터 활동 사업 *담당자 육성 강화 지원 사업 *실천농장 등 추진 사업

<표 III-4> 오кина와현의 지원 조치 내용

사업명	실시주체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신규 취농 촉진 사업	(재) 오кина와현 농업 후계자 육성 기금 협회 (098-866-2280)	신규취농자, 지도 농업사 등	1. 농업 기초 기술의 습득에 의해 취농의욕을 높여 계속적 취농을 지원하기 위해(때문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한다. · 조성액수 : 월액 5만엔 이내(1회 한정) · 연수처 : 농업 대학교, 선진 농가 · 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2. 지도 농업사 등이 신규 취농자의 연수를 받아 들이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한다. · 조성액수 : 월액 3만엔 이내 · 기간 :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농업후계자 육성 시설 연수지원 사업	(재) 오кина와현 농업 후계자 육성 기금 협회 (098-866-2280)	시읍면 또는 농업단체, 농업 생산 법인, 지도 농업사 등으로 한다. 연수생은 취농의욕이 높다고 인정되는 대체로 40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 시읍면 또는 농업 집단이 실시하는 농업 후계자 육성 시설 등의 연수생에 대해,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성한다. 조성액은 월액 6만엔 이내(6만엔×12개월=72만엔) 72만엔을 상한으로 해, 연수 비용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액수의 2분의 1 이내를 지급한다.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okinawa/shien.html>.

<표 III-5> 나가노현의 신규 취농자 관련 사업

사업명	실시 주체(TEL)	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나가노현 농업담당자 육성기금 조성사업	(회사) 나가노현 농업 담당자 육성 기금 (026-236-2021)	1) 국내 장기 연수 대개 40세 미만으로, 실제로 취농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수 종료 후 3년 이내에 현내에 취농전망의 사람	· 대상자 : 50명 · 조성액수 : 1개월 20천엔 (1년을 한도)
		2) 해외 장기 연수 (회사) 국제 농업자 교류 협회의 실시하는 농업 연수생 해외 파견 사업에 의해 파견되는 사람	· 대상자 : 4명 · 조성액 : 도항전 연수 등과 관련된 부담금 및 도항비의 1/2 이내
		현내에 취농한 대체로 40세 미만의 신규취농가이드 사업 등으로 신규취농해, 취농 계획의 인정을 받은 사람. 필요한 농지를 확보해, 3년 이상 영농의 계속이 전망되는 사람.	· 대상자 : 독신자 4명, 기혼자 10명 · 조성액수 : 200천엔 (배우자도 취농했을 경우 세대당 250천엔)
		신규취농 상담사업 등을 통해서 현내에 취농 해, 임차면적이 농지법으로 규정하는 면적 이상이며, 취농 계획의 인정을 받아 임차 계약이 3년 이상의 사람.	· 대상자 : 15명 · 조성액 : 초년도의 임차료 상당액 보통밭 40천엔 이내 수원지 85천엔 이내 논 60천엔 이내 (10 a 당 단가는, 시읍면이 정하는 표준 소작료로 한다)
청년 농업자의 주거비 조성		대체로 40세 미만의 농업 후계자로, 주택 사정 등으로 가족과 별거하는 사람, 또는 신규취농가이드 사업 등에 의한 신규 취농자. 임대 주택에서, 영농 거점에 통근 가능한 것.	· 대상자 : 30명 정도 · 조성액수 : 월액 9천엔 · 조성 기간 : 2년 간 한도
취농준비 농업 연수	나가노현 ※문의처 (농업기술과) (026-235-7222)	나가노현 내에서 취농을 희망하는 사람	1. 아구 리턴 농업 연수 체험코스 농업 체험, 가이드스 등 2. 아구 리턴 농업 연수 입문코스 현장 연수, 강의
신규 취농 수양 부모 지원 사업			1. 신규 취농 기초연수 (수양부모 앞 기초연수) 현 농업 대학교 연수부에 있어 취농 희망자의 요구에 따른 농업 대학교의 강의와 농가 실습 등을 조합해 효율적으로 재배 기술과 경영관리를 습득하는 1년 정도의 연수를 실시한다. 2. 신규취농 수양부모 지원 사업 U턴자 등의 취농을 지원하는 의욕 있는 농업자 「수양부모」의 아래에서, 대체로 2년 간에 농업 경영을 개시하기 위한 실천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nagano/shien.html>

<표 III-6> 홋카이도의 신규취농자 지원조치

사업명	실시주체(TEL)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홋카이도 농업담당자 육성센터 사업	사단법인 홋카이도 농업 담당자 육성 센터 (011-271-2255) http://ninaite.or.jp/ nc@ninaite.or.jp 수도권 센터 (03-5212-2233) 칸사이 센터 (06-6344-2717)	· 취농 희망자 · 인정 취농자 · 취농 희망자 및 신규 취농자 · 농업 연수자, 체험 실습자, 신규 취농자 등	1.삿포로, 도쿄, 오사카에 취농상담창구를 상설해 취농상담을 실시 2.미치소토 대도시에서의 취농상담회를 개최 3.홋카이도 농업이나 농촌 생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투어를 실시 4.홋카이도 농업의 개요, 취농상담, 취농상담회의 개최 안내나 취농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정보 제공 등(전자 메일에 의한 취농상담에도 대응) · 농외로부터 신규취농을 목표로 해 연수하고 있는 인정취농자를 대상으로 전자 메일에 의한 동료 만들기나 경영관리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PC의 도입 경비의 일부를 조성 · 취농 희망자나 취농 후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취농자의 영농이나 생활에 관한 상담에 대해 헤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취농어 드바이저를 설치(17명) · 농업 연수자, 체험 실습자, 신규취농자 등의 동료 만들기나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때문에), 도내 각 지역에서 교류회를 개최
		인정취농자	· 인정을 받은 취농계획에 근거해 선진 농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때에 셋집 등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집세의 일부를 조성
		농업 연수자·체험 실습자를 받아 들여 지도하는 농가·법인	· 농업 연수자(인정취농자)나 체험 실습자를 받아 들여 지도하는 농가등에 대해서, 걸려 증가 경비 등의 일부를 사례금으로 해서 지급한다.
		취농 후 10년 이내의 신규취농자	· 취농 희망자의 취농계획과 신규 취농자의 경영 개선 의욕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이 되는 우량한 농업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신규취농자를 표창
		취농지원 자금차수자 (취농계획 인정 신청시 18~46세 미만)	· 취농계획에 근거해, 5년 이상 농업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에 의해 상환의 일부를 면제
U턴 · 신규취농자 기초 연수	홋카이도립 농업 대학교 (01562-4-2121)	U턴취농·신규 참가자·참가 희망자로 농가 등으로의 연수를 실시하는 사람	1.기초지식, 기술, 경영관리 연수(농업 대학교) 2.농업기술 경영 실습(농가 연수), 통신교육
농장 리스 원활화 사업	(재) 홋카이도 농업 개발 공사 (011-241-5601)	낙농 부문에서의 취농 희망자	1.농장의 일시 대출 후의 매도 2.영농 조건의 정비(농용지의 정비, 가축 관리용 시설의 정비, 중고 농업기계의 도입, 유용소의 도입) 3.경영 자금을 대한 이자 조성
21세기 농업 프런티어 용자 사업	홋카이도 농업 경제과 (011-231-4111) 내선27-272	홋카이도내에 있고, 농업의 생산 기반을 거의 가지지 않고, 향후, 새롭게 자본 장비를 실시해, 본격적인 농업의 전개를 도모하려고 하는 대체로 40세 이하의 인정 농업자	1.슈퍼 L자금의 금리 인하 때문에, 이자 조성을 행한다. 2.농협전대의 경우, 기금 협회의 채무보증을 받게 된다.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hokkaido/shien.html>

<표 III-7> 아오모리현의 신규취농장려사업

사업명	실시 주체(TEL)	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아오모리현 신규취농장려사업	(회사) 푸른 숲농림 진흥 공사 (017-773-3131)	48세 이하의 인정취농자	· 취농초기에 필요로 하는 영농비와 생활비를 75만엔(신규 참가자는 100만엔) 이내/1년간×2년간 대출 · 아오모리현에 5년 이상 취농 해, 5년 후의 목표 등을 달성했을 경우, 상환 면제
			· 아오모리현에 거치 기간의 최장 5년 이상 취농해, 일정한 요건을 채웠을 경우, 상환 면제
			· 취농 5년 이내에 현 농촌 개발 공사로부터 농지를 취득해, 5년 이상 경작하는 사람에게 농지 매입 가격의 것1/5을 공제해 수수(상한 15만엔/10 a 한편 총액 160만엔/인 까지)
		48세 이하의 신규취농희망자를 3개월 이상 받아 들이는 농가등	· 연수 수입 농업 등에 대해서 연수 조성 자금을 지급 (연수생 1인당 5만엔/월)
	「농업을 해 보자」 프로그램 추진 사업	아오모리현 농림수산부 구조 정책과 (017-734-9463)	신규취농자

* 인정취농자는, 취농예정지의 도도부현 지사에 취농계획을 제출하고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연령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농업기술·경영을 배우기 위한 연수, 취농을 위한 준비, 시설의 설치나 기계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제도 가능.

<표 III-8> 토티리현의 지원 조치 내용

사업명	실시 주체(TEL)	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인정취농자 종합 지원 사업	(제) 토티리현 농업 담당자 육성 기금 (0857-26-7276)	인정취농자로, 취농지원 자금 중 취농업연수자금을 빌려 취농 한 사람	· 취농업 연수자금의 차수자가 일정기간 취농 했을 경우, 그 상환을 7할을 한도에 면제	
		농업 협동 조합 시읍면 농업 공사 인정취농자	· 취농시(5년간을 한도)에 필요한 기계, 시설을 농협이 대여 또는 인정취농자가 정비 * 사업비: 1 인당 2,000만엔을 한도 * 보조율: 현1/3, 시읍면1/6	
		시읍면	농지 임차료 조성 사업	· 농지를 차입해 취농 하는 경우, 농지의 임차료를 취농시부터 5년간 조성 * 조성액수: 연 1명 당 20만엔을 한도 * 보조율: 현1/2, 시읍면1/2
			취농주택 설비 사업	· 시읍면이 빈 집 등의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수선, 개조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조성, 또는 주택의 대차료를 취농으로부터 5년간 조성 * 조성액수: 1호 당 100만엔을 한도 (수선, 개조비) 월액 2만엔을 한도(임차료) * 보조율: 현1/2, 시읍면 1/2
단현 농업 농촌 정비 사업	시읍면 토지 개량구	신규취농자	· 신규취농자의 농지의 조건 정비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조성 * 보조율: 현 50%, 시읍면 30%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tottori/shien.html>.

<표 III-9> 아오모리 현내 지역별 취농사업

시읍면	사업명	대상자 조건	지원 조치의 내용	창구·문의처
츠루타초	농업 후계자 신규 취농 조성 사업	<p>1. 대상자 마을에 주소를 가지는 자 또는 가지는 것이 확실한 사람으로, 새롭게 농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사람, 농업에의 임해 및 학습 의욕이 높은 일</p> <p>2. 조건 (1) 아오모리현 21농업 실천 강좌의 수강 및 아오모리현 청년 농업기술사에 의한 현지 농업기술지도 연수예의 참가 (2) 마을 농업 후계자회 「츠루타초 미도리의 회」에의 입회 (3) 연수 또는 농업에 대한 리포트 제출</p>	<p>· 취농시부터 월액 5만엔의 보조를 12개월 받게 된다. 외 각종 신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p>	츠루타초 산업과 TEL : 0173-22-2111
이타야나기마치	신규취농자 주택 임대료 보조금	<p>1. 대상자 (1) 18나이 이상 55세 미만 (2) 현 지사의 취농계획의 인정을 받은 것</p> <p>2. 조건 취농한 날로부터 기산해 2년 이내의 기간에 있는 것</p>	<p>· 거주하는 셋집의 집세 월액(사례금, 보증금을 제외하다.)으로 해, 입주한 날이 속하는 달 이후에 월분의 집세를 대상으로 해, 40,000엔을 한도에,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수를 보조한다.</p>	이타야나기마치 경제과 TEL : 0173-73-2111
와키노사와무라	농업 실무 연수	<p>1. 대상자 와키노사와무라에서 신규취농 하는 사람</p>	<p>· 희망 영농 유형에 응한 연수 코스를 설정해, 연수 기간 중(3년 이내)은 마을 농업 진흥 공사로부터 노동 보수를 지급한다.</p>	와키노사와무라 산업 경제과 TEL : 0175-31-5051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aomori/shien.html>.

<표 III-10> 야마가타현의 지원 조치 내용

사업명	실시 주체 (TEL)	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야마가타현 농업 진흥 기구 지원 사업	(재) 야마가타현 농업 진흥 기구 (023-635-0589)	야마가타현에 있어 농업에 종사해, 또는 종사하려고 하는 청년 등으로 만 30세 미만의 사람. 다만 U턴 및 신규 참가자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한 사람. 인정취농자	1.뉴파마 경영 안정 가속 사업 · 경영을 개시할 때에 필요한, 시설 및 기계 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사업비의 1/2 상당액). (상한 100만엔) 5명
		야마가타현에서 농업에 종사해, 또는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취농시설 등 자금을 빌려 한편 농업 신용 기금 협회의 채무 보상을 받는 사람. 인정취농자	2.취농시설당자금보험료 보전 사업 · 기금 협회에 대해 지불하는 보증료와 동액을 조성한다. (보증료 0.29% 용자범위 2,000만엔)
		국내 및 국외의 경영체 등에 대하고, 대개 1년 이상의 연수,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현외, 국외의 선진 사례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	3.연수등 활동 지원 사업 · 연수 활동에 필요로 하는 경비 국내외에서의 장기 현지 연수에 대한 조성 (보조율: 정액(상한 50만엔)) 8명 · (독일) 농업자 대학교의 수확비에 대한 조성 (보조율: 수확비의 6/10 이내) 10명 · 국경을 넘어 무사 수행 사업 브라질 2개월간 연수(현 국제실 관련 사업) (보조율: 정액 30만엔) 5명
농림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는 단체 및 집단.	4.건강한 농업의 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 · 신규취농의 지원, 인수대세 만들기에 대한 조성 (보조율: 정액(상한 12만엔)) 4개소		
신규취농자 정착 지원 리스 사업	(재) 야마가타현 농업 공사 (023-641-1105)	농대의 특정 연수 과정 또는 신규취농 희망자 긴급 정착 사업에 의한 연수를 수료한 사람 또는 수료 전망의 사람, 혹은 이것과 동등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대체로 40세 이하의 사람 인정취농자	· 경영 개시에 임하여 농지, 농업용 기계·시설을 빌리는 경우, 차입대의 1/3 이내의 액(상한 533,000엔/년)을 3년간 조성
농업 대학교 특별 연수 과정 사업	야마가타현립 농업 대학교 (0233-22-1527)	신규취농희망자	· 취농에 필요한 기초적 기술(생산~판매) 습득 때문에, 실습을 주체로 한 학습을 실시하는(연수 기간 1년간)
농업 경영 혁신 지원자 지도 사업	야마가타현 농업 회의 (023-622-8716)	야마가타현에의 신규취농희망자(40대까지)	1.농업 경영에 흥미가 있어, 타산업으로 기존 경영 능력이나 지식을 가지는 사람을 본회에서 고용해, 월액 125,000엔을 지급한다. 2.야마가타현내에서 신규취농 또는 농업 법인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을 선진 농가등에 파견한다.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yamaagta/shien.html>.

<표 III-11> 나가사키현의 지원 조치 내용

사업명	실시 주체(TEL)	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신규 취농지원 세미나 사업	현 농업 경영과 (095-823-1180) 현립 농업 대학교 (0957-26-1016)	신규취농자(3년째까지) 신규취농 희망자	1) 신규 참가 코스(4일간×3회) 농업 대학교에 대해 신규취농희망자에 대한 농업 기초 강좌 2) 청강생 코스(약 2개월) 개인마다의 커리큘럼으로 농업 대학교의 강의의 청강 및 실습
신규 취농촉진 사업	농업 회의 (095-822-9647)	신규취농 희망자	1) 현대 헬로우 워크등과의 제휴해, 취농지원 정보나 취농업연구 수수입정보를 제공해 농업 종사자의 관심을 양성 2) 취농희망자들이 취농후보지의 선진 농가나 농업 법인등에서 반년간 정도의 실천 연수를 실시해, 착실한 취농을 촉진
지역 취농지원 센터 활동 사업	지역취농지원 센터 (사무국 : 농업 개량 보급 센터)	신규취농자 신규취농 희망자	1) 취농후보지에 있고, 지역취농지원 센터(농업개량 보급 센터 및 관계 기관으로 구성)가 신규취농 희망자의 취농계획에 대한 지도 조언, 취농지원을 실시 2) 신규취농자(취농 후 3년째까지)에 대해서, 카운슬링·컨설팅트를 실시해, 섬세한 follow up을 실시
담당자 육성 강화 지원 사업	시읍면	신규취농 희망자	1) 신규 취농자 육성 사업 연수생의 연수 기간중의 최저 생활비를 조성
실천 연수 농장 등 추진 사업	시읍면	신규취농 희망자	1) 연수 농장 설치 기획 추진비 2) 연수 농장 관리 운영비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nagasaki/shien.html>.

(나)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농림수산성 농업자대학교, 현 농업자대학교, 농촌청년강좌제도, 농촌청소년 해외연수 4가지가 있다. 연수에 대한 지원은 <표 I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연수가 있다. 농림수산성 농업자대학교는 장래 농업을 깊어질 농업자상을 전망하고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농업을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농업자를 육성한다는 목적하에 1968년에 설립되었다. 입학정원은 각 년도 총 50명이며 교육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학습하는 마음자세를 기른다.

둘째, 3년의 교육기간을 통해 집합교육,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교육효과를 증대시킨다.

셋째, 소수정예교육에 의해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계발하고 적성을 살리기 위해 전공교육지도관을 배치하는 동시에 교육·연구 및 지도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실시한다.

넷째, 집합교육기간중에는 전원 기숙사에 입학시켜 기숙생활을 통해 자기확립과 집단활동의 의의를 터득시켜 지역사회에 있어 중핵자로서의 인격형성을 도모한다.

<표 III-12> 나가노현의 농업기술연수사업

사업명	대상자	사업 개요
농업자 대학교 영농 학부	입학자	· 영농 학과 : 작물(원예 작물을 포함한다)의 재배, 가축의 사육 및 농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농업경영자를 양성한다. · 연구·실과 : 농업 및 농업 경영에 관한 실용적 지식을 습득시켜, 농업 경영자를 양성한다.
선진적 농업 경영체 연수 사업	대개 30세 미만의 사람	· 현내외의 선진적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 및 농업 생산 법인등으로의 체험과 실천을 통해서 농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한다.
농업 연수생 해외 파견 사업	18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	· 국제적 시야와 뛰어난 경영 능력을 기르기 위해, 미국 및 유럽에서의 1년 또는 2년간의 장기 연수를 실시한다. · 실시 주체(회사) 국제 농업자 교류 협회
청년 농업자 연수 사업	대개 30세 미만의 농업 취업 청년	· 기초 강좌 : 농업 경영 및 농가 생활의 근대화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기술을 습득한다. · 파머 육성 강좌(NF강좌) : 작 농별의 전문 기술, 지식의 습득과 경영관리 능력 및 실천 능력을 기른다. · 종합 강좌 : 지역 농업의 담당자 및 경영체의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고도의 이론을 학습한다.
숙련 농업자 강좌 개설 사업	대개 40세 이상 65세까지 농외산업 이직취농자	· 전문 기술의 시찰이나 작목별 전문 기술의 습득, 동료 만들기 등 농촌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강좌제 연수를 실시한다.
여성 농업자 세미나 개최 사업	대개 40세 미만의 여성 농업 종사자	· 농촌을 담당하는 농촌 여성으로서 필요한 농업 및 생활등에 관한 기초적 지식 기술을 습득한다.
	대개 40세 이상의 여성 농업 종사자	· 작목별의 농업 경영·생산기술, 생활 기술급농촌의 당면하는 과제 해결을 위한 연수를 실시해, 지역 리더를 양성한다.
	강좌제 연수 수료생	· 농촌 생활개선 실천 집단의 조직화,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선진지에의 시찰 연수등을 실시해, 지역의 톱 리더1을 양성한다.
농업기계 이용 기능 연수	실시 요령에 정한 자격을 가지는 사람	· 트랙터등 농업기계의 구조·기능·조작의 기본, 안전 사용등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다.대형 특수(농경차), 견인 면허의 취득 가능.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nagano/shien.html>.

현 농업자대학교는 각 현의 지역농업실정이나 사회정세에 맞는 농촌청소년에 대한 고도의 기술 능력 및 경영관리능력을 습득시킴과 함께 농업자로서의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하고 협동정신을 증대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수내용은 실천적인 영농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경영실천학습을 중심으로 하며 실습포장에서의 모델농장경영 또는 선진농가과견학습에 의하여 지역농업의 실정에 맞는 실천적 연수교육으로 하며, 그 연수대상자로는 고졸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2년간의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현 농업자대학교로 하여금 농업 및 농촌을 둘러싼 제정세에 대응한 적절하고도 원활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 농업자대학교 설치운영기획추진사업을 197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부현이 사업실시주체가 되어 농민연수교육시설 운영기획회의개최와 농민연수교육실시에 대한 홍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청년 강좌제도는 농업후계자가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즉 기초강좌(농업경영·농가생활의 근대화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실무적인 지식 및 기술), 전문강좌(고도의 전

문지식·기술 및 경영관리 조직화 등) 및 장래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강좌를 강좌내용으로 하는 농촌 청년강좌제 연수사업이다.

이 제도는 농업개량보급소가 현 농업자대학교 및 시험장 등과 연계하여 관내 고졸 이상의 농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집합연수와 자가학습을 병행하여 3년동안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농촌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은 농촌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선진국의 우수한 농간에 파견하여 선진 농업경영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해외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청소년 해외연수는 농업실습생 파견사업과 단기연수가 있다.

농업실습생 파견사업은 국제농우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52년 미국에 농업실습생을 처음 파견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덴마크,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 1년간 파견되어 우수한 농가에 들어가 농가의 일원이 되어 일하면서 학습하게 된다.

단기연수는 농업시찰을 주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가 주최하여 유럽 및 미국 지역에 3주 내외로 실시하는 농촌청년파견시찰연수제도가 있다. 단기연수는 농촌청년의 참여도가 비교적 높다.

전국 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는 1962년 설립되었으며 농촌 청소년의 농업 및 농사생활의 실천적 학습활동을 조장하여 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연수, 농촌 청소년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농촌 청소년 육성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全國 農村靑少年 教育振興會, 2001).

- ① 청년 농업자의 집단육성 및 집단활동의 조장에 관한 일
- ② 청년 농업자의 선진지역 유학 연수의 알선 및 원조에 관한 일
- ③ 청년 농업자의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원조에 관한 일
- ④ 청년 농업자의 육성확보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정비에 관한 것
- ⑤ 청년 농업사 및 지도농업사의 활동조장에 관한 일
- ⑥ 청년 등의 취농에 대한 계발 및 연수에 관한 일
- ⑦ 취농지원자금의 관리사무의 수탁과 운영에 관한 일
- ⑧ 야츠가다케 연수관에서의 청년 농업자교육에 대한 각종 연수에 관한 일
- ⑨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다) 농업후계자의 자주적 집단활동조장

농업후계자에 대해 농촌사회인으로서의 협동정신을 증진하고 자질을 개발하는 동시에 농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집단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농촌청년이 실천을 통해 습득한 사업활동의 결과를 교환하는 농촌청소년기술교환대회, 농업경영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법 및 발전방향을 현 또는 전국단계에서 연구·검토하는 청년농업자회의, 농촌청소년단체의 지도자에 대한 단체운영방법 등을 주로 현단계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농촌청소년지도자연수 등의 사업을 통해 농업후계자의 집단생활을 조장하고 있다.

(라) 청년농업사제도

농업사의 사회적 평가를 제고시켜 전업적 열등감을 없애주고 엘리트 농가를 선정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1967년 나가노현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농업사제도는 청년농업사육성사업과 지도농업사활동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청년농업사육성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년농업사제도는 농업자로서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립적인 조직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질을 향상시키고 연대감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년농업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외에 현단계 또는 보급소단계에서 수시로 연구회를 개최하고, 년 1회 선진지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청년 농업사의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청년농업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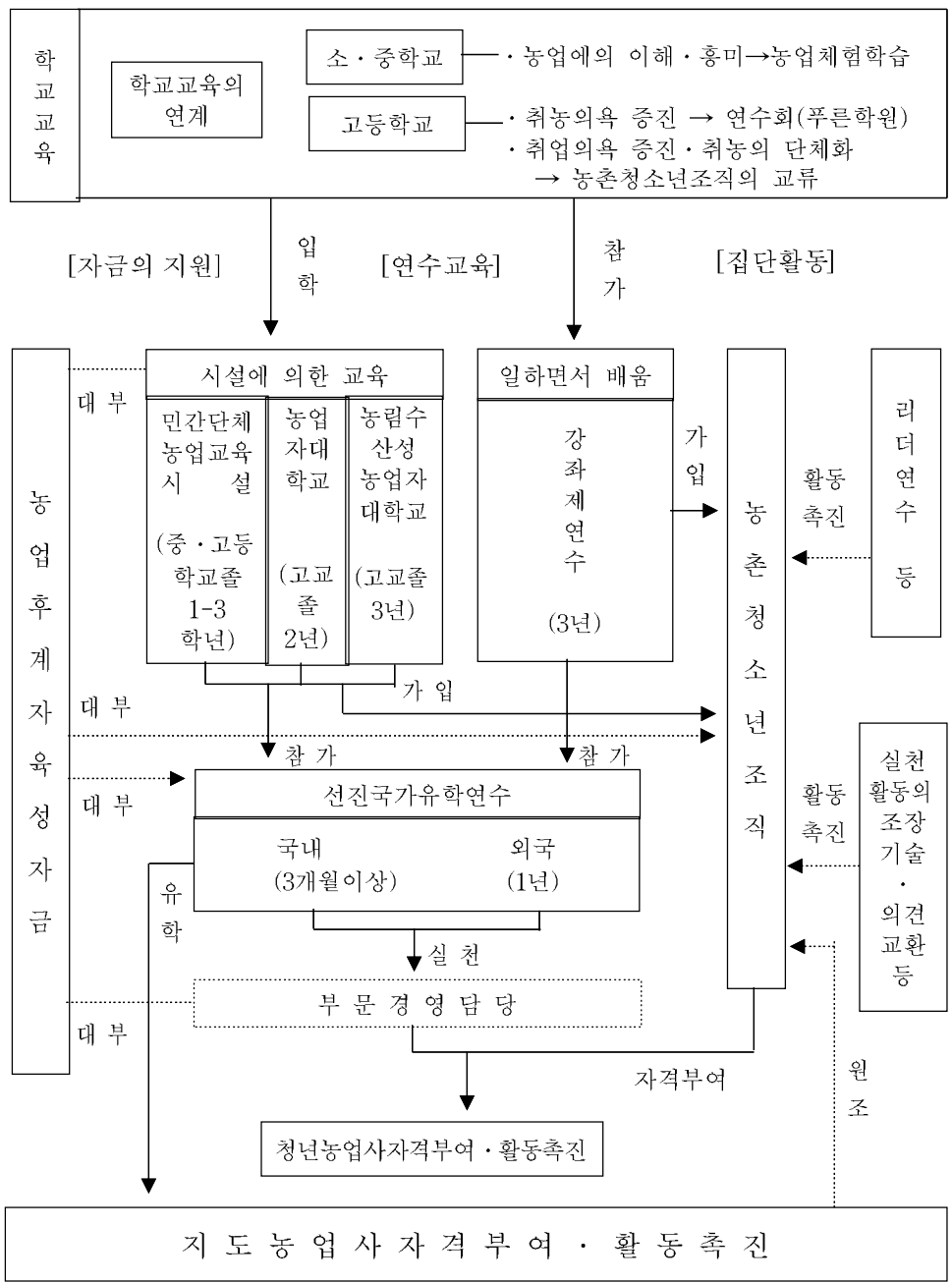
- ① 농업자교육실시에서 고교졸업과정 이상의 연수교육 또는 강좌제연수를 이수한 자
- ② 일정한 영농경험을 갖고 장래에도 영농경험을 실천하여 지역농업의 추진자가 될 35세 미만의 자
- ③ 농촌청년집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이 가능한 자
- ④ 현부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

지금까지 일본의 영농후계자가 육성사업을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단계별로 일괄적인 교육지도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농업에 대해 친근감을 갖도록 농업체험학교를 개최·운영하고, 고교졸업예정자에 대한 푸른학원 개최사업을, 고교졸업후 취농중인 자에게는 강좌제연수사업을 통하여 농업기술을 단계적으로 습득하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후계자를 교육·지도하고 있다.

둘째, 지도력이 있고 영농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른 농촌청년에게 청년농업사제도를 통해 농촌청년의 사회적 평가를 제고시켜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은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착실히 정착되고 있다. 이는 자질이 우수한 농업후계자를 육성·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농업을 매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환경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며 후계자를 지역농업진흥의 중간적인 담당자로서 의욕과 능력을 갖춘 농업후계자를 육성한다는 시책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 조홍수·전영길 (1991). 일본과 대만의 농업후계자 육성사업 .안성농업전문대학 논문집 제 23호. p20.

[그림 III-1] 일본의 영농후계자 육성 체계도

나. 기존 농업인 발전 정책

(1) 농업경영체 육성 정책

일본은 1992년 농업정책에서 이미 경영감각이 우수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체에게 농지집적과 경영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용지이용증진법의 대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법률을 일괄적으로 크게 개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각종 사업의 창설·강화를 골자로 하는 구조·경영정책의 사업추진법으로서 “기반강화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농업경영체육성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구조정책의 목표로서 종전의 자립경영 육성정책에서 다양한 “경영체”의 육성과 이러한 경영체에 생산의 대부분을 맡기는 농업구조로 재편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책 대상의 명확화·집중화를 위하여 인정농업자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제도의 추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지역의 실정”의 중시를 강조하면서 행정수법으로는 국가-도도부현-시정촌 간의 제휴·정합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넷째는 육성되어야 할 경영체의 한 축으로서 농업생산법인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다섯째는 구조정책의 시책이 종전의 규모확대정책 중심에서 “경영의 규모확대, 생산방식의 합리화, 농업종사형태의 개선, 경영관리의 합리화”등을 포함한 경영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농정 구조·경영정책을 체계화시킨 기반강화법의 중심개념인 인정농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① 경영개선지원센타에 의한 경영상담·연수 ② 농업위원회에 의한 농지이용집적 ③ 금융 ④ 세제와 관련된 정책지원이 구상되어 있다. 이하 그 시책과 추진체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13>과 같다.

“기반강화법” 제 1조의 목적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하고, 이러한 농업경영이 농업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구조의 확립”을 위하여 농업경영목표를 명확화·특정화시키고, 그러한 농업자에 대하여 농지의 이용집적, 경영관리의 합리화, 기타 농업경영기반의 강화와 관련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첫째, 당초의 “농용지이용증진계획”을 “농용지이용집적계획”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농용지이용개선사업에 있어서 농용지이용규정에 “인정농업자”로의 이용권 설정 등을 명기하였고, 셋째,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승인요건으로서 인정농업자의 농업경영의 개선에 이바지할 것 등을 명기하는 등 경영체의 특정화를 통한 선별적 경영지원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표 III-13> 농업경영기반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시책의 체계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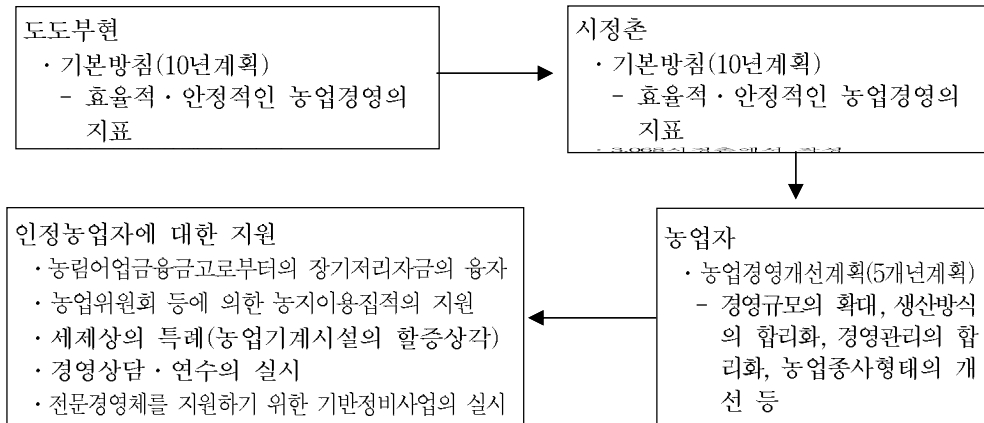
목 표	과 제	시 책	내 용
경 영 감 각 이 우 수 한 효 율 적 이 고 안 정 적 인 경 영 체 의 육 성	지역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활성화와 체제의 정비	· 시정촌기본구상의 조기실현 지원	- 기본구상실천활동추진(관계단체·기관이 시정촌기본구상의 조기실현을 위한 활동을 각각 역할분담하여 추진)
	계획적인 경영개선	· 경영개선계획 인정과 경영개선의 추진	- 경영개선을 추진하는 경영체에 대하여 농업경영개선계획 인정제도의 추진 -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인정받은 경영체에 대하여 시책의 집중 - 경영의 기초적 조건 정비
	바람직한 경영체로 유도	· 법인화의 추진과 경영체질의 강화	- 농업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한 개별상담활동, 연수회 등의 실시 - 법인의 자기자본 충실과 규모확대 - 세제면에서의 법인경영 지원
		· 경영지도의 강화	- 농업경영개선계획 등 작성 지원 - 경영지도체계의 정비와 지도자의 육성 - 지역 관계기관에 의한 정밀지도 - 농협계통의 종합사업기능을 활용한 법인경영의 체질 강화 - 바람직한 경영체 실현을 위한 농업기술 등의 도입·실증
		· 지역레벨의 농업경영체제 확립	- 경영체, 겸업농가 등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작업분담에 의한 지역농업경영의 확립 - 겸업농가가 집락영농조직에 기간농작업의 위탁 촉진 - 집락기능이 저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의건조정 활동 촉진
	경영체를 담당할 인제의 확보	· 신규취농 등 인제의 확보	- 농업법인 등에의 취직의 원활화와 농업경영을 담당할 인제의 확보 육성 - 청년농업자의 육성확보대책 등의 충실·강화
		· 농촌여성대책의 추진	- 파트너쉽 농업의 추진
	경영체로의 농지이용집적	· 경영체로의 농지이용집적	- 육성해야 할 농업경영으로 농지이용집적 - 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생산기반의 정비 등 - 환지와 이용권 설정의 일체적 추진 - 융자에 의한 경영체로의 농지이용집적
	농업경영의 안정	· 농업경영의 안정	- 자작지의 유지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한 농업자의 경영안정 및 부채경감 - 중간간지역의 농업경영의 개선·안정 강화 - 농업자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공제제도의 활용
통계정보의 정비	· 농업경영통계조사의 개선·합리화	- 조사에 대한 협력 촉진 및 조사결과의 경영분석에 활용	

자료 : 박문호(1998). 일본 신농정의 농업경영체 육성정책. 농촌경제 제21권 3호. p60.

(2) 경영기반강화를 위한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인정제도 창설

일본은 경영체 육성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농업경영계획의 인정제도”를 창설하여, 계획제도로서의 발본적 체제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는 농업자가 정부의 육성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단계에서의 기본방침, 시정촌단계에서의 기본구상에 기초하여, 스스로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그 계획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기본구상의 경영지표 및 인정농업자의 경영계획에서는 경영대책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규모 집적목표에 덧붙여 생산방식·경영관리의 합리화, 농업종사의 형태 등, 의무적 기재사항이 보다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설정기준은 기본구상과의 정합성, 계획달성 가능성의 확실성, 농용지의 효율적·종합적 이용의 적절성(농지이용의 집산화·효율화, 생산조정예의 대응을 포함)의 세가지 점이다.



자료 : 박문호(1998). 일본 신농정의 농업경영체 육성정책. 농촌경제 제21권 3호. p62.

[그림 III-2] 인정농업제도의 추진체계

기본구상이 그대로 인정농업자의 선정기준이 되고, 그러한 권한이 시정촌의 중추에서 구상되고 있는 점에서 “지역화된 구조정책”으로서의 성격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단, 지역의 조건, 관계자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할 기본구상 자체가 앞의 법 목적, 그것을 구체화한 현의 기본 방침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고 구체적 추진의 수단이 국가, 현의 보조사업 등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실제로는 상당히 한정된 지역정책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인정농업자에 대한 지원체제의 강화

인정농업자의 지원으로서의 첫째, 금융면에서 부기기장을 조건으로 하는 경영기반강화촉진기금의 창설, 둘째, 일정의 규모확대를 조건으로 하는 세계상(청색신고)의 우대조치로서의 기계시설의 할증상각제도 및 농용지 이용집적준비금제도, 셋째, 농지이용집적의 우선적 지원의 명확화, 넷째, 경영개선의 지원체제의 확립을 주요 추진시책으로 하고 있다.

인정농업자 스스로의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자금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경영체육성종합융자제도(슈퍼종합자금제도)를 창설했다. 장기금융인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슈퍼-L자금)의 외에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슈퍼 S-자금)이 설치되어 있다. 대부대상, 금리, 대부한도액 등의 대부조건면에서 종래의 자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인정농업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정농업자가 농업경영개선계획에 따라 경영규모를 50% 이상(축사에 대하여는 건평 20%이상) 확대한 경우에는 기계, 시설, 생물의 감가상각비를 20%까지 할증상각하여 필요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또 전문경영체의 확보가 어렵고 지역의 농지 유효 이용 및 적절한 보전이 어려운 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지역의 농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관리하게 하는 대신 농업생산법인을 특정농업생산법인으로 지정하여 농용지이용집적준비금제도라는 세계상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 준비금제도는 특정농업법인이 특정농용지이용 규정에 따라 농용지이용개선단체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빌리거나 농작업을 수탁할 때 필요로 하는 비용의 준비금으로서, 농업수입의 10% 이하의 금액을 5년간 적립할 수 있으며, 이것을 장부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이 적립금을 활용하여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압축기장과 압축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농업위원회 등은 인정농업자로부터 규모확대를 위한 농지이용권설정의 신청을 받아, 인정농업자에게 농지가 집적되도록 농지이용관계의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 농용지이용집적 특별대책을 실시하여 인정농업자에 대한 농용지의 유동화가 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집락단계에 있어서 농가의 의향 파악, “농지유통화추진원”의 활동 강화 등 집락기능을 활용하여 철저한 농용지이용조정활동을 추진하고, 인정농업자에 대한 농지의 이용집적이 타 지역에 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촉진비를 교부하는 사업이다. 시정촌 농업공사 등이 실시하는 “농지보유합리화사업”에 있어서도 규모축소농가, 이농농가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빌려 인정농업자 등에 매도 및 대부기능을 확충·강화하고 있다.

매매사업에 대하여는 농업담당자 부담경감조치로서 일시 대부후 매각방식을 도입하고, 신규사업으로서 이농희망자 소유농지 등의 신탁의 인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농용지 등의 현물출자,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중간 보유하는 농지를 활용한 신규취농자에 대한 연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집단화시책으로서 농업담당자에 대한 단지적 농지집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집합적이용권설정사업이 신설되었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특별사업으로서 실시되는 동 사업에는 “집락단위관리형”과 “집합적 이용권 등 조정형”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농용지이용개선단체 관할 지구의 농지를 자작지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전부 공사가 빌려서 그것을 농업담당자에게 단지화하여 재분배하는 형태이고, 후자는 그것을 임대차유동농지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소위 “경영체간의 차지교환”을 사업화한 것이다. 이 사업은 합리화사업의 중간보유·재분배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단지화를 피하는 경우에 비하여 차지기간의 통일, 차지조건의 조정 등 전문경영체의 농지 집적을 유도하고,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공적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보조사업으로 인정농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 전국, 도도부현, 시정촌의 각단계별에 걸쳐 경영개선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실시주체는 전국단위에서는 전국농업회의소, 도도부현단계에서는 현 농업회의 및 민법법인, 시정촌단계에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시정촌, 농업위원회, 농협, 공사 등으로 되어 있다. 주요사업의 내용은 인정농업자의 자격을 피하는 자 및 인정농업자에 대하여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인정농업자제도의 설명회개최, 경영개선계획의 작성 및 달성

을 위한 연수회, 인정농업자의 능력개발활동으로서 관련이종업간의 교류, 정보수집 제공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정농업자의 경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사회보험노무사, 세리사 등의 전문가를 도도부현단계에 등록시켜 인정농업자의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4) 농업생산법인을 중시

인정농업자의 정립방향으로서 농업생산법인을 중시하고, 그 촉진방향으로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규제완화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경영관리능력, 자금조달력, 거래신용력 등 법인경영의 이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첫째, 사업요건으로서 종전의 농업생산 및 소유농기계의 잉여노동력을 이용한 농작업수위탁 중심의 부대업무에 덧붙여 농축산물의 가공, 저장, 운반, 판매, 농작업의 수탁 등 농업과 관련한 사업까지로 사업의 영역이 확충되었다.

둘째, 구성원 요건의 완화이다. 농사조합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력에 의존한 농업경영은 농업자의 협동조직이라는 농사조합법인의 성격에 위배된다는 입장에서 제도 발족당시에는 조합원의 경영참가를 1/5이하로 엄격히 규제하였으나, 1970년에는 1/2, 1992년에는 외부로부터의 법인 전문가 확보 및 생산된 농산물의 주요고객, 농작업의 위탁자 등 거래 상대방의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4/5로 크게 완화하였다. 또 법인의 자본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보유합리화법인, 농협 등이 자본참여를 통하여 경영재건을 추구하거나, 신규 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고 생산법인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개별경영과 함께 인정농업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육성·지도사업, 농용지이용집적사업 등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산법인의 자기자본의 충실과 경영규모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업생산법인출자육성사업, 농업후계자가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생산법인을 특정농업생산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5) 지도농업사 제도

지도농업사제도는 현재 우수한 농업경영을 수행하고 농촌청년육성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자의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농촌청년지도 육성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농업자를 대상으로 지도농업사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의 자립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지도농업사의 자격부여와 함께 연간 3회 정도의 지도농업사 상호간 정례 정보교환회를 개최하는 한편 현 또는 농업개량보급소의 주관하에 지도농업사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도농업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업기술 및 경영관리능력이 탁월하고 농업경영내용이 지역수준 이상인 자
- ② 농촌청년육성지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지도활동능력을 가진 자
- ③ 가족과 협력, 농촌청년을 받아들여 지도할 수 있는 자

④ 각 지역의 도부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

지도농업사는 2000년 현재 44개 도부현에서 8,823명이 자격을 얻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273명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日本農林水産省, 2001).

2. 미국의 농업인력육성정책

가. 농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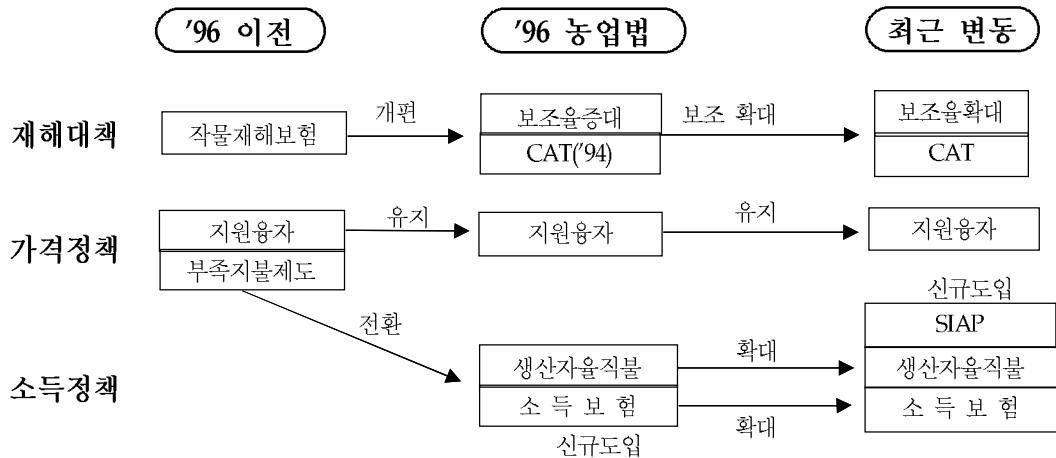
미국의 농업정책은 1996년 농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식부면적의 적절한 통제와 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을 지지함은 물론 양질의 농산물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지나친 가격지지는 농산물 공급의 과잉 문제를 초래하여 재정적자 누증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재고누증과 수출보조로 인한 세계 농산물 가격 하락과 수출침체는 UR 농산물협상 개시의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UR 협상결과를 이행하던 1996년에 농업법을 제정하여 과거와는 달리 소득보상과 지원을 생산이나 가격에 연계시키지 않고(decoupled income support) 사전적으로 결정된 일정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농정의 골격을 전환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안정장치로 다양한 작물재해보험 정책을 도입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미국의 농업정책은 크게 재해대책, 가격정책, 소득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농가경영 및 소득 불안정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보험, 수입보험제도의 확충과 다양한 긴급지원제도를 통한 재해대책이다. '96년 이전에 있었던 작물재해보험은 '96년 농업법 제정을 통하여 보조율이 증대되었고, 특히 '94년에 CAT (Catastrophic Insurance)를 제정하여 최저한도의 보험으로 작물별로 연간 \$ 60을 내면 50% 이상의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보조율이 확대되었다.

둘째, 국내 및 세계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미국 정부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원융자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마케팅지원융자(marketing assistance loan)와 융자부족지불제(loan deficiency payment)를 통해 가격대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셋째, 그 동안 미국 농정의 근간이 되어 왔던 부족지불제도(1973년 농업법)와 생산조정제도(1933년 농업조정법)를 폐지하고, 식부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생산자율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고, 2000-2002년간 새로운 보완적 소득지원정책(SIAP: Supplementary Income Assistance Program)를 도입하는 등의 소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 : 임정빈(2001). 최근 미국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에서의 전략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p. 6.

[그림 III-3]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나. 농업인력 육성체계

(1) 학교교육을 통한 영농후계자 육성

현재 미국의 농업교육은 고등학교, 지역사회대학 및 4년제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농업교육은 종합중등학교의 농업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중등농업교육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을 개설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현재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성인, 농부 등을 모두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교교육체계의 영농학생회(Future Farmers of America)는 1900년대에 들어와 선진적인 주에서 주법을 제정하여 농업교육 및 농촌지도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스미스-휴즈법이 공포된 1917년에는 약 800개의 청소년클럽이 결성되었는데, FFA는 지도성, 협력성, 선량한 시민성, 애국심의 함양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단위 고급과정으로서의 농업교육기관인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2년제 초급대학 과정으로서 정규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이론과 실습을 겸한 현장 중심 농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농촌은 산업화과정에서 수반되는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으로 인해 정체위기(crisis of identity)를 맞이함으로써 90년대 말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인구가 10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90년대의 농민의 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량문제,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등의 심각성과 더불어 이농인구의 감소 및 농촌귀환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농촌 거주주민의 수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는 도시가 변두리지역까지 확장되면서 농촌인구의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농촌인구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농가인구는 1980년대에 비하여 1990년대에는 약 24.1%에 해당하는 150만명 정도가 감소하였다(최민호, 1993).

1910년에는 농장에 거주하는 농민이 전체 국민의 34.8%에 달하였으나 1930년에는 25%수준으로 떨어졌고, 1960년에는 10%, 1970년 이후에는 전체의 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에 있어서 농촌과 도시의 교체가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력 수는 일정지역으로 집중하였는데 중서부에는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사스, 아이오아, 미시간, 미네소타, 미조리,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다, 위스칸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농가인구는 193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9년 기준으로 6,32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인력의 부족현상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여기서 농업인력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의미하는데, 먼저 농업직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전업농, 제일종 겸업농, 제이종 겸업농을 포함하는 '영농직'이고, 둘째, 목동직, 농기계 운전직, 농장관리직, 노임 노동직으로 포함하는 '영농 노동직'이며, 셋째, 유통시장업체, 가공공장, 농기계공장, 농화학 공장직을 포함하는 '농업 산업직(agri-business)'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 공무원직, 농업 관계 협동 조합직, 공공 및 사설 농업 단체직을 포함하는 '농업전문직'이다. 이러한 농업인력을 미국에서는 청년농민(young farmers)과 미래농민(future farmer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는 학교를 졸업하여 영농직에 부분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을 의미하고, 후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농업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농업인력 중 특히 농업인 재교육훈련기관의 현황, 기관별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농업현장과의 연계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미국에서 농업인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미국 농무성(USDA), 4년제 농업계 대학, 2년제 농업계 전문대학, 주 단위기관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첫째, 미국 농무성(USDA) 부서인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USDA Cooperative State Research Service', 'USDA's Current Research Information System', 'USDA Extension Service Gopher Site',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Extension Service WWW site', 'USDA-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업관련 정보 및 기술을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둘째, 4년제 농업계 대학 부설기관으로 있는 재교육 훈련기관에는 'Indiana Cooperative Extension at Purdue University', 'Iowa State University Extension', 'Kansas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tension', 'Langston University Research and Cooperative Extension',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Extension' 등이 있으며, 셋째, 2년제 농업계 대학 부설기관으로 있는 재교육 훈련기관에는 'Delaware Valley College of Science and Agriculture' 등이 있다. 넷째, 주 단위의 독립적인 농업인 재교육 훈련기관에는 'Nebraska County Extension Offices' 등이 있다(정철영외, 2002, pp.627-629).

(2) 사회교육을 통한 영농후계자 육성

미국의 농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모임을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서로 농촌 출신이며 농업에 흥미를 가졌다는 점에서 동료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발전

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로 사교적·오락적인 모임이었으나 차츰 교육적인 활동이 첨가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FFA', '4-H회', '청년영농회'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미국영농학생연합회(Future Farmers of Americas : FFA)는 1925년에 버지니아주 연합회가 결성되면서 명칭도 Future Farmers of Virginia를 기초로 시작되었다. 그 후 각 지역별로 영농학생회 연합회가 차례로 구성되었으며, 1928년 가을에는 미조리주 캔사스시에서 미국영농학생연합회(Future Farmers of Americas : FFA)가 본격적으로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학교교육체계의 FFA는 선진적인 주에서 주법을 제정하여 농업교육 및 농촌지도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때부터 청소년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 스미즈-휴즈법(The Smith-Hughs Act)이 공포된 1917년에는 800개의 클럽이 결성되었다. FFA의 목적은 지도성, 협력성, 선량한 시민성, 그리고 애국심의 함양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4-H회(National 4-H Council)인데, 이는 학생들의 과외활동으로서 집단활동이 활발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스미스-레버법(Smith-Lever Act)이 통과되어 주립농과대학이 제도적으로 농촌청소년지도사업을 전개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4-H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농업경영계획, 가정경제, 시민성 및 자아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학습하게 된다. 군단위 4-H 조직체는 단위 내에 속해 있는 4-H 클럽을 지원하며 자원지도자, 4-H 회원, 그리고 관심있는 시민은 군지도요원들과 4-H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함께 노력한다. 이러한 4-H 조직은 지도자선택 및 훈련, 군단위행사 및 지역집단활동지원, 그리고 사업가, 산업가, 그리고 회원부모와 함께 일을 한다. 군행사의 예를 들면 캠프, 전시회, 품평회, 그리고 여행 등인데 이러한 행사는 지역프로그램을 강화해준다. 회원이나 지도자가 훌륭한 일을 했을 때는 포상도 주어진다.

주단위 4-H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주립대학에 주재하고 있는 주협동 지도사업요원은 군단위 요원을 훈련시키고 평가하며, 출판물 및 여러 학습자료를 제공하며, 주회의, 활동 및 행사에 리더십을 부여하며, 4-H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일한다. 또한 전국 4-H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하는데 조언을 해주며 4-H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하는데 전국 4-H 클럽의 후원회 및 전국 4-H 서비스위원회와 더불어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는 청년영농회(National Young Farmers Educational Association: NYFEA)이다. Nichols(1952)는 미국의 청년농민교육(young farmer education)은 미래농민교육(future farmer education)의 계속교육으로 보아야 하며, 보다 더 실용적으로 다음과 같이 ①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한 준비성, ② 행복한 가정의 조성능력, ③ 협동적 태도와 인격, ④ 지역사회 봉사정신, ⑤ 지도력, ⑥ 건전한 오락의 향유, ⑦ 절약습관과 내용에 대하여 자질들을 길러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청년영농회는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직업적 농업을 돕기 위한 교육단체인데 이 단체는 청년 '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조직이다. 청년영농회의 설립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의 하나는 성인영농인들이 지역사회에서나 농업경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관심의 초점이 놓여진다. 따라서 청년영농조직은 가끔 FFA 조직과 성인영농자간의 간격을 좁혀주는 교량역

할을 하면서 그들 자신들에게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영농에 대한 지도력과 경영참여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농업교사가 농업교사의 주별 모임에서 조직방법을 습득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영농인들에게 청년영농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면서 조직하기도 하며 또한 청년영농회원들이 인근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그들의 조직에 관해 설명해 주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토록 초대한다.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조직에 관해 이해하게 한 다음 그들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회를 조직하도록 하기도 한다. 조직에는 주청년영농회와 둘 이상의 단위를 지닌 지역청년영농회가 있는데 청소년 영농회의 회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2인, 서기, 회계, 섭외, 봉사, 둘 이상의 감사, 그리고 한 명 이상의 고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년영농회의 주요활동(Utah 주)은 크게 경제활동, 지역사회개선활동, 지도력 배양, 그리고 사교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정철영, 2002, pp.612-614).

(가) 4-H 클럽

학생들의 과외활동으로서 집단 활동이 활발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1914년 스미스 레버법(Smith-Lever)이 통과되어 주립농과대학이 제도적으로 농촌청소년 지도사업을 전개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4-H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농업경영계획, 가정경제, 시민성 및 자아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학습한다. 군단위 4-H 조직체는 단위 내에 속해있는 4-H 클럽을 지원하며, 자원지도자, 4-H 회원 및 관심있는 시민은 군지도 요원들과 4-H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이러한 4-H 조직은 지도자 선택 및 훈련, 군단위 행사 및 지역집단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사업가, 산업가 및 회원부모와 함께 일을 한다.

(나) GI Farm Bill(Government Issue Farm Bill)

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퇴역장교에게 영농교육을 시켜 실제 농민들의 농업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1944년부터 Title II of the Servicemen's Readjustment Act을 제정하여 유휴인력에 대한 영농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일명 GI Bill of Rights라 하며, 2차 대전 이후 약 70만명에 달하는 퇴역장교들에게 GI Bill에서 영농교육을 시켜 이들이 농촌에 돌아가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교육과정은 전일제 코스로 1년에 약 200시간 정도의 집단교육을 통해 영농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참석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참석자들에게는 약간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전체 농민과 농업노동자들의 절반이상의 비율이었는데, 교육받은 약 3/4에 달하는 퇴역장교들이 실제 영농에 참여하였다.

(다) 청년영농회(Young Farmer Association)

청년영농회는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직업적 농업을 돕기 위한 교육단체이며,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조직'이다. 이는 성인 영농인들이 지역사회에서나 농업경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청년영농조직은 FFA 조직과 성인영농자간의 간격을 좁혀주는 교량역할을 하면서 영농에 대한

지도력과 경영참여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업교사가 州회에서 조직방법을 습득,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영농인들에게 청년영농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면서 조직하기도 하며, 청년 영농회원들이 인근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그들의 조직에 관해 설명해 주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토록 초대하여 조직하기도 한다.

조직구성은 州 청년영농회와 둘 이상의 단위를 지닌 지역청년영농회가 있다. 청년영농회의 회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2인, 서기, 회계, 섭외, 봉사, 둘 이상의 감사, 한명 이상의 고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경제활동, 지역사회개선활동, 지도력배양 및 사교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다. 영농후계자 지원을 위한 법률 및 시책

(1) 연방정부의 영농후계자육성법

(가) 영농신용법

영농신용법의 발의는 농업과 농촌지역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농민들에게 신용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영농재정기반을 견실하게 하고 영농기술이 향상을 피하여 미래에 자립영농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특히 미래의 영농후계자와 농장주(rancher)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영농후계자들에게 금융대출을 신용만으로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영농신용법의 핵심조항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영농후계자(beginning farmers and ranchers)에 대한 신용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① 영농후계자와 목장주에게 영농설비의 대여 혹은 손쉬운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지원 행정기구(Farmers Home Administration)의 수립과 세부 프로그램의 진행
- ② 영농후계자들의 새로운 농지구입에 대한 지가대여지원 및 대출에 대한 새로운 관리 프로그램 수립
- ③ 영농후계자의 대여신청시 신속한 처리절차 수립
- ④ 농민의 부채지원을 법규에 수립된 필요수준으로 수정
- ⑤ 공인된 대출 프로그램 수립
- ⑥ 영농후계자의 지원을 위한 연방과 주간 협력체계(제휴)수립
- ⑦ 농가지원행정기구에 의해 보증된 재정지원자에게 대부 차용의 촉진
- ⑧ 10년까지 FHA 직접대부 프로그램에의 접근제한
- ⑨ 총 15년까지 직접적 또는 보증된 대부 프로그램에의 접근 제한
- ⑩ 50만 달러 혹은 그 이하의 보증대부에 대한 간소화된 신청서 필요
- ⑪ 농가지원행정기구는 성별로 신청자를 분류

특히 이 법안은 미래의 성공적인 자립농가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대출과 함께 농민들이 일정한 영농기술교육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대출지원 이전의 5년간 농가가 성공적인

영농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을 것을 기본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영농교육 프로그램은 대출 후 대출금 사용관리, 재정평가 과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주정부의 농무장관은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영농에 대한 교육경험이 풍부한 지역의 대학이나 다른 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나) 영농후계자, 농장주 지원 법률

영농후계자, 농장주 지원 법률은 법인보다는 영농이나 농장운영을 하는 농민을 지원하는데 있다. 지원대상자는 첫째, 혈연이나 결혼으로 관계를 맺은 소유주와 구성원 모두, 둘째,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장소유주와 그 구성원들로 하고 있다.

농민은 계속적인 영농이나 농장경영을 위해 해당지역위원회의 지원을 이 항에 의거하여 향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지원을 받은 농장 및 농민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의 위원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5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① 농장운영방식
- ② 농장운영에 의해 나타난 농산물의 양과 유형
- ③ 농장운영에 의해 전개될 생산방법과 실제
- ④ 농장운영에 의해 전개된 생산방법과 실제
- ⑤ 농장운영의 유지수단
- ⑥ 농장운영에 필요한 장비(개인이 소유한 장비, 임대장비, 타목적에 의해 구입한 장비의 일체)
- ⑦ 농장의 기대수입과 운영비
- ⑧ 농장운영에 필요한 신용
- ⑨ 농장운영에 필요한 부지

(2) 창업자나 가족규모 농가를 위한 농업자금 지원

미국 농무성은 농장지원부서(Farm Service Agency)를 통하여 농장상품과 환경보전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정상적인 대출을 얻을 수 없는 농업인에게 자금을 대출하거나 보증해준다. 그 외에도 농장의 생산과 관리의 장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자와 협력하고, 재상환이나 연기, 이자율을 낮추고, 부채감소를 위하여 환경적으로 민감한 토지의 보존완화의 수용, 부채를 현재시장가치로 삭감하는 것등을 한다. 이 부서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을 시작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농장 구입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 또는 운영자금과 구입자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농장소유권 확보 자금, 운영자금, 청소년자금, 창업자금, 사회적으로 불리한 농부 대출자금, 긴급자금대출(emergency loan), 분할자금에 대한 직접 대출이 있고, 대출자금보증이 있다. 이들외에도 농업분야에 대한 자금대출을 지원할 대여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다. 2004년 10월 24일 현재 1032개 종류에서 6억 5천 7백만불 정도의 자금이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I-14> 참조). 자금은 주별로도 다양한 농업자금이 존재하고 있다.

<표 III-14> 미 연방정부 농장지원부서의 농업자금 지원 유형

프로그램	계속자금배분	사용된 자금(2004.10.28. 기준)	미 사용금액 계	만들어진 자금수
직접 운영자금	\$127,572,000	\$ 12,451,000	\$ 115,121,000	412
운영자금보증-무보조금	\$138,894,000	\$ 23,600,000	\$ 115,294,000	140
운영자금보증-이자보조	\$35,482,000	\$ 31,348,000	\$ 4,134,000	157
직접농장구입자금	\$27,945,000	\$15,977,000	\$11,968,000	129
농장구입자금보증	\$155,801,000	\$51,684,000	\$104,117,000	185
긴급자금	\$172,046,000	\$459,000	\$171,587,000	9
boll weevil	\$0	\$0	\$0	0
인디언토지구입	\$0	\$0	\$0	0
전국 총계	\$657,740,000	\$135,519,000	\$522,221,000	1,032

자료 : 미국 FSA Online(2004.11.15), <http://www.fas.usda.gov/dafl/funding.htm>.

<표 III-15> 미국 연방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유형	최대 자금 한도	이자율과 조건	용도	자격요건
직접 농장구입 자금대출	\$200,000	40년까지 대출 가능 기관의 대출비용에 따른 이자 정상이자율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제한된 일시 이자 가능. 총 대출액의 50%가 타 대출자에 의해 제공된다면 이자율 5%, 5.875%(2004년 9월 이자율)	토지구입 건물건축이나 개량 토양과 수질 보전	-다른 곳에서 신용을 얻을 수 없는 사람 -농장성공에 필요한 관리능력을 시범할 농장관리와 운영에 대한 경험, 훈련, 교육 -미국 시민 -대출 의무에 대한 법적 능력 -수용 가능한 신용증거 -자금의 종료 후 가족농장의 운영자나 임차운영자 -기관에 대한 손해의 원인이 되는 이전 부채가 없어야 함 -연방부채 채납이 없을 것
창업농 분할자금 대출	구입가격이나 평가분의 40% 이하 구입자금과 운영자금:\$200,000 보증:\$813,000	기간: 15년, 이자율: 4%이하 4.00%(2004. 9월 이자율) 잔액을 사실금융으로 얻는다면 95%보증. 보증비 면제 구입액/평가액은 \$250,000이하 구입가격이나 평가액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함. 조인트자금부담계획 있음.	농장과 목장 구입 (FSA가 구입한 농장을 지원한 창업농에게 구입후 13 5일 동안의 평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우선권부여. 단 2이상의 창업농이 있을 때는 임의선택)	농장분할 구입자금은 은퇴농민을 지원하며, 구입가격의 최소 10% 현금지불 요구됨,
직접운영 자금대출	\$200,000	1-7년 기관의 대출비용에 따른 이자 정상이자율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제한된 일시 이자 가능 4.25%(2004.9월)	가축, 가금, 장비, 사료, 종자, 연료, 농약, 기타 농업 자재 구입 토양과 수질보전 제한적 부채 보충 비농장기업 사용불가	직접 농장구입자금대출과 동일
직접긴급 자금	실제손실액 10 0%나 최대 \$50 0,000 (목적,상환능력, 담보물에 따름)	부동산 목적이 아닌 경우 1-7년 실물손실은 40년까지 이자율: 3.75%	필수재산의 복구나 대체비 지원 재해 년도의 생산비의 일 부나 전부지불 필수적인 가족생계비 지불 농장운영의 재조직 제한적 부채 보충	

<표 계속>

프로그램 유형	최대 자금 한도	이자율과 조건	용도	자격요건
운영자금 보증	\$813,000 (매년 인플레이션 반영 조정)	1-7년, 대개 금액 90%까지 가능(단, 위험률에 따르며, 대출 목적이 직접 FSA 농장신용프로그램 부채의 보증이나 창업농의 분할자금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것은 95% 보증가능) 대여자가 농장고객에게 부과된 평균 이자내에서 정상이자지불이 어려운 사람은 4%의 이자율 보조	부채 보증용 자금을 제외한 직접운영자금과 동일	-미국시민 -대여자가 규정한 신용경력 -부채의무 담당할 법적능력자 -보증없이 대출 불가능자 -3가지이상의 부채면제조건으로 보증 부서의 손실원인이 되지 않는 자 -연방부채 채납자가 아닐 것 -대출금이 끝난 후; -운영자금보증은 가족농장의 운영자 -농장구입자금보증은 농장소유자
농장구입 자금보증	\$813,000 (매년 인플레이션 반영 조정)	40년까지 대여자가 평균적 농장고객에게 부과한 이자내에서	부채보증에 사용될 자금은 제외한 직접농장구입자금에 해당하는 규모	-농장구입자금요구조건 충족 -3-10년 미만의 농장운영경력자 -그 지역 평균농장규모의 30% 이상의 농장을 소유하지 않은 자 -법인은 모든 구성원이 결혼이나 혈연관계이고, 모든 구성원이 창업 수준이어야 함
창업농 자금 (농장구입자금)	\$200,000	직접농장구입자금과 동일	직접농장구입자금과 동일	-10년 이상 농장운영하여야 함 법인은 구성원 모두 결혼이나 혈연관계이고 모두 창업농이어야 함
창업농자금 (운영자금)대출	\$200,000	직접운영자금과 동일	직접운영자금과 동일	-10-20세 지원자 - 미국시민 - 10000명 미만의 지역에 거주 - 자금을 얻을 수 없는 경우 - 지도직업 프로그램에서 보통규모의 생산프로젝트 수행자
청소년 자금	\$5,000	상환에 대한 서명 (본인, 보조자) 중간정도의 프로젝트(물리적 크기, 자본요구, 전반적 목표에서)	가축, 장비, 자재의 구입비 필요한 장비의 구입, 대여, 수리비 프로젝트 운영비	- 사회적 불리자(인종, 종족, 성의 편견을 겪는 사람(알래스카원주민, 인디언,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와 태평양 도서지역 출신 미국인)로서 가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농장운영에 직접, 주로 관련된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임. 다음조건을 요구함 -신용에 대한 이력 -충분한 교육경력(직접운영자금은 5년 내의 1년 이상의 농장운영관리나 운영경력, 훈련, 교육경력: 직접 구입자금은 3년 이상의 농장사업 운영 참여) -미국시민 -합리적 이율과 실제요구를 충족시킬 조건으로 다른 곳에서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 -대출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갖춘 것 -기업인 경우는 다수의 관심이 동일한 이용조건을 충족해야함. 농장운영조건에 저촉되지 말아야 하고, 소유주는 미국시민이나 법적 거주외국인이어야 하며, 농장운영은 혈연관계나 결혼한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수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 농장을 운영하여야 함.
사회적 불리농업인 자금	농장구입자금 농장운영자금	직접 운영자금은 1-7년이나 담보보장에 따르며, 이자율은 정부 대출율에 따름. 직접 구입자금은 40년까지 자금보증의 이자는 대여자에 의하여 결정되나 평균 농업대출이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농장구입자금(농장구입과 확대, 농장운영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의 구입, 건물의 신축과 개량, 토양과 물보전과 개량, 폐지비) 예약된 직접농장 구입자금은 농장구입에만 사용됨 농장구입 보증자금은 부채의 보증에 사용됨 농장운영자금은 가축, 자금, 농장장비, 사료, 종자, 연료, 비료, 화학물질, 기타 작물보험, 식품, 옷, 의료보호, 가축관계, 가정용수시스템의 설치와 개선 등에 사용.	- 사회적 불리자(인종, 종족, 성의 편견을 겪는 사람(알래스카원주민, 인디언,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와 태평양 도서지역 출신 미국인)로서 가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농장운영에 직접, 주로 관련된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임. 다음조건을 요구함 -신용에 대한 이력 -충분한 교육경력(직접운영자금은 5년 내의 1년 이상의 농장운영관리나 운영경력, 훈련, 교육경력: 직접 구입자금은 3년 이상의 농장사업 운영 참여) -미국시민 -합리적 이율과 실제요구를 충족시킬 조건으로 다른 곳에서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 -대출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갖춘 것 -기업인 경우는 다수의 관심이 동일한 이용조건을 충족해야함. 농장운영조건에 저촉되지 말아야 하고, 소유주는 미국시민이나 법적 거주외국인이어야 하며, 농장운영은 혈연관계나 결혼한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수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 농장을 운영하여야 함.

자료 : 미국 USDA, Farm Service Agency, Retrieved 2004,11.15 from <http://www.fsa.usda.gov/pas/publication/facts/html/farmloaninfo04.htm>.

(3) 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

미국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크게, 가격대책, 소득대책, 재해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미국 정부는 가격대책으로 가격지지용자제도, 마케팅 론(marketing assistance loan)과 용자부족불제(loan deficiency payment)를 통해 가격대책을 수행하게 되었고, 둘째, 그 동안 미국 농정의 소득대책으로 근간이 되어 왔던 부족불제도(1973년 농업법)와 생산조정제도(1933년 농업조정법)를 폐지하고, 식부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생산자유통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고, 2000-2002년간 새로운 보완적 소득지원정책(SIAP: Supplementary Income Assistance Program)를 도입하는 등의 소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그리고 미국정부는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농가경영 및 소득 불안정화에 대비하기 위해 작물보험, 수입보험제도의 확충과 다양한 긴급지원제도를 통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 가격대책

① 가격지지용자제도(1933년 농업조정법)

가격지지용자제도는 용자단가(loan rate)에 의하여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1933년 농업조정법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생산조정과 연계하여 최저가격지지에 의한 소득보장효과가 있다.

농가는 농산물을 담보로 하여 상품신용공사(CCC)로부터 용자단가(loan rate) 수준으로 최대 9개월간의 단기용자를 받는다. 농가는 농산물 생산하여 시장가격이 용자단가보다 높으면 시장에 판매하여 용자를 상환할 수 있다. 만약 시장가격이 용자단가 보다 낮으면 농산물을 그대로 담보로 처리되어 상환한 것으로 간주된다.

용자단가의 수준은 1950년대까지는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농가의 소득보장수준에 시장가격을 유도하는 것으로는 수출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보장과 곡물의 시장가격 수준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용자단가에 소득보장기능을 가지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출 가능한 시장가격수준으로 용자단가를 인하하는 한편, 농가의 소득은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정책의 조합을 시도하였다. 1973년 농업법에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 목표가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였다. 이것이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용자단가를 하회하면 용자단가)과의 차액을 지불하는 부족불제도(loan deficiency payment)인 것이다. 시장가격이 용자단가를 상회할 때는 농가는 작물을 시장에 팔고, 시장가격과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부족불로서 수취한다. 또, 시장가격이 용자단가를 하회할 때는 농가는 작물을 용자단가로 담보 설정하고, 용자단가와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부족불로서 수급한다.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는 시장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든 농가는 목표가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가가 획득한 목표가격 수준은 같아도 용자단가 수준을 변경하면, 목표가격을 구성하는 재정부담 부분과 소비자부담 부분이 변화한다. 낮은 용자단가는 낮은 시장가격을 유도하여 소비자부담이 경감되지만, 재정부담은 증대한다. 미국에서는 수출 가능한 수준으로 시장가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용자단가 수준을 인하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용자단가는 품목별로 과거 5년 중에서 최고와 최저년도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85%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와 같은 부족불제도는 소득보상과 동시에, 수출보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② 마케팅론(marketing loan)제도(1983년 농업법)

마케팅론제도는 용자단가와 시장가격(또는 국제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용자단가보다 낮은 상환단가(repayment rate) 수준에서 재고를 처리하는 경우 농가에 용자단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국제가격 수준에서 농가의 재고처분을 촉진하여, 공공재고를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용자단가와 상환단가의 차액은 수출보조금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생산조정제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 상품신용공사(CCC)에 재고가 누적되어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환단가를 용자단가보다 낮게 설정하고, 상환단가 수준에서 국제시장에서 덤핑수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과잉재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쌀, 면화를 대상으로 1985년 농업법에서 제도화되어 90년 농업법에서는 대두 등 유지작물에도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또, 소맥과 사료곡물에 대해서도 농무성 장관의 재량으로 재고감축 필요에 따라 상환단가의 변경이라는 형태로 같은 내용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마케팅론의 품목별 가격지지효과는 <표 III-16>과 같다.

이처럼 미국은 가격지지에 의한 국내가격의 최저수준을 지지하면서, 용자단가보다 낮은 국제가격 수준의 상환단가를 설정하여 과잉생산을 일종의 덤핑수출로 해결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표 III-16> 미국 마케팅론(marketing loan)의 가격지지효과, 1999년

(단위: 달러 부셀)

구분	평균 시장가격 (a)	마케팅론 이익 (b)	평균 단위당 수익 c(a+b)	1999년도 용자단가(d)	단위당 수익증가분(c - d)
옥수수	1.80	0.23	2.03	1.89	0.14
사탕수수	1.55	0.25	1.80	1.74	0.06
대맥	2.15	0.14	2.29	1.59	0.70
귀리	1.10	0.19	1.29	1.13	0.16
소맥	2.50	0.40	2.90	2.58	0.32
대두	4.65	0.85	5.50	5.26	0.24
쌀	6.10	1.80	7.90	6.50	1.40
면화	0.45	0.20	0.65	0.52	0.13

주: 단위에서 쌀은 달러/cwt(=45.36kg), 면화는 달러/파운드임.

자료: 김태곤(2001). 미국의 농업소득안정정책. 서울: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4.

원자료: Analysis of the US Commodity Loan Program with Marketing Loan Programs, 2001

③ 용자부족불제도(1985년 농업법)

마케팅론과 동일한 정책의도를 가진 제도로서 1985년 농업법에서 도입되어 계속되고 있는 용자

부족불제도(loan deficiency payment)가 있다. 이것은 가격지지용자를 받을 자격을 가진 생산자가 용자를 받지 않는 경우 용자단가와 상환단가(마케팅론의 상환면제 상당분)의 차액을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서 농가의 재고처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용자를 받지 않는 생산자에게 지불되는 것이 특징이며, 곡물의 국제가격이 대폭으로 하락한 1998년 이후 이 제도를 활용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998년도는 전년도 이상으로 가격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지불단가, 적용수량 모두 증가하여, 소맥, 대두, 옥수수 등 3품목의 지불총액은 49억 936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소맥이 83%, 대두가 88%, 옥수수가 77%에 달하고 있다.

(나) 소득대책

① 생산자유직불제도(1996년 농업법)

생산자유직불제(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는 1996년 농업법에 의하여 생산조정과 연계한 부족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고정된 금액을 매년 지불하는 직접지불제도로써 도입되었다. 1996-2002년 7년간 총액 356억 달러가 지불되었다.

이 제도는 ① 생산자유계약을 1996년부터 7년간 농무성(USDA) 장관과 생산자간에 체결하고, ② 자격자는 과거 5년간 생산조정과 연계한 가격지지 또는 부족불계획(소맥, 옥수수, 대맥, 수수, 귀리, 쌀, 면화)에 한 번이라도 참가한 적이 있는 자이며, ③ 적용대상은 계약면적(1995년 기준면적)의 85%에 대하여 실시하며, 단가(부셀당 금액)는 매년 지불액을 계약생산량(계약면적×계획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수급조건은 '계약면적을 농지로 이용할 것'과 '보전준수 의무를 지킬 것' 등 2가지이다. 여기서, 보전준수(conservation compliance)란 침식방지 쉬운 토지가 농장 내에 있는 경우는 토양보전국이 인정하는 토양보전방법을 사용하는 농법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1998년 이후 곡물가격하락으로 직접지불 만으로는 소득손실을 완전히 보전하지 못하는 시정이 발생하자 임시적인 긴급대책으로서 직접지불에 추가한 시장손실지불(market loss payment) 등을 매년 강구하고 있다<표 III-17 참조>.

농산물 가격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장손실지불은 1998년부터 4년간 175억 달러나 지불되고 있다. 시장손실지불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재정상황에 따라 의회의 판단으로 금액이 결정된다.

이러한 성격의 시장손실지불에 대하여 부시정권하 농무성(USDA)는 2001년 6월 '감축대상정책(Amber Box)'으로 WTO에 통보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하락하는 가격에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감축대상에 해당된다. 실제 처리방법은 일단 감축대상정책으로 인정된 후 최소허용보조(de-minimis)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용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국은 WTO 협상 등에 있어서는 보호감축과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도 이를 강요하면서도 국내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서는 농업보호를 강화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표 III-17> 긴급대책 규모, 1998-01년산

(단위 : 억달러)

구분	1998년산	1999년산	2000년산	2001년산	계
시장손실지불	29	55	55	46	185
기타	31	32	16	9	88
총액	60	87	71	55	273

주 : 기타는 대두·축산·과수농가 지원, 재해보상(보험료보조) 등의 합계
 자료 : 김태곤(2001). 미국의 농업소득안정정책.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6.

② 직접보조금 제도

미국정부의 농민들에 대한 직접보조금(생산자율계약 직접지불+융자부족불+긴급지원+토양보전지원 등)은 1996년의 73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23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19 참조>.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농가소득 보전정책에 따라 시장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 보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0년도 농가 순소득은 456억 불로서 1999년보다 22억 불이 증가하였으나 이 금액은 증가된 정부 직접지원액 27억 불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III-18> 미국의 연도별 농업소득과 정부보조금액

(단위 : 10 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현금수입	199.1	207.6	196.6	188.6	194.5
정부직접보조(A)	7.3	7.5	12.2	20.6	23.3
생산자율계약제	6	6.1	6	5.4	5
융자부족불지불	-	-	1.7	5.9	7.2
긴급지원	-	-	2.8	7.8	8.9
기타	1.3	1.4	1.7	1.5	2.2
순 농업소득(B)	54.9	48.6	44.6	43.4	45.6
비율(A/B),%	13.3	15.4	27.4	47.5	51.1

자료 : 임정빈(2001). 최근 미국의 농정변화와 WTP 농업협상에서의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자료: USDA/ERS Agricultural Income & Finance Situation and Outlook(2000)으로부터 재구성

정부 보조에의 의존도는 특히 곡물류에서 심해, 소맥은 농가 수입의 41.5%, 쌀은 50%가 보조금 수입이고, 면화도 44.6%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99년도 쌀농가의 총수입 25억 6,900만 달러 가운데, 실제로 시장판매수입은 절반인 12억 8,400만 달러이고, 나머지 절반은 직접지불 4억 6,600만 달러(18%), 긴급직접지불 4억 6,500만 달러(18%), 마케팅론 수입 3억 5,400만 달러(14%)로 구성되어 있다(<표 III-19> 참조).

<표 III-19> 주요작물의 수입 구성 (1999곡물년도)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소맥	사료곡물	쌀	면화	합계
시장판매수입	5,756 (58.5)	19,650 (70.0)	1,284 (50.0)	3,673 (55.4)	30,363 (64.2)
직접고정지불	1,447 (14.7)	2,947 (10.4)	466 (18.1)	616 (9.3)	5,476 (11.6)
긴급직접지불	1,447 (14.7)	2,947 (10.4)	465 (18.1)	613 (9.2)	5,466 (11.6)
마케팅론지불	953 (9.7)	2,316 (8.2)	354 (13.8)	1,697 (25.6)	5,320 (11.3)
토양보전지불	235 (2.4)	392 (1.4)	-	33 (0.5)	660 (1.4)
총수입	9,835 (100.0)	28,249 (100.0)	2,569 (100.0)	6,632 (100.0)	47,285 (100.0)

자료 : 임정빈(2001). 최근 미국농정의 변화와 WTP 농업협상에서의 전략.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 USDA

③ 보완적 소득지원정책(SIAP: Supplementary Income Assistance Program)

한편 2000-2002년간 새로운 보완적 소득지원정책(SIAP: Supplementary Income Assistance Program)를 도입하였다. SIAP의 도입배경은 국제농산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자 농가소득문제를 기존의 작물보험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농가가 품목별 수입보험에 가입하여 70%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지속적 가격하락국면이 1년에 그치지 않고 2-3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각한 소득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SIAP는 품목별로 예상조수입이 과거 5개년 평균 수입의 92% 이하 일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밀, 쌀, 면화, 유지종자, 옥수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불금액의 크기는 작물년도 초기에 매년 정해지며, 농가지원은 농민의 실제 생산수준에 기초하여 지불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농업소득이 적은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농민당 지원금액을 3만 달러 이내로 하고 있다. 2000년 예산은 6억불이었으며, 2001년에는 25억불로 증가하여, 2000-1년 동안 총 31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고, 이 정책은 품목 특정적이며, 현재의 특정 품목 재배농가의 생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WTO 농업협정문의 허용대상정책(Green Policy)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초에 미 농무부는 이것은 감축대상보조로 분류하였으나 미 의회의 반발로 인해 최근 허용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WTO에 통보한 미국의 국내보조 내역은 아직도 1997년까지로 정확한 미국의 분류체계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 재해대책

① 작물보험

현재 미국의 농업재해대책은 재해지원과 여러 작물재해보험(MPCI, CAT, GRP)으로 중층적인 구

조로 되어 있다. 작물보험은 1938년 창설되어 '39년부터 보증을 시행하였으며, 몇 단계의 개편을 거쳐 현재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 ㉞ MPC(Multiple Peril Crop Insurance) : 통상적 작물보험
- ㉟ CAT(Catastrophic Insurance) : 최저한도의 보험으로 작물별로 연간 \$60을 내면 50% 이상의 재해에 대해 보상
- ㊱ GRP(Group Risk Protection) : 지역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수확량 감소가 되지 않더라도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민의 재해 대비 노력에 유인

작물보험의 가입률은 초기에는 낮았으나, '80년 연방작물보험법 개정, 1994년의 연방작물보험개혁법에 따라 작물보험제도와 재해대책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후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입률이 낮았던 이유는 재해가 있는 연도에 특별 입법조치로 정규예산외 특별재해원조(Ad hoc Disaster Assistance)가 실시되기 때문에, 농민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보험가입이 낮았기 때문이다.

1980년 연방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은 작물생산량 위험보호를 위한 기본 형태로써 재해보상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보험 작물과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체 프리미엄의 30%까지 보조하고, 민간 보험회사와 에이전트가 작물보험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면적가입률이 '80년 10%에서 '91년 32%까지 높아졌다.

또한, 1994년 작물보험개선법(Crop Insurance Reform Act)을 제정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적은 비용으로 최소한의 수입보장을 하는 CAT를 도입하고(수확량 50%를 기준 가격의 55%를 적용하여 보증함), 추가보증(MPCI, buy-up)의 보험료 보조를 높였다.

1998-99 회계년도에는 긴급지원보조(emergency assistance)를 실시하여 작물손실에 대해 재해보조금을 지급하고, 4억불의 추가 프리미엄 보조(buy up)를 허용함. 1998년의 긴급지원 수혜자는 1999-2000 식부작물에 대해 작물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② 수입 보험

수입보험은 '96년 농업법에 의한 부족불의 폐지에 대응한 경영리스크 관리대책으로서 도입되었다. 수입보험제도는 가격하락을 방지하거나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를 가진 것은 아니며, 소득 변동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참가율은 보험료율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보험료율에 대한 정부보조를 실시하여 참가율을 높이고 있음. 그러나 가장 참가율이 높은 옥수수도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수입보험에 대한 정부보조는 더욱 확대되는 방향이어서, 소득보상적인 것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1996년 가격변동을 포함한 수입위험(risk)에 대응한 수입보험이 개시되자 이 제도로 전환하는 농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라. 영농후계자 지원을 위한 주정부법

미국은 연방의 법률과 함께 각 주마다 특색 있는 영농후계자 지원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노스다코다주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법률의 골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장 126 : 제 48차 주입법회의의 Vol.1.(Beginning Farmer Loan Guarantee Program)

현장 126은 노스다코다 은행에 의해 집행될 영농후계자 대부보증프로그램과 관련된 노스다코다 주법의 6개의 제목을 갖는 새로운 장의 고안과 경쟁에 관한 법이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영농후계자 사이의 지원받는 판매자 대부에 대한 산업위원회 대부보증프로그램, 보증대부가 없을 때의 절차, 토지와 광물 위탁으로부터의 충당금을 통한 충분한 보증기금의 설립과 유지에 관련된 노스다코다 주지역 법전 54-17-29, 54-17-30, 54-17-31항의 강화를 위한 법으로 노스다코다주의 입법회의가 제정한다.

② 노스다코다 주규약(제 48차 입법회의의 Vol.11.57-38-68항부터 57-38-70항까지)

이 법은 첫째, 영농후계자에게 농지를 판매시 소득세 공제(57-38-68), 둘째, 소득세가 면제된 영농후계자로 부터의 임대(57-38-69), 셋째, 영농후계자에게 토지 판매, 임대시 소득세공제에 대한 요구(57-38-70) 등을 그 골자로 한다.

③ 노스다코다 주규약(제 51차 입법회의의 Vol. 10. 54-27-29항과 54-27-30항)

이 법은 첫째, 소작 영농후계자에 대한 대출지원(53-17-29), 둘째, 영농후계자 대출금 상환불능에 대한 구제(54-17-30) 등을 그 골자로 한다.

④ 노스다코다 주규약(Vol. 11, 1991년 보충항)

이 법은 영농후계자의 토지 구입, 임차지 소득세 감면(57-38-70), 영농후계자의 법적 개념 정의(57-38-71) 등을 위한 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영농후계자로 지목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영농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영농가를 운영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프랑스의 농업인력정책

가. 영농정착 지원금(DJA, Dotations aux jeunes agriculteurs)

프랑스 정부는 젊은 사람들을 농업분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그 취업기회를 확장시키고, 학교단계에서 직업세계로의 전이를 원활하게 하는 것에 오랫동안 정책적 초점을 맞춰 왔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많은 수의 젊은이들(21세 - 35세)의 농업분야 능력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영농정착 지원금이 젊은 농업인력에게 제공된다. 이는 약 2백여 개에 달하는 프랑스 정부의 농업지원정책 가운데 가장 비중있게 취급되고 있는 분야의 하나이며, 우수한 농업

기술 및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영농희망자가 도시보다 우월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농업인력을 정예화하고 이를 통해 농촌에서의 장기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농정착 지원제도의 큰 골격은 정착시 무상으로 지급되는 정착보조금과 영농 시설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저리의 중기(中期) 특별금융(MTS) 및 추가금융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첫째, 영농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정착 후 3년 이후부터는 당초 계획했던 농업소득을 실현시킬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영농정착자는 향후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정부는 이들이 최소한 EU 회원국 농민들의 농업기술수준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도록 농업기술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부부가 공동으로 영농정착을 희망할 때 배우자를 독립인으로 인정하고, 각각에 대해 지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젊은 부부의 영농정착을 유도한다.

다섯째, 영농조건이 불리한 산간벽지지역에 대해서는 정착금지원과 특별용자에 있어 지원 폭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 영농정착제도가 이들 지역에서는 인구유지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DJA를 지원받은 영농정착자는 정착 후 3년 이후부터는 사전에 제출한 '영농정착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농업소득계획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실현된 농업소득은 반드시 전국기준소득(RRN)의 60~120%의 수준이어야 하며, 영농정착자는 정착 후 10년간 농업이 주(소득의 50% 이상)이 농업소득인 경우가 되는 활동을 해야 하며, 농업경영회계장부를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DJA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20> DJA의 개요

구분	내 용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35세로서 농업전문대학(BTA)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6개월 이상 현장실습 확인서를 구비해야 함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82,000프랑(1프랑=170원), 저리융자 최대 65만 프랑 • 조건불리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지원
융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리 3.8%, 12년 상환
지원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가 先구매 후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이를 토대로 지원함 • 자가노동에 의한 시설물 설치비용도 인정하여 실비기준으로 30%까지는 영수증 없이도 지원 • 영농정착보조금의 경우는 정착시 50%를 지급하고, 정착 3년 후 경영성과를 평가한 후 50%를 지급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의소, 컨설팅회사 등의 자문을 받은 영농정착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DJA의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III-21>, <표 III-22>와 같이 총 20점 만점으로 하여 크게 4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을 두고, 지역에 따른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표 III-21> DJA의 주요 평가항목

주요 평가항목	점수기준
1. 창조성 및 개혁성에 대한 장려 : Encouragement à la créativité, l'innovation - 품목의 다양성(주요 생산품 제외) Diversification (grandes productions exclues) - 소득 보충에 대한 연구 Recherche de revenus complémentaires - 과감한 확대의 창조성 Création de valeur ajoutée - 생산품에 대한 상업화 Commercialisation d'une partie au moins de la production	/3
2. 사회-전문성에 대한 장려 : Encouragement à l'insertion socio-professionnelle - 농업소득의 전문적 재투자 Réinsertion professionnelle d'un salarié agricole - 단체회원으로서의 가입 Installation au sein d'une forme sociétaire - 전문인 조직에의 참여 Participation à des structures professionnelles - 예측가능한 투자(CUMA, 기업, 상부상조 등) Investissements prévus sous forme collective ou partagée	/3
3. 헌신적 정착의 조건 : Soutien aux installations délicates ou ambitieuses - 축산동물 Contraintes liées aux productions animales - 투자 증액 가능 수준 Niveau élevé des investissements - 유효 재정비율 Ratios financiers moins favorables - 가족을 제외한 토지 접근 Accès au foncier hors cadre familial	/12
4. 작업장소 Occupation de l'espace	/2
합 계	/20

자료 : <http://www.vienne.chambagri.fr/InfosPratiques/Installation/DJA.htm>

<표 III-22> 지역에 따른 DJA 지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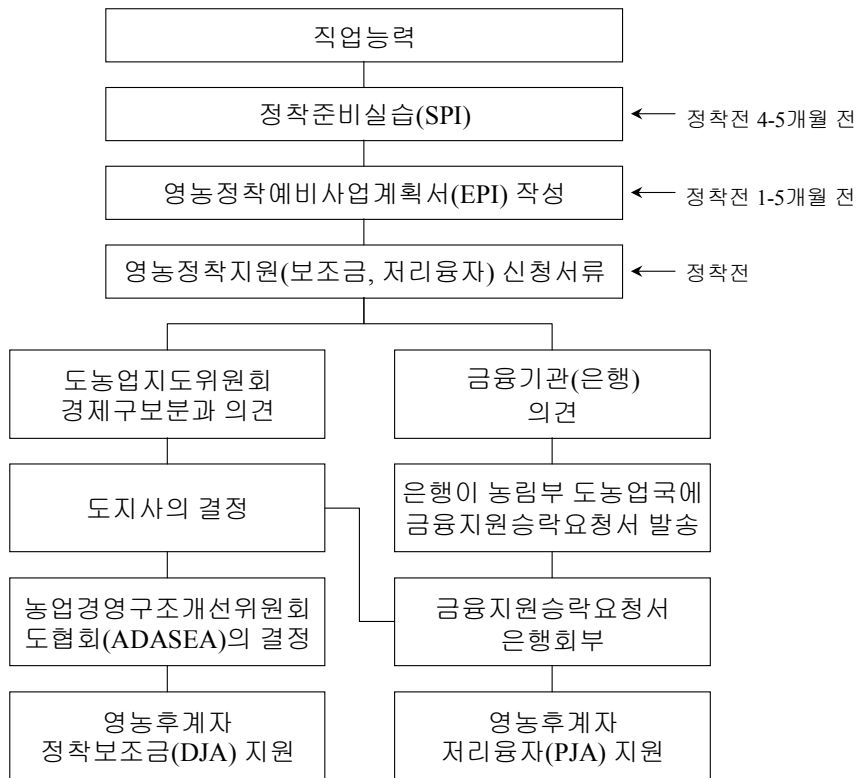
구분		최소	낮음	보통	높음	최대
지역	평야지역	0-4	5-8	9-12	13-16	17-20
	불리지역	0-6	7-10	11-14	15-18	19-20
DJA 총액	평야지역	52,000 F	67,350 F	82,700 F	98,050 F	113,400 F
	불리지역	67,200 F	87,000 F	106,800 F	126,600 F	146,400 F

자료 : <http://www.vienne.chambagri.fr/InfosPratiques/Installation/DJA.htm>

한편, 영농정착지원사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고 있다.

- 정착후보자 및 농정에 관한 정보
- 경지면적 및 농지보유상황
- 노동력현황
- 영농정착관련 정보(정착계획)
- 경종부문 생산계획(작부체계, 기술경제체계, 수확고, 판매가격, 가변비용)
- 축산부문 생산계획(연령별 가축관리, 기술경제체계, 수확고, 판매가격, 가변비용)
- 조수익 비교(농업활동별 조수익 비교)
- 예상 경영성과, 중간 경영결과
- 고정자본목록 및 투자계획, 감가상각표
- 투자와 재정
- 현 부채상황 및 예상부채
- 농업노동단위당 가치분소득
- 관찰란, 금융상태 예상 대비표

영농정착금의 지원체계는 다음 [그림 III-4]와 같은 흐름에 따라 DJA와 PJA로 구분되고 있으며, DJA는 농업경영구조개선위원회(ADASEA)에서 대부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III-4] 영농정착자금(DJA, PJA) 지원체계

영농정착금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가, 지역/도 농업국, 금융기관(농업은행)이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융자단계에서 철저히 사업 타당성을 토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실 지원요소를 초기부터 상당부분 제거하고 있으며, 융자 실시 후의 문제는 채권자(은행)와 채무자(정착농가) 간의 문제로 보아진다. 또한 저리융자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연차별 지원이 대부분 전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영농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담보 또는 보증인을 통한 회수나 소송과 같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나. SAFER

SAFER(Sociétés d'aménagement foncier et d'établissement rural: 토지정비 및 농촌시설회사)는 1960년 5월 농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FASASA에 의해 방출된 농지와 경영체, 비농지 등을 구입하고 필요할 경우 정비를 거쳐 전매한다. 비영리목적의 주식회사로서 농림부와 재무부의 승인을 거치며 국가가 파견한 대표들의 감독하에 활동한다. SAFER의 주요 임무는 신규 영농정착, 농업재정착, 기존 경영체의 경영규모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MA(농업공제), Crédit Agricole, 농업회의소, FDSEA, CDJA, CNASEA 등이 재정에 참여하고 설립기원을 이룬다. 현재, 33개의 SAFER가 있으며, 이 중 3개는 해외영토에 설립되었다. 활동범위는 몇 개의 도에 걸쳐 있으며, 행정적 지역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중앙조직으로서 SCAFR(Société Central

d'Aménagement Foncier Rural)가 있으며, 사업촉진과 업무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SAFER는 농지를 되팔기 위해 구입함으로써 토지시장에 통상구매자로서 개입하지만 선매권(droit de préemption)을 가진다(1962년 기본법에 의해 부여됨). 이 선매권은 다른 토지구매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선매권운용은 SAFER가 구매한 토지 전체의 16%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1977년 12월 29일 법이 SAFER의 선매가능성을 더욱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SAFER가 토지를 취득하면 양도시까지 최대 5년간 보유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정비사업(배수, 관개, 평지, 개간, 농로 등)을 행할 수 있으며, 농지의 생산적 이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AFER는 취득한 토지를 지주나 혹은 소유 또는 경영규모가 영세한 인근 경영자 또는 합리적 경영을 할 수 있는 농가 등에 이를 전매할 수 있다. 1979년까지는 우선적으로 기존 경영체의 규모확대를 꾀하는 농가에 토지를 전매해 왔지만, 1978년의 새로운 법령으로 인하여 신규영농정착과 재정착에 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료: 김정부 외(1998). 프랑스·독일의 영농규모화사업 관련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III-5] SAFER의 토지시장 개입절차

4. 우리나라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사점

각국의 농업정책은 인력 육성과 자금 지원, 농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개발에 대한 제도나 불리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중요한 시사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농업인력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자금이나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교단계에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각 주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시회는

여러 가지 오락기구도 있으나 농업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기능을 평가받는 대회들이 있다. 농업직을 생각할 수 있도록 FFA코너를 운영하거나 각종 농산물의 품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말 훈련기술의 숙련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둘째, 농업인력에 대한 정책은 인력의 육성과 함께 자금을 대한 지원이나 농산물의 가격,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복구까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관련분야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경로가 필요하며 미국은 농림부 산하의 농촌지도분야와 학교간의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는 농림부 산하에 협동적 주 연구, 교육, 농촌지도서비스(CSREES)위원회가 있고, 이들 위원회는 농장지원부서(Farm Service Agency)와 협력하여 주와 카운티 단위의 인력에 대한 의미있고 상호작용적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적 주연구, 교육, 농촌지도서비스위원회는 전국적인 관심영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 프로그램은 가르치는 기술을 촉진하고, 학업적 자질을 강화하며, 미래의 과학자와 전문 인력을 개발한다. 공공기관, 사립기관, 공립대학과 협력하여 비판적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지도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도부서나 농장지원부서가 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하면서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농과대학 교수들을 위한 정기적인 지역 수업개선 워크샵을 후원하고, 농업분야의 중등후기단계의 교육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생명관련 과학대학을 위한 학문위원회(academic summit)를 설치하였으며, '교실에서의 농업'(Agriculture in the Classroom)이라는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고등교육프로그램 팀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주단위의 자발적 지도자와의 협력관계로 운영하고 있다. 식품과 농업과학분야 대학교육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상을 운영하여 대학수준의 현저한 교수들에 대한 상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1890개 기관의 교수와 연구역량 개선 자금 프로그램, 전국 식품과 농업과학분야의 졸업자와 졸업이후의 장학금(fellowship grants program)제도, 고등교육도전장학금등의 자금 지원과, 미국 과학재단과 Ph.D.산출의 경향분석을 위한 과학재단과의 협력, 식품과 농업교육정보 체계 개발, 유지, 강화 위한 Virginia Polytechnic 대학교와 협력, 식품과 농업과학분야의 취업기회를 연구하기 위하여 Purdue대학교와 협동하며, '교실에서의 우주농업'(SAITC)를 위하여 NASA, 플로리다대학교와 공동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결국 이는 농림부가 농업인력에 대한 양성과 대출이나 정책 수립과 집행과 같은 금전 확보와 지원만이 아닌 교육방법에 대한 세미나 지원, 교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는 농림부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고 교육인적 자원부나 문광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이다.

셋째, 자금 지원에서도 금리가 변하고 있으며,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로 이자도 상황에 따라 조정이나 보조, 원금의 조정이 실시되고 있었다. 특히 금리는 사정에 따라 삭감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창업자에게 주어지는 자금이 제한되어 있으나 원금만을 갚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농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법인의 자금 신청도 허가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이 혈연이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중심의 운영만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이다.

IV. 농업인력육성 정책 방안

이 장에서는 논의를 농업인력 육성단계와 확보 정책, 발전정책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정예농업인력의 소요추정

농업관련 정책 및 교육계획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인력의 구조를 파악하여, 향후 10년의 농업인력의 규모와 구조를 전망하고 신규 소요인력을 추정하고자 한다. 농업의 현실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많은 변수를 고려할 수 없어 추계방법에 있어서는 1990년부터 2003년도의 추세치를 이용하였다.

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위상

우리나라의 총생산과 전체산업부문에서 농림어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90년에 8.37%, 8.80%를 점하였으나, 2000년에는 4.50%, 4.73%로 급속히 감소하였다(<표 IV-1> 참고).

<표 IV-1>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구분	지역내총생산	전체산업부문	농림어업	농림업/ 총생산*100	농림업/ 산업*100
1985년	80,411,326	76,351,246	9,848,167	12.25	12.90
1990년	177,114,341	168,578,032	14,829,234	8.37	8.80
1995년	357,722,460	340,462,837	22,871,134	6.39	6.72
2000년	503,785,053	479,884,450	22,686,452	4.50	4.73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농업부문의 세분화시켜 농업생산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산업연관표가 있는데, 산업연관표에서 산업분류를 통합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시켜 벼, 전작, 축산으로 분류하였다. 2000년 농업부문의 총산출액은 3,263백억원으로 전체산업 139,292백억원의 2.34%를 점하고 있으며, 농업부문 전체에서 벼 32.41%, 전작(원예포함) 42.67%, 축산 24.92%였으며, 전작에서 채소가 22.66%를 점하고 있다(<표 IV-2> 참고).

<표 IV-2> 부문별 총산출액 및 수출입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출	수입계	총산출액	총산출액비율	
비	5	0	10,573,967	32.41	
전작 및 원예	맥류 및 잡곡	1,462	1,672,440	254,148	0.78
	전작 및 원예	122,860	433,827	9,976,438	30.58
	기타 식용작물	10,370	866,855	1,846,202	5.66
	비식용작물	75,486	1,093,759	1,845,911	5.66
	소계	210,178	4,066,881	13,922,699	42.67
축산	8,431	294,863	8,131,423	24.92	
농업부문 전체	218,614	4,361,744	32,628,089	100.00	

농업부문의 취업자수는 2,075,477명으로 전산업의 취업자수 16,676,556명의 16.68%를 점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취업자 중 비는 748,640명으로 농업부문 취업자의 36.07%, 전작 및 원예는 979,822명으로 47.21%, 축산은 347,015명으로 16.72%를 차지하고 있다(<표 IV-3> 참고).

<표 IV-3> 부문별 종사자 및 취업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피용자	취업자	구성비	
비	707,244	41,396	748,640	36.07	
전작 및 원예	맥류 및 잡곡	44,022	2,693	46,715	2.25
	채소 및 과실	638,937	37,398	676,335	32.59
	기타 식용작물	183,723	10,753	194,476	9.37
	비식용작물	54,926	7,370	62,296	3.00
	소계	921,608	58,214	979,822	47.21
축산	327,012	20,003	347,015	16.72	
농업	1,955,864	119,613	2,075,477	100.00	
전산업	6,003,364	10,673,192	16,676,556		
농업/전산업	32.58	1.12	12.45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와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가구와 농가인구의 비율은 1990년에 각각 15.58%, 15.35%였으나, 10년이 지난 2000년 각각 9.67, 8.77%이었다(<표 IV-4> 참고).

<표 IV-4> 농가 및 농가인구의 구성비

(단위: 호, 명)

구분	가 구 수			인 구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1980	7,969,201	2,157,555	27.07	37,406,815	10,826,748	28.94
1985	9,571,361	1,925,869	20.12	40,419,652	8,521,073	21.08
1990	11,354,540	1,768,501	15.58	43,390,374	6,661,322	15.35
1995	12,958,181	1,502,171	11.59	44,553,710	4,851,080	10.89
2000	14,311,807	1,383,468	9.67	45,985,289	4,031,065	8.77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농어업총조사

총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연령별 비율은 1990년에 비해서 2000년에는 45세에서 65세까지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 참고).

<표 IV-5> 총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명, %)

연령	1990년			2000년			00비율- 90비율
	농가인구	총인구	인구비율	농가인구	총인구	인구비율	
전체	6,661,322	43,390,374	15.35	4,031,065	45,985,289	8.77	-6.59
0 - 4세	217,581	11,134,215*	-	106,615	3,130,258	3.41	-
5 - 9세	452,908		-	151,790	3,444,056	4.41	-
10 - 14세	699,846		-	200,370	3,064,442	6.54	-
15 - 19세	734,191	4,448,996	16.50	262,026	3,691,584	7.10	-9.40
20 - 24세	464,360	4,396,309	10.56	219,796	3,848,186	5.71	-4.85
25 - 29세	345,357	4,333,500	7.97	197,387	4,096,978	4.82	-3.15
30 - 34세	336,040	4,207,714	7.99	155,311	4,093,228	3.79	-4.19
35 - 39세	325,869	3,201,210	10.18	196,811	4,186,953	4.70	-5.48
40 - 44세	352,892	2,539,269	13.90	259,864	3,996,336	6.50	-7.39
45 - 49세	434,147	2,176,890	19.94	271,733	2,952,023	9.20	-10.74
50 - 54세	568,445	2,010,018	28.28	306,649	2,350,250	13.05	-15.23
55 - 59세	542,538	1,622,853	33.43	369,718	1,968,472	18.78	-14.65
60 - 64세	417,951	1,157,059	36.12	456,986	1,788,849	25.55	-10.58
65 - 69세	317,649	900,314	35.28	388,959	1,376,122	28.26	-7.02
70 - 74세	207,691	595,116	34.90	236,018	918,121	25.71	-9.19
75 - 79세	129,826	377,171	34.42	138,533	600,598	23.07	-11.36
80세이상**	114,031	289,740	39.36	112,499	478,833	23.49	-15.86

*15세 미만 인구합계

**연령미상 포함

나. 농업인력의 현황

2003년에 농가는 126만 4천호이며, 그 중 전업농가의 비율은 64.3%, 겸업농가의 비율은 35.7%이
었으며, 농가인구는 353만명이었다. 1990년 이후 농가는 2.42%, 농가인구는 4.57%씩 매년 감소하여,
농가에 비해서 농가인구의 감소율이 두 배정도 높았다(<표 IV-6> 참고).

<표 IV-6>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화

(단위: 명, %)

년도	농가인구	농가		
		농가수	전업비율	겸업비율
1990	6,661,322	1,767,033	59.6	40.4
1991	6,068,262	1,702,307	65.7	34.3
1992	5,706,793	1,640,853	62.5	37.5
1993	5,407,024	1,592,478	61.9	38.1
1994	5,167,420	1,557,989	59.8	40.2
1995	4,851,080	1,500,745	56.6	43.4
1996	4,692,040	1,479,602	56.5	43.5
1997	4,468,172	1,439,676	58.7	41.3
1998	4,399,643	1,413,017	63.2	36.8
1999	4,209,799	1,381,637	63.6	36.4
2000	4,031,065	1,383,468	65.2	34.8
2001	3,933,250	1,353,687	65.3	34.7
2002	3,590,523	1,280,462	67.3	32.7
2003	3,530,102	1,264,431	64.3	35.7

연령별 농가인구의 구성비는 2000년을 기준으로 14세 미만 11.38%, 15-64세 66.89%, 65세 이상이
21.73%였으며, 연도별로는 14세미만의 인구비율은 대폭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대폭 증
가하여 농가인구가 급속히 노령화되어가고 있다(<표 IV-7> 참고).

<표 IV-7> 연령별 농가인구의 구성비

(단위: 명, %)

연령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전체	10,826,748	6,661,322	4,851,080	4,031,065
0 - 4세	5.97	3.27	2.51	2.64
5 - 9세	11.62	6.80	4.07	3.77
10 - 14세	15.42	10.51	7.44	4.97
15 - 19세	12.38	11.02	8.72	6.50
20 - 24세	7.81	6.97	6.77	5.45
25 - 29세	4.86	5.18	5.07	4.90
30 - 34세	4.09	5.04	4.19	3.85
35 - 39세	4.75	4.89	5.39	4.88
40 - 44세	6.36	5.30	5.75	6.45
45 - 49세	6.31	6.52	6.35	6.74
50 - 54세	5.24	8.53	7.78	7.61
55 - 59세	4.68	8.14	10.09	9.17
60 - 64세	3.79	6.27	9.69	11.34
65 - 69세	2.76	4.77	6.60	9.65
70세이상	3.96	6.78	9.57	12.08

연령별 농업경영주의 현황은 60세 이상이 57.71%를 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65세이상의 농가가 40.97%를 점하고 있어 농가인구에 비해서 농업경영주의 노령화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8> 참고).

<표 IV-8> 연령별 농업경영주의 현황

년도	25세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1990	0.34	1.74	5.26	7.26	9.27	11.81	16.55	16.50	12.99	18.29
1995	0.13	0.69	2.67	6.27	8.15	10.00	12.52	17.28	17.52	24.75
2000	0.06	0.46	1.66	4.43	7.99	9.19	11.27	13.89	18.39	32.65
2003	0.01	0.17	0.74	2.56	6.01	9.63	10.22	12.94	16.74	40.97

다. 농업인력의 전망 및 소요인력

1994년 이후 2003년까지의 추세치를 이용하여 2013년의 농가와 농가인구를 추계하면, 1989천명 과 1020천호로 각각 2003년의 36.8%, 64.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농가에 비해서 농가인구의 감소가 급격한 것은 농가인구의 감소가 농가경영주 이외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이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세치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방식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를 전년 2개년을 이용하여 3개년 이

동평균을 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의 파라메타를 이용하여 각년도 농가수와 농가인구를 추계치하고 전년 2개년과 이동평균을 구하여 각년도의 예측치로 사용하였다.

<표 IV-9> 연도별 농가인구 및 농가수의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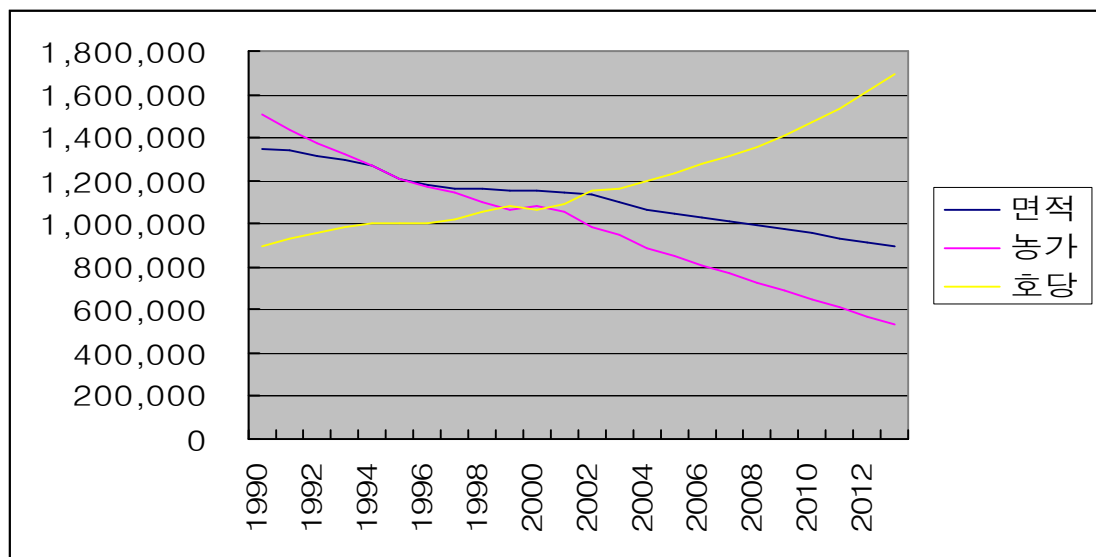
(단위: 호, 명)

연도	농가인구*	농가수**	호당 농가인구
2004	3,667,821	1,302,598	2.82
2005	3,478,132	1,268,852	2.74
2006	3,282,544	1,237,968	2.65
2007	3,097,862	1,206,875	2.57
2008	2,913,180	1,175,782	2.48
2009	2,728,497	1,144,689	2.38
2010	2,543,815	1,113,596	2.28
2011	2,359,132	1,082,503	2.18
2012	2,174,450	1,051,410	2.07
2013	1,989,768	1,020,317	1.95

* $Y_P = -184,682 \times Y + 373,570,748$, ** $Y_H = -31,093 \times Y + 63,579,433$

(1) 논벼(쌀)

2003년도의 논벼 재배면적은 2002년의 논면적 대비 논벼의 재배면적이 91.27%인 것을 감안하여 2003년 논벼 재배면적은 1,002ha를 이용하였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논면적, 농가수, 호당논면적은 각각 연평균 -1.56%, -3.34%, 1.78%씩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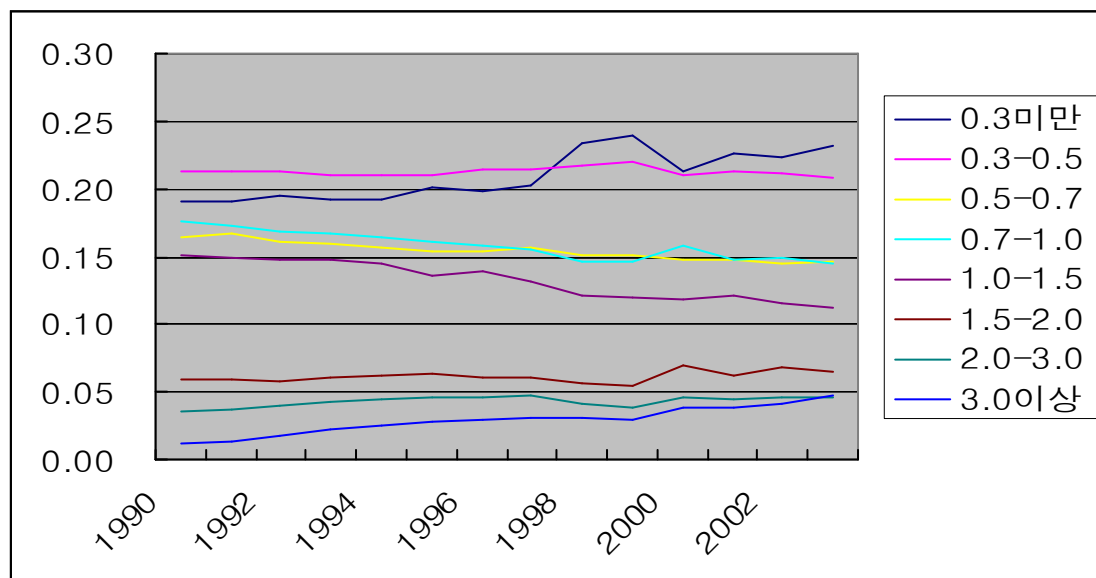
[그림 IV-1] 연도별 논면적, 농가수, 호당경지면적

<표 IV-10> 연도별 논면적규모별 논면적의 비율

(단위: ha, 호, %)

년도	논면적	농가수	호당 면적	0.3미만	0.3-0.5	0.5-0.7	0.7-1.0	1.0-1.5	1.5-2.0	2.0-3.0	3.0이상
1990	1,345,280	1,507,926	0.89	21.44	23.80	18.32	19.71	16.84	6.69	3.97	1.31
1991	1,335,204	1,434,997	0.93	20.47	22.85	17.87	18.54	16.03	6.30	3.98	1.43
1992	1,314,727	1,376,411	0.96	20.43	22.28	16.87	17.64	15.41	6.03	4.15	1.88
1993	1,298,323	1,321,640	0.98	19.55	21.34	16.22	16.93	14.98	6.15	4.40	2.23
1994	1,267,112	1,266,236	1.00	19.25	20.96	15.69	16.42	14.44	6.13	4.49	2.55
1995	1,205,867	1,205,049	1.00	20.14	20.99	15.35	16.07	13.59	6.35	4.61	2.83
1996	1,176,148	1,172,013	1.00	19.79	21.37	15.31	15.78	13.83	6.11	4.56	2.90
1997	1,162,852	1,143,171	1.02	19.91	21.11	15.46	15.29	12.94	5.99	4.60	3.02
1998	1,157,306	1,098,304	1.05	22.21	20.64	14.35	13.94	11.48	5.37	3.92	2.99
1999	1,152,579	1,063,608	1.08	22.09	20.31	13.87	13.55	11.07	5.11	3.50	2.79
2000	1,149,041	1,078,442	1.07	19.97	19.68	13.91	14.78	11.08	6.53	4.34	3.56
2001	1,146,082	1,054,415	1.09	20.76	19.58	13.64	13.64	11.10	5.72	4.04	3.53
2002	1,138,408	985,011	1.16	19.37	18.26	12.48	12.97	10.02	5.89	3.92	3.63
2003	1,097,868	944,819	1.16	19.91	17.89	12.53	12.45	9.65	5.58	4.00	4.05

1990년 이후 2003년까지 논면적 규모별 농가수는 3ha이상의 농가수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으며, 구성비의 변화는 0.3ha미만과 1.5ha 이상의 농가는 증가하였으나, 0.3-1.5ha의 농가는 감소하여 중간규모의 농가수의 구성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논면적 규모별 구성비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추세를 이용하여 논면적과 농가수를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향후 10년간의 논면적과 농가수를 추계하였다. 이때 추계에 사용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논면적: } A = 3,927,7970 - 1,9067Y \quad (R^2 = 0.909)$$

$$\text{농가수: } H = 81,193,373 - 40,072Y \quad (R^2 = 0.964)$$

<표 IV-11> 논면적과 농가수의 예측치

년도	논면적	농가수	호당 면적	0.3미만	0.3-0.5	0.5-0.7	0.7-1.0	1.0-1.5	1.5-2.0	2.0-3.0	3.0이상
1990	1,345,280	1,507,926	0.89	288,481	320,188	246,394	265,182	226,562	90,046	53,421	17,652
1991	1,335,204	1,434,997	0.93	273,313	305,121	238,634	247,577	213,993	84,178	53,090	19,091
1992	1,314,727	1,376,411	0.96	268,629	292,975	221,783	231,868	202,569	79,337	54,563	24,686
1993	1,298,323	1,321,640	0.98	253,855	277,013	210,603	219,769	194,431	79,884	57,169	28,918
1994	1,267,112	1,266,236	1.00	243,868	265,542	198,822	208,075	182,925	77,725	56,941	32,338
1995	1,205,867	1,205,049	1.00	242,805	253,141	185,052	193,820	163,934	76,610	55,618	34,069
1996	1,176,148	1,172,013	1.00	232,732	251,364	180,016	185,654	162,654	71,877	53,631	34,085
1997	1,162,852	1,143,171	1.02	231,511	245,497	179,721	177,748	150,502	69,597	53,483	35,111
1998	1,157,306	1,098,304	1.05	257,021	238,862	166,116	161,304	132,880	62,115	45,375	34,630
1999	1,152,579	1,063,608	1.08	254,580	234,053	159,883	156,168	127,559	58,878	40,342	32,145
2000	1,149,041	1,078,442	1.07	229,468	226,128	159,826	169,870	127,352	75,056	49,878	40,864
2001	1,146,082	1,054,415	1.09	237,941	224,382	156,317	156,310	127,160	65,504	46,310	40,493
2002	1,138,408	985,011	1.16	220,454	207,831	142,092	147,661	114,034	67,066	44,590	41,285
2003	1,097,868	944,819	1.16	218,575	196,462	137,608	136,634	105,919	61,218	43,963	44,442
2004	1,067,702	889,085	1.20	216,341	189,197	123,980	121,212	90,279	58,608	43,097	46,371
2005	1,048,635	849,013	1.24	212,294	180,717	115,908	112,058	81,051	56,715	42,096	48,174
2006	1,029,568	808,941	1.27	208,247	172,237	107,835	102,905	71,823	54,822	41,095	49,977
2007	1,010,501	768,869	1.31	204,200	163,757	99,763	93,751	62,595	52,930	40,093	51,780
2008	991,434	728,797	1.36	200,153	155,278	91,691	84,597	53,366	51,037	39,092	53,584
2009	972,367	688,725	1.41	196,106	146,798	83,618	75,443	44,137	49,144	38,091	55,387
2010	953,300	648,653	1.47	192,060	138,318	75,545	66,289	34,908	47,252	37,090	57,191
2011	934,233	608,581	1.54	188,013	129,838	67,473	57,135	25,679	45,359	36,089	58,995
2012	915,166	568,509	1.61	183,968	121,358	59,400	47,980	16,449	43,466	35,088	60,799
2013	896,099	528,437	1.70	179,922	112,879	51,327	38,825	7,220	41,574	34,087	62,604

논면적에 비해서 농가수의 감소율이 크기 때문에 2013의 논면적은 896,99ha, 농가는 528,437호로 예측되는데, 이때의 호당 경지면적은 1.696ha가 된다. 그러나 호당경지면적의 증가하는 추세치로 계산하는 경우에 2003년에 1.330ha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논면적 중에는 경작포기지가 많이 생길 수 있다(<표 IV-12> 참고).

<표 IV-12> 6ha이상의 신규농업인력의 예측

연도	호당 경지면적 추세치(A)	호당경지면적 예측치(B)	차이 (B-A)	예측 농가수(C)	노동력 부족면적 (B-A)*C	6ha이상 신규인력 ((B-A)*C)/6
2004	1.165	1.201	0.036	889,085	31,624	5,271
2005	1.184	1.235	0.051	849,013	43,690	7,282
2006	1.202	1.273	0.071	808,941	57,225	9,538
2007	1.220	1.314	0.094	768,869	72,229	12,038
2008	1.239	1.360	0.122	728,797	88,703	14,784
2009	1.257	1.412	0.155	688,725	106,646	17,774
2010	1.275	1.470	0.194	648,653	126,057	21,010
2011	1.294	1.535	0.241	608,581	146,939	24,490
2012	1.312	1.610	0.298	568,509	169,289	28,215
2013	1.330	1.696	0.365	528,437	193,109	32,185

따라서 2013년에 논면적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쌀 농가는 6ha의 경작규모로 환산하여 32천 가구로 추산된다. 또한 호당 평균 6ha수준의 쌀 전업농을 육성하여 쌀 재배면적의 50%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 이를 담당하는 농가수는 다음과 같다(<표 IV-13> 참고).

<표 IV-13> 6ha 이상의 소요전업농

년도	예측 논재배면적	예측 농가수	6ha 이상의 농가수
2004	1,067,702	533,851	88,975
2005	1,048,635	524,318	87,386
2006	1,029,568	514,784	85,797
2007	1,010,501	505,251	84,208
2008	991,434	495,717	82,620
2009	972,367	486,184	81,031
2010	953,300	476,650	79,442
2011	934,233	467,117	77,853
2012	915,166	457,583	76,264
2013	896,099	448,050	74,675

추계결과 2010년에 7만 9천으로 추계되었으나, 쌀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한계지의 증가로 인한 예측재배면적이 13%정도 감소한다고 예상할 때, 6ha이상의 쌀 전업농은 약 70천호로 예측된다.

(2) 축산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사육농가수는 모든 가축에 있어서 감소하였으나, 사육두수는 한육우를 제외하고 증가하였다(<표 IV-14> 참고).

<표 IV-14>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 현황

(단위: 천호, 천두)

연도	한육우		젓소		돼지		닭		기타	전체
	가구	두수	가구	두수	가구	두수	가구	두수	가축단위	가축단위
1990	620	1,622	33	504	133	4,528	161	74,463	42	3,776
1991	601	1,773	30	496	129	5,046	216	74,855	62	4,026
1992	585	2,019	28	508	99	5,463	188	73,324	77	4,353
1993	570	2,260	28	553	70	5,928	192	72,945	82	4,729
1994	540	2,393	26	552	54	5,955	189	80,569	95	4,941
1995	519	2,594	24	553	46	6,461	203	85,800	113	5,298
1996	513	2,844	21	551	33	6,516	187	82,829	124	5,526
1997	465	2,735	17	544	27	7,096	162	88,251	112	5,582
1998	427	2,383	16	539	27	7,544	168	85,847	113	5,289
1999	350	1,952	14	535	24	7,864	210	94,587	126	5,005
2000	290	1,590	13	544	24	8,214	218	102,547	131	4,802
2001	235	1,406	13	548	20	8,720	201	102,393	148	4,722
2002	212	1,410	12	544	17	8,974	176	101,693	160	4,766
2003	188	1,480	11	519	15	9,231	144	99,019	183	4,835
증감률/년	-9.39	-2.36	-9.22	0.37	-17.19	5.28	-0.52	2.93	8.78	1.31

소를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젓소의 경우 68.5%이나, 한육우는 6.5%에 불과하여 한육우에 비해서 젓소가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되었다. 돼지의 경우는 100마리를 기준으로 농가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에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닭은 10,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닭을 닭 사육농가의 5%정도가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5> 참고).

<표 IV-15> 가축사육규모별 농가수

가축	규모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젖소	소계	22,122	43,760	34,545	22,674	15,082
	1 - 2마리	4,892	8,163	2,578	538	1,782
	3 - 4마리	4,452	9,120	2,210	596	517
	5 - 6마리	3,662	7,137	3,261	921	371
	7 - 9마리	2,991	6,577	5,765	1,391	401
	10 - 14마리	2,695	5,849	7,724	3,421	860
	15 - 19마리	1,283	2,976	5,307	3,853	818
	20 - 29마리	1,110	2,399	4,976	6,120	2,175
	30 - 49마리	683	1,127	2,089	4,420	4,178
	50마리 이상	354	412	635	1,414	3,980
한우	소계	997,192	1,047,573	608,905	515,176	256,650
	1 - 2마리	934,392	776,518	464,102	254,840	154,912
	3 - 4마리	46,459	171,382	78,025	108,982	40,448
	5 - 6마리	8,770	51,407	27,283	52,788	18,301
	7 - 9마리	3,492	25,059	14,893	32,801	9,877
	10 - 14마리	2,294	13,680	12,722	30,225	11,347
	15 - 19마리	714	4,514	5,188	12,605	5,065
	20 - 29마리	567	2,455	3,601	13,419	6,437
	30 - 49마리	321	1,597	2,153	6,862	5,579
	50마리 이상	183	961	938	2,654	4,684
돼지	소계	502,899	251,196	139,684	46,673	24,126
	1 - 4마리	460,127	205,105	91,639	18,983	9,245
	5 - 9마리	18,462	13,747	9,238	2,857	1,602
	10 - 19마리	13,256	13,924	10,888	3,471	1,526
	20 - 29마리	3,827	4,322	5,141	1,931	799
	30 - 49마리	3,331	4,436	5,653	2,314	968
	50 - 99마리	2,341	4,918	7,142	3,363	1,344
	100 - 499마리	1,408	4,206	8,655	10,291	2,416
	500 - 999마리	81	343	984	2,406	3,850
	1000마리 이상	66	195	344	1,057	2,376
닭	소계	692,219	302,775	131,990	101,333	136,940
	1 - 19마리	667,621	292,467	109,524	77,588	114,045
	20 - 49마리	11,957	2,560	9,009	11,111	12,774
	50 - 99마리	680	492	1,706	2,623	2,700
	100 - 499마리	1,277	230	1,680	2,504	2,131
	500 - 999마리	1,673	381	660	432	300
	1000 - 1499마리	1,759	472	743	362	214
	1500 - 1999마리	1,229	667	636	186	79
	2000 - 2999마리	2,171	1,074	1,014	440	182
	3000 - 4999마리	1,972	1,648	1,799	735	270
	5000 - 9999마리	1,272	1,709	2,780	2,167	603
	10000 마리 이상	608	1,075	2,439	3,185	3,642

2013년의 축산분야의 소요인력을 추산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육두수의 증감추세를 이용하여 한우, 젓소, 돼지, 닭의 사육두수를 추계한 후, 전체 사육두수 중 전업농이 담당하여야 할 사육두수를 한우 70%, 젓소 90%, 돼지 90%, 닭 85%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2003년까지의 각 부문별 전업농의 규모를 한우 100두, 젓소 100두, 돼지 3000두, 닭 55,000수로 계산하였다.

<표 IV-16> 2013년 축산부문 소요 전업농

구 분	한우	젓소	돼지	닭	합계
2003년 사육두수(추계)	1,345,000	610,000	12,879,000	129,110,000	
전업농 담당비율	70	90	90	85	
전업농 사육 두수	941,500	549,000	11,591,100	109,743,500	
전업농 호당 사육두수	100	100	3,000	55,000	
전업농 소요농가	9,415	5,490	3,864	2,000	
정책목표 농가	9,000	5,000	4,000	2000	20,000

그 결과 2013년에 축산부문에서 필요한 전업농은 한우 9천호, 젓소 5천호, 돼지 4천호, 닭 2천호로 합계 20천호였다.

(3) 원예

2003년 원예농가수는 채소가 257천호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과수 133천호, 화훼 11천호였으며, 1990년 이후 농가수는 모두 증가추세였는데, 그중에서 화훼농가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표 IV-17> 원예농가의 현황

년도	과수	채소	화훼
1990	107,262	172,350	6,404
1991	107,664	181,597	5,217
1992	121,162	192,172	8,324
1993	129,068	208,674	9,292
1994	133,137	239,815	10,773
1995	143,600	246,648	10,062
1996	149,960	244,190	10,787
1997	157,436	233,640	8,792
1998	150,908	251,931	9,822
1999	150,554	253,421	9,204
2000	143,362	238,291	8,091
2001	145,709	250,724	8,942
2002	137,479	240,935	9,938
2003	132,850	256,646	11,474
증감률	1.91	2.62	2.92

원예농가수는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규모가 없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화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진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표 IV-18> 참고).

<표 IV-18> 규모별 원예농가의 현황

구분	규모	1999	2000	2001	2002	2003
과수	0.1ha 미만	980	1,480	972	1,382	1,480
	0.1-0.3ha 미만	19,099	18,677	0	15,959	16,172
	0.3-0.7ha 미만	44,453	38,518	42,573	36,932	37,486
	0.7-1.0ha 미만	24,220	25,128	23,542	23,298	20,944
	1.0-1.5ha 미만	28,699	25,844	26,039	24,756	23,458
	1.5-2.0ha 미만	16,131	17,388	17,309	15,616	14,720
	2.0-3.0ha 미만	12,068	12,593	10,882	13,091	12,073
	3.0-5.0ha 미만	4,343	5,586	4,945	5,300	5,532
	5.0-10.0ha 미만	566	1,122	693	1,043	854
	10.0ha 이상	0	123	77	103	129
채소	0.1ha 미만	5,522	11,177	6,274	9,083	9,230
	0.1-0.3ha 미만	67,340	52,044	64,651	55,973	60,700
	0.3-0.7ha 미만	72,895	61,429	69,810	66,442	68,713
	0.7-1.0ha 미만	36,135	33,160	33,857	34,455	35,974
	1.0-1.5ha 미만	35,531	34,909	35,588	32,472	34,523
	1.5-2.0ha 미만	11,774	15,567	13,434	14,995	15,628
	2.0-3.0ha 미만	11,774	15,567	13,434	14,995	15,628
	3.0-5.0ha 미만	5,091	7,035	5,787	6,852	7,816
	5.0-10.0ha 미만	0	2,049	0	1,638	1,482
	10.0ha 이상	334	405	447	286	484
화훼	0.1ha 미만	210	537	293	350	615
	0.1-0.3ha 미만	2,462	2,092	1,762	2,395	2,781
	0.3-0.7ha 미만	3,360	2,766	3,254	3,398	3,495
	0.7-1.0ha 미만	1,118	933	1,286	1,240	1,796
	1.0-1.5ha 미만	750	752	955	849	1,168
	1.5-2.0ha 미만	581	468	487	794	719
	2.0-3.0ha 미만	529	331	660	505	477
	3.0-5.0ha 미만	35	148	146	322	350
	5.0-10.0ha 미만	118	52	64	70	46
	10.0ha 이상	42	12	35	14	27

2013년의 원예부문의 소요 농가수를 추계하기 위하여 2000년 농업총조사의 규모별 원예재배면적의 통계를 이용하였다. 2003년에 원예작물의 50%이상을 과수와 채소는 1.5ha이상의 농가가 담당하고 있는데, 화훼원예의 경우는 1ha이상의 농가가 담당하고 있다.

추계의 전제는 원예작물의 2003년의 경지면적을 유지하면서 2013년에 전업농을 육성하여 50%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IV-19> 2000년 규모별 원예농가수와 재배면적

규모	과수		채소		화훼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경지 없는 농가	25	-	0	-	0	-
0.1ha 미만	1,455	136	11,177	1,058	537	39
0.1 - 0.2	8,045	1,312	33,472	5,172	1,167	188
0.2 - 0.3	7,535	1,946	18,572	4,774	925	241
0.3 - 0.5	20,554	8,357	34,748	13,921	1,753	698
0.5 - 0.7	17,964	11,104	26,681	16,351	1,013	620
0.7 - 1.0	25,128	22,131	33,160	28,776	933	820
1.0 - 1.5	25,844	32,356	34,909	43,378	752	935
1.5 - 2.0	17,388	30,375	20,516	35,774	468	817
2.0 - 2.5	7,876	17,713	9,645	21,595	200	450
2.5 - 3.0	4,717	12,922	5,922	16,205	131	357
3.0 - 5.0	5,586	20,656	7,035	26,084	148	546
5.0 - 7.0	842	4,963	1,374	8,254	37	228
7.0 - 10.0	280	2,325	675	5,761	15	124
10.0ha 이상	123	1,933	405	6,640	12	217
합계	143,362	168,228	238,291	233,742	8,091	6,278

2013년의 호당 전업농의 , 또한 현행 전업농규모의 농가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표 IV-20> 참고).

<표 IV-20> 2013년 원예부문 소요농가수

구분	합계	과수	채소	화훼	시설 및 기타
2003년 재배면적	389,744	143,362	238,291	8,091	
농가호수	408,248	168,228	233,742	6,278	
2003년 재배면적의 50%	204,124	84,114	116,871	3,139	
전업농 호당 평균 재배면적		2.2	5.0	1.5	
소요 전업농	63,701	38,234	23,374	2,093	
정책목표 전업농가	110,000	39,000	24,000	2,000	45,000

2013년 원예부문의 전업농가수는 과수 39천호, 채소 24천호, 화훼 2천호, 시설 채소 및 기타 작목 45천호로 전체적으로는 110천호였다.

라. 요약

품목별로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여 농경지를 최대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200천호의 전업농이 필요하며, 그 중 벼 70천호, 축산 20천호,

원에 및 기타 부문이 110천호로 추산되었다.

2. 농업인력 육성 단계

농업인력의 육성은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적 수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국가 사회적 요구와 개인의 희망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나, 국가 사회적 요구가 지금까지의 농업인력 육성 정책을 지탱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농업인력의 육성은 전제로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고, 그런 사람들의 생애 유형과도 부합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애발달의 관점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는 중요한 정책적 적용이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제가 되는 사항은 농업인력육성체제는 농업인의 생애발달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만족스런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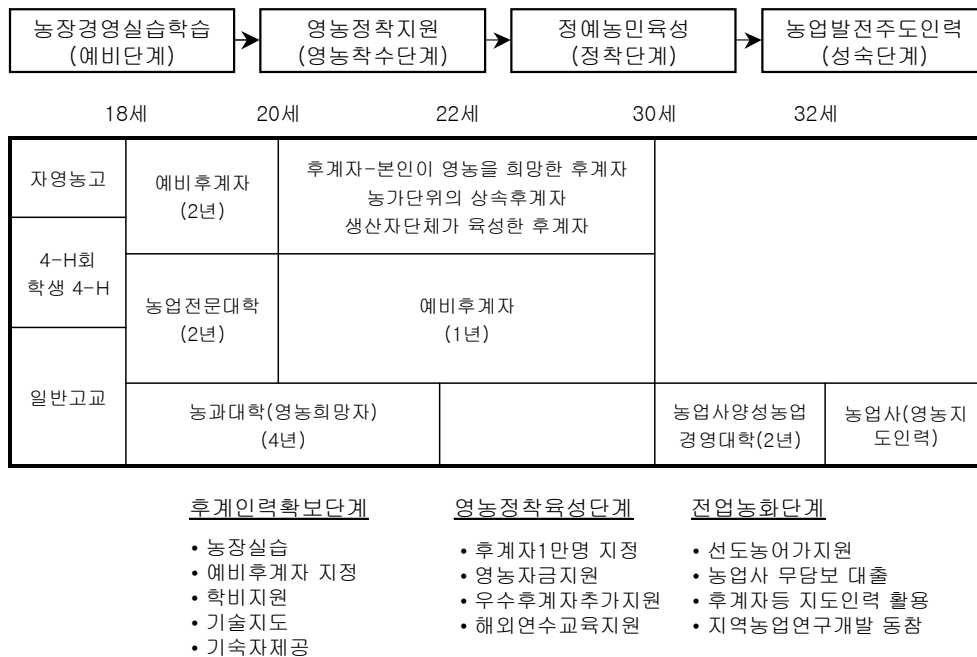
이는 생애발달의 개념을 적용할 때 각 시기별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부여되는 차별적 역할이 있다는 가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단계는 그에 적절한 정책의 변화도 가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농업인력의 육성단계를 설정한 정철영(2002, 2001), 서규선(2002), 안덕현(2001), 강대구 외(2003)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틀은 달랐으나, 정철영의 연구나 안덕현의 연구는 확보, 양성, 신규진입, 유지, 퇴출이라는 단계를 가정하거나 유지와 퇴출을 함께 규정하여 생애발달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농민의 관점에서 연구되기보다 정책시행자의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다. 안덕현의 연구 역시 표현은 다르나 연구의 틀로서 계획, 유인,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결과의 활용이라는 연구틀로써 개인의 생애발달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에 비하여 서규선은 명칭만으로는 농업직업내에서의 발전을 고려하는 듯하나 성격상 정책대상으로서의 구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잠재적 농업인력, 예비농업인력, 신규취농인력, 신규농업경영인력, 전문농업경영인력이라는 구분은 농업인력으로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적인 대상으로서의 차별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말한다. 강대구 외(2003)는 예비단계, 취농단계, 정착단계, 발전단계, 안정단계, 후계수련단계, 경영이양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단계별로 농업인력의 명칭과 특징을 진술하고 있다(<표 IV-21> 참조). 이에 비하여 정명채 등은(1991, p.30) 고등학교 단계부터 전업농에 이르는 단계까지의 단계적 지원과 육성체제를 중심으로 [그림 IV-3]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이들은 예비후계자, 후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정착과 발전단계에서는 전업농과 농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 IV-21> 농업인력의 육성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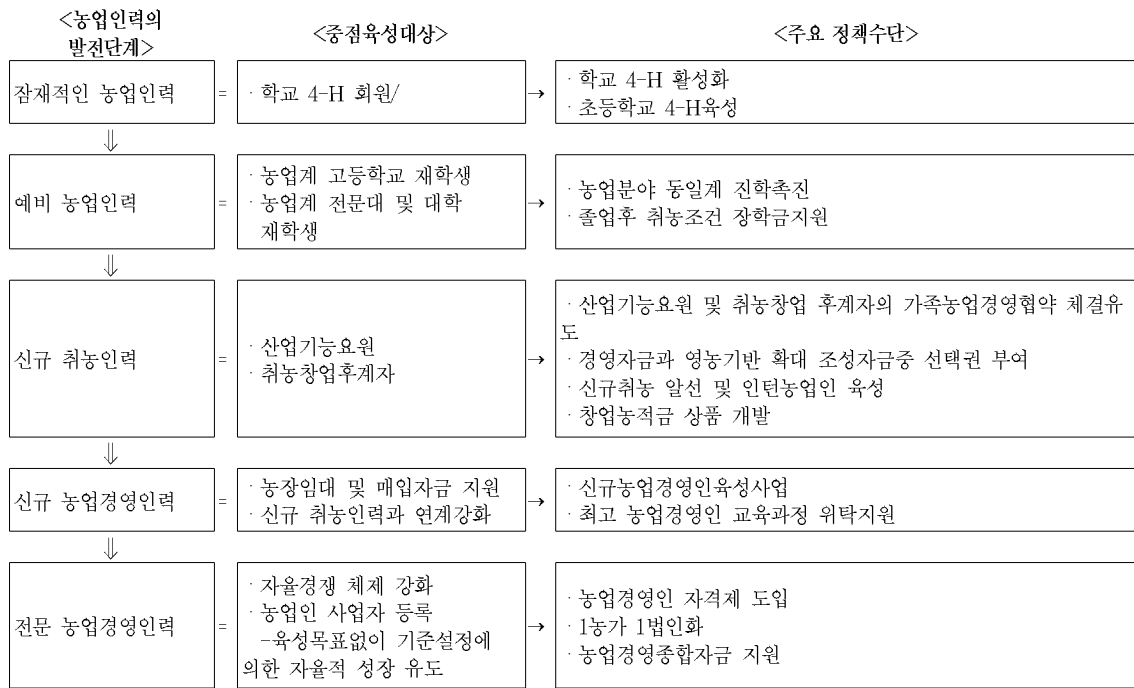
단계	농업인력명칭	특 징
예비단계	예비후계자	교육이수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하며 교육 및 훈련, 실습을 받는 자
취농단계	창업예비자, 창업농업인	창업자,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 초보적 기술, 경영, 소득수준,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영농을 하는 사람. 이론과 기술을 통합하는 단계로서 초보적 수준을 지칭함.
정착단계	정착농업인	영농정착에 성공한 사람. 기술수준이 지역평균수준
발전단계	전문농업인	기술과 경영, 소득수준이 해당품목의 전체평균 수준
안정단계	선도농업인	기술, 경영, 소득 수준이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 수준이상. 부분별 전국평균이상
후계수련 단계	신지식농업인	기술과 경영수준이 품목내에서도 전국평균수준보다 월등히 높고, 전국농업인 수준에서도 상위수준이며, 농업이외 분야의 평균소득과도 비슷하거나 상위수준
경영이양 단계	명예농업인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그들의 지식이나 기술을 실제 경영에 종사하기보다 후계를 가르치거나 자문이나 봉사활동에 관여하며 농업을 후원하는 단계의 농민

자료 : 강대구, 정철영, 이근수(2003). 창업농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순천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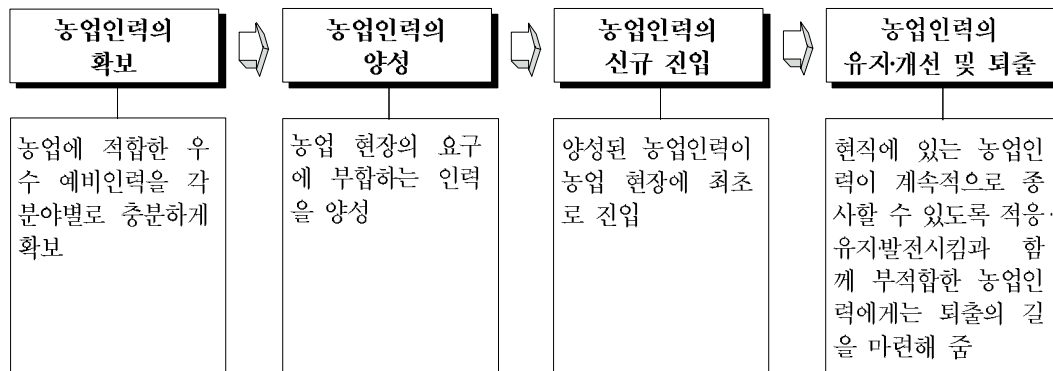
자료 : 정명채, 민상기, 이영대(1991). 농업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0.

[그림 IV-3] 고등학교에서 전업농에 이르는 단계적인 지원과 육성체계



자료 : 서규선(2002), 농업전문인력 교육의 발전 방향, 농학계 대학의 농업과학기술 교육 및 확장 기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p.92.

[그림 IV-4] 서규선의 농업인력의 발전 단계



자료 : 정철영(2002), "21세기 농업인력 육성", 농학계 대학의 농업과학기술 교육 및 확장 기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p.48.

[그림 IV-5] 광의의 개념에서 본 농업인력 육성 단계

이들은 국가의 정책적 변화에 따라 정책대상자의 명칭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관점이 아닌 농업인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직업영위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이고 그 역할과 기대에 대한 적응이 개인의 만족과 성공에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는 각 단계에 따른 책임과 업무와 부합하며 자신도 역할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직업발달단계를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인력은 단계별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각각의 농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실용적인 차이는 없을지라도 자신들에 대한 대우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어느 정도나 세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명칭 또한 가급적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보다는 긍정적 의미를 주는 형태로 명칭이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은퇴농이라는 명칭보다는 명예농업인과 같은 명칭은 단계상의 애매함은 있을지라도 그 역할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명예농업인 같은 명칭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이는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무난하거나 적절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의의가 있음을 말한다. 또한 이들 명칭이 개인의 직업과 생애발달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타당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추정하면 농업인력의 발전단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농업 종사를 결심하기 전의 잠재농업인 단계로서 이 기간은 농업에 대한 탐색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농업인력으로 유입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나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농업직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기회와 직업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견학, job shadowing, 과제 이수, service learning과 같은 활동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농업인이 되기 전이므로 적절한 농업인의 명칭은 잠재자, 또는 잠재 농업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농업직에 종사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여 준비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농업직 준비단계로 파악할 수 있고, 교육이나 훈련의 주 대상이 될 것이다. 이때는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이나 Job Shadowing, Cooperative education, internship, 창업연수, 직업훈련, Mentor제(창업후견인제), school based enterprise와 같은 work-based learning의 방법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농업직에 취업이나 창업하는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농업생산직, 즉 기존의 후계자나 창업농처럼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농에 착수하는 단계를 말한다. 영농에 대한 착수는 그 기간이 단기간이지만 신입직원이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 신입직원의 범주를 벗어나듯이 영농직이라고 한다면 생산과정 전체를 체험하는 단계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보조자로서의 입장보다는 자신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이므로 창업농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 기간은 대상 작물이나 가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작물은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의 구분이 되나, 수목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가축 사육에 관련된 일을 하면 그 기간이 변화할 수 있다. 1-2년생 작물인 경우는 기간상으로는 1년 정도면 모든 과정을 한번씩은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수목이나 가축은 1년으로 모든 과정을 체험하기 어렵다. 특히 가축은 닭을 제외하고는 태어난 후 성숙이 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체험하려면 대개 긴 기간을 요구한다. 임업이나 과수 등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도 이들을 받아부터 성장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긴 기간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취업단계는 취업과 함께 취업에 대한 적응단계까지를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간은 작목이나 대상에 따라 다르나 3년 정도의 기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에 적합한 농업인의 명칭은 창업농이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농업분야에 최초로 취업한 경우는 창업농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나 그렇지 않은 U-turn 귀농자는 약간 부적절할 수 있다. 이 당시는 자금과 경영 컨설팅

지원, 창업후견인제(Mentor제), 시간제 연수(학점은행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취업 초기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적응한 후 발전하는 단계를 가정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생산력이나 기술, 경영기술이 발전하는 단계로서 성장단계로 설정함이 적합할 것이다. 연령상으로는 30대 수준까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기술도 발전하여 재배나 사육 작목의 생산량이 지역단위 동일 작목 농가들의 평균 생산량에 근접하고 뛰어넘기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 적합한 명칭은 성장농 또는 전업농이라는 명칭이 적합할 것이다. 이 단계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 연수가 요구되므로 컨설팅과 기술, 경영, 유통에 관련된 교육과 실습 지원, 자본 투자와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이 핵심적 활동이 될 것이다. 성장농이라는 명칭이 적정하며, 용어의 명칭을 식물이 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단계를 표시하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장단계는 사업 규모가 발전하는 단계이므로 경영컨설팅, 기술과 경영, 유통에 대한 기술지도, 시간제 연수를 비롯한 교육 훈련 등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섯째 단계는 성숙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즉 농업에서는 생산량이나 기술 및 소득, 경영기술이 전국평균이상의 수준으로 발전한 단계로서 서서히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역할을 맡기 시작하고 지역에서의 사회적 역할도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적합한 명칭은 선도농이라는 용어가 적합할 것이다. 선도농어가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신지식 농업인이나 전통명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도농업인은 그 규모나 생산성이나 기술, 경영능력, 유통 능력 등의 점에서 전국수준 이상으로 발달한 집단이므로 신지식 농업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선도농이나 전문 농업인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할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기술수준이 높은 지역은 지역수준을 추월하기보다 전국평균수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장단계와 성숙단계의 명칭은 하위 기준을 성장단계로, 상위기준을 성숙단계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여섯째 단계는 안정화 단계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생산량이나 기술이나 소득이나 경영 능력 등의 점에서 운영의 모범이 되고, 전국적으로도 상위수준의 경영체가 되는 단계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는 전국적으로도 알려져서 수상도 하고, 이름도 나는 단계로서 지도자로서 발전하는 단계로 가정할 수 있다. 이때는 실습생을 받거나 Mentor로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가정할 수 있다. 가정적으로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단계로 후계자를 두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신지식 농업인이라는 명칭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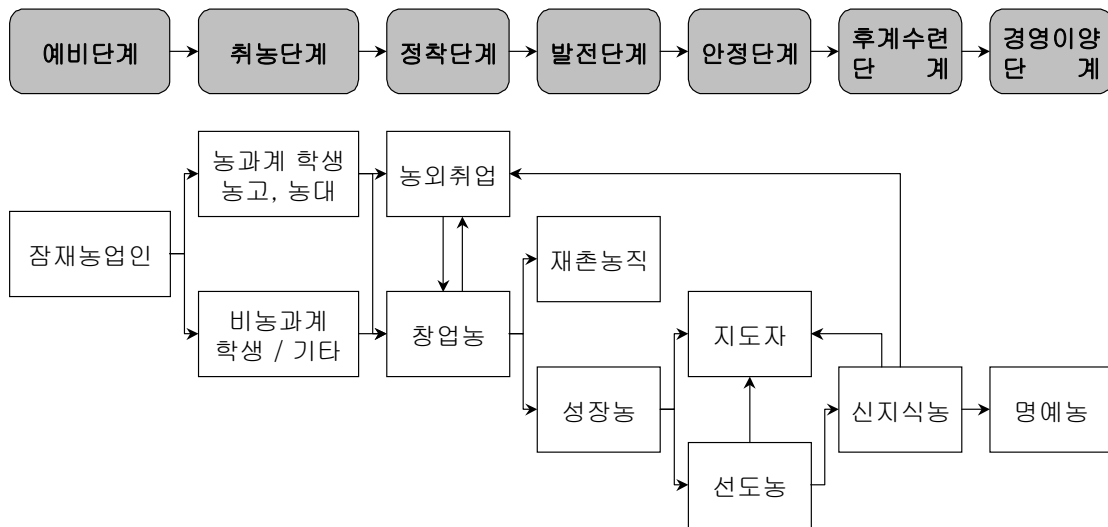
일곱째 단계는 경영이양단계로 가정할 수 있다. 경영이양단계는 성격상 은퇴단계에 속하며, 후계자의 육성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며, 실습생이나 도제를 받고 그들을 육성하는 일에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서 후계자 육성에 치중하는 단계로 상담과 조언, 실습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이며, 농지를 후계자에서 넘기거나 넘기는 중에 있는 사람으로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정도를 축소해나가는 단계로 가정된다. 실제로 이 단계는 신체의 노쇠화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입하기 어려운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농업인의 명칭으로는 명예 농업인이라는 명칭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같은 7단계과정은 성격상 유사한 단계들을 통합하여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취농 창업 단계와 성장단계의 통합이나, 성장단계와 성숙단계의 통합, 또는 성숙과 안정화 단계, 예비단계와

준비단계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4-5단계로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잠재단계, 준비단계, 취농창업단계, 성장단계, 안정화단계, 은퇴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6단계에서도 잠재 단계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5단계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단계별로 적용되는 정책적 적용은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영농형태나 작목유형,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인 경로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각 발달단계에 따른 지원정책의 고려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즉 예비단계나 준비단계는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의 형태로서 다양한 형태의 방안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고, 창업단계는 기술지원과 경영컨설팅 지원, 자금지원, 유통 및 판매지원형태의 정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성숙단계나 성장단계는 자금지원과 기술, 경영컨설팅, 판매 지원형태의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며, 성숙단계와 안정화 단계는 자금 지원과 경영진단, 교육방법과 기법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자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명예농업인 단계에 속하는 경영이양단계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며,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으로 지역단위에서의 Mentor집단과 같은 주도적 인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들 단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IV-6]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림 IV-6] 농업인력의 발달 단계

그러므로 농업인력의 육성은 성장단계별 육성대책과 사업유형별 육성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단계는 농업인력이 농업분야 종사를 결심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농업을 이양하는 단계까지로 구분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사업유형별 육성대책은 각 사업유형별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성장단계별 농업인력 육성방향

농업인력의 성장단계를 잠재농업인 단계와 창업 단계, 발전 단계, 안정화 단계, 경영이양단계로 구분하였다. 잠재농업인 단계는 창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속하므로 농업인력의 유입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인력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창업단계까지 이어지므로 유입단계가 잠재 농업인 단계만 있는 것으로 아니다. 이들 차별화는 기본적으로 개별 농업인의 요구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단계별로 적절한 역할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

정예농업인력의 확보는 일차적으로는 농업계 학교에서 농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유입이 우선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는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전문대학, 농업계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유입은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영농정착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정명채 등의 연구는(1991) 자신의 형제서열, 연령, 상속면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부모의 소유면적, 자신의 학력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부모의 소유면적이 적을수록, 자신의 형제서열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상속면적이 클수록 영농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정명채 외, 1991, pp.38-39). 이는 이제까지의 농업이 장자가 맡아야할 의무로 인식되었고, 덜 배운 형제들이 영농에 종사함을 말하며, 연령이 높은 경우는 과거 세대에서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녀들에 대한 농업권장여부도 자녀의 학력은 부정적으로, 부의 연령, 부모의 소유면적, 부모의 생활정도에 대한 판단, 영농의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도 의식, 자녀의 형제서열은 긍정적이었다(정명채 외, 1991, pp.50-52). 즉 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형제서열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 상속면적이 자신의 영농에 결정적이었고, 농민자녀의 농업선택은 자녀의 학력이 우선적인 변수였다. 이는 자녀의 영농 결정은 여전히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점과 가업계승의 압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부모의 농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생활여건이 자녀가 농업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가 농업을 생각하는 관점이 자녀들의 농업직 선택에 영향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농업인력의 육성을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함을 말한다. 즉 농업인력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농업직에 대한 체험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되고, 그에 기초하여 점차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여 농업교육을 받고 더 나아가 농업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술적 능력과 경영적 능력, 마케팅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서규선과 정철영의 연구 등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은 농업인 개인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가. 농업인력의 유입단계

농업인력의 유입단계는 잠재농업인 단계와 창업단계로 구성된다. 잠재농업인 단계는 농업에 대한 탐색과 결정하는 단계와 농업직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구분되므로 그 이전과 이후로 정책 방향이 달

라져야 할 것이다. 물론 농업직 취업을 결심한 이후 준비하는 단계는 창업단계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창업단계는 창업이후 정착하기까지의 기간을 창업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계는 연속성이 있으므로,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가 아니므로 연속하여 정책이 이어짐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농업에 관한 관심과 적성을 갖춘 사람들이 농업교육활동에 참가하도록 격려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농업교육을 받는 단계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진로를 확고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준비능력과 농업직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육받은 인력이 농업직업에 유입하여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장하는 방향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차적으론 농업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신념이나 적성,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참가하거나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을 개인의 능력이나 여건에 맞게 적절한 개발로 인하여 농업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농업인 단계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능력과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의 전문교육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과 개인의 흥미와 능력, 여건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우선적인 정책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잠재농업인 단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농업인력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적인 과업이 될 것이다.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해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여론 주도층에 대한 인식 개선, 언론의 체계적 관심을 부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인적자원이 많은 도시지역에서의 농업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필요하다. 농업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농촌과 농업의 역할에 대한 안내와 교육, 홍보, 취미를 가지도록 조장하는 일들이 될 것이다.

농업계 고등학교, 농과계 대학을 비롯한 농업교육기관과 농촌지도기관은 농업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안내 프로그램과 자료, 교육과 상담 활동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경쟁선발방식으로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을 검토함이 필요하다.

농업에 대한 이해나 정보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하여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과대학 등에서 농업에 관련된 교육이나 내용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농림부의 어린이 농업교실, 호남농업시험장의 어린이 농업마당 등이 그 예이고, 교수들도 강의편의상 가상강의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강의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취미에 따라 야생화나 곤충 등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전체적으로 묶는 portal site를 갖추는 방안이 인터넷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 주체는 농촌진흥청이나 대표적 농업교육기관이 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 경우는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와 연결하는 것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이 홈페이지에 관련단체나 기관을 링크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내용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제시하여 폭넓게 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전문적 용어보다는 쉬운 용어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므로 외국농산물과의 구분이나 인증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것도 좋은 예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홈페이지

이지들은 개인이 취미나 영업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나 진흥청과 같은 대규모 기관을 제외하면 정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인터넷 내용의 정기적 관리와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 홈페이지를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절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제공만이 아닌 게시판과 자료실을 두고 인터넷상에서의 상담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한 취농을 안내하는 경우는 일본의 경우에 볼 수 있는데, 취농과정과 각종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안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농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취농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on-line에서의 교육과 함께, 농업에 대한 실제적 체험을 off-line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운영함이 필요하다. 이는 농업관련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경쟁에 의하여 좋은 계획서와 실적,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단체에 요청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 농민 단체, 교육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 대학 단계에서 실험실이나 연구실 개방과 같은 농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실비 지원은 고려할 만한 방안이다.

농업에 대한 여론 형성을 위하여 도시민이나 여론 주도층에게 농업에 대한 체계적 안내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과정은 농업연수부와 같이 전국적인 규모의 연수기관이나 대학에서 단기간으로 운영하되(1-2박 정도) 농업에 대한 체험과 견학, 관찰 과정을 함께 하는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이는 언론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확대한다면 학계,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문가나 여론층에게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안내, 집중적 tour와 해설을 중심으로 한 형태의 연수가 될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농업인력을 100% 조달하는 것은 현재 인구 구성상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인구자원이 많은 도시 주민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중 농업계 학교가 없는 지역에 농업계 학교를 만들거나 직업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직업과정의 개설은 Career Cluster나 Magnet School형태로서 독자적인 학교를 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학교내의 별도의 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현재 대도시중에 농업계 학교가 없는 지역은 서울시, 인천시(강화 미포함시)로서 서울과 접한 경기도 지역에 농업계 학교가 몇 개 있으나 이들 학교가 서울 중심가나 주택가의 농업계 학교보다 도시민들의 농업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농업교육에 관련된 기관이라고 한다면 최근 이전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등교육기관이고, 사립농과대학은 학생수 부족으로 거의가 농업 명칭을 포기하는 단계에 처해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있고, 농민단체의 대부분이 서울에 사무소가 위치해 있음을 볼 때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안내, 농업이 가진 생명, 환경, 식품의 의미를 강조하고 교육하여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며 그에 적합한 학교는 농업계 고등학교일 것이다. 서울에 농업계 고등학교를 세우는 문제는 성격과 시설부지의 확보와 관련된 재정, 졸업자의 진로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서울에서 과연 농업분야의 인력으로 유입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력이 생산인력만이 아닌 다양한 농산업분야(agribusiness나 agrindustry)의 인력도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하면¹⁾ 이들이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사와 실습시설 및 장소의 확보, 대지의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나, 실습시설이나 장소는 도시형에 적합한 농업형태로서 유리온실이나 첨단 시설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곳에서 성인들에 대한 교양교육도 함께 하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들 시설을 이용하여 실습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정규 학교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직업학교나 실업학교에 농업분야 학과나 농업코스를 설치하되 직업반 학생만이 아닌 성인들의 참여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때는 적합한 교사들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본적인 교사를 확보하고 그 외에는 적절한 산학겸임교사를 유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잠재 농업인에 대한 방안은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과 농촌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tour나 job shadowing 형태, project 이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봉사활동처럼 service learning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체험을 통하여 농업직업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도 모아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하되, 여러 가지 주제를 학생들이 팀이나 개별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고 활동을 통하여 체험하고 봉사활동을 해보는 형태로 운영하되 이들이 발견하고 정리한 과제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발표기회는 한국영농학생회에서 매년 거행되는 영농학생전진대회를 이용함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영농학생전진대회는 전국의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 영농학생회에 가입된 학생들이 도별 대회를 거쳐 입상한 팀들이 경진 및 발표대회를 실시하는데, 경진종목은 규정종목과 대회별종목이 있고, 규정종목은 경진종목과 발표종목으로 구분되어 경진종목은 농업기초실기, 원예(원예번식, 생물공학, 화훼장식), 축산, 조경임업, 농업기계(정비, 운전), 농업토목, 식품가공(제과·제빵, 식품제조), 컴퓨터, 농업유통, 환경, 발표는 도 영농학생회 운영사례, 단위영농학생회운영사례, 과제이수사례(재배과제, 사육과제, 비생산과제)로 2002년부터 규정하고 있다(사단법인 한국농업교육협회, 한국영농학생연합회, p.5). 대회별 종목은 개최시도의 특성에 따라 농업 및 농업관련, 전통문화, 청소년문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진, 발표, 전시, 개인 및 단체 활동 등의 내용들로서 대회 1년 전 하계수련대회 때까지 기본안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영농학생환경의 밤이나 견학, 놀이마당, 문화행사 등과 교육자료 및 각종 전시회, 각종 모임과 협의회가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대한 축제가며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잠재농 단계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발표나 전시, 일부 종목의 경진과 견학이나 참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직 종사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과 경영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도록 기능경기나 감정경기를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매년 이루어지는 영농학생전진대회를 확대 개편하여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직업탐색기회와 준비정도를 점검하는 측면과 잠재적 농업인력 수준에서는 농업의 다양한 분야와 직업적 다양성을 보거나 체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함이 좋을 것이다. 매년 개최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비되므로 이들 행사에 대한 비용을 행사의 진행

1) 이 부분은 김완배의 연구(2000)에서 추정하였는데, 1998년의 경우 농업관련산업종사자수가 5062416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며 농어업생산분야까지 포함하면 12.32%로 25.32%가 농산업전체의 인력이라고 하였다.

과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미국 영농학생회(Future Farmer in America)는 농업교육을 통한 우수한 리더쉽, 개인적 성장, 진로성공을 위한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진로발달 행사(Career Development Event)를 실시한다. 이는 영농학생재단(FFA Foundation), 전미 영농학생회(FFA)와 산업체 후원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교육활동으로서 심사규정이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이들 행사는全美 FFA 센터에서 관장하며, 2001-2005년 기간 동안 사용될 평가분야는 농업커뮤니케이션, 농업 세일즈, 乳牛심사, 자연자원/환경, 화훼, 말 심사, 마케팅 계획, 회의법, 농업문제포럼, 작물, 쪼소관리활동, 즉석대중연설, 식품과학과 기술, 취업면접, 정육평가와 기술, 가금심사, 농기계, 신조 연설, 우유식품, 농장관리(Farm Business Management), 임업, 가축심사, 온실/조경, 준비된 연설 등의 항목으로서 이들 영역은 결과적으로 대개 팀별 경기이나 감정이나 기능을 평가하는 종합적 능력을 심사 영역으로 구분하였다(National FFA Organization,2000). 이들 분야는 직업에 관련된 분야이므로 직업교육단계로서 농업계 학교 재학생들의 교육활동으로 적합하나 즉석대중연설과 같은 일부 분야는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게 제시되어 있다. 이들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학기는 1학기 이상 농업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들로써 제한함이 좋을 것이다.

잠재농업인중 창업을 결심했으나 창업농으로 선정되기 전까지의 직업준비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농업직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추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농학생전진대회의 확대 개편을 통하여 농업 직업과 관련된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능력의 심사는 외부 관련 산업체나 선도 농가 중 기술이나 경영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일정비율이상 심사에 참가시켜 학생들의 취농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영기술내용이나 기초기능은 전업농이나 신지식농업인들의 전문적 농업인이 일정 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실제와 관련을 맺도록 하며, 이들 중의 일부는 나중에 인정받은 학생들의 창업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농 단계 중 농업 직업을 준비하는 단계의 학생들은 농업교육과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계 학교의 교육이나 농업교육에 관련된 훈련을 받도록 하는 동시에 Mentor제도를 도입하여 실제적 생산과정과 생활에 대한 구체적 체험과 지도기회를 갖도록 함이 필요하다. Mentoring 과정은 3-4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처음에는 그림자 단계(job shadowing), 두 번째는 경험 단계, 그 다음은 보조자 단계, 마지막은 독자적 실습 단계이다. 이는 그림자 단계는 Mentor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일을 관찰하는 단계이고, 경험 단계는 따라 다니면서 가끔은 시키는 대로 일하는 단계, 보조자 단계는 Mentor의 지도하에 작업의 상당 부분을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단계, 독자적 실습단계는 독자적으로 농작업의 全過程을 수행해보는 단계이다. 독자적 실습단계는 독자적 운영규모보다는 정확성이나 효과성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의 수행능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단계나 보조자 단계는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조자 단계가 더욱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때의 주의점은 Mentor를 어떤 사람으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Mentor는 후견인이나 지도교사(수)라는 말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취업 초기의 적응을 도와서 정착에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생산농업분야에서는 주로 실습을 지도하는 것이 Mentor역할이 된다. Mentor는 고등학교단계에서는 학업과의 병행문제로 인하여 3학년 때 현장실

습 파견기간을 제외하고는 학교교사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렵다. 각 농업계 고등학교에 전공실습생 제도가 있는데, 이들 제도를 이용하면 일부 작목에 대해서는 보조자 단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학동안의 기간을 이용하거나 현장실습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규정할 수 있다. 부모님이 Mentor가 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농업후계자가 확보된 농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Mentor제도는 Mentor를 개인별로 정할 수도 있고, 집단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즉 개인별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 실습생을 두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대개 농업인 중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교사나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 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팀별로 Mentor를 구성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실제적 경영능력에 대한 부분은 농가를 비롯한 경험이 많은 농업인을 Mentor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다만 Mentor의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사업계획이나 학생의 요구에 따라 차별될 수 있다. 1년 정도가 최소기간으로 정할때, 2-3년 간을 전제로 하면 2-3명의 Mentor가 최소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Mentor제도의 확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이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진학하였을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연계교육(Tech prep)으로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관련학과간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심화를 통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교육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과와 전문대학, 대학의 학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관련성이 낮은 경우도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Mentor를 확대함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자가 재학기간 중에 Mentor를 정하고 지도 받는 도중에 대학 진학으로 이어진 경우는 Mentor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Mentor의 교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Mentor는 그들의 노고에 대하여 일정정도의 보상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상을 하는 기간은 Mentor를 하는 기간으로 한정함이 적절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순수한 의미로 Mentor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경우는 보상의 의미보다 실제 사용된 비용의 변상하는 수준의 지급이 적절할 것이다. Mentor는 교사나 교수, 현장농업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나 교수가 Mentor가 되는 경우는 학교에서 project를 수행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이나 내용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인생에 대한 상담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Mentor는 개인이나 팀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Mentor의 선정은 자격을 갖춘 자 중 Mentor를 할 의사가 있는 자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습기관에 파견하는 경우도 Mentor제도를 활용함이 좋을 것이다. 실습을 위하여 파견된 기관의 관리자를 Mentor로 선정함도 좋을 것이다. 현장농업인력이 Mentor가 되는 경우는 소득수준이나 기술수준이 전국 평균수치보다 +1 표준편차의 능력을 갖춘 농가 경영주로서 실습공간이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 있는 경우가 적절할 것이다. 소득수준이나 기술수준의 도달 정도를 엄격하게 평가한다면 적어도 최근 3-5년 이상의 실적을 기준함이 좋을 것이다. 소득수준은 수치 추정이 가능하나 기술수준은 평가가 곤란하므로 경력과 소득 수준으로 파악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기능 인정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상을 받았거나 신지식 농업인이나 선도농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Mentor의 선정은 일차적으로는 배우고자 하는 잠재농업인이 신청하고, 적절한 사람을 지정

하거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정된 사람의 대상자에 대한 Mentor역할 수행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농후계자를 확보한 농가의 경우는 Mentor가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는 Mentor의 지도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파견이나 기타 연수시의 비용에 대한 실비 범위내의 지급이 합리적인 것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는 창업농 단계와 연계될 수 있으나 창업농 단계는 창업후 정착하는 단계까지로 한정한다면 창업을 준비하는 시기는 잠재농업인 단계에 학교의 재학생들은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project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자금을 일부 지원하던 과제자금을 이용하여 팀 프로젝트나 개인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함이 필요하다. 현재 4-H과제자금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들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단 이때는 재학생들의 영농경영능력 및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하여 창업을 위한 기본 능력과 관심을 발달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위 학교에서 이들에게 무상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project를 실시할 수 있도록 농장이나 경지를 빌려주되 운영비용은 과제 자금으로서 운영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경진대회에서 발표하게 함이 좋을 것이다. 이때 농업계 학교에서 학교 농장이나 개별 학생의 농장등을 이용하여 과제를 이수하는 경우 Mentor역할을 맡은 지도교사는 이들 작업공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하다. 이때 경영 장부를 작성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잠재농업인 단계의 후기에 속하는 창업준비자에게는 창업연수과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창업이 가능한지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고, 창업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창업연수를 허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는 농과계 대학생이나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서와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며, 이들이 선정되면 필요한 연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일본의 경우는 계획서에 의하여 인정 취농자가 되면 취농에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자금, 주택자금 등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데, 이들 방안이 창업연수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창업연수과정은 창업연수를 담당할 인력이 있는 농업계 대학이나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창업에 대한 연수는 이론 강의와 실습강의가 있으며 실습강의는 농장이나 신지식농업인이나 선도농업인, Mentor의 농장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론 강의는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나 농과계 대학생들은 1년 간의 project형태로 이수하여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실습은 종합적 실습과정과 적용실습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연수를 받는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가정여건에 영향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교육비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지원함이 필요하다. 이는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무이자 대출이나 현금지급, 바우처(voucher), 세금 면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나. 창업단계

창업단계는 창업을 시작한 이후 정착하기까지의 단계로 3-5년 정도를 가정할 수 있다. 잠재농 단계에서 체험이나 프로그램 참여, 교육이수, 프로젝트 이수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 관심을 고려하여 창업을 결심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서 창업을 시작한 단계를 말한다. 창업의 성격상 창업이전과 창업단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즉 창업에 필요한 능력이거나 자금 확보, 적절한 사업계획의 구성, 사업체의 구성과 등록, 사무실이나 농장의 구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창업 전에 이루어지므로 잠재농업인 단계이기는 하나 창업단계와 밀접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단계는 명확한 구별이 어렵다. 구분상 창업은 학교 졸업후 처음 농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새로운 분야의 일을 시작하는 경우를 창업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농업창업단계는 처음으로 농업분야의 일을 시작하는 단계로 가정한다. 그러나 범위는 창업에 필요한 직접적인 시설이나 자금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정착하는 단계까지로 설정하였다.

농업분야의 창업은 기술적 능력, 경영 능력, 유통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농산물 개방의 시대에서는 다른 나라의 농산물과 경쟁하여 농산물 시장을 지킬 수 있고,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좋은 상품을 만드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 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므로 교육적 역할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술적 능력은 이론 강의와 실습형태로 운영될 것이나, 경영 능력은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되 개개인들이 책임을 지고 농장일부나 전체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통능력은 기초 지식도 필요하나, 판매처를 개발하고 관리하며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상품의 홍보와 재고관리까지의 폭넓은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실습과 견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시장의 동향에 익숙할 것과 판매방법에 대한 실습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창업단계는 생산기술과 경영기술의 획득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능력을 집중적으로 갖추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은 생산기술에 대한 강의는 이루어지고 있고, 분야에 따라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실습기회는 제공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영농학생회 과제이수 형태를 활용하여 과제 이수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좋은 실습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특화된 작목이 있고, 이들 작목을 생산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 중 전업농 이상의 유능한 사람들을 추천받아 실습처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개의 농업부문의 창업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신지식농업인의 자질이나 성공적인 영농정착자의 특성을 연구한 정철영 등은(2001)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자질과 전문자질로 구분하고, 기본자질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으로 구분하고, 전문자질은 지식·정보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능력으로 구분하였다. 농업인으로서의 기본자질은 농업흥미, 농업적성, 농업애착심, 농업의지 및 신념, 농업기초지식 및 기술을, 전문자질은 농업인으로서의 사명감, 농업전문지식과 기술개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자기계발의지, 농업경영능력, 마케팅 능력을 제시하였고, 이용환 등은(2000) 농업·농촌에 대한 열정, 전문농업경영능력, 대인관계능력, 변화

대처능력, 선도적 지도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전문농업경영능력은 경영능력, 책임감, 성실성, 계획성, 농업전문지식·기술, 농장관리능력을 하위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업·농촌에 대한 열정은 직업의식, 영농의지, 농업적성, 농업흥미, 애농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대인관계능력은 인간관계능력, 개방성, 의사소통능력, 협동심, 시간관리능력으로, 변화대처능력은 통찰력, 수요자 지향성, 의사결정능력, 환경적응력으로, 선도적 지도력은 도전정신, 긍정적인 사고방식, 리더쉽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자기계발능력, 문제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신지식농업인의 특성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농업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업농에게 필요한 능력은 전문적 농업경영능력과 대인관계, 변화대처능력, 지도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같은 특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 농업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개발, 경영능력, 마케팅 능력이 포함되어야 하고 농산물 개방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국제적 경험과 능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들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을 통한 방법이다. 이들 외의 능력은 다양한 현장경험과 적용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학교교육과 연계한 직업부문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능력이나 경영능력의 기초는 농업계 학교 교육을 통하여 획득하도록 하고 창업이후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기술과 경영능력은 project나, Mentor의 지원, 학교와 농업기술센터, 선도농가, 지역 등의 협력에 의한 work based learning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ork based learning제도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와는 무관한 외부제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산업체나 선도농가와의 현장경험을 이용한 제도로써도 있을 수 있다. Dykeman등(2001)은 미국중등교육에서 사용된 진로개발활동을 시간의 길이(장기/단기), 형식(수동적/적극적), 통제(성인/청소년), 장소(학교/지역사회), 크기(집단/개인)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도입전략, 조언전략, 교육과정전략, 현장전략으로 분류하였다. 도입전략은 진로의 날과 진로 박람회, 견학, 적성검사, 개인적, 사회적 발달, 진로발달, 학업계획에 관한 진로수업과 같이 학교에서 수행하고, 2주 이하의 기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인이 관리하는 활동이며, 조언전략은 방향을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미래목표를 다양하게 유지하는 것으로서 대개 성인이 통제하고, 학교에 기초한 개별 활동으로 적극적이거나 수동적이며, 장단기 활동이다. 진로상담, 진로에 관한 부모와 학생 회합, 동료조언과 개인지도, 진로경로(career maps), 진로성숙도와 흥미 척도, 진로정보센터, 진로군/과정/전공, 진로자격증과 기술자격, 컴퓨터진로체계, 산학협동수업(dual enrollment), 정보면접, 직업조사준비, 개인/사회적 준비, 포트폴리오/개별진로계획, 외부훈련이나 상담, 평가에 관한 조회 등이다. 교육과정전략은 일의 세계에 관련된 수단과 내용을 통해 핵심적인 학생지식과 기술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성인이나 학생이 통제하고 전형적으로 적극적인 수업과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활동으로 2주 이상의 기간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에 진로정보가 용해되는 것으로 진로교육코스, 진로기술이 포함된 교육과정, 진로아카데미/진로마그넷 학교, 학교기업, 학생 클럽/활동, 직업준비과정(Tech Prep)이 이에 속한다. 현장전략은 지역사회의 일의 현장과의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의 지식과 동기유발을 촉진하는 활동으로 전형적으로 개별 활동이며 교외 활동이다. 성인이나 학생이 통제하고, 2주 이상의 기간들로 이루어진다. 수업은 적극적이고, 산학협동교육, 인턴쉽, Job shadowing, Job coaching, 멘터링

(Mentoring), 봉사활동(Service learning/Volunteer program), work study, 청년견습생제도(Youth apprenticeships)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과계 대학에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진로선택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의 프로그램은 방과후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고,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학교의 정식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현재 현장실습제도나 대학의 인턴제가 있다. 현장실습은 법규정의 변화로 농업계 고등학교는 전문교과의 일부로서 운영할 수 있는 실정이고, 방학이나 학기 중에도 모아서 운영할 수 있다. 대학생인 경우는 현재 학교마다 산학협력대학들부터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가능할 수 있다. 아니면 인턴십 처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관심있는 농장에 숙식하면서 실습하고, 보수나 학점을 받으면서 실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경영주를 Mentor로 삼아서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일정기간동안 장기적인 실습을 하거나, 학기 중에는 Mentor를 따라 다니면서 일을 참관하는 Job shadowing제도를 방과후 매일 1-2시간씩 주당 4-5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service learning이나 work study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사전에 자신이 관심이 있는 농업관련주제에 대하여 공부하고 그 활동을 실제로 체험하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갖도록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한 후 관련 분야에 매일이나 주당 1-2일 정도로 1일당 2-3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준비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체험하고 연구하여 보고서로서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직업탐색단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농업직업에 관련된 심층적 지식을 갖추는 단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때는 사전에 연구주제와 시간을 정해주는 경우나 자유주제로 선정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므로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대상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그런 업체를 발견하는 문제가 중요한 편이나 주말을 이용하거나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참여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경비지원(계획이 통과된 학생에 한하여 실제 비용의 지원)이 요구된다.

<표 IV-22> 직업기초능력과 직업관련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수업모델 요소

수업목적	학급설계	수업기법	학교상황
복잡한 추론 기술	상황학습	모델화	지식에 대한 접근
직업관련 태도	전문가실제의 문화	코칭	성취에 대한 입력
협동기술	동기유발	조립된 무대	전문적 교수 조건
교과별 특수지식과 기술	협동, 교사역할	순환, 반성, 탐색	

자료 : Grubb, W.N. ed.(1995), Education through Occupations in American High Schools, p.173.

이들 외에도 창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과 경영, 기술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확보는 잠재농단계의 후기에 속하는 준비자 단계의 사람들이 창업 전에 기술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강화와 별도 코스의 운영(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로 인하여), 현장실

습, Tech prep, Mentor제에 의하여 이론과 실습의 보완이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으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본인의 project과제자금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이나 새로운 자금 확보로만이 가능할 것이다. 부모의 후원이 있는 경우는 토지확보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토지 확보가 우선적이다. 토지의 확보는 기 농경지의 확보도 있을 수 있고, 한계농지로 재배가 폐지된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의 확보에 대한 자금지원은 실제적으로 액수의 제한이 있고(신용보증에 따른 한계), 창업자가 지원하려면 농업인이 아니므로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은 경영이양농과의 협정에 의한 임차와 5-10년 정도의 순차적인 이양과 Mentor 역할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계약하도록 함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 이양농은 Mentor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초기2-3년은 창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점차 창업자에게 경영을 넘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재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산가격의 변동과 경영 이양농의 갑작스런 이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창업 초기자는 현재의 제도상 후견인제도를 통한 실제적 경영능력의 확보가 결정적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창업 유형이나 작목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다를 것이나 경지가 결정적인 경지이용형 작목은 경지 확보가 관건이어서 필요한 정도로 자금을 확보하기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 자금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임차 형태로 운영하되, 임차비나 대출비로 인한 초기 적응이 어렵지 않도록 창업농은 창업자금에 관련된 교육연수비나 생산기반에 대한 구입이나 임차 자금, 주택 임차금에 대한 무이자 장기대출이나 저금리로 지원함이 필요하다. 이중 교육연수비는 직접 지원도 있을 수 있으나 Voucher제도로 인정된 교육기관에 등록하면 교육비용을 그 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기관의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Voucher제도는 학교교육의 충실성보다는 가정환경이 불량한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으로 검토되었으나 학생들의 학업 능력 개선에 대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미국에서 연구되었다. 다만 Voucher제도를 도입할 때 사용자에 따라 낭비되거나 숫자만 채우는 경우, 또는 수강비로만 운영되는 기관이나 단체의 연수 프로그램은 참여자수의 감소로 인하여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최소의 운영비는 지급하고, 강사료 등의 가변적 비용은 Voucher로서 지원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 경우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를 처음부터 지원할 수 없으므로 인정과정을 거쳐서 개설되는 프로그램운영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 설비가 갖춘 교육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상시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교육기관이나 단체는 적절한 정도의 시설과 설비가 필요하므로 우수한 교육기관은 시설과 설비를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발전단계

발전단계는 창업단계를 벗어나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시작하고 경영에 자신감을 가지며 생산량이나 수익, 기술이 동일 작목에 대한 지역 평균 수준이상인 농업인을 전제한다. 물론 지역의 기술수준이 높아서 전국 수준과 동일한 경우는 지역 수준보다 낮은 농업인이 될 것이다. 이들은 전국수준에 근접한 경우로 가정할 수 있다.

발전단계의 핵심은 경영기술, 마케팅 기술의 확대와 심화를 전제로 한다. 물론 새로운 문제점에 도달하였을 때 문제해결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도 필요하다. 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수시로 필요한 교육과 연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들이 교육과 연수를 받는 경우 자신의 생업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농사도우미(helper)제도나 Voucher 제도, 해외 연수 제도가 있을 수 있다. 교육연수에 대한 지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즉 시간이나 학점, 단위수로 표시되는 농업분야의 각종 교육과 연수, 회합을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이수함으로써 학점은행으로 누적하여 필요한 자격획득이 가능하도록 함도 필요하다. 현재 학점인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은행제도와 독학사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예술이나 기능 등에 대한 학점 인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협조와 농림부나 농촌진흥청 등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서 농업분야의 연수와 자격과정 등에 대한 학점 인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학점 인정과 마찬가지로 Voucher 제도는 모든 부분에 지원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창업농인 경우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이므로 연수비나 영농기반확보에 대한 비용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그 이상의 단계에서는 Voucher제도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창업농 단계 이상에 대한 연수비 지원은 의의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들에게는 자신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소득 신고시 세금 감면 형태로 지원함이 타당할 것이다.

Voucher에 의한 자금지원은 교육연수기관별 평가를 거쳐서 Voucher 수혜기관이 되는 것으로 그 과정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학습자들에 의한 Voucher는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직접 voucher를 가지고 지급할 수 있기도 하나 세금면제의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기관별로 존립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최소한의 교육기관 유지비는 지원하되 그 외의 부분은 학습자의 교육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의 운영이 되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Voucher제도가 갖는 문제점들이 국민의 세금이 반영되므로 인하여 전적으로 Voucher만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희소한 분야는 운영이 안되고 일반적인 과정만 운영되는 실정이 되므로 100% 학습자의 수요만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는 필요한 교육비도 많을 것이고 수요자도 적으므로 빈곤의 악순환을 보여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폐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운영과 지원을 하되 기본적인 부분은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Voucher만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 외의 기관이나 프로그램은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되 학습자들의 교육요구를 반영하는 Voucher를 결합하는 방안으로 운영함이 필요할 것이다.

발전단계의 농업인은 자신의 농기업이 성장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Greiner의 조직성장론에 따르면 조직의 생성과 함께 5단계의 성장을 거친다고 하는데, 창의성을 통한 성장, 지시를 통한 성장, 위임을 통한 성장, 조정을 통한 성장, 협동을 통한 성장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상정하고 각 단계마다 위기의 극복을 통하여 다음 단계로 변화함을 말하고 있다(윤정일 외, 1999, pp.147-149). 각 단계별로 순서에 따라 지도성의 위기, 자율성의 위기, 통제의 위기, 형식주의의 위기와 5단계 이후의 위기를 가정하고 있다. 농기업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서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고용주의 의욕보다 피고용인의 수동성으로 인하여 조직이 활력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이 단계는 농기업이 갖고 있는 가족농의 한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단계마다의 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진단하고 변화할 수 있는가의 자문과 상담이 요구된다. 자문은 경영전반에 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술적인 문제, 문화풍토적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마케팅, 기타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현재 이 부분은 컨설팅 전문가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제한된 부분의 컨설팅으로 그치고 있으나 점차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원함이 정책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인들도 자신의 사업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현재 경영분야는 농촌진흥청 농업경영담당관실에서 만든 사이트 (<http://fims.rda.go.kr>)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이 부분은 60개 표준작목에 대한 소득분석으로 그치고 있고 그 평가기준에 대한 신뢰성에도 어느정도 불완전한 수준이나 심층적 연구와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개별 농기업이 자신의 기업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대안은 농협과 농업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나 대출심사관련 부서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들에게 심사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농기업체의 파견 및 경영분석에 대한 실습을 통하여 경영상담사로 육성하면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농협도 국가의 세금을 기관자신의 수익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국가의 정책자금으로 농업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성공하도록 자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기술이나 경영이 수준에 오른 선도농어가 자신의 작목 분야에 대한 경영상담사로 교육을 통하여 발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농업인 개인의 생애 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전단계는 어느 정도 경영이 안정되어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투자자금에 대한 수요나 새로운 기술 수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은 현재와 같은 종합자금제에 의하여 경영평가와 진단, 수익성 여부를 고려하여 금융기관 나름대로 독자적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이미 대출되었으나 상환되지 않은 자금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대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의 제도상 창업자는 신용대출로 이미 2000만원-1억원의 빚이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은 본인이나 가족이 가진 액수를 제외하면 대출을 받아야 하나 각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출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수익성과 비재무제표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평점이 50점 미만이거나 사업타당성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며 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대출한도가 정해지고, 그 대출한도에서 기대출된 액수를 제외한 액수만이 대출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들 액수모두를 대출하기는 까다로운 절차로 인하여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들에게 자금 지원을 전제로 하려면 먼저 얻은 것에 대한 대출이자를 생각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대개 발전단계에 오르려면 창업후 5년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때부터는 창업자금에 대한 이자는 5년 이후부터는 상환을 시작하여야 하는 단계로 추가적인 자금확보는 이자와 원금의 상환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거치 기간 5년은 단기간에 성공한 농가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적절한 수익을 내기에는 불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별 농업인에 따라 대출형태를 변화하여 장기대출로 하되 금리를 없게 하거나 아주 낮은 이자로 수익을 창출하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창업농 대상자는 농림수산정책자금제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그 외의 농민은 농업종합자금제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실정이다. 이들 자금지원이 35세 이상인 귀농자나 창업농은 현재의 조건에 따르면 창업농후계자가 되기 전에는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고, 농업에 종사하다가 종합자금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나 <표 IV-23>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성과 비제무제표를 함께 평가하여 사업능력으로 평가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자금들을 농업종합자금제로 통합하면서 간편하고 단순화하였다는 점은 장점이나, 사업 분야별로 그들의 경영 상태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의 자금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으로 후계농업인들은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된다. 즉 현재 농림수산정책자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천만원까지 후계 농업인이 신용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고, 농기계구입자금으로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3300만원만 신용대출이 가능하므로 그 외의 부분은 종합자금제에 의하여 대출을 받아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종합자금제는 <표 IV-24>과 같이 농업인이 자금대상에 속한다. 90일 이상의 농업종사자나 자금지원대상이 되나 실제적으로 강화된 자금 심사로 인하여 선정에 있어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정착하여 성장하는 집단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선도농가에 속하는 집단이나 창업농, 농기업의 경우도 지원하고 있으며, 거치 기간도 1-5년으로 2-10년 내에 상환하는 관계로 창업농자금수혜자가 종합자금을 대출 받으면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담보를 제공할 수준이나 경영이 효율적이지 않는 한 자금의 대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발전단계의 농업인들이 부담없이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평가받아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융자 제도를 활용함이 필요하다.

<표 IV-23> 농업인 유형별 자금 지원 조건

사업유형	창업농	종합자금
지원대상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 선정자 35세미만 영농희망자 영농종사 5년 미만자 2001년이전 산업기능요원편입자중 영농종사 희망자나 종사자	후계농업인 선정자 04년 후계농업인선정자 농업법인 농업인 객토희망농가 선진작목반(공동시설), 농산물가공공장사업자 및 농기계생산업자
2004년 사업규모 (1인당 지원범위)	1000명, 600억 (1인당 평균 6천만원, 2천~1억원차등지원)	3~4천명
지원영역	· 농업경영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 경종농업분야 · 축산분야 · 수도작 및 영농시설물 설치를 위한 농지구 입 자금 · 기존의 영농시설물에 대한 구입비지원	· 시설자금 · 개보수자금 · 운전자금 · 농기계자금
금리상환기간	5년거치 10년상환(대출금리 4%)	1-5년거치 2-10년상환(대출금리 3%)
대상선정기관	농협중앙회	대출기관(농협)
심사	시장·군수	농협

<표 IV-24> 농업종합자금제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범위

농업인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범위>

가.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2)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3)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용하는 자
- (4) 대가축(소, 말, 노새, 당나귀) 1두, 중가축(돼지, 산양, 편양, 사슴, 개, 여우) 3두, 소가축(밍크, 토끼)20두, 가금(닭, 오리, 칠면조, 거위) 30수 또는 꿀벌 5군 이상을 사용하는 자
-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나. “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

- (1) 소 2마리 (착유우의 경우 1마리) 이상을 사용하는 자
- (2) 돼지(젓 먹는 새끼 되지 제외) 10마리 이상을 사용하는 자
- (3) 양 20마리 이상을 사용하는 자
- (4) 사슴 5마리 이상을 사용하는 자
- (5) 밍크, 토끼 100마리 이상을 사용하는 자
- (6) 육계 1천마리 이상을 사용하는 자
- (7) 산란계 500마리 이상을 사용하는 자
- (8) 오리 200마리 이상을 사용하는 자
- (9)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는 자
- (10) 염소, 여우 20마리 이상을 사용하는 자
- (11) 개(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에 한함) 2마리 이상을 사용하는 자
- (12) 메추리 1천마리 이상을 사용하는 자
- (13) 말 2마리 이상을 사용하는 자

***농신보의 보증대상자**

- 농신보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규정된 다음 각호의 농업인을 보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①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②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③ 잠종 0.5상자(2만립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 사용자
- ④ 대가축 1두, 중가축 3두, 소가축 20두, 가금 30수 또는 양봉 5군이상을 사용하는 자
- ⑤ 시설원예 330제곱미터, 채소·과수 또는 화훼 66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자

자료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0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서(금융기관용).

<표 IV-25> 종합자금제의 대출금액별 신용조사 유형

구분	간이신용조사	약식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자격요건	보증금액5천만원 이하 비법인	5천만원 초과 2억이하 비법인 5천만원초과 2억 이하 법인	2억 초과 비법인 5천만원 초과 법인
심사항목	1. 보증신청인 현황 2. 필수확인사항(적정·부적정 -모두 적정이어야 보증가능	1. 보증신청인현황 2. 사업체 현황(순수자연인은 작성 생략) 3. 연대보증인 4. 주택, 사업장 등 재산 보유현황 5. 금융거래현황 6. 사업현황 7. 요약제무정보(약식조사 당기 대차대조표, 약식 손익계산서 생략 차임금추이 검토표 생략, 제무제표 작성근기 당기만 작성) 8. 제무제표(약식조사 생략)	

<표 IV-26>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설립취지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후계농업인력 육성 필요
지원대상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사업시행 년도 1.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 중 농업계 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직후 영농 승계를 원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 중에서 영농 승계를 원하는 자와 타 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 정착을 원하거나 농촌에 정착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 (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 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지원규모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0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에 대해서는 시·군의 예산형편에 따라 지원금액을 20백만원까지 하향조정 가능)
지원조건	• 용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용자기간 : 국고용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 금리 : 연리 4.0% • 용자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경종 농업분야 : 농협, 축산분야 : 축협)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으로 하여금 용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사업분야	• 농업경영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 후계농업인이 원할 경우 농업경영컨설팅 자부담금 중 60%(사업비의 30%) 이내인 자금 • 경종농업분야 :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축산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수도작 및 영농시설물 설치를 위한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 논은 평당30천원, 밭은 평당 35천원까지 지원(과수원 구입시 식재된 과수 제외) • 축사, 고정식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지방법원(등기소)등의 동산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확인인)을 필한 경우에 한함

자료 : 농림부(2003.12). 「200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부.

최근의 결과를 보면 <표 IV-27>과 같이 농업종합자금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업종합자금제에서 의도하는 사업성이나 경영성과가 나쁜 경영체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장단계의 농업인의 경영성이나 사업성을 평가할 전문적인 인력이 없다면 종합자금제도의 통합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 사업의 사업성과 경영결과를 평가하여 대출자금의 보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나 대출부서에 개별 작목별 사업성을 평가할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는 사업성평가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일수도 있고, 평소에는 농업분야에 종사하면서 의뢰가 오면 사업성을 평가하는 겸업자가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겸업형 심사전문가는 대개 농업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경영주가 합당할 것이다. 다만 자신이 운영한 분야의 작목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화단계는 컨설팅이나 농업사업성 심사전문가 등의 전문적 Knowhow를 활용할 수

있는 유사직업으로 겸업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안내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의 농촌관광안내인을 겸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표 IV-27> 농업종합자금 통합 내역

1999	2000	2001	2003	2004
(시범사업)	(13개 사업)	(2개 사업)	(4개 사업)	(5개 사업)
-원예 -특작 -축산	-시설채소생산유통 -화훼작물생산유통 -양념채소생산유통 -고랭지채소생산유통 -월동채소생산유통 -과실생산유통 -인삼생산유통 -기타전업농육성 -한우경쟁력강화 -젓소경쟁력강화 -돼지경쟁력강화 -닭경쟁력강화 -기타기축육성	-농기업경영자금 -전업축산경영자금	-농기계구지원 (대당3천만원상당) -자가사료제조시설 지원 -관광농원개발 -농촌민박마을	-농기계구입자금 (대당2천만원이상) -농기계생산지원자금 -산지일만가공육성 -전통식품개발 -농촌가공산업 육성자금 -후계농업인육성자금 -객토자금 (2004년까지 24개사업이 통합되어 운영)

자료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황의식 외, 2004,p.21)

라. 안정화단계

안정화단계는 농업인이 정착하고 성공적인 경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즉, 작목별로 자신의 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인 수준 이상으로 생산량과 수익을 거두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단계이다. 농업인으로서 그 자질이나 역할을 인정받는 단계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는 연령으로서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때는 자금에 대한 압박도 어느 정도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새로운 정보나 기술의 제공과 교육기회의 제공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기술이나 교육의 제공은 자신의 전문작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의 문제점으로 개별 형태의 교육과 정보수집이 주가 될 것이다. 이때는 해외 연수나 국내의 연구기관, 시험기관에 대한 파견 연수를 가정할 수 있다. 마케팅 분야나 홍보분야, 해외 수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자질을 육성할 수 있는 단계로서 견학이나 파견을 지원하고, 작목별 연구회나 모임을 구성하고 이끌도록 지원함이 좋을 것이다. 이들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학습조직을 통하여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 단계의 농업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 해외 우수기관, 유통센터 등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즉 독자적으로 일정한 과목들이나 내용, 훈련 등을 설계하여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흔히 미국 대학에서 사용하는 개별연구(independent study)나 우리나라의 독학사 같은 제도가 유사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독학사는 정해진 학과목이나 교육과정이 있고 그에 대한 과목이

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하는 형태로서 독학사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는 한 성인들 개별의 학습형태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대학이나 전문대학, 농림부 등의 관리부서를 두고 인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훈련, 교육 등을 참가하면 인정제도를 두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전문농업인으로서 인정받는 단계로 후계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단계로 가정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자신도 발전하되 후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수한 Mentor역할도 부여하고, 각종 교육훈련에서 교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증과정을 제공함이 필요하다. 이때는 개별 진로에 따라 경영자나 관리자, 교육자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농업경영자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를 정하여 그에 필요한 계획대로 안내와 교육제공과 정보제공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지도에 관해서는 대학,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 중심의 연수와 교육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그 외는 교육가로서나 관리자로서의 능력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나 대학원, 관리자 과정 등을 수강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농업전문가로서 성장할 사람들은 외국연수를 추진함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현직에 있는 관계로 해외에 상주하기는 어렵고 일부 지역에 단기 연수나 파견,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되 KOTRA와 협력하여 해외의 농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외국의 농업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함이 필요하다.

마. 경영이양단계

경영이양단계는 안정화단계이후 추가자금을 확보 투자하여 자신의 농업을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신규 후계농업인의 육성과 지도, Mentor로서의 후계인력을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문하며 상담함으로 그 역할을 유지하는 단계이다. 물론 농지가 있고 여전히 농업생산을 비롯한 농업전반에 걸친 임무가 있고 활동하고 있으나 후계인력의 확보와 이들에게 적절한 수준까지 기술과 경영능력을 전수하는 단계로서 은퇴후의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은 끝나갈지라도 지역을 지키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통적인 농업에 대한 안내와 지원, 외부인들에 대한 지역안내와 홍보, 농촌관광에 대한 조력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는 새로운 창업농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등의 도움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과 경영이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찾아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확보함도 좋을 것이다. 이 사이트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취농이나 적응, 자금지원, 농지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영이양과정과 경영이양후로 구분하여 복지정책이 함께 작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경영이양농에게는 당장 생계문제가 제기되므로 적절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영이양농의 농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주거나 그를 이용하여 연금형태로 받도록 하거나, 거택보호대상자나 각종 복지시설 수용자와 달리 집을 가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으

로서의 보호제도를 도입함이 필요할 것이다.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여 강의나 실습이나 Mentor 역할을 하게 하거나, 지역의 농촌관광안내자나 관리자로서 역할을 부여함도 좋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농업인력의 성장 단계별 육성 대책을 종합하면 다음 <표 IV-28>와 같다.

<표 IV-28> 성장단계에 따른 농업인력 육성 대책

단계	명칭	지원정책	구체적 실천 방안	
유입 단계	참여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인식 개선 ①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해와 체험 프로그램 지원 ② 여론과 언론의 인식 개선과 관심 부여 ③ 대도시 지역의 농업교육활동 지원(학교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관련 기관의 인터넷 활용 강의 (어린이 농업교실 어린이 농업마당, 취농 프로그램 안내 등) ② 언론 중사자들과 주요 여론층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견학, 관찰 과정(농업연수부 등) 개설 ③ 도시지역에 농업계 학교나 농업직업과정 개설 - 서울·인천 등 대도시 : Career Cluster, Magnet School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체험·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① Tour ② Job shadowing ③ Project 이수 ④ Service Learning ⑤ 경진대회나 농업박람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체험, 실습의 결과를 발표, 전시, 경진대회 실시 → 영농학생진진대회의 확대개편 ② 4-H의 날이나 농업박람회 개최 예) 미국 영농학생회의 진로발달행사 	
	창업 준비자	직업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계 학교의 교육 강화 ② 농업교육에 관련된 훈련과정 설치 ③ Mentor 제도 도입(후견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직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추도록 지원 → 영농학생진진대회의 확대·개편(농업직에 필요한 직업능력의 평가·인정 과정 부여) ② 실습제도의 강화 - 학기중, 방학중의 장기간의 실습 ③ Mentor 제도의 활성화 - 방학중, 학기중, 졸업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ject 자금의 지원 : 4-H 과제자금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Project 수행의 지원-학교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의 포장을 이용하여 실습. 선정자는 과제자금 제공(지도 교사나 지도교수제: Mentor) ② 과제의 발표 → 경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연수과정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창업계획서의 신청으로 선정 → 연수자금 ② 이론강의 : 농과계통은 1년 간의 project를 이수하여 대처 ③ 실습강의 : 농장, 신지식농업인, 선도농업인, Mentor의 농장 파견 ④ 교육비 : 무이자 대출, 현금지급, 바우처 제도, 세금면제 등 	

<표 계속>

단계	명칭	지원정책	구체적 실천 방안
창업 단계	창업자	* 교육을 통한 창업농의 능력배양 ① 기술적 능력 ② 경영 능력 ③ 유통 능력	① 기술과 경영능력개선 : 농업계 학교 교육의 강화, Project나 Mentor의 지원 ② 현장경험에 대한 지역의 지원 : 학교와 농업기술센터, 선도농가, 지역의 협력으로 work based learning 제도 실시 - 경영능력 : 선도 농가에서의 실습 - 유통능력 : 농협유통센터에서의 실습
		* 자금과 토지 지원	① 자금 : 본인의 project 과제 자금을 통해 얻어진 수익과 새로운 자금 확보 ② 토지 : 경영이양농과의 협정에 의한 임차구입. - 경영이양농은 초기 2-3년간 공동운영 - 경영이양농은 Mentor 역할 - 5-10년의 순차적 이양 ③ 창업자금 : 교육연수비 지급(Voucher), 생산기반 확보자금, 임차자금, 주택 ④ 임차금 등의 무이자 장기대출, 저금리 지원
발전 단계	선도 농업인	* 경영기술, 마케팅 기술의 확대·심화, 문제해결능력 배양 ① 농사도우미(helper) 제도 ② Voucher 제도 ③ 해외 연수 제도, 학점은행제 ④ 개별 농업인에 따라 대출형태 변화(장기대출, 금리인하)	① 컨설팅 전문가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 → 경영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촌진흥청농업담당관실: www.fims.rda.go.kr) ② 농협과 농신보의 보증 심사나 대출심사 관련 부서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경영상담사) ③ 컨설팅, 농업 사업성 심사전문가 등의 전문적인 know-how를 활용하여 유사직업에 대한 겸업지원(교육기관 연수의 지원)
안정화 단계	신지식 농업인	* 새로운 정보나 기술, 교육기회 제공 ① 기술지도 ② 교육가·관리자 능력 배양 ③ 해외농업전문가	① 대학,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을 중심으로 연수·교육정보 제공 ②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대학원 관리자 과정 이수 지원 ③ 고등교육기관 진학 지원 ④ 해외 연수 지원을 통해 능력 배양
경영이양 단계	명예 농업인	* 신규후계농업인력의 육성과 지도	① 신규 창업농에 대한 Mentor 역할(후계인력 육성, 자문·상담) ② 경영컨설팅 전문가로 육성 ③ 기술지도 전문가로 육성 ④ 지역의 농촌관광 안내자, 관리자의 역할 담당
		* 경영이양과정 후 복지정책 마련	생계의 유지, 농지의 매입, 연금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보호제도 도입

4. 농업인력 육성의 세부 방안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력 육성 방향을 신규 농업인력 육성 방안과 기존 농업인력 육성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신규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 방안

(1) 농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가) 대도시지역에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교육아카데미 설립 운영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농업계 학교가 없는 지역에는 농업계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가능한 인력자원이 많은 곳으로서 농업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적은 곳이 우선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현재 서울에는 농업에 관련된 직업이 많이 존재하면서 공식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인력은 양성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는 정규 학교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학교와 결합된 형태(magnet school), 또는 농업 직업군을 중심으로 한 career academy 형태, 즉 직업학교 형태로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학교 형태로 설립된다면 그에 필요한 농장이나 실습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부지의 확보가 비용상 무리라고 한다면 적절한 협동 실습장소를 확보함이 필요하다. 즉 농산물 판매장, 각 백화점의 농산물 코너, 꽃시장이나 하우스재배지대, 농장 등의 적절한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므로 이들 부지를 활용하여 이들 기관과 협력하여 설립할 수 있는 magnet school 형태도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는 도시민중 조기퇴직자나 농촌에서의 삶을 동경함으로 농업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정규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성인대상의 농업훈련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들에 대한 영농정착과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안내 사업을 실시함이 좋을 것이다. 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되고 있는 현재의 교양교육의 확대와 귀농과 정착안내, 기술과 경영, 자금 확보에 대한 농업영위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과 상담, 지원 방안이 될 것이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농업교육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농업인력의 확보는 지금까지 농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농업은 농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농업과 농촌은 별개의 형태이다. 즉 농촌에 있으면서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2/3가 되는 상황에서, 일차적인 관심은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농업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도시부문에서의 농업인력 유입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잠재적 농업인력의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은 농업인식개선을 위한 안내프로그램의 개설 운영이나 체험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들 과정의 운영은 현재 도시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인대상으로 상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영농후계인력의 확보활동과 함께 교육활동과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효과의 면에서는 성인에 대한 교육보다는 젊은 층, 특히 중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이 의의가 있으므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 또한 필요하다. 특히 농업계 고등학교가 없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은 잠재적 인구규모나, 유통센터나 농산물유통시장, 하나로 마트, 꽃시장 등의 농업관련산업이 많음을 고려한다면 농업직에 대한 안내와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전문적 아카데미의 설치의 의의가 있다. 도시에서의 농업계 고등학교의 설치의 대학진학중심의 사회적 분위기와는 차이가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이들이 농업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농업생산과 유통을 담당할 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농업인력을 공급하

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도시의 농업계 고등학교는 미국 시카코의 AGRICULTURAL SCIENCE HIGH SCHOOL이나 동경도에 있는 6개 농업계 학교들의 예에서 파악할 수 있다. 시카코의 농업계 고등학교는 성격상 농업직과 교양과목들이 결합된 형태의 학교로서 직업에 대한 준비와 대학 진학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형태이고, 동경도의 6개 농업계 고등학교 역시 일반 농업계 고등학교처럼 대학도 진학하고, 농업창업에 도움이 되는 도도부현 농업자대학교에 진학하는 경로가 되고 있다. 농업계 고등학교가 도시에 있음으로 인하여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이 유입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홍보 효과의 점에서도 우수할 것이며, 관련분야의 대학 진학의 주요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그곳이나 그 외 지역의 농업에 종사할 인력을 기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나) 농업계 학교의 교육 강화와 지원

농업계 학교의 교육 강화는 일반적으로 전공과목의 강화로 받아드려지는 경향이 있으나 농업생산인력이나 관련인력에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지원되는 것을 말하므로 전공과목의 심화부분이 많을 수 있으나 직업능력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농업계 학교는 고등학교나 대학에 따라 강화방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농업계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자 양성에 관련된 생산농업분야의 학과는 농업분야의 취농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교과목과 함께 영농설계분야와 농산물판매와 유통분야등의 생산농업분야의 창업과 취농에 필요한 전문적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하여야 할 것이고 매년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농업경영과와 같은 생산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영농고나 자영농과와 유사하나 이들은 현재 자영농고에만 있는 것을 일반 농고에도 확대하고 설치 가능한 학교에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들을 경영자를 육성할 수 있는 독자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희망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운영상 특성화학과나 특목고등학교의 유형으로 운영하되 교육인적자원부의 협력을 받아 농림부의 지원자금으로 운영한다. 현재의 농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되거나 과정이나 코스, 인근 학교의 협력으로 운영될 수 있다. 교사들은 농업교사들과 지역의 선도농민들의 협력, 대학이나 농업기술센터의 협력으로 운영하되, 자금의 지원과 교육지원을 받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은 자율성을 허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학생선발에서도 정시제 학생이나 전일제 학생의 보충 프로그램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셋째, 자영자 양성 분야의 학과들이 없으나 농장이나 목장과 같이 실습 시설, 설비를 갖춘 농업계 고등학교는 생산농업분야의 학생 확보 가능성 정도에 따라 독자적인 학과나 생산농업코스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영농부 형태의 동아리나 클럽을 운영하여 과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의 운영 형편상 독자적인 학과 운영이 어려운 경우는 도 단위의 농업기계공동실습소를 확대 개편하여 생산관련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의 농장과 목장 등의 실습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특별활동부서와 같이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 교육과정상의 운영을 별도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와같은 방안의 하나는 각 농업계 고등학교에 있는 영농학생회의 확대 운영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영농학생회외에도 영농부를 특별활동부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부서의 선발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부서에 소속된 학생들의 과외활동의 지원과 강화, project지원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 현장실습의 강화이다.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전문교과의 이수는 대개 2-3학년에 걸쳐서 100단위내외를 이수하고 있다. 전문교과의 이수를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적절한 실습 장소와 수업 운영상의 한계로 인하여 실습의 충실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도의 농업계 학교들은 현장실습을 위하여 3학년 2학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농업분야 그중에서도 생산 분야 이외의 실습은 어느 정도 실습이 가능하나 농업분야는 작목의 재배과정 전체에 대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특별활동부서로 편성하는 경우는 이들 부서는 토요일 전체를 이용하여 관찰이나 방문, 실습을 할 수 있으므로 시기에 따른 일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들 외에 학기 중에 3-4일정도의 파견 실습과 단위수를 배정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의 실습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실습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실습의 형태도 방문하여 파악하기만 하는 경우와(job shadowing), 경험하는 경우(work study나 work observation), 실제로 실습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모든 과정을 거친 후 1년 정도의 경영체험과정(project)을 도입하면 학생들의 농업경영능력을 어느정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영체험과정은 학교농장을 이용한 project 제출과 심의, 자금 지원과 상담 등의 형태로 운영함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학생들을 모두 실습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때는 수용능력이 문제가 되므로 여러 수준의 level로 나누어 직업에 대한 탐색 수준은 견학 수준으로 그치고, 일정하게 직업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견학보다는 1-2일정도의 실습을 하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본격적인 실습 단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자신의 책임하에서 project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때 정부에서 4-H에 지급하는 과제 자금 정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 농업인을 방문하는 경우는 비용의 증가가 예견되므로 그에 적절한 지원도 필요하다.

넷째, 교육과정의 운영을 강화시켜야 한다. 즉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농직에 취업하거나 관련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교과의 이수단위를 3개 학기 이상의 이수를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요구되(108단위이상), 생산관련과목이 학과별 전문과목은 3-4과목에 그쳐 이들 과목만으로는 생산농업직에 취업하기에 부족하므로 취농에 필요한 핵심적 능력을 갖추도록 경영분야나 창업분야 신규교과목의 개설, 실습시설의 확보와 운영 참여, 현장실습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개별학교와 시도교육청은 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목들의 편성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목의 이수시기나 학년이 정해있고, 전체 이수단위가 216단위이고, 그 중에 24단위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으로 규정되어, 교과목으로 이수될 수 있는 부분은 192단위로서 국민공통기본 교과 56단위를 제외한 82-136단위가 최대 이수치이다. 6학기 나눌 때 한 학기 이수 단위수는 교과

목만으로는 32단위로 32시간이 최대 시간이다. 그러나 1학년 때는 보통교과를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전문교과를 수강할 수 있는 학기는 4학기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농업 종사자를 위한 독자적인 학과나 코스로 설치하여 생산농업인력의 육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장실습기간은 개인의 희망이나 진로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며 2-3단계로 구분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Job shadowing처럼 초기 단계는 관찰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지도실습 단계, 세 번째는 독자적 실습 단계로 단계적 과정을 통하여 실제적 기술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농창업희망자는 3학년 때와 졸업후 1년 정도를 농업인턴제 사업에 참여시켜 실기능력을 숙달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현장실습 파견이 될 것이다.

다섯째,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강화는 과목을 담당할 전공교과 교사들의 확보와 연계를 맺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교사들이 부전공자격을 갖추고 있고, 임용시에도 복수자격의 우대로 인하여 복수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으나 생산농업분야의 자격은 수요도 적고 학교도 적으므로 교사들 역시 자격연수 과정을 통하여 관련 자격을 복수자격으로 교체하였다. 그러므로 새로운 과정을 설치하거나 강화함은 결과적으로 교사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교사 확보가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농업교사들의 자격 분포는 <표 IV-29>과 같다. 현재 농업분야의 자격은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의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30>에 나타난 자격증은 농업토목이나 농업기계는 농공으로 통합되었고, 농산제조는 식품가공으로, 원예, 임업, 조경, 농업은 식물자원·조경으로 통합되어 있다. 잠업과 축산은 동물자원으로 통합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만, 농화학은 과거 식품가공으로 1980년에 바뀐 것이므로 식품가공 교사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생산농업분야 교사들이 많은 실정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부담을 높이는 시수나 업무는 신규 교사의 확보를 요구한다. 교사에 대한 정원은 시도교육청마다 달리 계산하고 있으므로 단정할 수 없으나 대략 학급당 2.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급당과 시간수를 함께 고려하여 교사수가 부족한 경우는 충원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표 IV-29> 농업계 고등학교 재직 농업교사들의 표시과목분포

교원자격증표시과목	인원수	비율
농공	56	5.1
농산물유통	1	0.1
농산제조	4	0.4
농업	215	19.4
농업기계	45	4.1
농업토목	43	3.9
농화학	3	0.3
동물자원	44	4.0
축산	104	9.4
식물자원·조경	175	15.8
식품가공	81	7.3
원예	136	12.3
임업 및 조경	32	2.9
잠업	3	0.3
기타(교장, 교감 포함)	164	14.8
합계	1106	100.0

자료 : 한국농업교육협회(2004), 내부자료.

<표 IV-30> 농업계 고등학교 설치학과별 학생수와 영농학생 동향

학과명	학급수	학생수		영농학생수	학생비율		영농학생비율
		계	여		전체학생	여학생비율	
골프관리과	5	113	25	113	0.5	0.3	100
공통계열	7	213	84	213	1.0	1.1	100
관광농업과	3	83	54	83	0.4	0.7	100
관광원예과	3	89	66	81	0.4	0.9	91
관광조리과	6	191	60	182	0.9	0.8	95
국제농축개발과	9	250	106	208	1.2	1.4	83
농업기계과	51	1095	127	1065	5.3	1.7	97
농산물유통과	34	1130	376	1112	5.4	5.0	98
농업경영과	12	309	117	309	1.5	1.5	100
농업전산과	12	287	132	287	1.4	1.7	100
농업토목과	29	789	71	725	3.8	0.9	92
동물자원과	31	837	291	817	4.0	3.8	98
애완동물과	6	216	137	205	1.0	1.8	95
마필축산과	3	66	17	66	0.3	0.2	100
바이오식품과	2	70	31	70	0.3	0.4	100
원예과	81	1919	1136	1856	9.3	15.0	97
도시원예과	10	297	159	253	1.4	2.1	85
관상원예과	6	157	33	151	0.8	0.4	96
생활원예과	21	587	340	597	2.8	4.5	102
화훼장식과	7	246	139	235	1.2	1.8	96
시설원예과	12	352	170	352	1.7	2.2	100
산림자원과	6	192	89	185	0.9	1.2	96
조경과	41	1160	416	1119	5.6	5.5	96
식량자원과	5	134	47	134	0.6	0.6	100
식물자원과	48	1218	472	1165	5.9	6.2	96
식품가공과	104	3132	1371	3037	15.1	18.1	97
조리과학과	3	88	34	88	0.4	0.4	100
식품과학과	27	829	439	786	4.0	5.8	95
산업과학과	14	419	153	376	2.0	2.0	90
산업기계과	61	1607	76	1562	7.7	1.0	97
산업조경과	3	69	20	69	0.3	0.3	100
생명과학과	34	904	340	864	4.4	4.5	96
자영농과	53	1255	272	1194	6.1	3.6	95
환경보건과	16	440	163	450	2.1	2.2	102
합계	765	20743	7563	20009	100.0	100.0	96

자료 : 한국농업교육협회(2004) 내부자료.

여섯째,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교 단위 영농학생회와 한국영농학생회 전국 조직이 있는데 이들 청소년 직업조직이나 영농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실제적 영농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제실습경비를 지원함이 필요하다. 즉 영농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적절한 기술적 능력과 경영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실습 형태로서 개인들이 과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의 심의를 거쳐 학교 농장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형태로서 운영비는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과제자금으로 지급하고, 과제 제출자의 책임 하에서 실제로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이는 팀별 과제나 개인별 과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과제의 지도는 교사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가 경영에 활용하는 농

장을 학생들의 실습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인하여 생긴 손실분은 국가가 사용료로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또한 과제자금의 활용이 활발하고, 이를 통하여 졸업생들이 취농하는 비율이 높은 학교는 그에 따라 성과급 형태의 시설과 설비 자금을 지원함도 좋은 장려책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실습과정을 거쳐서 취농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선정에서 우대하고 선정 이후의 농업경영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의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일곱째, 농업계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실습시설 확보와 개선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가 학생들의 실습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학교기업(School Based Enterprise)을 운영하는 경우 성격에 따라 운영비나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개별 농업계 고등학교가 도교육청을 통하여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려우므로, 교육기관이 적절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을 때 심의를 거쳐 시설이나 운영비의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생산 분야의 시설과 설비는 계속 개선되고 발전되는 데 반하여 농업계 고등학교는 처음에 도입된 기계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실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도 농가 수준의 실습 시설을 갖추도록 시설과 경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개별 기업체의 기부 형태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농업계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농촌이므로 인근에 이와 관련된 기업이 없고, 기업체로서도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들을 연결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여덟째, 농업계 고등학교를 농업인력의 공급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무원칙한 학과 개편은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농림부에서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의 지원을 받았거나 창업관련 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정된 학과나 학교의 개편을 일정기간 이상 금지하는 방안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다른 분야의 교사 수급 불일치로 인하여 농업계와 무관한 교사들을 배치하기 위한 무관한 학과의 증설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지역의 인력 요구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분야라고 하여 지역산업과 무관하거나 미래의 지역발전방향과 무관한 학과들의 설치를 위해 농업계 학과가 폐과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농업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학교명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가 학생들의 과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는 적절한 시설과 설비의 확보와 과정의 충실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자금 지원 이후 폐과하지 못하도록 자금 지원받는 학과나 코스를 명시하고, 이들 코스에 대한 폐지를 최소한 5년 이상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해당학교장과 교육청 교육감등의 동의를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학과나 코스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과제 자금을 받은 학과나 학교가 효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폐지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필요하다. 협약학과나 학교의 개념은 일반 농업계 학교에서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미국의 charter school에서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교육과정이나 교사자격, 학과유지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기타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협정하는 형태로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나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한 정도의 의무 규정을 두어 임의적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때 협약에 포함될 사항은 학과나 코스의 유지와 자금 사용과 관리에 대한 명시, 자금지원에 대한 사항, 교사들의 강의 활동이외의 학생지도와 과제이수지원업무에 대한 인정과 보상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협약학과는 교사들의 업

무 증가에 따른 교사 추가 배치와 보수나 승진점수상의 보상이 필요하다.

열번째, 농업계 고등학교의 변경이나 농업계 학과의 폐지는 당장 모집되는 학생수의 多寡에 의하기보다 그 지역의 농업인력의 수급동향을 함께 고려하여 변화를 고려하되, 인력 수요가 있는 경우는 재설치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는 학과로서 존재하거나 프로그램으로서 존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협약학과의 개념은 인정되어야 한다.

열한번째, 농업계 고등학교의 설치 학과가 생산농업분야의 학과는 없이 농업관련분야의 학과들만 설치되어 있고, 생산농업분야 전공 교사들만 있거나, 학과는 있으나 전공한 교사들이 부족한 경우는 농업을 가르치는 교사를 교육청단위로 선발하여 순회교사로 이용하거나,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과목을 개설한 농어촌지역 학교에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파견하여 수업과 실습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는 방법, 또는 농림부가 도시지역의 농업교육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안내과정에 속하는 농업체험과정이나 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여 우수한 농업교육프로그램 공급자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열두번째,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은 외부적인 평가보다 농업을 영위하는 주변사람들을 관찰하거나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이전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주변 농업인이나 성공한 농업인과의 심층적 면담과 관찰을 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제중에 농업직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주제로 선정하게 하여 봉사활동을 하면서 관찰하고 체험하면서 심층적인 학습을 하도록 1학년 초기에 과제를 부여하도록 한다. 이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농업이해 과목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는 project의 일환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농업직에 관심을 갖는 경우 창업project나 영농관련 과제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2학년 초에 선발하여 실습해볼 수 있도록 제공함도 필요하다.

열세번째, 교육과정운영상에서 농업생산인력이나 관련인력의 육성에 제한이 되는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수 단위의 제한이나 교양교과의 이수 학기 규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산농업인력으로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에는 단위수의 한계와 1학년 이수 제한 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

열네번째,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턴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대학과 연결시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project나 창업과정을 이수하고, 그에 따라 전문대학이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2+2, 또는 2+4의 연계과정으로 이해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 농업계 대학의 현장지향적 교육과정의 강화

첫째로 대학의 현장지향적 교육과정은 농업인력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이나 지방대학에서 더욱 요구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연구중심 거점대학은 그 성격상 현장지향적 교육과정이 약하고 학술적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농업분야는 전반적으로 인기가 없는 실정이어서 대부분의 대학이 학과를 개편하고 학부제로 바꾸거나 명칭을 바꾸는 실정에 처해있다. 이때 사회적으로 각광

을 받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의 학문이 전면에서 부각되는 부분도 있으나, 생산 농업인력과 관련이 깊은 전통적인 학과인 농학, 임학, 원예학 등의 학과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의 지원이 있는 학과 부분을 제외하고는 명칭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립대학은 전혀 다른 명칭의 학과로 바뀐 경우가 많다. 또한 생산농업분야의 학과명칭을 지키고 있는 경우라도 최소전공제의 도입으로 상당수 과목들이 폐강되는 관계로 과목의 축소와 통합이 일어나 상당수 과목들이 사라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들 과목의 변경을 고려하여 생산농업분야의 학과와 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실습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과와 과목이 바뀐 경우는 생산농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초과목이나 이론 및 실습, 실기 습득에 관한 과목과 현장실습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상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들 분야에서 생산농업으로 유입되려면 적절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유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능력을 갖추도록 실제적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원예 분야는 번식이나 생산 분야 외에도 최근 많이 사용되는 유리온실에 대한 제어와 관리에 대한 이해와 현장실습과 체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방법은 현장실습이나 견학이나 project나 교수들의 연구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실습 이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전공과목의 이수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여건상 복수전공을 허용한 실정이라 대개의 대학에서는 35-45학점정도를 이수하면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많이 이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폐강의 가능성에 처해있다. 또한 전공 이수과목의 빈약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팀별 실습이나 프로젝트를 통하여 통합적인 전문 지식을 체험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론적 기초과목들의 이수가 축소되는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전문대학은 한국농업전문학교와 여주농고부설 전문교육원, 익산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립이고, 학생수 확보가 절대적인 문제로서 생산농업관련학과들이 유지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농업인력 양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학교들을 학생수만으로 무분별하게 폐지하는 것은 유용한 자원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졸업생들이 농업분야에 취업이 많이 되어 있는 학교들로서 졸업생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 농민의 능력 개발과 생산 농업 후보 인력의 실습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실습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천안연암대학이나 농협대학이 그 예가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신구대학과 같이 농업분야 학과를 오랫동안 유지하여왔던 학교나 학과들이 있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이들은 동창회 조직이나 학교내의 부서를 이용하여 그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단위의 농업 기술센터의 부담으로 나타나 농림부나 농촌진흥청 수준에서 전국적인 실습장을 확보하여야 하거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적인 농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농업계 전문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농업직업훈련기관으로 활용하거나, 농업에 관련된 현장실습관리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셋째로, 농과계 대학생을 농업생산분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즉 농업생산직에 관련된 교양과목의 개설과 운영 및 진로탐색과 준비활동을 지원할 활동과 교과 운영이 필요하다. 1학년 단계의 교양과목 이수시기에 선도농가 견학과 방문, 농업법인체 방문과 면담을 통하여 자신들의 진로방향을 생각하게 하고, 체계적인 진로탐색활동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파악하고 2학년때 교과목의 이수과 함께 방학을 이용한 internship과정을 거쳐서 농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경우는 창업연수과정에 지원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이 필요하다. 창업연수과정은 1-2년으로 창업과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턴십과정이 함께 연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의 창업연수과정은 대체로 3학년 시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되 2학년때 선발하여 지원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때 현장직무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인턴제도와 현장실습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농과대학이나 전문대학생들의 취농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연수와 인턴제도를 도입하되 농업이외의 과정에서 농업을 하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장실습이나 교내외에서의 Project 이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라) 농업인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농업인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은 지역이나 기관마다 독특성을 가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지원을 위주로 운영하다보니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수준의 평가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관의 시설이나 설비, 강의인력, 지원인력등을 갖춘 기관은 운영과정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외에 효과평가를 보충하여 우수한 기관은 일정한 규모의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 그에 따라 사업성 경비를 함께 지원하면 좋을 것이다. 다만 초기에는 기본적인 운영경비로 일정 비율은 지원하여 그들 기관들이 존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즉 농업인 대상의 프로그램은 상당수가 홍보가 안되어 참여하는 규모도 적고, 농업인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수강인력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적절한 강의지원 인력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이며, 대학이나 국가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강의인력, 지원인력, 시설설비는 유리한 상태이나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평가를 하면 국가기관이나 대학과 같은 경우는 시설, 설비조건이 유리할 것이나 프로그램이 좋아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평가하되 유형별로 구분하여 우수한 인적 조건이나 물적 조건, 프로그램 조건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2-3년간은 적절한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2) 일반인에 대한 농업교육 확대

(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활동과 홍보활동을 지원

일차적으로 충분한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그중에서 육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충분하고 적절한 예비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하고 적절한 예비자원의 확보는 예비인력의 양적, 질적 확보를 말한다. 예비자원이 존재하려면 농업직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할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농업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농업도 좋은 직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집단에서는 예비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주변사람들의 농업을 직접 관찰하거나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에 대한 긍정적 생각으로 바뀌어서 잠재적인 농업인으로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농업직에 대한 생각은 정철영 등의 연구에서도 연구되었듯이 농업선택이 주변사람들을 통한 직접적 관찰과 탐색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형태이므로 주변사람들의 농업을 볼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을 알리는 홍보과정은 단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만들 기보다 관련단체나 기관과의 자발적 협조하에 엄격하게 사전기준에 의하여 성공한 사람들로 선정된 사람들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되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과 방송을 통한 농산업(agribusiness)에 대한 안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즉 결혼자금, 주택자금, 연수자금 등을 지원하는 일본은 인터넷으로 취농을 안내하고 있고, 각종 취농사업에 대한 안내가 각 군단위의 지원사업까지 안내하고 있다. 심지어는 전국 수준과 현이나 정단위의 지역수준에서도 결혼자금, 주택자금을 주면서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연구에 대한 지원 등 개인에게 집행되는 예산까지 안내하는 실정이다.

(나) 교양농업교육활동의 확대

다양한 예비자원군을 확보하여 농업을 체험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농업에 흥미를 느껴 농업을 영위할 인력 pool로서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첫째는 농업에 대한 안내와 탐색활동, 교양 농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 프로그램은 예비 후계자는 농업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참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계층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농업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각종 교육활동의 확대를 유도함이 필요하다. 전혀 농업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각급 학교나 단체의 농업이해와 체험을 위한 안내 활동을 신청 받아서 심사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때 참여 가능한 농민단체가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은퇴 단계의 농민 참여를 조장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들은 사업을 공고하고, 경쟁을 통하여 지역적 접근성과 시기적 배분을 함께 고려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최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급 학교단위의 도농학교 교류 행사나 여름 방학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캠프등과,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이나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마을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

여 부모님들의 녹색여행(green tour)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함께 여행을 가서 그 지역의 농업활동을 체험해보는 형태가 있다. 그 외에도 관광과 결합한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마을의 농산물을 직거래 하는 경우 등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이는 농업인 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농촌 마을단위의 참가, 개인별 사업참여가 있을 수 있다.

교양교육의 측면에서의 농업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한 설장과 운영, 이들이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설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매스컴의 바른 안내를 위한 여론 지도자들에 대한 농업교육에 대한 연수와 체험 지원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농업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안내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 호남농업시험장, 그 외 몇 개의 대학에서 개별 교수나 학과 차원에서 인터넷에 구축한 농업 소개 자료나 전문적 내용에 대한 자료들이 농업에 관련된 안내 자료들이 될 수 있다. 가장 포괄적이고 방대한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자료들이나 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자료들이다. 그러므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전문적 용어를 사용한 자료들의 보급과 활용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홈페이지 구축과 서비스,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견학 장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분야의 일들은 농업계 학교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둘째,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대부분의 도시 학교들은 적절한 형태의 공동실습장이나 공동사용장, 숲, 공원, 농업전시관, 농장과 같은 견학 및 실습, 체험활동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 내용을 교육내용에 반영하여 농업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지역은 학교마다 공간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교육청단위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좋은 예이다. 드물지만 기차역 광장이나 시청과 같은 공간의 공터에다 과거에 이름만 알던 작물이나 수생식물을 화분이나 수조에 길러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활동도 좋은 보기가 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정규교육과정에 농업교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현재의 초등단계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교과에서 농업적 체험과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식량의 의미와 중요성, 농업, 농촌의 우리 사회에서의 다양한 공헌점과 실제적 체험을 포함시킴이 요구된다. 이들 분야는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확대하는 방안이 되어야 하나, 그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의 확보와 학습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정책적 지원(예를 들면 교양농업교육에 관한 자금의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인력의 확보에 대한 지원비용이 될 것이다

셋째로 농업에 관련된 흥미를 육성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연수비 지원이 필요하다. 농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해외농업에 대한 선진지 연수를 지원하고 있는 대산농촌문화재단의 사업 역시 이들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은 교양교육적 수준보다는 직업교육적 측면이므로 유형은 다르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적어도 농업분야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이 농업분야에서 일하도록 함은 국가의 농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산환경문화재단은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활동의 운영에 대하여 1000만원정도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넷째로 교양농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농업교사를 확보하고, 참고 자료를 보급하는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교사라도 농업에 대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양농업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개발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비의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농업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은 미국 USDA의 인력개발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미국 농무성(USDA)은 ‘교실에서의 농업교육(Agriculture in the Classroom)’이라는 제목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농무성 농촌지도부서와 각주의 협력하에서 미국 각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주마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가 농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농업에 대한 친숙한 관계를 형성할 교육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보급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조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신규 농업인력의 확보

(가) 후계농 선발 자격의 나이 제한 폐지

현재 후계농업인이 되려면 40세미만이나 35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노령화 현상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나이 제한은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농업분야의 일을 처음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창업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학교 졸업후 즉시 창업하는 경우와 다른 일을 하다가 농업직업을 하는 창업이 있을 것이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외국에서 살다가 국내로 이주하였거나 탈북 주민들 중 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농업을 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하여도 무관할 것이다. 이때의 문제가 연령 제한의 문제이다. 창업농의 기본적 목적이 신규취농자의 확보이기는 하나 지원자가 없다면 귀농자의 입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계농의 선발조건을 나이가 아닌 농업경험기간을 기준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다른 일을 하다가 농업을 처음 시작하였거나, 학교 졸업후 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이들 모두 나이 제한 없이 농업을 얼마나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창업농 자격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의 조건은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는 졸업직후, 농업계 학교이외의 졸업자는 영농후 2년 이내자나 전직자로 하여 자격조건이 서로 다른 수준이다. 이들 선정될 사람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인력이라면 졸업과 동시에 선발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농업교육기관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실습이나 교육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므로 영농시작과 후보자가 되는 선발기간까지는 차별화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 직업조직들의 농업 안내사업과 경진행사의 지원

농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농업에 대하여 더욱 잘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직업조직의 하나인 한국 영농학생연합회(FFK)와 각 학교단위의 영농학생회와 도별 영농학생회, 4-H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 과제이수와 발표, 체험 및 야영훈련을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였을 때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미국 영농학생회(FFA)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국대회와 권역별 대회를 개최하며, 각 주단위의 축제 행사(STATE FAIR)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실제로 획득한 실기나 과제의 평가를 받으며, 안내코너도 만들고 전시장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모임에 대한 홍보와 농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4-H보다 규모가 훨씬 크며, FFA에서는 농업교육관련단체들이나 농업단체들이 협력하고 참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한국영농학생연합회가 있고, 각 도지부나 단위학교 영농학생회가 있으나 졸업후의 회원들이 회원으로서 유지되어 명예회원으로 포섭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4-H회 역시 전국적으로 2,304개 조직에서 64,740명이 소속되어 있으나, 학생4H조직이 1400개 조직으로 52,000명이고, 영농 4H조직이 845조직 11,000명으로 실제적으로 학교 4-H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영농학생회원임을 고려한다면 학생 4-H회는 농업계 고등학교보다 농업계 학교 이외의 학생들이 소속될 수 있으며, 영농 4-H는 현직 농민으로 판단되므로 영농 4H회원에 대한 농업안내 프로그램은 수준이 높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교 4-H회원들의 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를 허용하고, 또한 영농학생회원들도 4-H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단체간의 교류와 경진을 통한 능력개발을 지원함이 좋을 것이다. 이들 단체의 농업관련 행사를 공동 개최하여 홍보도 하면서 농업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경진활동은 농업직 취업에 필수적인 기능의 개발을 시험하고 평가하며 인정하는 과정으로서 성취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때는 다양한 평가영역을 설정하여 평가항목으로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다양한 경로의 직접적 인력 확보 방안 활용

직접적인 농업직 유입은 농업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정의 설치와, 농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실기능력이나 농업경험의 심화를 위한 농업인턴제도, 농업직에 대한 창업연수 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첫째, 직업훈련은 성격상 단기간의 집중적인 훈련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직업훈련은 지금까지 농촌직업훈련소에서 1970년대에 농촌지역의 산업체에 필요한 기능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운영되던 경우와 IMF때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실직자 훈련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때 농고에 설치되었던 경우는 대개 원예 분야와 식품가공(제빵)분야가 대부분이었다. 농촌직업훈련소에서 설치되었던 경우는 농업생산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훈련이 아니고 농촌분야의 직업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능인력의 육성이었으므로 농업기계나 농촌지역산업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농업생산인력의 확보를 위한 농업직업훈련은 이들과는 직종상 다른 내용이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농업직업훈련은 대상자와 내용, 기간, 적당한 장소의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즉 농업생산직 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대상 작목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기초지식과 기술, 대상 작목에 대한 보다 상세한 특정 지식과 기술, 경영기술, 판매 및 마케팅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지식과 기술은 실제 상황

에서의 실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농업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은 단기간의 집중 교육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나, 실습은 계절에 관련없이 모든 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다 갖춘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에 관련된 훈련공간이 설치된 농협 안성연수원이나 각 도마다 자영농업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기계 공동실습소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 대상 작목을 파종부터 출하기까지의 전과정을 한번이상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작목마다 생산과정의 기간은 다르므로 기간은 3-4개월부터 1년 이상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다. 가축은 입식후 출하시까지의 전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실습 장소는 학교내에서 농장을 이용하여 개별 project형으로 운영하거나, 창업후견인 농장에서 실습하거나, 부모님과 협정을 통하여 부모의 농장을 일부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좋을 것이다. 단 실습과정에서 각 실습생들은 교육기관에서 숙식할 수도 있고, 통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론 교육에 관련된 기간은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실습 단계에서는 통근이나 숙식이 교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론 교육기간은 농업에 관련된 기초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3개월 정도의 강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이후는 재배나 사육에 관한 영농 설계과정과 유통이나 판매 과정을 살피고 실습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각 작목이나 가축에 따른 재배 기법과 형태를 배우기 위한 과정 실습과정이 3개월 이상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상 작목이나 가축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직업훈련은 가급적 전국적인 확대가 타당할 것이다. 특히 작목별 실습이 가능한 지역과 기관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설은 부족하나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한 농민 단체나 인력은 시설을 보완하는 형태로 강의설장을 허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시설이나 우수한 강의 인력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서 해당 과정을 우선적으로 개설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정은 낙농helper제도나 농가도우미 제도 같은 농업숙련노동자의 확보를 위한 과정도 개설할 수 있다. 직업훈련의 주요대상은 농업교육을 받지 않았던 귀농희망자나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 탈북자중 희망자, 비 농과계 대학 졸업자중 농업분야 취농 희망자가 주요대상이 될 것이며, 농업계 학교 출신자 중에서도 실습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나 농업관련학과이기는 하나 자신의 분야와 너무 차이가 나는 학과 출신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생으로 선발될 수 있을 것이다. 주 선발기준은 기관의 목적이나 조건에 비추어서 실습이 가능한 학생들이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실습시간의 운영은 full time형태의 전일제 수업과 시간제 형태의 정시제 수업이 동시운영이 허용되어야 한다.

농업직업훈련의 구체적 내용은 그들이 종사할 지역의 농업 상황에 보다 친숙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은 합숙형태의 훈련과 통근형태의 훈련이 있을 수 있다. 영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개인이라고 한다면 직업훈련의 형태는 합숙형태가 좋을 것이다. 그러나 영농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농장이나 기타 인력이 충분한 지역에서 합숙훈련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금까지 후계농업인 사업에서 운영하였던 2주간의 교육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대상자의 배경에 따라 농업능력을 파악한 후 각각에게 적합한 교육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농업계 학교 출신이나 농업에 대한 기초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영농이론에 대한 합숙교육은 제외하고, 실습과 영농설계, 농산물 유통과 마케팅, 무역에 대한 교육을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기간은 대학이나 농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단위수나 대학의 전공이수학점수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경우는 복수전공제로 인하여 대체로 36-46학점정도를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으로 요구하고 있고, 일부 전문직에 관련된 학과는 68-80학점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농업계 고등학교는 98단위-102단위를 이수하여야 하므로, 이들에 해당하는 시수로 환산한다면 대학의 경우는 15주로 하면 540-630시간, 고등학교는 17주로 1666시간-1734시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최소 540시간정도의 교과학습이 있어야 할 것이고, 최대 1734시간정도의 수업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이들 외에 견학이나 각종 활동을 고려하여 시간을 여유롭게 하여야 한다. 시간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능력에 대한 PASS/Fail제도를 운영하여 각 단계의 이수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직무분석을 통하여 농업직 종사자에 대한 직업능력이 밝혀지고 수준이 결정된다면 이에 맞게 각 능력의 획득여부를 평가할 도구가 개발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능력에 대한 획득이 인정되면 다음 단계의 수업으로 나가는 MODULE식 수업을 시도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 이때 모든 시간을 합속하면서 수행하기보다 이론 수업은 합속하여 진행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하고, 실습과 영농설계는 합속하거나 선도농가의 현장에서 습득하며, 경영과 판매기술 등에 대한 경우는 견학과 실습을 겸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주관기관은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에 부설하거나 농업계 고등학교에 각도별로 설치된 농업기계 공동실습소에 부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농업기계공동실습소는 각도별로 농업기계가 필요하나 필수적인 기계의 수시 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별로 제한된 자원을 집중하여 사용하도록 1개교에 설치한 곳으로 이곳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업훈련대상자는 영농후계자의 연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연령 제한없이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는 일본의 인정농업자 제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적합한 교육기관은 현재 젊은 층의 학력수준이 고졸에 가까운 상태이므로 농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대학 수준이 적합하나 대학수준으로서는 경영적 능력이나 유통에 대한 지식이 적은 상태이므로 한국농업전문학교나 농업계 고등학교 중 자영농과가 설치되었거나 공동실습소가 병설되어 있는 학교가 적합할 것이다. 대학은 최고경영자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좋을 것이다. 특히 여주농고 부설전문교육원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다만 직업훈련을 받는 것으로 이수가 끝나기보다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는 영농후계자로 선정되어서 자금을 지원받기보다 사전에 일본과 같은 인정취농자 제도를 두어 선정된 사람이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실습과 유통실습을 통하여 인정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준에 따라 심의받고 자금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가 교육을 받는 형태이면 좋을 것이다.

둘째, 농업계 학교에 설치될 농업인턴제는 농업에 취업할 사람들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직 청년의 취업을 위한 방안의 하나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직 청년의 취업방안의 하나라고 한다면 진입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취농예비자의 실무 능력 강화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전공실무실습단계로서 농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영농능력을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기관에 파견되어 실습을 하여 직무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편성되어야 한다.

농업인턴제는 일차적으로 적당한 실습기관이나 실습지도자의 확보가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실습할 내용을 알려주고, 이들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평가와 합숙과정을 통하여 영농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시설과 농장 등의 기본 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적절하며 적합한 교수인력이 확보된 기관이나 단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실습지도자로 확보하여야 하는가가 결정적일 것이다. 현재 실습시설이나 설비가 충분한 경우는 농과계 고등학교가 일차적이다. 대개의 농업계 고등학교가 1980년대의 자립농고 육성사업에 따라 기자재나 농장의 확보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후반부터 실험실습시설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실험실습시설의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설치 학과의 변화로 인하여 실험실습시설의 구비정도가 학교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농업생산분야의 학과들이 있는 학교나 각도에 1-3개씩 설치되어 있는 자영농고는 농장이나 목장시설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다만 실험실습비나 인력의 부족으로 노후화된 경우가 있기는 하나 각 학교의 농장은 생산도 하고, 실습도 하는 공간이므로 실습비와 실습에 적절한 농장과 시설의 교체 및 보충을 통하여 인턴의 실습공간으로 활용함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인턴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학교는 숙소문제나 실습상의 일부 제도적인 한계는 있으나 자유로울 수 있는 반면, 개별 농가는 실습생의 관점에서는 자유로움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선도농가는 생산에 집중하여야 하는 실정으므로 이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을지라도 후진을 키우는 일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도제형태의 실습제도(apprenticeship)로 실습생을 배치하여 그들의 일을 보조하는 인원으로 배치하는 단계에는 가능할 것이나 노동 강도가 높은 실정에서는 인턴 자신들이 이탈하는 경우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주인이나 실습생 모두에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술지도나 경영지도, 판매와 유통 분야의 실습을 겸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으로 하되 지도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기관을 중심으로 공모하여 선정하고, 각 기관에서의 교육내용을 설계하여 지원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다. 배치규모는 한 지역에 많은 인턴을 배치하기보다 집합연수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각 실습기관에 배치하여 실습을 체험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때 지도교사나 지도감독자를 후견인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설과 설비가 충분한가와 지도자들을 확보하는 문제가 인턴기관의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농장이나 농업분야기관에서 일정기간 실습을 하거나 졸업후 해당분야의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형태로 인턴제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학년2학기에 현장실습으로 취업기관이나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간은 희망하는 작목이나 본인의 희망정도에 따라서 조정하되 재학 중에는 방학을 이용하여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1박2일씩의 참석을 포함하여 이론교육과 2-3학년기간중의 견학과 실습을 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미취업자를 고려한다면, 2-3학년부터 농업분야에 취농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 선발이 적절할 것이다. 이들은 학교 수업과 방과후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현장방문, 학교에서의 지도교사의 지도하에서 생산과제를 이수하고, 선진농장에 실습을 하는 방안

이 고려될 수 있다. 이들은 파견된 농장의 여건에 따라 helper역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농업계 학교에서 인턴제를 도입한 경우는 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공동실습소(현재 자영농고에 부설되어 있음)를 농업기계나 기타 농업실습훈련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농업계 대학의 창업 연수제도는 농업에 대한 창업연수로서 적합한 과정을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대학생 창업연수는 성격상 순수한 영농직보다는 농업 중 새로운 분야의 내용이 결합된 형태가 될 것이다. 즉 창업부문이 순수한 영농 창업 외에 이들 부분과 결합된 벤처농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전제할 수 있다. 각 지역 대학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형태의 창업연수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되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창업연수과정의 설치 운영은 각 지역의 농업분야 인력 수요와 부합하여야 한다. 창업연수과정을 농업계 대학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래에 이들 학생들이 농업분야에 창업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능력을 일정수준이상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간의 문제와 대상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취농창업자에 대한 지원자격이 35세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군대를 다녀온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가 적은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해외연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갖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제때에 졸업하는 학생들도 적은 관계로 이들이 농업분야의 창업을 하기에는 이수학점도 적고 전공내용의 이수 정도도 낮은 상태로 대학생들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40학점-150학점이라고 본다면 교양분야의 학점이 30-40학점 이내이고, 일반선택이나 복수전공의 선택에 따라 상당수의 학점이 제외되며, 실제로 전공분야의 학점으로서 전공분야의 졸업이 가능한 최저한계는 대략 전공 과목의 학점이 40-50학점 이수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이들 학생이 전공과목을 이수한다면 많이 이수하는 경우는 80학점정도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저학점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이 3학년을 시작할 때쯤에는 교양과목 이수학점이 있는 관계로 30학점정도가 최대 전공이수학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대학생들은 이들 학점이 없는 실정이므로 농과계 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의 진입을 허가한다면 이들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의 운영이 필요하다. 즉 비 농과계 학생들은 전공과목의 인정과정을 거쳐 부전공이수 수준의 학점이수와 실습 등을 요구하고, 농과계 학생들은 매 학기 2-3과목의 이수와 현장실습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영농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나 창업분야의 기초에 속하는 내용, 영농설계에 대한 교육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학교에서의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취농에 관련있는 과목들의 이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물분야는 가축사양이나 번식, 위생 분야의 생산분야과목과 유가공과 육가공, 모피가공을 비롯한 가공기술과목, 농업경영이나 농산물유통, 농업정책, 농업교육, 농업정보, 농업기계와 시설 등의 과목이나 분야가 필요하며, 식물분야는 재배학, 육종, 병해충, 농약, 잡초 등의 농업생산기초과목, 대상작물에 관련된 각론 과목, 농업기계, 농산물가공, 농업교육, 농업경영, 농업정책, 농업정보, 농산물 유통 등의 분야와 전문적인 분야들이 이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강의는 실습이나 직접 관찰을 통하여 실생활에서의 학습이 요구된다. 창업연수는 2학기 정도의 강의가 필요하며 창업상에서 부딪칠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창업연수는 최소 2학기이나 3학년 선발시는 4학기까지 확대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현장실습과 파견실습, 학교내 농장 실습 등의 실습이나 생산과제 중심의 project의 이수가 필요하다.

이들이 선발될 때는 2-3학년 때에 선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 기준으로는 생산농업분야의 기초분야를 포함한 이수과목이 20-30학점 이수자를 기준으로 선발하거나 아니면 3학년 1학기까지 생산분야의 학점이 40학점이상이 가능한자로 자격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학기당 2과목 또는 6학점이상 농업생산분야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과목의 이수와 이들 과목에 대한 평균 평점을 규정하고, 방학기간중의 현장실습이나 실무실습 또는 집합 교육(의식교육과 견학, 영농설계 교육, 농산물 판매교육을 주축으로 한)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이수형태나 시기를 허용하되 교육기관 선정과정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4학년까지 운영하는 경우는 졸업 때에 이 규정에 따라 이수한 자가 해당 대학의 부전공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정도의 학점 이수가 요구된다.

선발은 학교 단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게 하되 이들에게 연수에 필요한 최저한의 경비 지원과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과제 자금의 지원이 요구된다. 과제 자금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500만원 내외의 자금이 적절할 것이며, 소규모라면 이들보다 더욱 작은 규모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농장을 빌려줄 수 있는 경우 무상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 농장을 빌려주고, 전기료나 수도료 등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도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장학금의 지원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창업연수제도를 설치할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창업연수제도를 설치할 학교는 학생들 신청자가 일정수 이상이어야 한다. 적어도 20명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 규모를 가정하되 이보다 적은 학교는 타 대학의 학생들을 받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는 이들 기관이 타대학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설강과 지원이 아닌 방학기간이나 주말을 이용한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창업연수제도를 설치할 승인받은 대학은 창업연수과정의 설치로 인한 농장이나 강의실 여건의 손해를 부담할 경비 지원이 요구된다. 흔히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대응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인 경우는 대응자금이 타당하나 대부분 교육사업을 운영함으로 경영적 mind가 없었던 대학에 대응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편법적인 자금 운영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므로 그보다는 운영비 형태의 최소자금을 지원하고, 취농으로 잘 유도하여 성공하는 기관은 상을 주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수업신청으로 강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교수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지원자들을 실험실습에 보조 인력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일정한 정도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창업후견인제도 도입

학교나 학교 외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마다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지도교사, 지도교수제도이다. 현장실습지의 지도자는 현장교사라는 명칭이 적절할 것이다. 이는 Mentor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교사는 실습기간만, 지도교사나 지도교수는 사안에 따른 접촉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마다 개인마다 그들의 진로 선택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Mentor

system을 이용하여야 한다. 현재의 지도교사나 교수제는 상담만으로 이루어지나 실제로 한계가 있고 그에 대한 merit도 없으므로 지도교사와 교수, 현장교사는 창업농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형태로 협력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는 후견인제도로 볼 수 있고,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대부 제도이다. 특히 영농을 결심하여 정착하기까지 이들을 잘 지도하고 지원하며 후견하여 주는 후견인 제도는 학교 단계의 지도교사나, 미국에서 초임교사들이 직업을 떠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교직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Mentor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서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작목생산기술이나 경영, 판매에 관련된 기술 습득을 비롯한 1차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거나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해결한다. 그러므로 주변사람들의 도움과 자문을 통하여 농업 적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농업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견인은 의미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존재할 수 있으나 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의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친권자의 의미보다는 미국의 교사들의 초기 적응을 돕고 평가하는 Mentor제도를 가정할 수 있다. Mentor제도는 적응하지 못하는 초임직 교사를 도와주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서 우수한 업적과 능력을 갖춘 경력있는 교사가 신입교사들의 Mentor를 맡아 적절한 조언과 지원,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교사로서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농업에 적용되는 후견인제도는 농업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창업후의 초임직 농업생산인력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 Mentor의 수준이나 업무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사처럼 심리적 지원과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의 연계를 맡는 후견인이 있는가하면, 실습파견기관이나 단체, 농장의 주인으로서 실습생이 영농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습에 대한 지원을 맡는 현장교사의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 있을 수 있다. 이때 후견인의 수는 개인이 이수하는 과제의 성격이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실습기관이나 단체, 농장이 바뀌어야 한다면 당연히 후견인은 1인 이상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1-2명의 후견인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대부분 기술자문에 관련된 인력은 2-3명, 법이나 경영적 자문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므로 창업자나 실습생 1인당 3인 이하로 후견인을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후견인이 맡을 수 있는 창업자수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자신의 일을 가진 멘터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1인당 최대 2-3명을 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규모 집단을 다루는 경우는 후견인을 집단으로 구성하여 자문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후견인의 책임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흔히 창업자들의 자금 확보가 어려우므로 후견인이 창업자의 보증인으로 활용되는 경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순수한 후견인 활동이 제한될 경우가 있어서 후견인 확보가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견인의 활동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후견인은 취농이후 농업에 대한 정착을 돕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후견인은 취농자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지역의 선도 농민들이 될 것이다.

(마) 생산농업의 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전문농업 인력에 대한 공급방안 검토

농업인력의 축은 생산인력과 관련인력으로 대별되고 그 규모 역시 생산인력에 비하여 관련인력

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농업이 복합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농업인들간에 역할 분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개별 가족단위의 농가에서는 이 부분이 다른 농가와 협력의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결과적으로는 개별농가 모두 경쟁적 관계이므로 이들을 연결시킬 공통적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출발한 법인들은 여러 명이 관여하므로 역할 분담이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농림부의 정책 구상이 벼농사인 경우는 들별로 RPC와 같은 Center 단위의 결합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기타 작목 역시 작목반 조직이나 학습조직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들 과정에서 농업인이나 조직에 관련된 비농업인간의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역할 분담도 일어날 것이므로 이들 분화된 역할을 담당할 적절한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지역 산업과의 관련을 통하여 확대되고 성장하기 위한 적절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을 말한다. 더구나 지역농업혁신 cluster를 형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농업을 종합산업화한다면 마케팅과 유통을 도와줄 인력과 농업정보를 제공할 인력,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마을을 살만한 마을로 꾸미고 이끄는 일을 맡을 인력,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을 관리할 인력 등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농업벤처를 시작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들 인력은 겸업농이나 농촌에 거주하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인력이 맡을 수도 있으나, 농업인력 중 노령화되어 은퇴농이 되는 인력들에게 그들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외에 별도로 도시에서 귀농하거나 다른 분야의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직업이나 활동을 배려함에 있어서도 적절할 것이다.

(바) 후계농업인 선발과정과 육성과정의 일치

후계농업인 선발은 현재 창업농과 일반 후계농업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리의 문제나 연령의 제한이 있으나 선발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농에 지원할 자격이 농업계 학교 출신자와 비 농업계 학교 출신자간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예농업인력은 비 농업계 학교 출신자도 될 수 있으나 이들보다는 정규농업교육을 받은 인력이 보다 적합한 정예 농업인력 자원이므로 이들이 우선적인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농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발과정에서 불리하도록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창업농에서 정규 학교이외의 단계에서 교육받은 농업에 관련된 훈련이나 연수점수가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은 학교에서 이수한 단위수와 훈련시간 수를 동일한 시간수로 환산하여 상호 비교를 통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대학은 학점수이므로 고등학교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이수한 사람과 농업계 대학만을 나온 사람을 동일한 형태로 비교하려면 그들이 농업을 이수한 단위수와 학점수를 시간수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될 것이다. 또한 경영설계나 사업계획서의 작성, 유통과 판매에 대한 기법 등에 대한 교육과 정기적인 정보교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 입직경로의 다양화

첫째, 현재의 조건상 농촌출신이나 농업인 자녀의 유입이 정책의 우선 순위였다. 그러나 점차 농

업인 자녀의 유입이 어려워졌고, 농촌 출신 역시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인력의 확보를 농업인 자녀의 영농승계와 농촌 출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업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인력이 유입하도록 하거나 농업교육을 받지 않은 인력은 입직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집중적 교육을 받도록 교육과정의 운영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가 직업훈련과정인 것이다. 3-10개월, 또는 1-2년 정도의 장기교육을 합숙교육과 출퇴근 형태의 교육을 받아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또한 이론에 대한 실제적 실습은 파견 형태의 실습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입직경로는 대상자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농업계 학교 출신은 이론 분야의 수업은 수강한 학점이나 이수 단위를 기초로 이론 수업의 이수를 면제하고, 실습이나 경영실습, 판매와 유통, 마케팅에 대한 실제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과 견학, 실습 등으로 6개월 이상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도시민의 자녀나 농업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론 분야의 수업을 시수기준으로 82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실습이나 경영관리나 유통, 마케팅에 대한 실제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직에 유입될 수 있는 인력은 탈북자, 해외유입인력, 귀농자, 도시민중 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농촌거주 희망자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개인의 배경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므로 개인의 농업에 대한 기초 능력과 이해를 판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그에 따라 적절한 학습과정을 설계하여야 한다. 개별화가 가능한 교육과정은 학생수로 인하여 극히 적은 숫자인 경우에도 있으므로 공통내용을 중심으로 집합연수를 하고, 그 외에는 농장이나 실험실, 관련 산업체에 가서 일정 기간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독자 연구나 project를 주어서 전 과정을 실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농업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취농은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나 지식농업시대로 가면서 수요자의 수요에 맞게 농산물을 포장하거나 마케팅하는 일에는 섬세한 여성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여성에게 적합한 농업직에는 여성의 취농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동점자일 때 여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나 대체로 여성이 농업인력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현재 농민이고, 남편을 도와 농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생산농업을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가산점을 주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다섯째, 농업생산직에 대한 수요처와 개인의 생애경로에 따른 차별화를 고려하여 개별 농업인력 중심의 정착 지원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농업교육기관(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전문대학, 농업계 대학)의 졸업자와 일반계 학교 출신자는 그들이 보완되어야 할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들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예인력의 기본적 전제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주 대상이므로 농업교육기관 수료자가 우선이어야 하나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성격상 졸업과 동시에 현직 종사를 하기에는 병역문제나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현장실습교육이 필요하다. 문제는 농업교육에 관련된 현장실습기관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때는 학교 내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교농장이나 가정에서의 project이수형태가 될 것이다. 이는 학교농장실습, 가정영농실습, 현장실습이 함께 결합된 형태이고,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기업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농업정착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여섯째,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는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농업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기초지식이나 기술, 경영능력, 자본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취농하여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형태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일정기간의 농업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서나 생애설계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인정취농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필요한 농업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voucher제도나 무이자 융자 방안 형태로 검토될 수 있다. 무이자 대여는 일본의 제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자신의 농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농자들이 받게 되는 연수비용에 대한 무이자 대출제도에서 파악할 수 있다. voucher는 교육이수자의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었으나, 학생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선택권과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의 교육에 대한 질적 제고 노력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voucher에 의하여 지원되는 1인당 교육비가 적을 경우 영세한 교육기관이나 단체는 프로그램의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아) 농업에 관련된 창업보육센터 확대

현재 농업에 관련된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한국농업전문학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3곳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경기도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창업보육센터로서 1차적 생산 농업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농산업발전에는 기여하는 바가 적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경상권과 전라권을 대상으로 적절한 수준의 기관이나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지원사업과 함께 농업이 관련산업과 함께 확대 강화되어 혁신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필요하다. 이 기관은 동시에 지역의 농업관련벤처 창업에 대한 교육과 연수, 학습집단 모임에 대한 지원과 정보 제공, 농업분야의 창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4) 신규 농업인력에 대한 자금 지원 제도 보완

(가) 농업인력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 제도 보완

생산 농업인력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부분은 기술적 능력과 경영능력, 판매와 유통에 대한 능력이 기본적이나, 효율적 경영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경영규모가 갖추어야 한다. 농림부의 자료를 보면 벼는 4300평을 희망할 때 116백만원, 채소는 1200평으로 재배시설에 따라 73백만원에서 814백만원, 과수는 3000평 기준으로 155-170백만원, 화훼는 1000평 기준 245백만원, 특작은 1700평 기준 68백만-72백만원, 버섯은 200평 기준 200백만-900백만원, 한우는 50두 기준 224백만-322백만원, 양계 20000수 기준으로 110백만-209백만원에 달하여 작목이나 시설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나 7천2백만원에서 9억원까지 자금 수요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창업자가 희망하는 토지구모이기는 하나 이들 외에 운영비등이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목별 차이는 있을지라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 졸업후 창업자금을 모을 충분한 시간이 없는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결과적으로 정책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는 현재의 제도상

대출이 종합자금에 해당하나 종합자금이 요구하는 기준이 2억이상이면 신용조사가 적용되므로 실제로 별도의 경영규모나 기반이 없는 창업자는 2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평균적으로 대출되는 4500만원정도가 실제로 가능한 액수이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수준의 경영규모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 규모의 축소는 투자에 대한 수익구조를 축소시켜 5년거치 10년 상환이라는 창업농자금의 상환능력을 지연 또는 감소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창업자는 충분한 경영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여야 하나 실습형태로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는 한 막대한 규모의 자본 확보는 어려울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보증에 의하여 자금을 빌릴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의 제도처럼 일정 액수까지는 창업에 필요한 토지나 생산시설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은 무이자나 아주 낮은 저리의 자금으로 제공하되, 미국의 제도처럼 상환능력에 따라 금리를 낮추거나 장기로 상환조건을 변화시켜서 갚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투기성이 있는 경우는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에 대한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연수비용은 무이자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1-2년 정도의 외국 체제자금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이들 제도를 이용하여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철저히 하고, 인정된 기관에서의 초청장의 확보와 연수프로그램의 확인, 해당 학교에 대한 공식적 확인 과정을 거쳐 2-3중의 장치로 하되 외국어 연수를 비롯한 외국농업연수과정에 대한 자금은 무이자로 함이 외국농업의 정보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수자금과 시설 및 생산기반 확보 자금에 대한 저리나 무이자 지원

현재 농업에 대한 자금은 후계 농업인이 되면 신용으로 4500만원까지 용자가 되나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에 이자는 매년 변동은 하나 현재 3.5%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생산농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절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고, 후계 농업인이 4500만원(농기계자금 300만원 미포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정도가 토지 일부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수익을 내면서 이자까지 갚을 수준이 되라는 것은 작목을 잘 선택하여 일정비율이상 이익을 얻어야 함을 말한다. 더구나 5년간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나 용자한 사람이 충분히 농업에 대한 기초가 있고, 주변에 이들이 정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능력있는 지원인력이 있다면 가능한 상황이나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나 금리의 변동, 생산량의 변동은 모험있는 일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과 같이 연수자금, 생산기반자금 등의 대출은 무이자로 지원함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아니면 개별 농가별로 장기간에 걸쳐서 갚을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고 개별 농가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5) 농업인력 관련 기관간의 협력 체제 구축

농업인력의 육성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산하의 농업계 고등학교, 농과계 대학(2년

제, 4년제)의 체제와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업인단체에서 농어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농업연수부에서 농업교육에 대한 연수를 일부 담당하고 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나 농업인 단체, 농업 관련단체(농협,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농촌지도 기관은 주로 현직 농민을 중심으로 교육하거나 후계자로 선정된 이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들에 비하여 농과계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업교육은 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을 제외하고는 미래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의 연계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시범농고 육성에 관한 법령을 만들면서 전국의 시범농고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였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자영농고의 재학생들에게 기숙사비와 식비를 제공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또한 농업계 대학과 농촌지도기관간의 협동을 명시한 농업중앙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도 도 농업기술원과 지방 농과대학간의 협동이나,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간의 협력은 주로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인력육성에 관한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농업계 고등학교간의 협력이 약화되어 지역의 생산 농업인력에 대한 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앙 차원의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협의, 자문,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협의와 실천, 지방 및 시군 수준의 농업인력 육성에 대한 협의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육성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기존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 방안

(1) 농업종합자금제 개선방안

(가) 제출서류와 서식의 간소화

- ① 제출서류와 서식을 간소화하여 꼭 필요한 것만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기계자금이나 5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교육이 수증과 같은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 ② 농민들이 이러한 서류들을 작성하거나 대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해당 기관에 안내 창구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③ 대출과정이나 조건, 준비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안내책자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④ 핵심적인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평가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평가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시설자금의 융자지원 조건 개선

소액 대출이 많아지는 것은 종합자금제도가 복잡한 제출서류와 까다로운 대출 심사에 비해 지원 조건상에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금에 비해 시설자금은 지원조건의 유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운용자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차별화하여 실제 대출 의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시설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2% 내지는 1.5%로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시설자금에 대해서 설계기준 및 시공업체선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 감리비, 세금계산서 등은 공사비의 증대요인이 되어 시설자금의 유리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 시설자금 중 확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을 늘린다. 농민들에게 자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다) 비재무평가 방법 개발

종합자금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재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반영되어야 하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주자질, 경영관리수준, 기술수준 진단할 수 있는 실제적이며 구조화된 절차가 필요하다.

- 기존에는 설문지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그 결과가 평가절하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실제적이고 타당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설문지의 내용을 좀더 실제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설문지 외의 보다 다양한 방법이 요구된다. 실제 경영주와의 심층 면담이나 현장 방문을 통한 심도 깊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결과가 실제로 반영되어야 한다.
- 종합자금제의 취지에 따라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라) 지원대상 확대

전업농 이외의 농가에 대한 대출제한으로 계절적으로 또는 시간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일부 품종은 제외되고 있다. 이는 농외 소득 장려와 농업 인력 확보 측면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성 있는 농업경영인을 지원한다는 농종합자금제의 취지에 맞게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기존의 대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기준에 충족되면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지원한다.
- 전업농이 아닌 농민을 위한 지원 기준을 따로 마련한다.

(마) 신규후계농업인의 나이 제한 완화

일본은 신규 취농자를 5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후계농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5세 이상은 종합자금제에 편입시키고 있다. 이는 젊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나 취농자들을 제한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 일본과 같이 연령 제한을 완화시키고 나이에 상관없이 신규 취농자들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컨설팅 체제 개선

농업종합자금제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경영실태조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연 1회 밖에 실시되지 않고 너무 복잡한 내용까지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자체로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진단과 함께 경영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컨설팅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실태조사 시 핵심내용만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DB화 하고 이를 경영컨설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컨설팅에서 점차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비용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과 함께 컨설팅 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대출 농가들이 스스로 컨설팅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컨설팅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기관과 농업인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농업경영컨설팅 개선방안

(가) 농업 현장 중심의 “연구-교육-지도”의 연계 강화

체계적인 “연구-교육-지도”의 연계를 통하여 농업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산·학·관·연 협조체제를 중심으로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연구 컨소시엄”에서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현지 농업인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농업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또는 농업기술센터)과 농학계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컨소시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효율적인 농업지식의 보급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분야 연구자, 그리고 관련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회”의 결성을 촉진한다. “연구회”의 활동을 통하여 농업인과 연구자, 산업체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농업활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연구회가 참여하는 “농업분야 현장연구제도(안)”를 도입하여 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나) 농업컨설턴트협회 설립

농업경영컨설턴트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컨설턴트 간에 ‘경쟁과 협조의 원리’가 작동·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컨설턴

트들의 자율적인 협의체를 만든 다음 협회 주관 하에 농업인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사례발표, 컨설턴트에 대한 재교육, 선진 컨설팅 기법의 한국화·공유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컨설턴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컨설턴트들의 협의체로 대표적인 것은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가 있다.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운영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가칭)농업컨설턴트협회’의 설립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는 1986년 설립된 이래,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 회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선장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아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활동내용으로는 자격시험, 자격심사, 실무수습, 보수교육, 양성과정, 고용보험 교육, 정부위탁교육, 중소기업 진단·지도, 진단보고서 감리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IV-31>과 같다.

<표 IV-31>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의 주요 업무

구분	활동내용
회원지원	- 회원의 컨설팅 직무능력 개발 - 회원의 업권보호 및 컨설팅 업무개발 - 회원간의 친목과 복리 증진 - 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법정직무	- 지도자 자격시험, 등록자격요건 검토 - 지도자양성, 실무보습, 보수교육, 지도자 등 - 중소기업 진단, 지도 - 기업진단보고서 감리
제도개선	- 지도사 관계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 컨설팅 관련 정책 개발 - 지도사의 위신 및 공신력 제고 - 컨설턴트 조직 및 역량 강화
중소기업지원	- 경영·기술 컨설팅 - 해외규격인증 획득 - 경영개선 교육, 훈련 - 중소기업 애로 상담, 자문
교육·연수	- 법정, 정부 지정교육 - 민간자격 인증교육 - 외부 위탁교육 - APEC 인증 컨설턴트 양성교육
대외협력	- 국내·외 컨설팅 기관 net-work 운영 - 영국 컨설턴트협회(MCA)와 업무 교류 - 일본 진단협회와 업무교류 -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컨설턴트과정 - 한국경제신문사 종합컨설팅센터 운영

전체 회원은 11,166명으로 경영지도사 7,297명, 기술지도사 3,86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구성은 중앙총회와 1처 1실, 5개 전문기구, 14개 지회, 10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지회조직은 서울지회로 강남, 강북, 중부, 강동, 강서가 있고 지방지회로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남, 전북, 강원이 있다. 분화위원회에서는 지회관리, 제도운영, 회원관리, 업무개발, 개업지도, 교육홍보, 지도연구, 윤리징계, 자원봉사, 회보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기구로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실무이론을 겸비한 소속 회원들로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Total Service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5개 전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들로는 컨설팅산업진흥원, 한경종합컨설팅센터, 산업교육원, 경제연구원, APEC인증사업본부가 있는데 그 업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IV-32>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의 전문기구 업무 현황

구분	업무현황
컨설팅산업진흥원	시대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컨설팅 Tool 및 Process의 연구, 개발을 통해 컨설팅 산업의 성장 발전에 기여
환경종합컨설팅센터	최신 컨설팅 Tool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Systematic Approach로 기업 체질 강화를 위한 실천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산업교육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훈련과 Education Consulting Tool을 적용한 실무 지향형 전문교육을 실시하므로 개별기업 및 개인의 잠재력 개발에 기여
경제연구원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조사에서부터 실천적 경쟁전략 수립, 운영까지의 Total Service를 One-stop system으로 제공
APEC인증사업본부	APEC으로부터 지정받은 APEC 인증 컨설턴트 양성 및 인증자격 부여와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통한 중소기업 컨설팅 품질 향상

이처럼 농업경영컨설팅에 있어서도 농림부의 지원 아래 농업컨설턴트들의 자율적인 협의체인 농업컨설턴트협회를 설립하여 회원지원사업, 컨설팅사업, 교육사업, 연구사업 등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컨설턴트와 컨설팅 업무의 질을 관리하고 각종 사례발표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기술교류가 가능할 것이며 한국 농업에 적합한 컨설팅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가칭)농업컨설턴트협회’의 설립을 위한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표 IV-33> (가칭)농업컨설턴트협회 설립 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명: 농업컨설턴트협회 - 설립목적: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농업컨설턴트 회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영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식량수급에 기여한다. - 회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로 구성 - 주요조직: 중앙총회, 지회, 분과위원회, 전문기구 - 주요업무: 회원의 컨설팅 직무능력 개발, 회원간의 친목과 복리 증진, 컨설팅 관련 정보 공유, 컨설턴트 자격시험 및 인정, 농업컨설팅 알선 및 실시, 농업인 경영개선교육, 컨설턴트 양성 교육, 농업컨설팅 관련 연구, 각종 기초조사, 컨설팅결과보고서 평가, 컨설팅 관련 정책 제안, 사례 발표회, 세미나 개최, 우수 컨설팅 사례 발굴 등 - 재정: 농림부 지원, 회비, 교육사업, 인정사업 등 기타 수입
--

(다) 컨설팅 효과에 대한 고객 평가 시스템 도입

컨설팅의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IV-7]와 같다. 평가는 모든 컨설팅 프로세스의 종료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컨설팅이 그 목

적을 달성하였는지, 결과를 얻기 위한 자원 활용이 정당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평가는 고객과 컨설턴트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평가 과정 자체만으로도 고객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컨설팅 효과에 대한 고객 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고객 평가의 항목과 기준, 방법, 시기 등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1. 착수	2. 진단	3. 활동계획수립	4. 실행	5.종료
-고객과의 첫 접촉 -에비 진단 -컨설팅 계획수립 -컨설팅 제안서 제출 -컨설팅 계약	-목적의 분석 -문제분석 -사실발견 -사실분석과 통합 -고객에 대한 피드백	-해결방안 개발 -대안 평가 -고객에 대한 제안 -실행을 위한 계획 수립	-실행에 대한 지원 -제안의 조정 -훈련	-평가 -최종보고서 -실행된 사항들의 정착 -사후관리 계획 수립 -철수

[그림 IV-7] 컨설팅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① 평가내용

컨설팅에 대한 평가는 보통 컨설팅을 통해 달성한 고객의 이익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된다.

- 컨설팅이 가져다준 이익에 대한 평가

컨설팅이 가져다준 이익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객의 사업에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는 변화가 달성되었는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익은 컨설팅의 전후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

- 프로젝트 그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 고객이 달성한 구체적인 결과와 이익은 무엇인가?
- 기대한 어떤 결과가 달성되지 못했는가?
- 컨설팅을 통해 달성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나 추가적인 결과들을 달성하였는가?

컨설팅은 궁극적으로 문제해결활동이며 목적지향 활동이다. 즉,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단단계에서 수립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문제해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이득을 가져왔는지가 주요한 평가의 항목이 될 것이다.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경영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능력·시스템·관계·기회·행동·성과와 같은 이익이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 새로운 능력(new capability):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고객이 습득한 새로운 기술이 있는가의 문제로서 컨설팅을 통해 영향을 받은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의 특정한 기술적인 테크닉이나 관리, 진단,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변화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 등이 있으며,

여기에 고객의 증간된 경영 및 사업에 대한 수행능력, 창의성, 기업가 정신, 혁신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 환경변화에 대한 민감성 등과 같은 자신의 개발도 포함된다.

- 새로운 시스템(new system): 새로운 정보시스템, 마케팅 시스템, 인사채용과 인사정보 시스템 등 특정한 시스템의 도입
- 새로운 관계(new relationship): 새로운 전략적 제휴, 하도급 현장, 벤치마킹을 위한 협의 등과 같이 고객이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들 간의 관계 확립을 도와준다.
- 새로운 기회(new opportunity): 새로운 잠재시장, 값싼 원자재의 발굴, 획득해야 할 토지와 건물 등을 고객에게 확인시켜 준다.
- 새로운 행동(new behavior): 새로운 행동은 대인관계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작업상황에서의 개별적인 행동도 포함하고 있다.
- 새로운 성과(new performance): 위에 언급된 5가지 영역에 있어서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지표에서 개선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성과가 달성된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 단위(작업장·팀·집단·공장·부서), 조직(기업·에이전시·정부의 부서) 수준에서 관찰될 수 있다.

-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는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컨설팅 결과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실시된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행동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데, 새로운 종류의 행동과 프로세스를 고객조직에게 형성하고자 한다면(결과) 컨설턴트는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컨설팅 중재방안(프로세스)을 고객에게 선택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즉, 컨설팅은 문제해결과정이므로 컨설팅 프로세스를 고객 스스로 선택하거나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객과 컨설턴트가 같이 평가해봄으로써 고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새로운 행동을 고객에게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표 IV-34>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내용

구분	평가내용
컨설팅 프로젝트의 설계(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누구에 의해 발생하였는가? · 어떤 선발기준과 절차들을 활용하여 컨설턴트가 선정되었는가? · 컨설팅의 목적이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모호하지는 않았는가? · 컨설팅 설계가 명확하였으며, 고객의 요구와 특정한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이고 적절하였는가? · 추구하는 목적, 투입에 대한 초기의 정의는 컨설팅 계획수립을 위한 틀과 지침을 제공하였는가? · 컨설팅 스타일이 적절하게 정의되고 논의되고 이해되었는가?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컨설팅 초기에 바로 브리핑 받았는가?
투입의 결과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턴트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크기·구조·능력을 갖춘 팀을 제공하였는가? · 고객은 컨설팅에 필요한 자원(인적자원과 기타)을 제대로 공급하였는가?
사용된 컨설팅 형태(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턴트-고객 관계가 갖고 있는 성격은 무엇이었는가? 상호신뢰, 이해, 존경, 지지의 분위기가 있었는가? · 올바른 컨설팅 형태(스타일)가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고객의 능력과 선호도에 따라 채택되었고 다루어야 할 과제에 따라 적용되었는가? · 컨설팅에서 고객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모든 기회들이 제대로 활용되었는가? · 컨설팅에서 학습적인 차원에 대해 적절한 관심이 주어졌는가? 지식과 노하우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실행되었는가? · 컨설턴트가 프로페셔널로서의 모든 윤리적·행동적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였는가?
컨설턴트와 고객에 의한 컨설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의 초기단계는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짜여졌는가? · 컨설팅 회사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하였는가? · 고객은 컨설팅을 어떻게 통제하고 모니터링 하였는가? · 컨설턴트와 고객은 타임테이블을 존중하였는가? · 컨설턴트의 중요한 시점에서 중간보고와 평가들이 실시되었는가? 이에 기초하여 어떤 행동이 취해졌는가?

위에서 언급한 컨설팅이 가져다준 이익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의 내용들이 고객 평가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특히, 농업경영컨설팅이 단순한 기술지도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이라는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함으로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한 선택과 평가 자체가 농업인들에게 좋은 교육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에 대한 컨설팅 평가 못지않게 과정에 대한 평가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② 평가방법

컨설팅이 가져다준 이익에 대한 평가방법으로는 측정과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하드데이터의 수집과 조사가 주로 사용된다. 또한, 컨설팅 프로세스, 컨설턴트-고객의 관계, 컨설팅의 스타일 등에 대한 평가에서는 특히, 여론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에는 인터뷰, 관찰, 설문지, 회의를 통한 토의 등이 전형적인 테크닉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 평가시기

언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컨설팅이 끝나갈 무렵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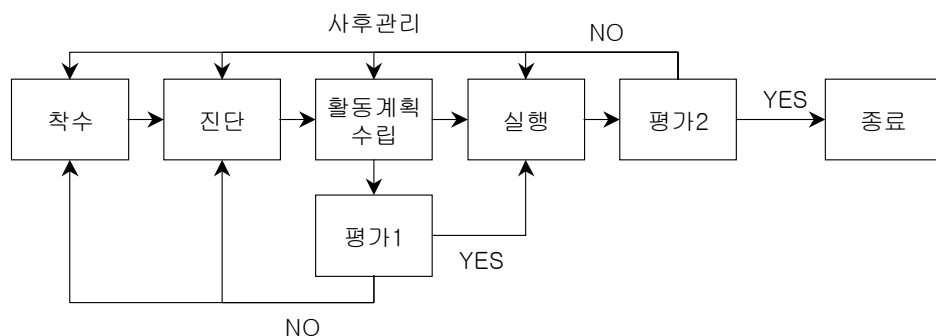
에 대한 이익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상을 통해 컨설팅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컨설팅 전략, 방법론, 관리 등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과 활동계획 수립단계의 종반에 평가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컨설턴트와 고객에 의해 연합적으로 실시되는 컨설팅의 통제와 모니터링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진단, 활동계획수립, 실행의 각 단계별로 프로세스와 중간결과들을 검토하기 위한 몇 번의 평가를 실시하여 컨설팅 계획과 작업방법을 변형시킬 수 있다.

컨설턴트에게 있어서 컨설팅에 대한 평가는 자신들이 제공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컨설팅 스태프들을 통제하고 개발하며, 기존의 고객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인 도구이므로, 비록 고객이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지라도 스스로를 위해 자신이 수행한 모든 컨설팅 프로젝트들을 평가해야 한다. 컨설팅 회사들은 ①일반적으로 컨설팅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았던 고객에게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②사후관리(follow-up) 방문을 통하여 고위경영자들과 만나 컨설팅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보고서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인터뷰, 토론 등의 평가도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참고로 ISO 9001 표준에 따른 품질보증에서는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활용한 컨설팅 평가가 강제절차이다.

④ 평가결과의 활용

컨설팅 업체들에게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 평가결과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심의하여 사후관리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 컨설팅 업체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컨설팅 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경영컨설팅에 있어서 고객 평가 시스템을 다음 그림과 같이 계획해 볼 수 있다.



[그림 IV-8] 컨설팅 효과에 대한 고객 평가 시스템

(3) 전문농업교육훈련 개선방안

(가) 영농교육훈련 정보 인프라 활성화

영농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농업인들이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활성화해야 한다. 온라인(On-line)상에서 영농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여 현재 온라인상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단일화하며, 교육기관, 교육일정,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영농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영농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 영농교육훈련 정보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며, 교육제공자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을 받은 농업인도 교육정보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Off-line)상에서도 영농교육훈련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제작하여 각급 농촌지도기관, 농업관련단체, 농업교육기관 등에 비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농업인교육정보시스템(<http://eduinfo.maf.go.kr>)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종 농업 대상 교육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시기별, 대상별,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강사와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이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공되는 정보들이 불충분할 뿐더러 농업인들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유도하기에 전혀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기관들의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데이트 상황을 계속적으로 권고하며 점검해야 하며 이러한 홍보 활동을 기관 평가의 사항으로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나열해 두었을 뿐 프로그램들 간의 관계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만약, 프로그램들의 내용이나 난이도를 고려하여 농민들이 자신의 생산기술이나 경영기술을 향상시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코스들을 안내하여 둔다면 농민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상에서 교육기관들의 위치, 연락처와 각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망라된 교육편람을 매년 발간하여 각 마을마다 비치하고 농민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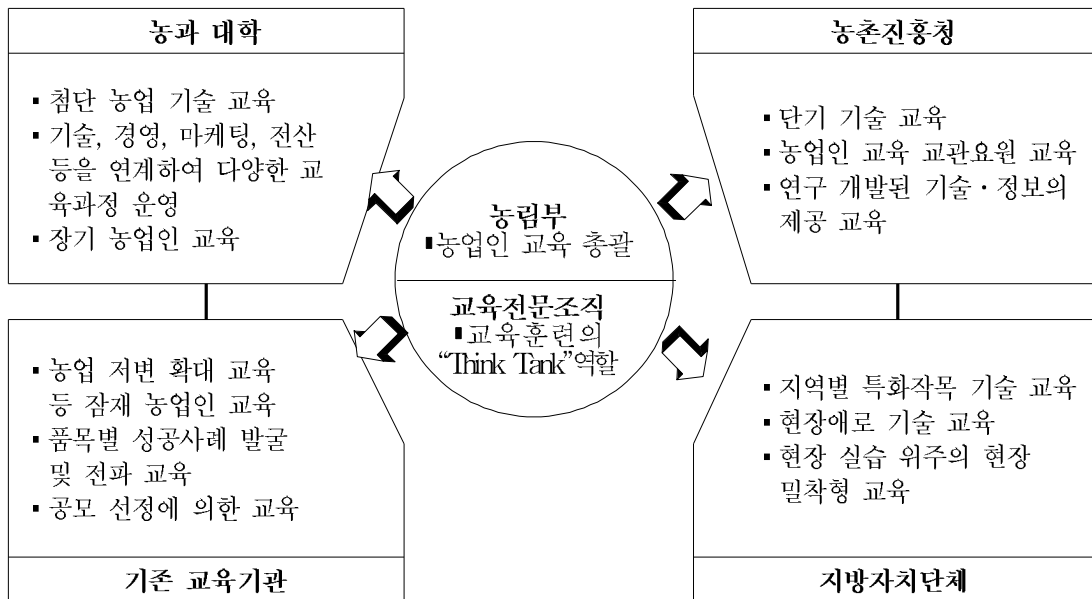
(나) 기관간 역할 분담 및 특성화

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특성화는 두 가지 차원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수직적으로 차별화 한다면, 중앙단위 사회교육기관은 도단위 및 시군단위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 중앙 및 지방 농업관련 공무원, 농업계 학교 교사 등을 교육대상으로 변화하는 농업 및 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단위 사회교육기관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농업경영능력, 마케팅, 농업기술능력 향상 등에 초점을 두으로써, 농업인

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영농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는 주로 현장 애로사항이나 간단한 농업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인력으로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중장기 교육훈련은 도단위에서 제공한다.

수평적 차별화는 다음 [그림 IV-9]와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료 : 농림부(2004). 농업인 교육훈련 개편방안. 농림부.

[그림 IV-9] 기관간 역할 분담 및 특성화

- 농림부 : 농업인 교육 훈련 총괄, 농정시책 교육, 농림부 실국별 신규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등
- 교육 전문조직 : 연간 교육 수요 조사, 모델 교육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교육시스템 개발, 농업인·생산자단체 교육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기관 공모 및 교육기관 평가 등
- 농과대학 : 첨단 농업 기술 교육 및 보급, 장기 농업인 교육 등
- 기존 교육기관 : 농업 저변 확대 교육 등 잠재 농업인 교육, 품목별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교육, 기관 특성별 특정 농업인 교육(예 : 농업기반공사 쌀전업농 교육 등)
- 지방자치단체/농촌진흥청 : 1주일 이하 단기 기술 교육, 지역별 특화작목 기술 교육, 현장애로 기술 교육, 교관·지도 요원 교육

(다) 교육기관 평가체제 확립

교육기관 평가의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교육훈련기관

들의 상태를 시장에 공개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직업교육시장에서 수요자 및 공급자의 활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농업인력 육성기관으로써 교육능력과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교육훈련 시장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 활동, 즉 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적 정책 수립,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계획 단계부터 운영, 결과 단계에 대한 양적인 평가와 동시에 질적인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기관에 평가기능을 부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하여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 교육기관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 평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구성요소인 평가주체,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여건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① 평가주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단 구성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평가내용

평가의 내용으로는 기관의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십 진단, 전략적인 계획 진단, 학생과 이해관계자 중심 진단, 정보와 분석 진단, 교직원 중심 진단, 프로세스 관리 진단, 조직 수행성 진단 등이 있을 수 있다.

③ 평가방법의 유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결과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평가결과를 결정하는 방법은 평가의 활용목적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며 적용된다.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서열화(ranking), 등급화(grouping), 통과제(pass-and-fail method) 등이 있다. 이때 사용되는 판정기준이 절대적 혹은 상대적 기준에서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기관간의 평가결과를 비교하는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

평가목적이 기관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면, 상대적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의 결정은 무의미하다. 기관평가는 일정기간의 주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공개의 목적이 교육훈련기관간의 비교이기 때문에 동일 주기 내에 평가된 기관들은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관평가 결과를 서열화 한다는 것은 평가대상 기관이 기관평가에서 획득한 점수에 의해서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평가대상 기관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평가대상 기관간의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관평가 결과의 통과제는 현행 대학평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하다. 평가에 대하여 단

일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관들의 평가결과가 이 기준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기준을 넘어서는 평가결과를 얻었을 경우에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판정한다면, 평가결과의 판정한계에 있는 기관들에게는 자극을 줄 수 있으나, 우수한 기관들의 자발적 발전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즉, 단일 수준의 판정기준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기관들간의 차별화가 인정과 불인정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교육훈련기관들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 수 있다.

기관평가 결과를 등급화 한다는 것은 서열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다. 등급화는 대학에서 학점의 부여에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등급화는 기관들의 평가결과 수준을 다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대하여 차별화된 인정을 해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서 결과의 평가는 동일한 등급 내 기관들은 차별화되지 않으며, 단지 등급간 비교가 이루어지게 된다. 등급화는 등급의 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기관들 간의 과열경쟁을 방지하면서 서열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수준차이를 보이고 있는 다양한 교육훈련기관들의 발전노력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평가결과의 결정방식은 등급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평가목적에 따라 결정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표 IV-35> 평가결과의 결정방식

구분	절대적 기준	상대적 기준
서열화	기관이 획득한 기관평가 점수를 기관 간의 비교에 직접적으로 사용함	기관이 획득한 점수에 관계없이 점수의 상대적 우선 순위에 의해서 비교가 이루어짐
등급화	사전에 결정된 등급의 기준점수에 따라 기관의 등급이 결정된 후 등급간의 비교가 이루어짐	기관평가 점수의 순위가 사전 결정된 등급 비율에 포함되는가를 결정하고 등급간의 비교가 이루어짐
통과제	기관평가 점수가 절대적 기준에 따라 설정된 특정한 수준 이상을 받았는가 평가함	기관평가 점수의 순위가 일정한 비율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가를 평가함

④ 평가시기

평가주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기적 경영평가인가 장기적 경영평가인가에 달려있다. 6개월이나 1년으로 하는 실적평가를 단기적 평가라 한다면 장기경영전략, 연구개발과 같은 최소한 3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장기적 평가라 할 것이다.

(라)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인정 도입

최근 교육훈련 공급자의 경계가 확대되고 교육훈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증가로 인해 정부주도형에 가까운 우리나라 교육훈련은 시장주도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훈련 시장의 자율성과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훈련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교육훈련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교육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및 평가인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자격-일

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훈련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 인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인정’이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다 (김미숙, 2003). 즉,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정해진 기준과 준거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공인된 기관에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의 목적은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보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준다. 미국 서부지역대학협회(WASC)는 기관들이 교육훈련의 효과를 증진하도록 하는 평가인정의 다섯 가지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 ① 교육적 공동체나 일반적 공공 및 기타 기관들이 중등 이후 교육에 적합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성취가 합리적으로 기대되고, 실질적으로 성취가 나타나며, 따라서 위원회의 기준에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음이 기대되도록 인원이 충족되고, 지원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 ② 자체조사와 자격 있는 동료 전문가들에 의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기관의 발달과 향상을 촉진한다.
- ③ 교육의 질과 기관의 수행력을 평가인정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기준을 타당화한다.
- ④ 동료조사를 통해 공공 및 독자적인 기관들 간의 아이디어의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 ⑤ 교육적 효과성 혹은 학문적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한다.

영국의 국제훈련기구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인정의 이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① 훈련 제공자에게는 국가적인 인정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현재 경향성과 질을 촉진하며 교육훈련 제공자로서 신뢰성과 이미지를 고양하고 기관들 간의 학점 전환의 기준이 되도록 하며 지속적인 향상을 촉진한다.
- ② 고용주들에게는 잘 구축된 기준과 준거를 따르는 기관에서 훈련받은 자격 있는 종업원들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자격 있는 종업원들을 더 쉽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 ③ 훈련생들에게는 해당기관, 전문직, 산업체 등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학점전환이 용이하도록 한다.
- ④ 학부모에게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평가인정이 제공되는 훈련프로그램의 기준과 질에 대한 지표가 되며 그들 자녀들의 훈련에 대한 투자의 기대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평가인정체제를 유형화하는 요소로써 평가인정 운영체제상의 특징을 구분하기 위한 차원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각 나라 혹은 해당영역에서의 상황에 따라 평가인정 운영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자발성	-----	강제성
전국적	-----	지역적
시간제(part time)조사관	-----	정규직(full time)조사관
기관 전체	-----	훈련프로그램
기밀 유지	-----	대중 공개
단일 기관	-----	복수 기관
통과/탈락/점수	-----	상대적 서열
최적 기준	-----	최소 기준
시장 기반	-----	기금 기반
독립적	-----	정부 통제

[그림 IV-10] 체제상의 특징을 구분하기 위한 차원

프로그램 평가인정을 제도화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능력에 대한 표준화이다. 표준 능력이란,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합의된 표준에 따른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이에 적합한 태도 및 능력을 정의하기 위해 미리 사용된 표준이다. 표준화된 능력에 근거한 훈련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모두 모듈 단위로 구성되어지며 교육방법은 전통적인 교육방법, 일터중심훈련, 자기학습 등 다양하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할 경우 각 프로그램이 해당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 능력의 요소들을 얼마나 잘 훈련시키는가하는 것은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적인 자격시스템의 구축과 훈련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또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경력경로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평가인정제도에서는 단계별로 두 가지 실행준거가 있다. 첫째는 프로그램 평가인정을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작단계의 준거이며 두번째는 평가인정을 실행할 때 어떤 원칙 하에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단계의 준거이다.

먼저, 프로그램 평가인정의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는 평가인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는 단계이다. JCSEV(Joint Committee on Standard for Educational Evaluation, 1994)에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평가 실행 준거로 평가의 네 가지 속성인 유용성, 실행가능성, 적합성, 정확성 영역에 관한 30가지 기준을 개발하였다. 유용성 기준은 단순히 평가자의 관심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한 준거이며 실행가능성은 평가절차가 현실세계에서 운영가능하고 비용-효과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적합성 기준은 윤리적 이슈, 인권, 정보의 자유, 계약, 이해의 갈등 등과 같은 문제에 관련된 관심을 반영한다. 정확성 기준은 정보의 기술적 장점, 특히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설정된 기준이다. 프로그램 평가 실행 기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표 IV-36>참고).

<표 IV-36> 프로그램 평가 실행 준거

구분	실행기준		
유용성	- 이해관계자의 파악 - 평가자의 신임 - 정보범주와 선택	- 평가적 해석 - 보고의 명확성 - 보고 배포	- 보고 시기 - 평가의 영향
실행가능성	- 실행적 절차	- 정치적 생명력	- 비용효과성
정당성	- 형식의 책임 - 이해의 갈등 - 완전하고 솔직한 표현	- 대중의 알권리 - 인권 - 인간적 상호작용	- 균형적인 보고 - 재정적인 책임
정확성	- 대상파악 - 상황분석 - 서술된 목적과 절차 - 방어적 정보 출처	- 타당한 측정 - 신뢰로운 측정 - 체계적인 자료 통제 - 양적 정보의 분석	- 질적 정보의 분석 - 정당화된 결론 - 객관적 정보

자료 : Joint Committee on Standard for Educational Evaluation(1994). Standard for Evalu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Projects and Materials. NY: McGraw-Hill Book Company.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인정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 프로그램 평가인정의 수행 여부가 결정되어지면 어떠한 내용들을 평가인정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이 내용들은 해당 영역의 평가인정 체제의 목적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준은 실제로 다양할 것이다.

이중 하나로 Warr 외(Philips, 1990)에 의해서 제안된 CIRO(Context, Input, Reaction, Outcome, Evaluation)접근이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이 실시된 상황, 투입변인, 그로 인한 반응과 산출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이 작동된 상황 및 여건에서 요청되는 요구와 추구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성취 및 수행상의 결핍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요구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사정하며 목표를 설정하는 일 등이 상황평가를 구성하는 활동이 된다.

투입평가(Input evaluation)란 여러 대안이 될 수 있는 투입변인들 중에서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바람직한 목표를 성취할 최대한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가용한 자원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전개 및 활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예산이나 관리상의 조건들과 같은 요인들은 그 선택의 폭을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

반응평가(Reaction evaluation)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보인 반응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으로써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이나 프로그램 종료 후에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하고자 시도된다. 여기서는 참여자의 주관적 보고가 주된 수집방법으로 사용된다.

산출평가(Outcome evaluation)는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인한 산출 결과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는 여러 평가 형태 중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으로써 성공적인 평가를 위해 목표를 정의하고 그들 목표에 관련된 측정 방법을 선정하거나 개발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측정하며 프로그램으로 인한 산출결과를 사정하여 후속 프로그램의 개선에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인정 시스템과 능력 표준화를 농업인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인정 시스템은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교육기관간의 역할 분담, 프로그램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난이도 차별화, 단발성 교육 지양 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정착

① 교육훈련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

바우처(Voucher)란 일종의 교환권 활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이다. 가장 규모도 크며 널리 알려진 바우처 제도는 미국의 식품교환권(food stamp program)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의 강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비형태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즉, 저소득가정에서 식료품교환권을 사용하여 필요한 식료품을 선별적으로 구입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비자의 선호와 관련 없이 획일적으로 식료품이 제공되어 효용성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고, 현금으로 저소득가정에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도 있는 필수적 식료품이외의 물품(담배, 술 등)의 소비를 예방할 수도 있다는 점이 바우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공공부조프로그램에서 현금지원 혹은 현물지원 방식의 대안으로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바우처 제도가 식료품 외에도 교육훈련, 주택, 의료, 통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바우처 제도의 기본 논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수혜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수혜자는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서비스공급자를 선택하게 되며, 이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되는 것이다. 결국,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② 소비형태에 관한 사회통제가 가능하다. 바우처를 통한 소득이전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목적 - 식품, 주택, 교육, 의료서비스, 기타 서비스의 공급 -에 부합되게 사용된다. 따라서, 현금급여에 비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로 제한시키는 효과가 있어 통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책목적을 실현하는데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③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는 공급자간의 소비자 확보를 위한 경쟁을 유발하여, 결국 재화나 서비스가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다. 더욱이 서비스 질도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공급자들이 이러한 노력에 소홀하다면 소비자들은 그러한 공급자를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더 이상 현상유지를 못하는 공급자도 발생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는 공급자도 나타날 수 있다.
- ④ 공급자와 정치인, 정부 관료와의 결탁에 의한 서비스독점을 막을 수 있다. 바우처 제도가 아닌 보조금지급 제도에서는 공급자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정부의 감독자에게 비정상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급자와의 결탁에 의해 서비스공급을 독점하고 서비스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우처 제도에서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선택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예산확보의 정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결탁이 발생할 소지가 최소화되며, 결국 공급자도 다양화되어 소비자의 선택은 더욱 확대되는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공급자의 다양성은 공정한 원칙이 적용되고, 적정이윤만 보장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공급자가 서비스제공을 위해 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이 나타나 공급자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⑤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의 과정에서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바우처 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의 적정화라는 차원에서도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광의의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즉, 정부의 직접 제공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민간의 제공으로 유도하고 대신 구매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정부에서 보조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전체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우처 제도는 몇 가지 필수적인 전제를 갖는다. 어떠한 형태의 바우처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제시하는 세 가지 전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성공적인 바우처 도입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① 바우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급자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우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면 시장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보완이 요구될 수 있다.
- ②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소비자가 공급자에 대한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만이 현명한 소비와 공급자간의 경쟁이 발생하며, 불완전한 정보 혹은 부정확한 정보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 ③ 바우처 제도를 총괄 감독하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규정, 공급자의 소비자 선별행위 규제, 바우처의 유통, 공급자와의 계약, 공급자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 보장과 정보유통의 보장, 바우처 수혜 자격기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받을 권리 부여, 즉 Voucher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정 자격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권리를 가진 교육훈련 수요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때 수강료를 대신 지불하겠다는 지불보증전표로 교육기관은 교육 후 Voucher로 수강료의 일부를 청구면 된다. 이러한 제도는 중복교육을 피하고 농업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을 편리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해준다.

교육훈련 바우처의 유형으로는 순수 바우처 제도와 혼합형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이들을 전통적인 교육훈련 시스템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7> 교육훈련 바우처 시스템 유형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전통적인 훈련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계획 수립이나 과정 개설 용이 • 교육훈련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 • 관리감독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의 선택이 극도로 제한됨 • 행정서비스 수요 과다 • 취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순수 바우처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행정관청의 역할 감소 • 수요자의 선택권 최대한 보장 • 행정비용의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수준 높은 선별 능력이 요구 • 불필요한 훈련의 이수, 훈련남용, 부정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높음
혼합형 바우처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2가지 유형의 장점을 혼합 	-

자료 : 농림부(2004). 농업인 교육훈련 개편방안. 농림부.

바우처의 발급 형태에 따른 유형으로는 무형 바우처, 쿠폰형 바우처, 신용카드형 바우처가 있을 수 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IV-38> 바우처 발급 유형별 특징

구분	무형 바우처	쿠폰형 바우처	신용카드형 바우처
훈련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생이 훈련기관에 훈련과정 등록 ◦ 훈련기관 정부에 훈련비 정산 요청 ◦ 검토후 훈련비 훈련 기관계좌로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 희망하면 쿠폰 지급 ◦ 훈련기관에 등록시 쿠폰으로 결제 ◦ 훈련기관 정부에 훈련비 정산 요청 ◦ 정부 검토후 훈련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생에게 카드 발급 ◦ 훈련비 카드로 결제 ◦ 훈련기관 카드회사에 훈련비 지급 요청 ◦ 카드회사 정부에 훈련비 정산 요청 ◦ 정부 검토후 훈련비를 카드회사에서 지불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비용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사용에 대한 패널티 마련 등으로 모니터링 비용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비밀번호, 교육훈련, 경력 등)가 동시에 관리되어 부정사용이 최소화 됨
바우처 발행시 관리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폰발행 및 관리비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발행 및 관리비용이 추가되나 중장기적으로 관리비용은 절감됨

자료 : 농림부(2004). 농업인 교육훈련 개편방안. 농림부.

이러한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① 교육기관이 상시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 할 수 있는 교육조직 및 기반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수요가 형성되어야 하며 교육 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최소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여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농업 교육훈련에서는 바우처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농업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시장 규모 적정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보완이 요구된다.
- ② 바우처 제도는 교육 수요자가 직접 자신이 받을 교육을 선택하여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에 해당하는 농민들의 선별능력이 요구되며 스스로 교육 받고자 하는 높은 수준의 동기도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선별능력과 동기수준을 모든 농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③ 수요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수요자가 공급자에 대한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농업 교육훈련에 있어서 홍보의 부족은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바우처 제도를 위해서는 이러한 홍보망을 재정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인교육 정보시스템(AEIS)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유프로그램 홍보 책자 발간 등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④ 바우처 제도를 총괄 감독하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규정, 공급자의 소비자 선별행위 규제, 바우처의 유통, 공급자와의 계약, 공급자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 보장과 정보유통의 보장, 바우처 수혜 자격기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학점은행제 활용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5275호)」에 의거 학교에서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증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학력인정과 함께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화되어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대학 졸업 학력 또는 전문대학 졸업 학력인정을 받아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학점은행제 혜택대상은 다음과 같다.

-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
 - *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 * 대학을 중퇴하거나 포기한 뒤, 계속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 자격취득 등을 통해 능력을 갖추고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학점은행으로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

학점에 대한 인정은 다음과 같다.

- * 평가인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목 이수 : 평가인정된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학습과목 이수 : 대학, 전문대학 등의 중퇴자 또는 졸업자에 한함
- *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습과목 이수
-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 * 독학사의 각 단계별 시험 합격
- * 전문학사 취득자는 전문대학 이수학점 80학점까지 인정
- * 4년제 학사학위 취득자 105학점 인정
- * 문하생 학력인정제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이수자의 경험학습을 학점으로 인정

농업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여러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이 자신의 이수 내용을 학점 은행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자격제도나 여러 가지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농업인들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동기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 후계인력 육성 자격제 도입

후계인력 육성 자격제란 우수 농가나 농업인에게 신규후계인력 및 일반농가에 대한 교육자격을 부여하여 후계인력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장 지도인력 확보를 통한 후계인력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는 인턴십제와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이러한 자격은 직업교육, 실무경험, 자격준비과정 이수자에게 부여된다. 또한, 이러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는 농지임대 및 규모화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한 외국사례로는 일본의 청년농업사와 지도농업사, 독일의 Meister제, 덴마크의 green educational certificate 등이 있는데 보통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 영농종사 경험이 있는 우수 농업인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후계인력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9> 국외 농업인 자격제도

구분	제도명	자격요건	혜택
일본	청년농업사	·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3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서 시정촌 및 농업개발보급센터에 추천	· 다각적인 지원 · 명예 부여
	지도농업사	· 규모의 영농하면서 농업계학생 등 취농희망젊은이들에 대한 지도실적 있고, 지역사회 활동경력이 있어 평판이 좋은 선도농업인	
독일	마이스터 (Meister)	· 직업교육(우리나라 실업고) 수료 · 3년이상 영농종사 경험 · 농업학교(우리나라 농진) 1년이상 수료 · 농업마이스터 준비 교육과정 9~12주 또는 300~400시간 이수 · 농업마이스터 시험 통과	· 남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 인정 · 명예부여
덴마크	그린 에디케이션얼 서티피케이트 (Green Educational Certificate)	· 3년이상 영농종사 경험 · 10개월간의 그린 서티피케이트 기본 교육과정과 9개월간의 농정경영자 교육과정을 이수	· 3ha이상의 농지보유 권한 부여 · 자금의 장기융자 지원
스위스	마스터파머 (Master Farmer)	· 겨울기간 정부에서 운영하는 동계농민교육의 마스터 파머과정 2회 이수	· 명예부여

자료 : 농림부(2004). 농업인 교육훈련 개편방안. 농림부.

일본의 경우, 지도농업사제도는 1976년 7월 농촌청소년연수교육사업실시 요령을 제정한 이래 보급사업에 있어서 각종 지도자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 농업사는 스스로 우수한 농업경영의 실천을 통하여 지역에 있어서의 청년농업자 육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이루어 내기 때문에 지역농업진흥의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도농업사의 주요한 활동 내용은 농촌청소년의 연수실시(선진지유학연수), 농촌청소년의 집단활동에 대한 조언 지도, 농촌청소년육성에 관한 도부현에 대한 제언, 정보교환, 연수회의 개최(전국지도농업사연구회, 그룹별 농업사연구회)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농촌지도자’를 들 수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1970년 국내 최초의 농민자생조직으로 농업·농촌 근대화 과정을 이끌었으며, 녹색혁명을 통한 주곡자급과 백색혁명을 통한 4계절 신선채소 생산을 선도해 왔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점화와 확산, 후계농업인 육성, 지역농정 활성화 등에 기여해 왔다.

그리고 신지식 농업인을 농업지식의 창조자, 전파자, 공유자로 양성하고 있으며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를 통해서 이들을 농민을 위한 교육자 또는 지원자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자영농고생, 대학생,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지식 농업인의 수나, 교육 횟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깊이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수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농촌지도자나 신지식 농업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후계인력 육성 자격제가 하드웨어라면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멘토링(mentoring)을 들 수 있

다. 멘토링이란 나이가 경험에서 연장자인 멘토가 경험이 적은 멘티에게 안내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덜 숙련된 사람의 특정한 기술과 유능성을 발달시킬 목적으로 기술과 경험이 많은 사람과 덜 숙련된 사람이 의도적으로 매칭되는 것이고 최근에 멘토링은 수평적, 수직적, 그리고 집단 멘토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멘토링의 기능으로는 진로발달을 지원(후원, 멘티의 보호, 도전적인 과제의 제시, 위임), 심리사회적 지원(멘티를 수용, 상담, 우정관계, 격려), 역할 모델(드러나게 혹은 암묵적으로 적절한 행동의 시범을 보임) 등이 있다.

멘토링의 종류에는 학교, 기업, 정부 등에서 특정한 목표에 따라 인위적으로 연결해 주는 멘토링으로 Formal Mentoring과 자연발생적인 Informal Mentoring이 있다. Formal Mentoring은 처음 구성과 운영상의 비용이 발생하나 멘토링의 현황과 효과 파악이 용이하며 Informal Mentoring 멘토와 멘티 간의 심리적인 유대감이 높고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직접 만나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멘토링의 주 방식인 면대면 멘토링과 이메일, 온라인 게시판, 메신저,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하는 사이버 멘토링이 있다. 사이버 멘토링은 시간, 공간의 제약에 비교적 자유롭고, 비용이 적게 들며,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면대면 멘토링에 비해 덜 중요하나 관계 발달의 어려움이 있다.

(사) 생산모델에 의한 종합교육

앞으로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은 교육 이수자를 숫자적으로 양산해 내는 실적 위주의 교육은 지양하고 보편성을 깨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위주로 교육하는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할 때이다. 교육개혁은 외형상의 제도개선보다 교육의 본질인 내용의 개선이 중요한 것이다(안덕현 외, 2004).

농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 진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농업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작물재배나 가축사양 등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기초지식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현장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이 수렵이나 채취와 다른 점은 사람이 작물이나 가축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작물이나 가축이 잘 자라게 하여 이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에서 출발한다. 전문 농업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는 작목별 생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기에 농작업을 하고 기계나 시설 설비 등을 활용하여 적정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이 토양비료나 작물생리와 같은 기초 교육과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농공 기술 그리고 경영이론을 서로 연계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학과목이 현장에서 어떻게 상호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정 생육환경의 조성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용 될 경우 경제성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농에 필요한 각종 기술이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시적인 생산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 속에서 각 분야별 기술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왜 이러한 모델이 경제적으로 이로운가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상적인 생산모델이라 하더라도 관련 기술이나 농업 여건의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델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도 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인 교육기관은 끊임없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연구결과나 신개발품 등을 입수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경제성이 높아 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새로운 기술을 발견되면 기존의 생산모델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끊임없이 모델을 개선시켜야 한다.

농산물 생산모델은 농업이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음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 모델을 다양화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의 수집, 경제성이 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의 선별, 작업체제를 분석을 하여 작업과정을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작업방법을 구상하여 이를 매뉴얼화 하여 농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용력 배양

농업은 기상이나 토양 등 자연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음으로 같은 작목이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생산방법이 상이하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국을 몇 개의 지구로 분할하여 그 지역에 맞는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생산모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 모델의 구축과 교육 시 다양한 기술 중에서 경제성에 기반을 두고 최적 기술을 선택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농업인이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 기술을 선택하여 스스로 생산모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도 중점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② 새로운 기술의 수집

매년 농촌진흥청 등 국가 연구기관이나 농림기술 관리센터, 대학 등에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학문적으로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전문 농업인이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많은 영농의 비법이 있다. 이러한 현장 기술도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학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학술 연구기관의 다양한 연구 결과나 농가의 기술을 수집하여 농업현장에 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 새로운 기술이나 연구결과를 채택 보급하기에 앞서서는 먼저 새로운 기술의 채택에 따른 비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만큼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셋째,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어 사용하여야 할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능력과 넷째, 기술채택에 따른 비용의 부담 가능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③ 경제성 분석 및 기술의 package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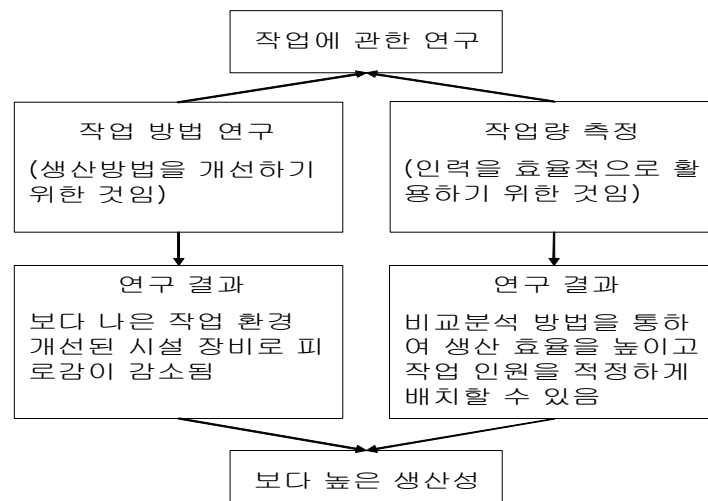
이러한 자료 조사가 끝나면 기술 채택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투자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편익 비용분석(B/C)이나 순현재가치(NPV)나 내부투자수익률(IRR)의 계산 등으로 효과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충분한 투자가치가 인정되는 기술의 선별과 채택은 분야별 전

문가들이 모여 진지한 토의를 거쳐 가장 경제적인 부문별 기술을 함께 묶어 이를 package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작목별 연구회와 같은 일종의 산학협력 조직을 구성하여 수시로 현장 농업인과 교류하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④ 작업체계 분석

농업경영은 최종 생산물을 생산해 내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자원, 예를 들어 사람, 기계, 시간, 공간, 그리고 에너지 등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값비싼 기계나 시설을 이용하는 고도의 자본기술적 집약형 농업의 경우, 기계나 시설 장비의 구축에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고 한번 설치된 기계나 시설은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작업을 얼마나 정밀하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용인력이나 기계, 시설, 및 장비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고 농작업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위시간 내에 적은 시설장비와 인원으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생산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원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합리적인 순서 및 방법에 따라 작업한다면 일도 쉬울 뿐 아니라 단위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에 관한 연구의 목적은 작업의 형태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작업 방법이나 절차, 작업장 배치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보다 나은 작업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작업을 세부 단위활동으로 구분하고 각종 단위활동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작업 방법에 관한 연구(method study)와 작업량의 측정(work measurement)이 있다([그림 IV-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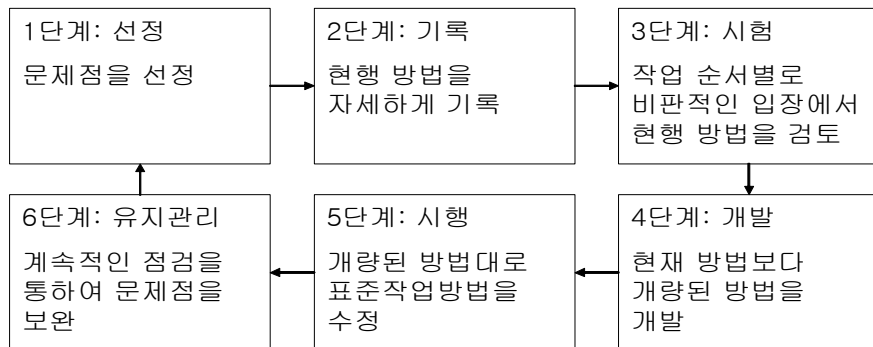


자료 : 안덕현 외(200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모델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마사회.

[그림 IV-11] 작업에 관한 연구 방법

작업방법에 관한 연구는 현재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직업방법 대로 작업을 할 경우 각 작업 구성요소별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량의 측정은 통상적인 작업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평균수준의 작업 능력을 가진 인력이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노동의 양을 알아내기 위한 기법이다. 작업방법에 관한 연구나 작업량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기록들은 종전의 작업방법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작업방법을 찾아내는 길잡이가 된다.

작업방법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농작업을 구성하는 세부작업들이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문제점의 선정, 기록, 시험, 개발, 시행 및 유지관리라는 6단계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 : 안덕현 외(200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모델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마사회.

[그림 IV-12] 작업 방법에 대한 검토 절차

시설·장비 및 인원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단위 시간당 작업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생산비를 크게 절감된다. 어떠한 작업을 완료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시간은 개별 단위 작업의 수행속도에 크게 의존한다. 작업 단계별 속도의 차이가 클 경우 총 작업량은 전 작업단계 중에 가장 속도가 느린 작업 단계의 작업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작업량 측정은 현재하고 있는 작업의 표준 작업 속도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작업량은 다음 4단계 과정을 거쳐 측정된다.

- 작업을 더욱 세분화된 단위 작업 활동으로 분할한다.
- 시간연구를 통하여 세부작업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기본 시간을 기록한다.
- 적정 휴식시간을 고려한다.
- 표준작업시간을 구한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것은 작업순서, 농업자재의 출납, 인원 및 농업기계 등의 이동 및 사용이 용이하며 생산을 위한 측정 장비 등 장비의 역할을 고려하여 작업장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작의 경제 원리가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최소한의 동작, 동시적이고 균형을 이루는 동작, 자연스러운 동작, 리드미컬한 동작, 동일 형태의 반복적인 동작, 끊어지지 않는 연속동작 등이 있다.

⑤ 매뉴얼 작성

각 분야별 적정 기술이 효율적으로 결합된 생산모델이 작성되면 농업인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여야한다. 매뉴얼에 포함되는 내용은 첫째, 전체적인 생산과정의 관리, 경영을 위한 기법 둘째, 생산을 위한 작업에 대한 자세한 지침 셋째, 작물의 생리조건, 토양비료 및 적정 환경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 및 증상 진단을 위한 계측기구의 사용법에 대한 기초지식 넷째, 작물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공기술의 원리와 기계조작 방법과 간단한 일일 정비 및 응급조치 기술 다섯째, 새로운 생산모델 사용할 경우 경제적 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생산비 비교나 투자분석 방법 여섯째, 고장 발생시 사후봉사 담당기관 등 기타 참고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농업인 교육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우수농가 선별, 추가 지원 방안

(가)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강화

① 예비 후계자 확보 사업부터 이후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이 연계되어야 하므로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이전 단계 지원 사업의 수혜자들에게 우선권으로 부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농업인 교육 및 훈련체계가 미흡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의 인력구조 조정으로 지역 수준에서의 대농민 밀착 교육훈련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공인하는 자격증 제도가 미흡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

②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경영규모, 영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고, 단계별 기술교육 및 경영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③ 기관간의 교육과정 체계화: 교육기관도 중앙, 지자체, 대학, 농업관련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러한 기관간의 교육과정 조정 등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④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 연계: 예비 후계자 확보 사업부터 이후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이 연계되어야 하므로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이전 단계 지원 사업의 수혜자들에게 우선권으로 부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지속적인 관리 체계 확립

정책 사업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소득보조, 경영체 교육 훈련, 종합자금제 등 농가 단위의 정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현재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가대장(농업기술센터), 농가별 관리카드(농협), 전업농 대장(농업기반공사) 등의 자료 수집 및 이용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의 정의 및 유형 구분을 재정립하는 등 각종 통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 농업법인의 경영 지원

① 설립 자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의 적용과 철저한 사후관리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는 현지의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경영체의 목적, 구성원의 경영능력, 지역에서의 역할과 다른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설립을 인가하고 법인체의 운영실태를 사후감독하게 하여 권한의 부여와 함께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인경영체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의 출자규모를 법인 설립 총비용의 일정비율로 의무화시키고 법인의 사업도 이들 출자된 것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법인경영체 설립을 방지하게 하고 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지나친 정부의존 성향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③ 현재 농업경영체의 운영 기법이나 법인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며 이것이 이들 법인 경영에 부실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법인 경영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교육과 경영지도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라) 벤처농업 육성

① 벤처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벤처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농민을 작물이나 사업범위에 따라 도와줄 수 있는 농·산(농업 이외의 산업)·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적극적인 농업벤처기업 보육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대학, 전문대학, 농업기술센터 등에 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농업을 위한 벤처캐피탈이 필요하다. 농업벤처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농업벤처캐피탈의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농민단체 지원 방안

농민단체는 종래의 과격한 반체제적인 투쟁에서 벗어나 농민사회 전체의 지지와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동 노선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체 농민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농민단체 간에도 이러한 반성과 논의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단체들의 활동을 집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통해서 모든 농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정부 정책에도 좀더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농민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수렴될 수 있다면 과격한 투쟁은 오히려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정책 수혜자들인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도 큰 의미가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농민단체와 정부 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농업 정책은 농민들의 여건에 맞게 차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므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나 지도사업에서 농민단체를 참여시킨다면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농업은 위기의 순간에 처해있다. 대외적으로는 WTO와 FTA로 대표되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추구로 각종 형태의 국가적 도움과 보호를 받던 농업이 포기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을 통하여 세계일류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기가 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세계시장의 농산물과 경쟁하여 살아나갈 농업부문의 발전을 주도할 농업인력의 노령화, 부녀화의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령화는 사회적 전반에 걸친 저출산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농업인구에서의 급격한 노령화는 60세 이상의 1990년의 21%가 2000년에는 44.6%로 배가되었으며 이들 현상은 노령인구의 상대적 비중증가에도 원인이 있으나 노령인구의 총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젊은 층 인력 유입이 대폭 감소하므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10년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000년의 60세 이상 인구 102만명과 50-59세 인구집단인 57만 여명이 새로 합세되어 159만명으로 증가하여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한 50대 이하의 인구는 69만 5774명으로 농업분야의 성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더구나 1990년에서 2000년 기간중 사망자를 제외한 감소인구는 58만여명으로 이들은 농업을 포기한 규모로 보인다. 감소인구의 연령대별 분석 결과 30-34세 집단의 탈농 감소와 35-39세 집단의 탈농증가, 50세 이후 연령집단의 탈농 증가 현상이 보이며, 이는 군 체대후 창업농 사업 등을 통하여 유입된 연령집단이 5년내에 성패에 따라 탈농이 증가하고, 50대 이후의 탈농은 농업경영상의 문제나 농업이외의 문제로 인하여 탈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농업인력의 육성이 자금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들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집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또한 50대 이후의 탈농은 어느 정도 전문적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의 유출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과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농업인력에 대한 정책은 이들 농업인력의 변동 경향을 반영한 정책적 집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신규 취농자의 확보와 지원을 통한 정착과 성장의 유도과 기존 취농자의 탈농을 방지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개발과 지원 정책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말한다.

농업은 과거와 같이 아무나 농지가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 즉 농업이 산업적으로도 자급화 단계의 농업이 아닌 규모화와 경제적 생산을 통하여 가격과 품질로서 경쟁력있는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통하여 농업을 통한 자립이 가능한 산업이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농업종사인력 역시 전문적 교육을 받고 적절한 생산기반을 갖추었으며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력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조건에 적합한 인력은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받은 인력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문적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업계 대학은 학생자원의 부족과 함께 학생들의 취농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는 농업에 대한 사회적 천시에도 영향이 있으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농업계 고등학교는 학생 자원의 부족으로 학생수 확보가 어렵고 그로 인하여 적절한 졸업생을 취농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교육과정의 운영 역시 국민공통교육과정의 도입으로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이 실제적으로 어려워져 고등학교 2,3학년의 2년간에 걸쳐서만 농업에 대한 직업교육이 가능한 실정으로 학생들의 능력부족과 여건 부족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

며, 농업계 대학 역시 지원학생들의 격감과 복수전공제의 도입으로 인한 전공과목 이수 축소, 전통적인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인한 졸업생들의 농업분야 취업 기피로 그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농업인력 정책은 그 분야가 사회적으로도 인기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하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건이면 별도의 인력 정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인력의 유입은 이루어질 것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은 현재 농산물 시장개방의 여파와 쌀 협상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마저도 농업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는가는 정책 적용의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한 농민 조사 과정에서 농업을 하고 싶어하는 농민들이 52%정도로 포기하고자 싶은 농민 34%보다는 많았고, 영농경험도 6-10년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2배정도 농사포기의 생각이 높았으며, 40세 미만 연령층이 농업 포기에 대한 생각이 많았음을 볼 수 있듯이 초기 유입된 인력을 어떻게 정착하게 하는가는 농업인력 확보 정책의 핵심이 될 것임을 말한다. 정착자들이 농업을 시작한 시기는 주로 학교 졸업후, 군대 제대후, 군제대후 직장에 다니다가 귀농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직장 다니다가 귀농한 경우와 기타가 가장 많았다. 작목별로도 화훼나 축산업은 기타이유로, 벼농사는 학교 졸업후, 밭농사, 채소, 과수류는 직장에 다니다가 귀농한 경우이고, 시설채소는 군 제대후 바로, 농산물가공분야는 응답자가 적었으나 학교 졸업후와 군 제대후가 비슷하였다. 농업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하였던 부분은 소득의 불안정이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확보나 전망의 불투명은 14.8%, 13.8%로 다음 순위였다. 이러한 현상은 작목별로 벼농사, 밭농사, 채소류, 과수는 소득의 불안정, 화훼는 전망의 불투명, 시설재배는 농지확보를, 기타는 판매처 확보를 중시하고 있었다. 농업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영농자금 확보, 농지 확보, 수익성 부족, 영농기술부족의 순서였다. 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능력은 100%을 가장 바람직한 수준으로 볼 때 50%를 넘는 수준은 사명감(64.06%), 인간관계능력(57.45%),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55.54%), 의사소통능력(55.21%), 문제해결능력(51.92%), 자원활용능력(51.35%)이고 조직 이해 능력, 기업가 정신, 정보능력, 홍보능력, 판매 능력, 농업기술, 경영능력은 50%미만이였다. 현재의 농업능력은 모두 증가한 수준으로 홍보능력을 제외한 모든 능력이 50%이상이었다. 영농시기별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5년 이하는 영농기술부족, 6-10년은 영농자금 확보, 11-15년은 일손확보와 수익성 부족, 16-20년은 농지의 확보, 21-25년은 수익성 부족, 26-30년은 일손 확보, 30년 이상은 농기계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는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영농자금과 농지확보, 수익성 부족의 문제와 영농기술의 부족은 중요하나 영농기술은 시간이 흘러감으로 해결되고, 그 외에는 자금과 인력, 농기계, 농지 등의 확보가 순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사람들의 경력에 따라 개별화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함을 말한다. 또한 소득의 불안정이나 전망 문제를 해결한다면 농업에 대한 인력 유입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음을 말한다. 농업기술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 농업기술, 경영능력, 판매능력, 인간관계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정보능력, 사명감, 기업가 정신 등이 50%이상이었다. 농업을 포기하고 하는 생각도 63%가 있었고, 대체로 2번 정도가 24%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39%가 소득의 불안정이었으며,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길이 없어서(31.9%), 전직할 자신이 없어서(20.9%), 농촌이 좋아서(20.9%)의 순으로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지 못한 집단이 가장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농업을 계속하는 집단이 52%정도가 된다는 점은 농업의 발전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결국 농업인중에는 농촌이 좋아서 유입한 경우도 있고, 그들의 능력이 비록 낮을 지라도 사명감이 있다면 농지나 영농자금의 지원과 지원인력의 도움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자금의 문제는 수익성의 문제와 함께 반복되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인력의 육성제도를 확립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소득의 불안정이나 전망의 불투명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을 말한다. 이들 지원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농업인력에 대한 적절한 정책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위에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력의 발전 단계별로 적절한 정책을 집행하면 좋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농업의 발전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지원인력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농업발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이를 처음 채용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확산하기도 하고, 중지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업발전의 동조세력은 될 수 있으나 혁신의 주체 세력은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농업인력의 정책에 있어서도 농업발전의 핵심 세력이 될 수 있는 정예인력의 육성은 중요하며 이들의 성공이 농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농산업의 핵심이 되는 생산농업인력의 육성과 지원은 중요하며 이들 중 핵심 집단이 될 정예인력은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의사도 있는 집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는 결국 전업농 집단이 주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핵심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집단으로 육성하는가가 정예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신규인력의 유입과 육성 문제와 함께, 기존 인력의 발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규인력의 유입은 적절한 전문인력의 유입을 유도하여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의 유인정책과 육성정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경영 등의 전반에 대한 지원과 자문이 필요하고, 이들이 선도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농업인의 발전에 대한 지원은 자금과 경영혁신에 대한 지원과 자문, 전문교육체제의 확립과 지원, 평가, 교육바우처제도와 학점은행제, 후계인력육성 자격제의 확보, 우수농가 선별, 추가 지원과 농민단체와 법인과 벤처농업의 지원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대구, 정철영, 이근수(2003). 창업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농림부정책연구보고서, 순천대학교.
- 강순희 외(2000). 지식경제와 인력수요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 강정일 외(1996). 21세기 농업·농촌의 좌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0). 연구개발인력 중장기(2000~2010) 수급예측 결과.
- 김경덕(1988). 농업인력의 현황 분석과 중장기 수급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37.
- 김성수, 이용환(1990). 21세기 농업구조변화와 농업전문인력 개발. 한국농업교육학회, 22(4), p. 1~11.
- 김신복(1979). 농촌개발과 인력수요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8(311), p. 16~24.
- 김신복(1981). 농업인력의 수요 및 구조적 변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19(2), p. 91~110.
- 김양식(2000). 우리나라 벤처농업의 현황과 과제. 벤처농업 심포지움: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 김완배(2000).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통계지표 개발. 농림부
- 김재호(2000). 벤처농업의 필요성과 육성방향. 벤처농업 심포지움: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 김정부 외(1998). 프랑스·독일의 영농규모화사업 관련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2003).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35.
- 김태곤(2001). 미국의 농업소득안정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호섭(1985). 영농후계자 육성사업의 성과분석: 성공사례에 나타난 자질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농림부 홈페이지. Doha WTO 각료회의결과. www.maf.or.kr
- 농림부 홈페이지. 농산물 수출입량(1998~2003). www.maf.or.kr
- 농림부 홈페이지. 육류소비량(1980~2002). www.maf.or.kr
- 농림부 홈페이지. 축산물 수급현황(1993~2002). www.maf.or.kr
- 농림부 홈페이지. 축산물 수출입량(1980~2003). www.maf.or.kr
- 농림부 홈페이지. 한·칠레 FTA협상결과. www.maf.or.kr
- 농림부(1960-83). 농림주요통계. 농림부.
- 농림부(1997). 1997년도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사업 현황. 농림부.
- 농림부(1997-2000). 농림주요통계. 농림부.

- 농림부(1998c). 1998년도 농업인력 육성 현황. 농림부 농업정책국.
- 농림부(2001a).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 계획. 농림부
- 농림부(2001b). 농업인력 육성 대책(안). 내부자료.
- 농림부(2001c). 2001년도 농업인교육훈련계획. 농림부.
- 농림부(2001d). 해외농업통계. [On-line]. Available: http://www.maf.go.kr/overseas_2000.
- 농림부(2001e). 후계농업인 사업지침. [On-line]. Available: http://www.maf.go.kr/human_2000/후계농업인.asp.
- 농림부(2001f).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On-line]. Available [http://www.maf.go.kr/chosin/allim1204 .htm](http://www.maf.go.kr/chosin/allim1204.htm).
- 농림부(2003). 통계로 보는 세계속의 한국농업.
- 농림부, 농촌진흥청(1998). 농업인후계자·전업농가 경영실태조사보고서. 농림부·농촌진흥청.
- 농림수산부(1984-1996). 농림수산주요통계. 농림수산부.
- 農林水産省(2001). 青年農業史·指導農業史 縣別認定要件, 認定狀況. 農産園藝局 婦人生活課 내부자료.
- 농림통계협회(2004). 평성 15년도 도설 식료·농업·농촌백서.
- 농정발전기획단(2001). 주요 농정지표의 전망과 목표(잠정). 농정발전기획단.
- 농촌진흥청(1995). 외국의 농민교육훈련사업.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2001b). 후계농업인 사업추진 실적. 내부자료
- 마기중 외(2001). 안경사의 인력수급 전망. 대한시과학회, 3(1), p. 25~40.
- 박문호(1998). 일본 신농정의 농업경영체 육성정책. 농촌경제, 21(3), p.60.
- 박성재, 황의식, 박준기(2002). 농업종합자금제의 비전과 장단기 발전전략,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C-2002-22.
- 사단법인 한국농업교육협회, 한국영농학생연합회(2004),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 지침서, 한국농업교육협회 내부자료.
- 서규선(2002), 농업전문인력 교육의 발전 방향, 농학계 대학의 농업과학기술 교육 및 확장 기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 성옥규(2003).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과 전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유철(2004).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신인식(1996).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정부재정투융자의 효율화 방안. 한국축산경영학회, 13(1), p. 71~98.
- 안덕현 외(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 농림부 정책연구과제보고서. 한국농업전문학교.

- 외교통상부(2001). DDA협상의 득과 실.
- 유촌준개(2003). 현대 일본 농업의 계승문제-경영계승과 지역농업. 일본경제평론사.
- 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1999). 개정판 敎育 行政學 原論. 학지사.
- 윤호섭, 박동규, 이영대(1992). 농업인력의 확보 유지 및 교육훈련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김종선, 전일송(2002). 벤처농기업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일(2001). 인력수요예측과 인적자원개발의 연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논총, 8(1), p. 155-173
- 이상일(2002). 인력예측모형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 이영대(1981). 성공적인 영농정착자의 영농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대, 정명채(1990).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환 외(1993). 농업인력수요와 연계한 농업교육의 대응전략. 한국농업교육학회, 25(2), p. 1~14.
- 이용환, 김수옥, 정철영, 서우석, 나승일, 강대구(2000). 21C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및 교육·훈련 연구. 농림부.
- 이재구(2003).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실태와 원활화 방안. 200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중소기업학회, p. 95~112.
- 이진면 외(2001). 다부문모형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의 장기전망. 한국개발연구원.
- 일본농림수산성(1965-1999). 농림수산통계. 일본농림수산성.
- 일본농업연감간행회(19975-1998). 일본농업연감.
- 임정빈(2001). 최근 미국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에서의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장건상(1997b). 농업전문인력의 육성 방향. 농촌진흥청(편), 농촌지도공무원 전문교육 교재(3-12). 농촌진흥청.
- 장창원 외(1998).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창원(1990). 산업인력 수급전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全國 農村靑少年 敎育振興會(2001). 社團法人 全國農村靑少年敎育振興會 概要. [On-line]. Available. <http://www.agriworld.or.jp/sinkokai>.
- 정명채, 민상기, 이영대(1991). 농업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보통신부(2001). IT전문인력 수급전망 연구.
- 정철영 외(2002).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 방안.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 정철영(2002). "21세기 농업인력 육성", 농학계 대학의 농업과학기술 교육 및 확장 기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 정철영(2002).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농업인력 양성.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4(4). p. 1~24.
- 정철영, 이무근, 이용환, 나승일, 허영준(2001). 지식기반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3(1), p.8.

- 정철영, 이용환, 나승일(2002).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 방안.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
- 정철영, 이용환, 나승일(2002).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 방안.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
- 조홍수·전영길(1991). 일본과 대만의 농업후계자 육성사업. 안성농업전문대학 논문집 제 23호.
- 최은영 외(1999). 치과의사 인력수급 추계와 적절성 평가. 대한구강보건학회, 23(3), p. 301~315.
- 최현주(1994). 영농후계자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홈페이지. 농가인구 및 사육두수(1980~2000). www.nso.or.kr
- 통계청 홈페이지. 농산물 생산량(1966~2002). www.nso.or.kr
- 통계청 홈페이지. 농어업총조사(1985~2000). www.nso.or.kr
- 통계청 홈페이지. 인구총조사(1985~2000). www.nso.or.kr
- 통계청 홈페이지. 작물별 재배면적(1966~2002). www.nso.or.kr
- 통계청 홈페이지. 지역내 총생산(1985~2000). www.nso.or.kr
- 통계청 홈페이지. 축산 사육규모별 농가수 및 사육두수. www.nso.or.kr
- 통계청 홈페이지. 한국표준산업분류. www.nso.or.kr
- 통계청(2003). 한국통계연감.
- 통계청. 시·군·구 100대 지표.
-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 한국경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4). 개방화시대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토론자료.
- 허향진 외(1999). 제주도 관광산업의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호텔경영학회, 호텔경영학연구, p. 51~64.
- 홍기영 외(1996).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적정 기능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8(2), p. 91~105.
- Board on Agriculture,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2). Agriculture and the undergraduat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Cortada, J. W. (Ed.). (1998). Rise of the Knowledge Worker (Resources for the Knowledge-Based Economy). Butterworth-Heinemann.
- Grubb, W.N.edi.(1995). Education through Occupations in American High Schools, Vol.1., Teachers College Press.
- Mellor, J. W. (1996). Agriculture, the environment and farmer's incomes for the 21st century.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논문집(1996. 11. 8), 183-200.
- National FFA Organization(2003), Career Development Events Handbook; 2001-2005.

- NHN Corp.(2004). NAVER 국어사전, [On-line] available <http://krdic.naver.com/krdic.php?where=정예>.
- OECD. (1994).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youth. Paris: OECD Head of Publication Services.
- OECD. (1996a). The Knowledge-based economy. Paris: OECD.
- OECD. (1997).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SDRE, FAO. (1998).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Issues and Oortunity. [On-line]. Available: <http://www.fao.org/sd/ EXdirect/EXre0003.htm>.
- U.S. Department of Education, etc. (1999). 21st Century Skills for 21st Century Jobs.
- Yahoo! Korea Corp.(2004), Yahoo! Korea 국어사전, [On-line] available <http://kr.kordic.yahoo.com/kor/search.html?q=정예>.

【 부 록 】

<부표-1>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A. 농업 및 임업	01. 농업	011. 작물 재배업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0113. 과실, 음료용 및 신용 작물 재배업
			0114. 기타 작물 재배업
			0115. 시설작물 재배업
		012. 축산업	0121. 소 사육업
			0122. 양돈업
			0123. 가금 사육업
			0129. 기타 축산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 조경수 식재 및 농업관련 서비스업	0141.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서비스업
			0142. 작물재배 관련서비스업
			0143. 축산관련 서비스업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부표-2>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업 숙련 종사자	611. 전답작물 재배 종사자	6111. 곡식작물 재배 종사자
			6112. 특용작물 재배 종사자
			6113. 채소 재배 종사자
		612. 과수작물 재배 종사자	6121. 과수작물 재배 종사자
			6122. 열대과일 재배 종사자
		613. 정원사, 육묘 및 버섯 재배종사자	6131. 정원사, 원예 및 육묘 재배 종사자
			6132. 버섯 재배 종사자
		614. 복합 및 시설작물 재배 종사자	6141. 복합작물 재배 종사자
			6142. 시설작물 재배 종사자
		615. 동물사육 및 관련 종사자	6151. 낙농품 생산 종사자
			6152. 가축 사육 종사자
			6153. 가금 사육 종사자
			6154. 양봉 및 양잠 생산 종사자
6155. 복합동물 사육 종사자			
	6159. 기타 동물사육 및 관련종사자		
616. 작물 및 동물 복합 생산자	6160. 작물 및 동물 복합 생산자		
617. 자급농업종사자	6170. 자급농업 종사자		
618. 수렵업종사자	6180. 수렵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92. 농림 어업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20.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201. 농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부표-3> 산업연관표 농업분야의 부문부류

통합대분류 (24개부문)	통합중분류 (77부문)	통합소분류 (168부문)	기본부문 (404부문)
01. 농림수산물	01. 작물	001. 벼	001. 벼
		002. 맥류 및 잡곡	002. 보리
			003. 밀
			004. 잡곡
			005. 채소
		003. 채소 및 과일	006. 과일
			007. 콩류
		004. 기타식용작물	008. 감자류
			009. 유지작물
			010. 약용식물
			011. 기타식용작물
			012. 섬유작물
			013. 잎담배
			014. 화훼작물
			015. 천연고무
			016. 종자 및 묘목
			017. 기타 및 비식용작물
	005. 비식용작물	018. 낙농	
		019. 한육우	
		020. 양돈	
		021. 가금	
		022. 기타축산	
02. 축산	006. 축산		

<부표-4> 2000년 생산자가격평가표의 농업부문 총산출액 및 구성비

번호	부문명칭	수출	수입계	총산출액	구성비율
0001	벼	5	0	10,573,967	32.41
0002	보리	1	62,065	196,891	0.60
0003	밀	307	540,068	1,789	0.01
0004	잡곡	1,154	1,070,307	55,468	0.17
0005	채소	83,264	124,032	7,392,459	22.66
0006	과일	39,596	309,795	2,583,979	7.92
0007	콩류	884	462,451	362,527	1.11
0008	감자류	979	39,929	351,784	1.08
0009	유지작물	614	118,716	332,525	1.02
0010	약용식물	5,318	96,319	745,619	2.29
0011	기타식용작물	2,575	149,440	53,747	0.16
0012	섬유작물	8,063	459,668	9,590	0.03
0013	잎담배	17,075	97,180	423,768	1.30
0014	화훼작물	30,994	33,951	1,261,387	3.87
0015	천연고무	0	270,238	0	0.00
0016	종자 및 묘목	19,326	117,208	148,379	0.45
0017	기타 및 비식용작물	28	115,514	2,787	0.01
0018	낙농	0	1,353	1,439,240	4.41
0019	한육우	1,186	1,619	1,899,062	5.82
0020	양돈	51	3,175	2,386,241	7.31
0021	가금	2,054	6,616	2,181,207	6.69
0022	기타축산	5,140	282,100	225,673	0.69
0000	농업부문합계	218,614	4,361,744	32,628,089	100.00

<부표-5> 인력수요 추계방법

연구자	추계분야	추계방법	사용데이터	장단점	비고
정보통신부	IT전문인력수급전망	BLS 인력예측모형 - 산업-직종행렬(산업고용구조행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구조기본조사통계보고서(노동부) · 산업별 고용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 생산량과 고용수준 사이의 관계를 단순화시킴으로써 예측작업을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음. · 단점 :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음. 	
성육규	초등교원수급전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계열회귀분석방법 ② 지수평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교원수의 변화추이(문교통계연보, 교육통계연보) · 초등학생수 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점 : 복잡한 절차와 많은 노력이 소요 · 장점 : 계산이 간단, 예측방법이 간단 · 단점 : 신뢰성 측정 방법이 없음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인력수급전망	시계열회귀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대학, 시험연구기관의 전공별·학위별 총수요(신규수요 + 대체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점 : 복잡한 절차와 많은 노력이 소요 	
김경덕	농업인력수급전망	코호트(Cohort)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부문 인력의 연령별 · 지역별, 영농형태별 data · 농업생산인력 규모의 연령별, 지역별, 영농형태별 data 		
강순희 외	지식기반산업의 인력예측	KDI 다부문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취업자 구성변화 추이 · 지식기반산업의 직업 중분류별 취업자 증가 추이 		
이용환 외	농업인력수급전망	SPSS 빈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력의 수급현황 및 전망 · 농업관련 기업체수 및 종업원수 · 인력수요와 연계한 농업계 고등학교 현황 및 졸업생들의 진로 		
최은영 외	치과 의사인력수급	공급분석, 파생수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치과 의사인력 증가 및 손실 추이 · 연도별 치과대학 입학정원, 입학생수 및 졸업생수 · 치과 의료 이용비율 		
홍기용 외	기능인력수급	격차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총생산 · 산업별 생산 · 경제활동인구 · 산업별 고용인구 · 교육수준별 고용인구 · 교육수준별 졸업생수 · 실업계 졸업생수 		